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 및 활성화 방안

2005년 12월

해 양 수 산 부

감천항 국제 수산 물류·무역기지 조성 및 활성화 방안

2005. 12

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 경 대 학 교

해 양 수 산 부

제 출 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12월

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총괄책임자 : 신 영 태

연구 원 : 강 종 호, 장 홍 석
 마 창 모, 정 명 화
 전 희 성

공동연구기관 : 부 경 대 학 교

공동연구책임자 : 장 영 수

연구 원 : 송 정 현
 김 봉 재



<목 차>

요 약	1
제1장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제2장 연구범위, 방법 및 추진체계	2
제1절 연구범위	2
제2절 연구방법 및 추진 체계	3
1. 연구방법	3
2. 연구추진체계	4
제3절 보고서의 구성	5
제3장 사업별 추진 현황	6
제1절 감천항 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의 개요	6
1. 사업 개요	6
2.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	6
제2절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추진 현황	7
1. 사업개요	7
2. 추진 경과	10
3. 공사 진행 현황	11
4. 기대효과	12
제3절 국제수산물교역센터의 추진 현황	12
1. 사업개요	12
2. 추진 경과	13
3. 기대효과	14
제4절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의 추진 현황	15
1. 사업개요	15
2. 추진 경과	16
3. 기대효과	17

제4장 사업별 활성화 제약요인	19
제1절 동북아 수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19
1. 일본의 수산물 무역구조 변화	19
2. 일본의 수산물 수출촉진정책 강화	22
3. 러시아의 수산물무역 자국화 강화 정책	24
4.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 증가와 소비패턴 변화	26
제2절 물량확보의 불확실성	29
1. 감천공영수산물도매시장	29
2. 국제수산물교역센터	31
3.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31
제3절 시설자금 부족과 수입업체 지원의 어려움	33
1. 시설자금 부족	33
2. 수입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의 어려움	34
제4절 기반시설의 부족 등	35
1. 진입도로 협소	35
2. 집안시설의 부족과 구조상의 문제	36
3. 보안펜스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	36
4. 방파제 취약 및 항내 오염가능성	38
5. 제빙·저빙 시설의 부족	40
제5장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반입물량 추정	42
제1절 조사의 개요	42
1. 조사대상의 현황	42
2. 원양 및 수입수산물의 유통구조	54
제2절 실태조사 결과	65
1. 도매시장 상장 의향조사	65
2. 조사결과의 종합	77
제3절 반입물량에 따른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손익변동 분석	79
1. 분석방법과 전제	79
2. 상장 희망 물량에 따른 손익분석 결과(제1단계)	81
3. 조건부/유보 물량 상장시 손익분석결과(제2단계)	87

4. 조건부/유보 물량 및 연근해 어획물을 포함할 경우의 손익분석 결과(제3단계) …	96
5. 손익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07
제6장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	109
제1절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의 물량확보 방안	109
1. 수입 및 원양수산물 필요물량 확보 방안	109
2. 연근해수산물 전용시장 건설 방안	113
3. 사업 활성화 지원 방안	121
4. 시설 확충 방안	125
제2절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방안	138
1.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	138
2. 시장도매인제 도입방안	154
3. 시장의 개설 준비	168
제7장 국제수산물교역센터 활성화 방안	180
제1절 목표시장 확보 가능성 분석	180
1. 통계적 분석	180
2. 거래형태별 분석	185
3. 요인별 성공가능성 분석	193
4. 목표시장 달성 타당성분석 결과	198
제2절 목표시장 확보방안	200
1. 시장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	200
2. 감천 공영 수산물도매시장 과의 경합, 중복 문제	204
3. 국제수산물 교역센터 설립 운영방안	206
제3절 국제수산물 교역센터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208
1. 조사목적 및 조사방법	208
2. 조사결과	208

제8장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의 활성화 방안	227
1. 고부가가치 가공업체 중심으로 단지조성	227
2. 내수용 가공의 경영	228
3. 홍보강화 등	229
4. 연근해 전용시장과 동시 건설	229
5. 물류센터의 설치	230
제9장 감천항 국제수산물교역센터 조성 및 무역기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	232
제1절 사업의 구상	232
제2절 사업 활성화 제약요인	234
1. 동북아 수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234
2. 물량 확보의 불확실성	235
3. 시설자금 및 기반시설의 부족	236
제3절 세부사업별 마스터플랜	237
1.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238
2.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운영방안	245
3. 국제수산물교역센터 활성화 방안	250
4.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활성화 방안	251

【표 차례】

<표 2-1>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3
<표 2-2> 정책자문단 보고실적	4
<표 3-1> 감천항 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의 주요 사업 내용	7
<표 3-2>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사업 개요	8
<표 3-3>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 기능	9
<표 3-4> 감천공영 수산물도매시장의 취급량 목표 예측	9
<표 3-5>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추진 경과	10
<표 3-6> 연차별 감천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11
<표 3-7> 연도별 감천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공사 추진 실적 및 계획	11
<표 3-8> 국제수산물교역센터의 사업 개요	13
<표 3-9> 국제수산물교역센터 사업의 추진 경과	14
<표 3-10>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사업의 사업 개요	15
<표 3-11>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의 주요 시설	16
<표 3-12>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경과	17
<표 4-1> 대 일본 국가별 수산물 수출액	20
<표 4-2> 일본의 품목별 수산물 수입실적	21
<표 4-3> 중국의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	27
<표 4-4> 감천 공영 수산물도매시장의 물량예측 사용자료	29
<표 4-5> 감천 공영 수산물도매시장의 물량 변화 검토	30
<표 4-6>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 연도별 투자액	33
<표 4-7>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의 접안시설 비교	36
<표 4-8>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의 제빙·저빙능력 비교	40
<표 4-9>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의 폐수처리시설 비교	41
<표 5-1> 원양어업 업종별 생산실적	43
<표 5-2> 원양어업 업종별 생산실적 및 수출량(설문대상 75개사 통계)	43
<표 5-3> 원양 수산물의 부산반입물량(설문대상 75개사 통계)	44

<표 5-4> 원양 수산물의 부산반입가능물량 추정	44
<표 5-5> 수입선어 조사대상 업체의 거래 규모	45
<표 5-6> 선어수입 조사대상 업체의 어종별 국별 거래 규모	46
<표 5-7> 수입선어 조사대상 업체의 판매방법	47
<표 5-8> 선어수입업체들의 주요 판매지역	47
<표 5-9> 국내 각 지역별 BPI 지수 비교표	52
<표 5-10> 전국 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량과 경유율	54
<표 5-11> 원양업체의 감천항 도매시장 상장 판매희망 물량	67
<표 5-12> 수입(냉동)수산물의 감천항 수산물 도매시장 경유판매 의사	71
<표 5-13>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 상장물량 합계	78
<표 5-14>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연도별 수입 추정 결과(제1단계)	83
<표 5-15>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연도별 비용 추정 결과(제1단계)	85
<표 5-16> 2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시장사용료 산정결과	88
<표 5-17> 2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임대료 수입 산정결과	88
<표 5-18> 2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주차료 수입의 산정결과	89
<표 5-19> 2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시설사용료 수입의 산정결과	89
<표 5-20>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연도별 수입 추정 결과(제2단계)	90
<표 5-21> 2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인건비 산정결과	91
<표 5-22> 2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일반비용 산정결과	92
<표 5-23>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연도별 비용 추정 결과(제2단계)	93
<표 5-24>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세 부과 전 손익(제2단계)	93
<표 5-25>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세 부과 후 손익(제2단계)	94
<표 5-26>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투자비용 상환시 미상환 누적액(제2단계)	95
<표 5-27> 3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시장사용료 산정결과	97
<표 5-28> 3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임대료 수입의 산정결과	98
<표 5-29> 3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주차료 수입의 산정결과	98
<표 5-30> 3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시설사용료 산정결과	99
<표 5-31>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연도별 수입 추정 결과(제3단계)	100
<표 5-32> 2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인건비 산정결과	101
<표 5-33> 2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일반비용 산정결과	102
<표 5-34>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연도별 수입 추정 결과(제3단계)	102
<표 5-35>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연도별 비용 추정 결과(제3단계)	103

<표 5-36>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세 부과 전 손익	104
<표 5-37>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세 부과 전 손익(제2단계)	104
<표 5-38>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초기투자비용 상환(제3단계)	106
<표 6-1> 수입수산물 검역 및 통관의 One-Stop서비스 방안	111
<표 6-2> 감천 공영도매시장의 홍보 방안	112
<표 6-3>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연근해 어획물 확보 주체 대안	115
<표 6-4> 연근해 어획물 확보 주체 대안의 장단점	115
<표 6-5> 경남정치망수협 및 서남구기저수협의 수입내역	117
<표 6-6> 부산공동어시장 시설부지 현황	117
<표 6-7> 부산공동어시장의 인원현황(2004년말 현재)	118
<표 6-8>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의 접안시설 비교	120
<표 6-9> 연근해 전용시장의 건설 비용	121
<표 6-10> 중도매인 유통자금 지원실적	123
<표 6-11> 감천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 진입도로 대안별 비교	126
<표 6-12> 방파제 대안3의 개략 공사비 내역	132
<표 6-13> 국내 해수교환방파제 시공사례	135
<표 6-14> 일본의 양 방향 유도 해수교환방파제 시공사례	135
<표 6-15> 일본의 일 방향 유도 해수교환방파제 시공사례	135
<표 6-16> 현재 건설 중인 냉동공장 능력	136
<표 6-17>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조직 형태	139
<표 6-18> 관리공사와 관리사무소의 직원 수 비교	140
<표 6-19> 관리공사와 관리사무소의 관리대상 비교	140
<표 6-20> 각 공영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 현황	141
<표 6-21> 관리조직의 형태별 장·단점	142
<표 6-22> 감천 공영도매시장 관리조직의 대안	143
<표 6-23> 시장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의 주요 내용 비교	144
<표 6-24> 시장 형태별 운영주체의 유형	145
<표 6-25>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의 장단점 비교	147
<표 6-26>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비교	148
<표 6-27>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의 하역시간 비교(수박의 경우)	148
<표 6-28>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대안별 운영주체	149

<표 6-29>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주체 대안별 장단점	150
<표 6-30>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주체(추천 대안)	151
<표 6-31> 감천 공영도매시장의 개장 단계	152
<표 6-32> 부산지역 수입선어 운반선사의 현황	153
<표 6-33>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경과	155
<표 6-34>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 현황	155
<표 6-35> 시장도매인의 적정수와 자본금 규모(시장도매인 운영지침)	156
<표 6-36> 실제 시장도매인의 적정수와 자본금 규모(각 시장 조례)	157
<표 6-37>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의 최소 적정 수(안)	157
<표 6-38>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의 수수료 비교	158
<표 6-39> 주요 수산부류도매시장의 수수료율 현황	159
<표 6-40>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수산부류 수수료율 현황	160
<표 6-41>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수수료율(안)	160
<표 6-42> 정산창구의 유형별 비교표	162
<표 6-43> 정산창구의 유형별 장단점	163
<표 6-44> 정산창구별 장단점 평가	164
<표 6-45>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형태별 비교	169
<표 6-46> 각 도매시장의 개설준비위원회 현황	171
<표 6-47>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건설기획단의 주요 내용	172
<표 6-48>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준비 T/F의 업무와 구성	173
<표 6-49> 부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조례의 개정(안)	175
<표 6-49> 계 속	176
<표 6-49> 계 속	177
<표 6-49> 계 속	178
<표 6-49> 계 속	179
<표 7-1> 국제 수산물 교역센터의 유형별 목표 시장 규모	182
<표 7-2> 표준시장 산정	183
<표 7-3> CASE 3의 목표시장 산정	184
<표 7-4> 다량어(참치)의 거래형태 분석	192
<표 7-5> 핵심 성공요인의 평가	196
<표 7-6> 핵심 성공요인의 중요성	197

<표 7-7> 국제수산물교역센터의 목표시장(거래금액 기준)	198
<표 7-8> 국제수산물교역센터의 수정목표시장 (거래금액 기준)	199
<표 9-1> 수입수산물 검역 및 통관의 One-Stop서비스 방안	238
<표 9-2> 감천 공영도매시장의 홍보 방안	238
<표 9-3> 감천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 진입도로 대안별 비교	242
<표 9-4> 방파제 대안3의 개략 공사비 내역	244
<표 9-5>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주체(추천 대안)	246
<표 9-6>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수수료율(안)	246
<표 9-7>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최소 적정 수(안)	247
<표 9-8> 감천 공영도매시장의 개장 단계	247
<표 9-9>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형태별 비교	248
<표 9-10>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준비 T/F의 업무와 구성	249

【그림 차례】

<그림 2-1> 연구범위도	2
<그림 2-2> 연구추진 체계도	4
<그림 4-1> 보안펜스가 설치된 지역의 모습	38
<그림 4-2> 감천항의 현재 방파제시설 위치도	39
<그림 5-1> 수입선어 조사대상 업체의 수산물 수입어종	46
<그림 5-2> 선어 수입업체들의 수산물 판매지역	48
<그림 5-3> 선어 수입업체들의 자금회수 기간	49
<그림 5-4> 선어 수입업체들의 대금 회수율이 낮은 이유	49
<그림 5-5> 선어 수입업체들의 자금조달 방법	50
<그림 5-6> 공영 도매시장으로의 육상반입량 추정절차	51
<그림 5-7> 원양수산물의 가격결정 방식	54
<그림 5-8> 원양 명태의 유통경로	55

<그림 5-9> 원양 명태의 국내 시장 유통경로	56
<그림 5-10> 원양 오징어의 국내 시장 유통경로	58
<그림 5-11> 원양 오징어의 국내 시장 유통경로	59
<그림 5-12> 일본산 신선냉장 수산물의 한국 내 유통경로	61
<그림 5-13> 수입냉동수산물의 유통경로도	63
<그림 5-14> 원양업체의 감천항 도매시장 상장 판매의사	67
<그림 5-15> 원양업체의 도매시장 상장을 희망한 이유	68
<그림 5-16> 원양업체의 도매시장 상장을 거부한 이유	69
<그림 5-17> 원양업체에서 경매제를 선택한 이유	69
<그림 5-18> 원양업체에서 시장도매인제를 선택한 이유	70
<그림 5-19> 냉동물 수입업체에서 경매제를 선택한 이유	72
<그림 5-20> 수입업체(냉동)에서 시장도매인제를 선택한 이유	72
<그림 5-21> 선어 수입업체에서 선택한 감천시장의 취급수산물	73
<그림 5-22> 선어 수입업체의 도매시장 상장의사	74
<그림 5-23> 수입업체(선어)의 거래방법 선호도	75
<그림 5-24>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손익 분석 흐름도	79
<그림 6-1> 감천항 진입도로 제1안 및 제2안 위치도	127
<그림 6-2> 감천항 진입도로 제3안 위치도	128
<그림 6-3> 방파제 대안1의 평면배치도	130
<그림 6-4> 방파제 대안2의 평면배치도	131
<그림 6-5> 방파제 대안3의 평면배치도	132
<그림 6-6> 원형 진동수로 단면도	133
<그림 6-7> 전위 우수실 내장 진동수로 단면도	134
<그림 6-8> 파이프 내장 혼성제 단면도	134
<그림 6-9> 부산공동어시장의 폐수 고도처리 공정도	137
<그림 6-10> 도매시장 관리조직의 기능	139
<그림 6-11> 도매시장법인의 거래 방법	146
<그림 6-12>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체계도	146
<그림 6-13> 수입선어 운반선의 전경	153
<그림 6-14>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정산방식(공동관리)의 체계도	165
<그림 6-15>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정산시스템	167

<그림 6-16> 도매시장의 허가 절차 흐름도	168
<그림 7-1> 국제수산물교역센터 목표시장 개념과 규모	180
<그림 7-2> 국제수산물교역센터 목표시장 산정방법	181
<그림 7-3> 명태 및 연육의 국제거래 구조	186
<그림 7-4> 명란의 국제거래 구조	187
<그림 7-5> 대구의 국제거래 구조	188
<그림 7-6> 오징어의 국제거래 구조	189
<그림 7-7> 고등어의 국제거래 구조	190
<그림 7-8> 새우의 국제거래 구조	191
<그림 7-9> 다랑어(참치)의 국제거래 구조	192
<그림 7-10> 연어의 국제거래 구조	193
<그림 7-11> 수산물 거래시장 변화 와 Needs	194
<그림 7-12> 시장 가격 신뢰도의 위험성 분석결과	195
<그림 7-13> 설문 응답자의 거래 물품의 품질에 대한 위험도 분석결과 ...	195
<그림 7-14> 교역센터 설문조사 응답 업체의 주력업종	209
<그림 7-15> 교역센터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수산물 주요 공급경로	209
<그림 7-16> 교역센터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수산물 공급국가	210
<그림 7-17> 교역센터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수산물 판매형태	210
<그림 7-18> 교역센터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수산물 판매국가	211
<그림 7-19> 교역센터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월평균 매출규모	211
<그림 7-20> 교역센터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거래처 확보정도	212
<그림 7-21>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구입거래 횟수	212
<그림 7-22>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판매거래 횟수	212
<그림 7-23>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매수 및 매도 거래형태	213
<그림 7-24>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현재 대금결제 방식	213
<그림 7-25>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선호하는 대금결제 방식	214
<그림 7-26>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L/C 개설금액	214
<그림 7-27>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선호하는 L/C 희망금액	214
<그림 7-28>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선호하는 대금결제 방식	215
<그림 7-29>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선호하는 시장가격의 신뢰도	215
<그림 7-30>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거래상대 발굴의 어려움	216

<그림 7-31>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매도 및 매수물량 확보의 어려움	216
<그림 7-32>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물품의 질에 대한 보장의 위험도	217
<그림 7-33>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거래물품에 대한 결제의 위험성	217
<그림 7-34>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수산물 관련정보 획득의 어려움	218
<그림 7-35>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거래후 거래대금 회수기간	218
<그림 7-36>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대출기관 이용실태	219
<그림 7-37>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자금조달시 현재 및 희망금리 수준	219
<그림 7-38>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담보대출 이용시 애로사항	220
<그림 7-39>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거래편의성에 대한 중요도	220
<그림 7-40>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일일가격결정시스템 필요성	221
<그림 7-41>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품질인증 및 검수기능에 필요성	221
<그림 7-42>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수산물 공급 및 수요량 예측기능	222
<그림 7-43>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자금결재에 있어 책임있는 기관의 중개 필요성	222
<그림 7-44>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수산물 담보대출 및 L/C 대출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	223
<그림 7-45>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마케팅 정보제공의 필요성	223
<그림 7-46> 교역센터 설문 응답 업체에의 표준화 항목 순서에 대한 응답결과	224
<그림 7-47> 교역센터 설문 응답 업체의 선도/선물거래의 필요성	224
<그림 7-48> 교역센터 설문 응답 업체의 수산물 교역센터 참여의향	225
<그림 7-49> 교역센터 설문 응답 업체의 서비스 제공시점에 대한 응답결과	225
<그림 8-1>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와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일괄시공	230
<그림 9-1>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주요사업의 관계	232
<그림 9-2> 연근해 전용시장과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의 배치도	233
<그림 9-3> 동북아 수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234
<그림 9-4> 물량확보의 불확실성	235
<그림 9-5> 자금지원 및 기반시설 부족	236
<그림 9-6> 수입 및 원양수산물 확보방안	237
<그림 9-7> 연근해 수산물 유치방안	239
<그림 9-8> 도매시장 사업활성화 지원방안	240
<그림 9-9> 도매시장의 시설확충방안	241

<그림 8-10> 감천항 진입도로 제1안 및 제2안 위치도	243
<그림 9-11> 방파제 대안3의 평면배치도	244
<그림 9-12>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주체	245
<그림 9-13> 도매시장의 개설을 위한 준비사항	248
<그림 9-14> 국제수산물교역센터의 활성화방안	250
<그림 9-15>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의 활성화방안	251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부산광역시는 1991년부터 감천항 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을 위해 3단계 14개 사업을 추진 중임
- 최근 주요 사업별로 문제점 제기
 -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 취급물량 확보가능성에 대한 의문
 - 국제 수산물 교역센터 : 법적제약과 국내외적으로 선례 없음
 -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 예산당국의 유보적 입장
- 따라서 주요 사업별 문제점 및 제약요인 분석을 통해 주요 활성화 방안 제시

2. 연구방법

- 기존의 연구결과와 연구인력 최대한 활용
- 전문가 활용
- 관계기관 협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공동어시장
- 해외출장 조사
- 설문조사 실시

	원양업체	수입업체		가공업체	국내외 무역·유통·물 류업체	계
		냉동	신선·냉장			
조사방법	전수조사	표본조사				434 (411)
	방문조사	방문조사	방문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응답업체 수	75	121(98)	21	105	112	

3. 사업별 추진현황

○ 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사업

- 1단계 사업(2개 사업, 397억원): 1999년 완료
 - 원양 어획물 전용부두 건설,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
- 2단계 사업(4개 사업, 8,821억원): 2007년 목표
 -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국제수산물거래소, 수산물 유통·가공단지
- 3단계 사업(8개 사업, 5,532억원): 2010년 목표
 -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 수산물종합배송·택배센터 외 3개 사업, Fish park 등

○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

- 1995년 2월 부산시 세계화 전략사업 선정
- 2000년 2월 기본설계 용역완료
- 2001년 1월 착공
- 2003년 11월 “감천도매시장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수립용역 완료(부경대)

○ 국제 수산물 교역센터

- 1998년 10월~1999년 12월 관련기관 및 전문가 연구회 구성, 운영
- 2001년 8월 기본계획 확정
- 2004년 1월 부산시내 BIFEX 설립 및 태스크 포스팀 구성
- 2004년 7월~11월 BIFEX 설립 및 참가유치 설명회 개최(중국, 베트남, EXPO 참가국)
- 2005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 시 “국제수산물교역센터” 추진계획 보고

○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 2000년 8월 “21C 수산물류 무역시스템” 구축 수산관계자 간담회
- 2001년 5월 “감천항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조성 3단계 사업 기본계획” 용역 완료
- 2001년 6월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
- 2001년 7월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입주 희망업체 조사
- 2002년 8월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4. 사업별 활성화 제약요인

가. 동북아 수산물 교역구조 변화

- 일본의 무역패턴 변화
 - 중국, 베트남, 대만의 대 일본 수출 증가
 - 한국, 인도네시아, 노르웨이의 대 일본 수출 감소
 - 냉동·선어 중심에서 가공품 중심으로 품목별 수입변화
 - 수입단가 하락
 - 시사점
 -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가 시급함
 - 수산가공품 기지로서 중국입지 공고히 하여 차별화가 필요함
- 일본의 수출촉진정책 강화
 -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
 - 배경
 - 국내: 인구증가에 의한 소비증가의 한계,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 국제: 세계적인 일식 붐, 인근 국가의 구매력 형성(한국, 중국 등)
 - 지원분야: 판로확대, 수출저해요인 개선, 생산기술개발 지원
 - 시사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 공영수산물도매시장 반입 기대
- 러시아의 생산 및 무역 자국화 강화 정책
 - 목표 : 불법어업 근절로 국내 수산업 부가가치 제고
 - 정책변화
 - 대규모 냉동창고 건설 및 보수
 - 원어상태의 해외수출금지 필요성 제기
 - 생산유통, 가공업체의 컨소시엄화
 - 중국에 대한 수출 주력
 - 시사점
 - 원료어 수입가격 상승 가능성
 - 합작확대 및 가공업 진출 필요성

○ 중국의 수산물 소비증가와 고급화

- 중국의 1인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1984년 6.5kg에서 2000년 25kg으로 증가
- 2000년 소비량 25kg 중 가정 내 소비 6.9kg(27.6%), 외식 18.1kg(72.4%)로서 외식이 소비고급화를 주도
- 시사점
 - 고급 수산물의 수출가능성
 - 중국의 수산물 수입은 대부분 가공품으로서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의 성공가능성 제고 가능

나. 물량확보의 불확실성

○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

- 당초계획
 - 연근해 어획물 70,294톤, 원양 어획물 462,375톤, 수입 수산물 100,316톤 등 632,984톤
- 계획변경의 필요성
 - 추정시기가 2001년까지이나 이후 어업협정 등으로 큰 변화
 - 원양 및 수입수산물은 장외거래 중심으로 유통

○ 국제 수산물 교역센터

- 현물거래 시 공영 도매시장과의 경합 및 중복 가능성
- 계획변경의 필요성
 - 현행제도상 수산물 선물거래 불가
 - 국내 사업자의 참여도 저조 전망

○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 동북아 수산물 교역구조 변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상존
- 예비타당성 분석결과 100% 수출 시만 낮은 타당성

다. 시설자금 부족과 수입업체 지원의 어려움

○ 시설자금 부족

- 투자계획 1,995억원 중 2005년까지 1,258억원 투자
- 사업지연 시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투자 불가피

- 2005년 도매시장 건설자금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바뀌어 어려움 가중
- 수입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의 어려움
 - 수입업체의 도매시장 상장유도를 위해서는 운영자금 지원이 필요
 -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이를 위한 근거가 없고
 -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려고 해도 국내 어업인 우선 보호차원에서 쉽지 않음

라. 기반시설의 부족 등

- 진입도로 협소
 - 현재의 도로실태
 - 주진입도로: 매립지 배후 도로인 중로 1-114호선
 - 연계도로: 대로 1류 8호선, 암남공원 순환도로 등
 - 문제점: 특히 감천사거리 지역 정체 극심 예상
- 접안시설 부족과 구조상의 문제
 - 접안시설 부족
 - 공영수산물 도매시장의 접안시설은 500m(부산공동어시장은 1,016m)
 - 원양어선과 수입수산물 운반선의 접안에는 문제없으나 연근해 어획물 양륙 시 부족
 - 구조상 문제
 - 현재의 도매시장 접안시설은 원양어선 등을 대상으로 공사
 - 원양어선 등은 연근해어선 보다 1.5m 정도 높음
- 보안펜스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
 - 밀입국 등 방지 위해 1997년에 보안펜스 설치
 - 길이 3,250m, 높이 3.2m
 - 근거: 통합방위법 제15조(국가 주요시설 경비·보안·방호)
 - 보안펜스 설치로 직선거리 30m인 냉동창고에 1,055m를 우회하여 입고
- 방파제 취약 및 항내 오염 가능성
 - 방파제 취약(정온도 유지의 어려움)
 - 평상시 하역한계 파고 0.5m를 초과한 파랑의 출현율이 높음
 - 태풍 시 항내 파고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 항내 오염 가능성
 - 감천항 외만은 유속이 비교적 빠르나 동방파제에 인접해 있는 도매시장은 유속이 느림
 - 연근해 어획물 양륙 시 오염심화 가능성
- 제빙·저빙시설 부족
 - 현재 건설 중인 냉동 창고의 경우 연근해 어획물 위판 시 부족
 - 특히 위판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시 얼음의 재고 부족 우려
- 폐수처리시설 부족
 - 공사 중인 도매시장의 폐수처리 시설도 연근해 어획물 위판 시 부족이 예상
 - 특히 연근해 어획물은 수입수산물이나 원양 어획물에 비해 폐수 방출량이 많으므로 고용량의 처리시설 필요

5.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반입물량 추정

가. 조사개요

- 원양수산물
 - 실적 있는 109개사 중 연락불가, 응답거부 업체를 제외한 75개사 직접조사(KMI)
- 냉동수입수산물
 - 연간 수입물량 50톤 이상, 1,036업체 중 121(98)개 표본업체 조사(해수부, KMI)
- 선어수입수산물
 - 2개 해운회사 이용업체 21개사 표본조사(해수부, KMI)
- 육상반입량
 - 부산이외 지역의 국내 공급량에서 부산의 BPI(구매력 지수)를 이용하여 추정

나. 실태조사 결과

- 도매시장 상장의향 조사
 - 원양수산물
 - 75개 업체 중 12개(16%)만 도매시장 도소매 희망
 - 12개 업체 중 경매제 선호 5개사, 시장 도매인제 선호 3개사, 병행 선호 4개사
 - 수입냉동물
 - 제조사 결과 98개 업체 중 11개사(11%)가 상장희망
 - 11개사 중 경매제 희망 3개사, 시장도매인제 희망 7개사, 병행 희망 1개사
 - 수입선어
 - 도매시장 상장희망 15개 업체(71%)
 - 15개 업체 중 경매제 희망 2개 업체(12%), 시장도매인제 희망 10개 업체(64%), 병행희망 3개 업체(24%)
- 도매시장 상장희망 물량 추정방법
 - 부산지역 반입물량 합계(A)
 - 설문조사 대상업체 생산(수입) 물량(B)

- 환산률: A/B

- 추정량: 환산률(A/B)×C

○ 도매시장 상장희망 물량 추정결과

<도매시장 상장희망 물량 추정결과>

(단위: 톤)

구 분	합 계	원양수산물	수입냉동물	수입선어	육상반입량	
무조건 상장	180,180	20,721	96,664	21,055	41,740	
조 건 부 상 장	20% 상장	237,980	51,242	123,518	21,480	41,740
	40% 상장	295,779	81,763	150,371	21,905	41,740
	60% 상장	354,577	113,283	177,225	22,329	41,740
	80% 상장	411,376	142,804	204,078	22,754	41,740
	전량 상장	469,176	173,325	230,932	23,179	41,740

다. 반입물량에 따른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 손익변동 분석

○ 분석흐름도



○ 분석방법: 시설투자비 상환 및 미상환 시의 2경우로 나누어 수지분석

○ 수입과 비용항목

- 수입: 시장사용료, 주차료, 시설사용료, 임대수입

- 비용: 인건비, 일반경비, 감가상각비

○ 분석결과

<시설투자비 미상환 시 손익발생(법인세 차감 후)>

구 분		2008년	-	2012~2048년
제1단계		-1,970	-	-1,970
제2단계	조건부 20% 상장	0	-	0
	조건부 40% 상장	151	-	151
	조건부 60% 상장	903	-	903
	조건부 80% 상장	1,559	-	1,559
	조건부 전량 상장	2,192	-	2,192
구 분		2008~2011년	2012~2048년	2049~2052년
제3단계	조건부 20% 상장	0	1,704	4,520
	조건부 40% 상장	151	2,370	5,186
	조건부 60% 상장	903	3,003	5,819
	조건부 80% 상장	1,559	3,717	6,533
	조건부 전량 상장	2,192	4,211	7,027

라. 분석결과의 종합

- 시설투자비 상환은 어떤 경우라도 불가능하며, 대안별로 미상환 누적액에 차이가 있을 뿐임
- 시설투자비 상환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또는 유보물량의 40% 상장 시 이익 발생(295,749톤)
- 따라서 최소한 약 30만 톤 정도의 물량을 유치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도매시장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함
- 그러나 연근해 어획물까지 도매시장에 상장할 경우, 이익이 증가할 뿐 아니라 현재 부산공동어시장은 리모델링 또는 이전해야 할 상황에 있음
- 이렇게 볼 때 연근해 수산물 전용시장 건설 조건으로 부산공동어시장을 공영 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과거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이나 구리시장의 경우 기존의 마포 및 청량리 시장 이전을 전제로 건설된 바 있음

6.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

가.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의 물량 확보

○ 수입 및 원양수산물 물량 확보

- 수입수산물
 - 수입업체를 도매시장의 운영주체로 유치
 - 외국 수출업체들의 도매시장 직접 양륙 유도(홍보강화): 수수료 할인, 통관서비스 제공 등
 - 보세구역 설치
- 원양수산물
 - 해외트롤어업 생산물 상장유도
 - 원양어업 협회 차원에서 공동참여 방안 검토
 - 해외합작 어획물 도매시장 상장 유도
- 적극적인 홍보

〈공영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법〉

구 분	내용	주 체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사업에 대한 비전과 역할 등 내용으로 국내, 국외용으로 제작하여 관련업체, 시장 등에 배포	부산시
사업 홈페이지 제작	부산시 홈페이지, 각급 관공서, 기관 등에 연계향후 시장 홈페이지로 변경 활용	부산시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장점과 제공서비스에 대한 설명회 주기적 개최	개설준비 T/F
국제심포지엄의 개최	홍보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개설준비 T/F
각국 방문 홍보	각국의 주요시장, 대형수산업체, 물류회사 등 대상	개설준비 T/F

○ 연근해 수산물 물량확보(전용시장 건설)

<연근해 수산물 유통주체>

대안	구분	대상	특징
I	생산자 단체	수협중앙회 및 수협 기타 생산자 단체	연근해어획물의 생산자 단체 수집 기능 활용 생산자단체의 투명성 및 공정성 도입
II	공동어시장	청산 후 도매법인으로 참여	기존 공동어시장의 상권 활용 거래기반 및 노하우 활용

- 공동어시장 정리방안

- 정리 후 신설 도매시장에 법인으로 참여시 별도의 자금지원 방안 검토
- 기존 직원 가급적 고용승계
- 노무인력은 항운 노조 상용화와 연계하여 추진 검토

- 전용시장 건설방안

-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과의 연계 추진
- 별도의 집안부두 시설과 관련시설 확충

○ 자금지원

- 시설자금

- 부산광역시 자체적으로 균특예산 확보에 주력
- 시설투자비 미상환시 이익 발생 사실을 예산당국에 설명

- 운영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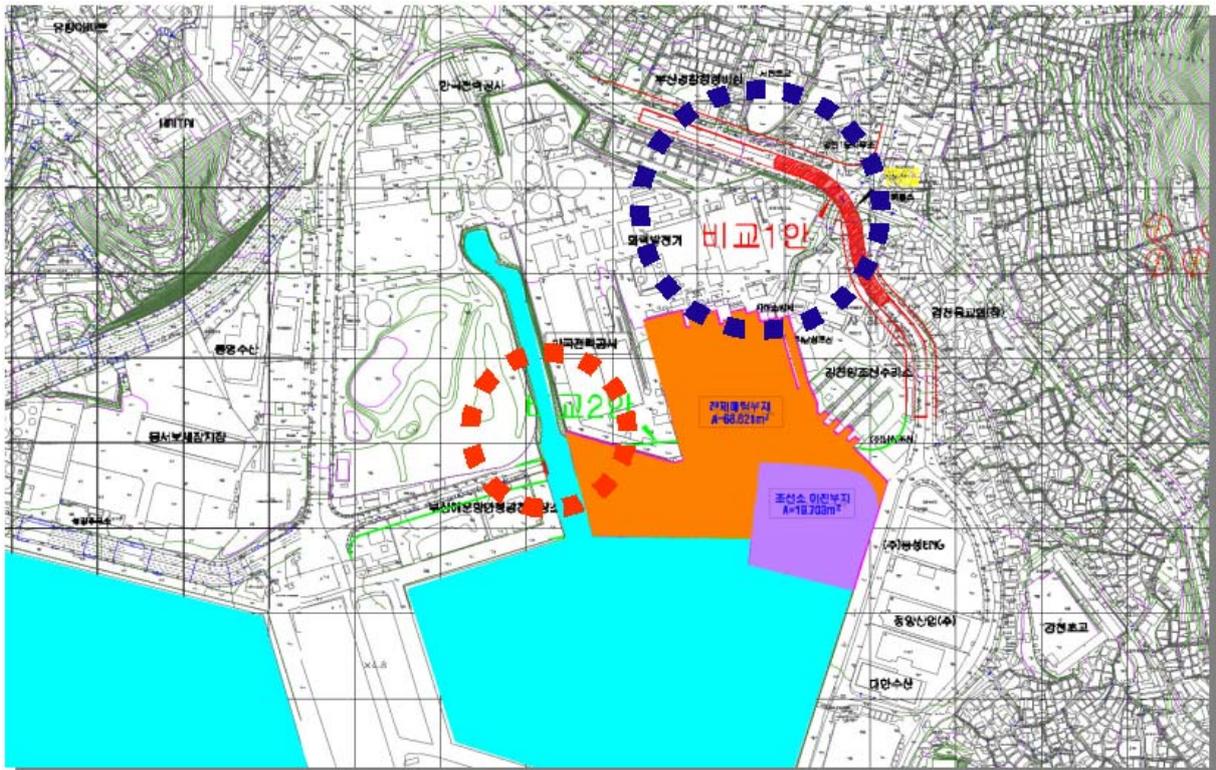
-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 산지 및 소비지 중도매인 유통자금
- 산지 유통인 출하촉진 자금
- 기타 신규자금: (가칭)수산물 수입업체 운영자금, (가칭)시장도매인 운영자금

○ 시설확충방안

<진입도로 개설>

구 분	비교 1안	비교 2안	비교 3안
개 요	명지-감천항: 지하차도(왕복2차로)설치	감천항 화력발전소 구간매립	감천항-송도: 터널 및 기존도로 확장
사업비	608억원	855억원	965억원
특 징	고질적 감천사거리 교통체증 해소 지하차도 공사부 복공 시공 필요 도로 확장부, 선시공 후 지하차도 건설 필요 천마터널 접속 고가교량 시공 시 기초형식 복잡 사업비 저렴	감천항 전체 내부순환도로 역할 가능 남향대교 접속 양호 민원요소 최소안 공사비 고가 행정기간 고다 소요 조선소 이전 비용 과다	기존 감천항 내부도로 교통 분산 효과 송도삼거리 명지방향 대형 컨테이너 트럭의 좌회전 자료 확보 어려움 송도주변 상업시설 과다보상 필요 사업비 과다
추천안	●		

<진입도로 1안 및 2안 위치도>



○ 접안시설 확충

- 공사 중인 도매시장과 동방파제가 500m 구역을 수산물 전용부두로 용도변경하고 매립
- 도매시장 접안시설은 수입수산물 및 원양어선과 저인망 어선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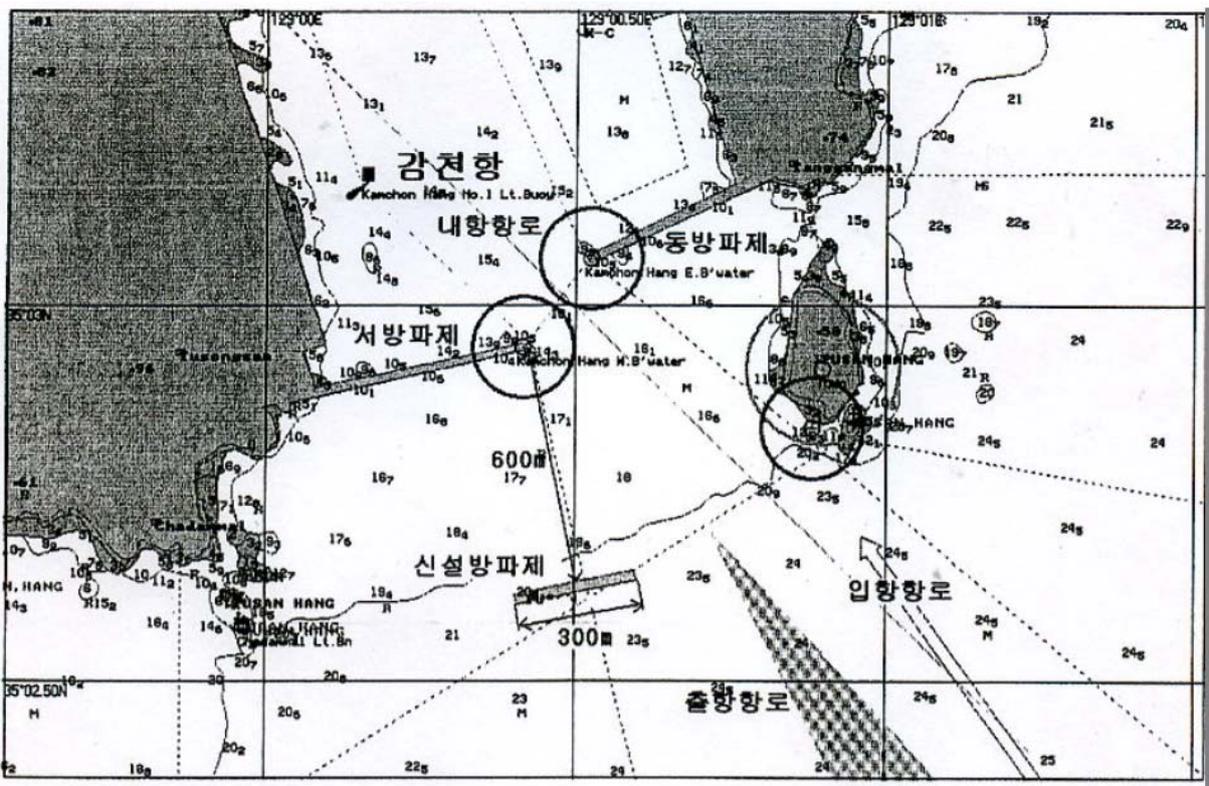
○ 보안펜스 개선

- 개폐식 펜스 등 설치비용과 인건비 분담 방식 검토(단기)
- 펜스 이외의 보안·망호방안 강구(중장기)

○ 항내 정온도 유지

- 대안 3안을 추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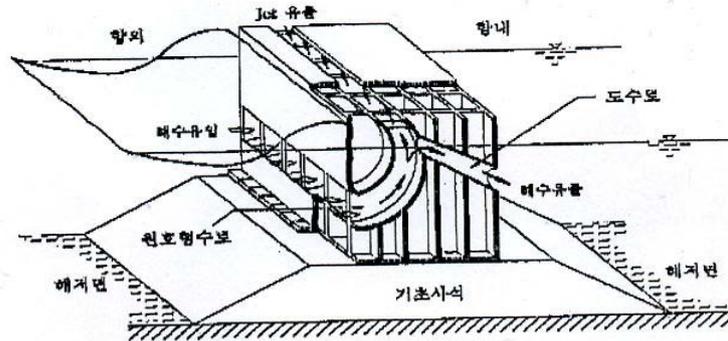
<항내 정온도 유지 대안 3안>



○ 항내 오염도 저감: 해수교환 방파제 설치

- 국내연구사례: 원형 진동수로 단면, 전위 유수실 내장 진동수로, 파이프 내장 혼성제

<원형 진동수로 단면도>



- 국내 해수교환방파제 시공사례: 남해 미조항, 동해 주문진항, 동해 후포항, 묵호항

<국내 해수교환방파제 시공사례>

항 명	형 식
남해 미조항	양방향 흐름방식을 이용하여 수질 보전
동해 주문진항	기존 방파제의 일부를 제거하고 제거구간에 방파제를 축조
동해 후포항, 묵호항	사업을 진행 중

-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학적인 조사·검토 필요

○ 제방·저방시설 확충

- 연근해 어획물을 양륙할 경우 현재 건설 중인 냉동공장 규모의 시설 추가로 필요

○ 폐수처리 시설 확충

- 연근해 어획물 위판 시 추가건설 필요
- 2,000평, 50억원 소요
- 폭기조 250평, 침전조 60평, 저류조시설 600평, 위판장 저류조 350평 등

나.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방안

○ 도매시장의 관리조직

- 시장의 관리조직 수행 업무 이외에도 수입·수출 통관 및 검사 등의 업무 추가
- 시장도매인 도입으로 정산창구 운영, 거래질서 유지 등 강한 감시감독 체제 필요
- 부산시 기존 도매시장들이 관리사무소 체제로 관리에 대한 노하우 축적
- 추천안: 1안
- 관리능력이 큰 관리사무소 체제로 추천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조직 대안〉

구 분		단점 보완 방안	기 능
1안	관리 사무소	관리사무소 인원 최소화 2개 이상 전문업체 아웃소싱	관리사무소는 거래질서 확립, 기획업무 중점 관리업체는 경쟁시켜 평가 후 매년 재계약
2안	관리 공사	규모를 전문성 위주로 슬림화 일상 업무는 아웃소싱	업무 중 전문성 요하는 부분만 조직구성 나머지는 하청업체 등 활용

○ 도매시장의 운영 주체

- 농안법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
- 32개 공영도매시장 대부분이 도매법인제를 채택
-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 우리나라 최초로 2004년 6월에 시장도매인제 시장 개장
- 시장도매인은 반드시 정산창구 이용
- 표준송품장, 거래 신고소 설치 등 시장도매인 거래 투명성 위한 보완 장치 필요

○ 도매시장의 운영주체 대안

- 도매법인 만으로 수입과 원양수산물을 취급하여 물량유치에 실패할 경우,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단기간에 회복이 곤란함
- 경매제를 선호하지 않는 기존 원양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시장에 상장을 꺼려하고 있으나, 동시에 수입 선어와 원양 품치 등은 경매나 입찰을 원하고 있음
- 기존 유통업자들을 시장도매인으로 영입이 가능함
- 시장도매인제는 위탁 및 중개수수료가 경매제의 절반이므로 출하자의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상장기피를 줄일 수 있음
- 원양 및 수입 냉동품 등은 수의매매와 입찰, 경매 등의 선호가 중복되고, 시장도매인제는 수산부류시장에 도입된 바가 없으므로
- 부산시와 시장개설 T/F등 협의체가 3가지 대안 중에서 신중한 고려 후 선택 필요
- 단, 연근해 수산물은 상품의 특성상 경매제가 바람직하므로 도매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주체 대안>

대안	형태	취급분류	특징	
			주체	주요 취급시장
I	복수 도매법인	제1법인 : 국제 수산물 (수입수산물)	· 국내 대형자본 · 다국적 유통자본	감천시장
		제2법인 : 국내수산물 (연근해, 원양 등)	· 생산자단체	연근해 전용시장
II	시장도매인과 도매법인	수입 및 원양	· 기존 유통업자 · 국내 대형자본 · 다국적 유통자본	감천시장
	도매법인	연근해	· 생산자 단체	연근해 전용시장
III	시장도매인	수입 및 원양	· 기존 유통업자	감천시장
	단수도매법인	연근해	· 생산자 단체	연근해 전용시장

○ 시범운영

- 공영도매시장에서 원양 및 수입수산물의 본격적인 거래가 처음 시도되므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있음
- 시범운영은 개장 후 1년간, 수입수산물과 원양수산물을 중심으로 하고, 최소의 운영주체를 두면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감천 공영도매시장의 개장 단계〉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소규모 형태로 파일럿 사업 시작	· 개장 초기의 시행착오 해소, 준비단계로 1년간 시범운영
2단계	수입수산물 및 원양 수산물 중심 개장	· 수입 및 원양수산물 전량, 연근해 일부개장 · 연근해수산물의 접안시설이 부족하므로 일부만 양륙
3단계	연근해를 포함한 전면 개장	· 시범 개장 후 3년간 연근해 접안시설 증설 · 연근해 전용시장 포함하여 전면 개장

○ 수입선어의 시범 양륙

- 현재 2개 선사가 일본산 선어를 운반, 원양전용부두의 일부를 임차 사용
- 부산의 일본산 선어 수입업체는 모두 이용, 도매시장 유치 시 수입업체는 자연스럽게 수입물량 전체를 도매시장에 상장
- 부산 수산물유통업계 및 일본 등 외국 수출업자 등에 홍보 효과
- 도매시장에 참여 분위기 조성, 전문 운반업체의 선어물류 기능 활용
- 검역, 통관 등도 사전에 준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음

다. 시장도매인제 도입방안

- 수입 및 원양수산물은 상품의 특성이나 출하자 등의 선호가 경매와 수의거래가 혼재되어 있어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운영주체 대안 : 제2안, 제3안이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을 전제
- 적정 수와 규모
 - 농안법 시행령 제18조 : 도매시장 업무 규정으로 개설자가 설정

〈농림부, 「시장도매인 운영지침 (2000.10)」의 적정 수와 자본금〉

운영지침	적정자본금	적정 수	비고
대규모시장	10억원 이상	40개 이하	연평균 거래액 1,500억원(20만톤) 이상
중규모시장	7억원 이상	20개 이하	연평균 거래액 750~1,500억 원,(10~20만 톤) 미만
소규모시장	5억원 이상	15개 이하	연평균 거래액 750억 원(10만 톤) 미만

○ 적정 수와 규모(대안)

- 감천을 중규모 시장으로 보았을 때, 최소 8개~16개소의 시장도매인이 필요
- 운영조례의 적정 수는 40개, 개장 초기 8~16개 운영 후 수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
- 적정 수 = 상장금액(상장물량 × 단가) ÷ 거래규모(1,500억 원, 750억 원)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의 최소 적정 수(안)>

구분		1안	2안	비고	
상장물량(A)	톤	117,719	427,435	설문조사 추정 물량	
단가(B)	원/kg	2,815	2,815	'04년 도매시장 평균 단가	
상장금액(C)	억 원	3,314	12,033		
시장도매인	최소수	명	2명	8명	1,500억 원/년(13만 톤)
		명	4명	16명	750억 원/년(7만 톤)
	자본금	5억 원 이상			

○ 수수료율

- 농안법 제42조, 시행규칙 제39조
- 도매법인은 위탁수수료, 중도매인은 중개수수료
- 시장도매인은 위탁 및 중개수수료를 모두 받으므로 경매제보다 수수료가 낮음
- 단, 시장도매인은 정해진 최고한도의 1/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수수료율(대안)

- 물량을 유치, 운영 정상화 위해서는 높은 수수료는 지양
- 원양 및 냉동 수입수산물은 대량 거래되므로 낮은 수수료로도 충분한 수익(박리다매)
- 시장도매인은 위탁과 중개수수료를 모두 받으므로 낮게 설정 가능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수수료율(안)>

구분		경매제		시장도매인제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수입수산물	냉동	3.0%	4.0%	1.5%	2.0%
	선어	3.0%	4.0%	2.0%	2.0%
원양수산물		3.0%	4.0%	1.5%	2.0%
연근해수산물		3.4%	4.0%	-	-

○ 시장시설의 조정

- 경매제 시장 기준으로 설계, 시장도매인제 도입위해서는 시설 조정이 필요
- 필요시설
 - 경매장 구획: 현 시설에 간단한 구획구분으로 큰 예산 없이도 가능
 - 점포와 사무실: 도매시장동 2층의 중도매인 점포를 활용, 2~3개 점포 합쳐 제공
 - 창고: 도매시장내의 냉동창고 분할 사용, 인근에 냉동 창고가 많으므로 사용계약

○ 정산제도

- 농안법 제41조(출하자 대금결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 시장도매인제 시장은 의무적으로 정산창구 설치 필요

<정산창구의 유형별 비교>

구 분	정산회사	정산조합	금융기관 이용
개 념	제3의 독립된 정산회사 설립	시장도매인이 설립한 정산조합이 대금결제전용계좌 관리	농수협, 은행 등 별도 전담팀과 약정,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전용계좌의 관리
인 격	법인(회사)	조합 또는 법인	금융기관(법인)
대금결제 안전장치	정산회사 자본금, 보증금 보험 보완장치 강구 시장도매인 보증금, 운전자금 시장도매인 자본금	시장도매인 결제계좌 취소잔고 시장도매인 보증금, 운전자금 시장도매인 자본금	시장도매인 결제계좌 최소 잔고 시장도매인 보증금, 운전자금, 자본금

○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정산방식 : 공동관리방식

- 대금결제는 금융기관이 담당
- 상인단체, 하역회사가 정산보조자로 지정받아 출하자 대금결제 및 물량을 확인하
고 개설자가 최종 확인하는 방식
- 안전장치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 총 6,000만 원 거래보증금 확보
 - 시장도매인 결제 전용계좌 최소잔고 2,000만원
 - 각 시장도매인 대표자들의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각서와 연대보증인 2인 이상 확보
 - 동 시행규칙 5조(지정조건) :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 붙일 수 있음

○ 정산제도 도입방안

-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공동관리방식을 보완하여 적용
- 정산 절차 간소화: 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송품장 작성과 거래신고서 신고를 일원화
- 정산보완장치 강화: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결제 시간차 연장, 마이너스 통장 등 활용
- 정산시스템의 도입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정산시스템>



홈페이지(www.gs-market.co.kr)를 통해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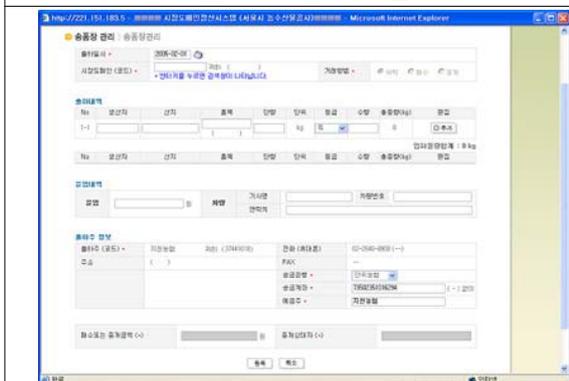
시장도매인 정산시스템 첫 화면(회원가입)



출하자 등록화면



출하자관리화면(송금계좌관리 포함)



송품장입력



송금 내역 확인

라. 시장의 개설준비

○ 시장의 형태 설정

- 감천시장은 중앙도매시장 혹은 지방도매시장인지의 형태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음

○ 시장의 형태 대안

-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국제적인 사업 추진 방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매거래의 중심지로서 중앙도매시장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

○ 도매시장 개설준비 T/F의 구성 및 운영

- 농림부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건설 사업 지침”에서는 도매시장 개장준비를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상당수 시장이 개설 전에 개설준비위원회 등의 형태로 도매시장의 개장준비를 진행
- 감천시장도 개장준비를 위해 개설준비 T/F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동 T/F는 민관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기존 자문단을 활용하여
- 시장도매인 등의 참여가 정해지면, 이들을 참여 시킬 필요가 있음
-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위원회는 시장개설을 위한 각종 행정사항 및 운영을 위한 기획, 물량유치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

○ 도매시장 업무조례의 개정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가 있으며, 농업행정과 소관
- 동 조례는 시장도매인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감천시장에 도입할 경우 보완 필요
-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도 중앙도매시장 이므로 농림부와 협의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7. 국제 수산물 교역센터 활성화 방안

가. 목표시장 확보가능성 분석

○ 분석방법

-통계적 접근, 거래형태별 분석, 요인별 성공가능성 분석

○ 통계적 분석 결과

-case 3 [어종별로 25~5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거래형태에 따라 참치 및 연어 제외]을 적용할 경우

-개설 이후 5년 이내 11억불 [43만톤]의 절반 이상인 6.6억불[21만톤]달성가능

○ 거래형태별 분석 결과

- 명태 : 실현가능성 높음

- 명란 : 다양한 유인책 개발 시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연육 : 달성가능성 있으나 직접 유치 노력 필요

- 대구 : 중개 가능성 있으나 중국 등 해외사업자 유치가 관건

- 오징어 : 달성가능성 있음

- 고등어 : 달성가능성 높아 목표금액 상향 조정 필요

- 새우 : 전략 거래품목으로 개발 필요성이 큼

- 참치 : 가격 변동 심하고 리스크 큼

- 연어 : 가능성 작음

○ 요인별 성공가능성 분석 결과

- 수산물 거래시장 변화에 대한 수요

· 객관적 가격결정, 인수도 및 결제의 안정성 보장 수요 증대

- 수요 조사 결과: 위험 높다 25.6%, 낮다 11.1%

- 성공요인: 국제적 표준화, 규격화 및 물량확보

- 가능성은 양호, 공급가능성은 불량

- 외국기업의 경우 가격결정 및 정산 시스템 중요시

○ 목표 달성가능성 분석결과 요약

구분	가중치[%]	수정시장[1]	5개국 계[case3]	개장 초기 중개목표[2]
명 태	적 정 [100]	24,238	24,238	12,119
명 란	저평가[130]	235,674	18,282	90,641
연 육	고평가[70]	131,047	187,211	93,605
대 구	고평가[70]	165,874	236,964	118,482
오징어	저평가[130]	118,591	91,224	45,612
고등어	저평가[130]	70,480	54,216	27,108
새 우	고평가[70]	272,664	389,521	194,605
참 치	제 외	-	제외	-
연 어	제 외	-	제외	-
소 계		1,018,568	1,164,654	584,327
G/R	1차년도[50]	509,284	584,327	-
	2차년도[70]	712,997	815,257	
	3차년도[100]	1,018,568	1,164,654	

나. 목표시장 달성방안

○ 시장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

- 자유경쟁 거래시장 제공: 이수도 및 결제 책임 보증장치 보유
- 위원관리 시스템 구축: 이수도 및 결제 불이행 예방과 신용리스크 방지
- 기타: 수의계약보다 우월한 거래, 공인 검수인 제도 도입 등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경합, 중복 예방

- 목표시장 부분
 - 외국에서 생산, 가공되는 물품을 주 대상
 - 위험관리, 금융지원 등 소프트웨어
- 거래참여자 및 거래흐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거래흐름도 양방향 거래
- 제도적 측면: 도매시장은 농안법, 교역센터는 지방공기업법과 회사법에 기초

○ 운영방안

- 준비기획단 발족, 업무개시
- 제3섹터 공동투자 방식의 지방공기업 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
- 거래위험제거, 표준화 등 병행
- 회원사 확보 : 국내회원사 발굴 및 육성이 필요

8.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의 활성화 방안

○ 고부가가치 중심의 단지조성

- 우리나라 수산물 가공산업은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품질경쟁력은 일본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음
- 그러나 경영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품질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에 있어서도 고부가가치 가공품 생산업계를 중심으로 조성
 - 입주의사 조사결과 응답자 105명 중 입주희망 6명 불과
 - 미입주 이유 중 자금부족, 경기침체로 인한 전망 불확실이 다수 차지

○ 내수용 가공 경영

- 중국의 동향 등을 감안할 때 수출용 가공 생산만으로는 한계
- 따라서 내수용 가공 경영 불가피

○ 홍보강화 등

- 설문조사 결과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응답자는 전체의 10%[10명]에 불과
- 따라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시급

○ 연근해 전용시장과 동시 건설

- 연근해 전용시장과 일괄 시공 시 사업비 157억 원 절감
- 하수처리시설 공동이용 가능
- 원료 확보가 용이

○ 물류센터 설치

-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경우 원료어 공급에는 이점이 있으나 포장이나 배송 등 물류기능 취약
- 따라서 물류센터를 설치하여 원료구입 - 생산-배송의 일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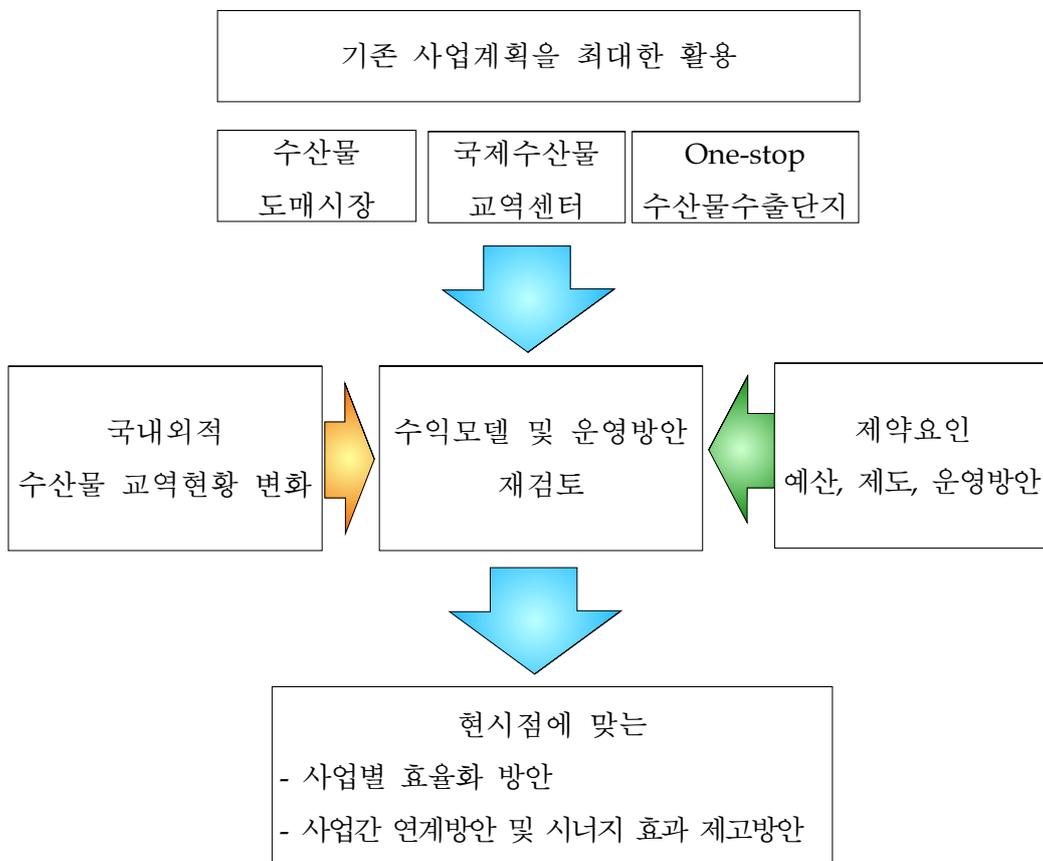
제1장 연구필요성 및 목적

- 부산광역시는 1991년부터 부산 감천항의 지정학적 이점과 기반산업의 장점을 살려 감천항을 국제수산물류·무역중심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중심기지 조성사업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별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공영수산물도매시장
 - 취급물량 확보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 시설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접근도로 및 접안시설 부족과 항내 오염가능성
 - 국제수산물거래센터
 - 국내외적으로 선례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움
 - 구체적인 수익모델 미흡
 - 법적인 제약조건으로 인한 추진상 제약
 -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
 -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이나 낮은 평가
 - 예산당국에서는 공영 수산물도매시장의 사업결과를 보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상기의 세 가지 사업은 국제 및 국내 원료 공급, 가공 및 물류서비스 제공, 부가가치 증대라는 각각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연관된 사업임
- 따라서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간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에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제약요인을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코자 함

제2장 연구범위, 방법 및 추진체계

제1절 연구범위

- 기존 사업의 추진방안을 기초로 하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별로 수익모델과 운영방안에 대해 현 시점에서 적합한 대안 도출
 - 사업 구상시점인 1991년과 공영도매시장 등의 착수시기 및 현 시점간 국제적 수산물교역환경, 지역 내 수산업환경이 크게 변화
- 각 사업간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 강구
 - 감천항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제시
 - 국제 수산물교역센터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제시
 -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제시



<그림 2-1> 연구범위도

제2절 연구방법 및 추진 체계

1. 연구방법

- 기존의 연구결과와 연구 인력을 최대한 활용
 - 기존 계획안과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활용
 - 실태 및 제약요인 등은 기존 보고서 및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 분석
 -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추가 분석
- 설문조사 실시
 -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의 잠재적 이용자(수산물 수입업자, 연근해어업자 및 원양어업자 등)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표 2-1〉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원양업체	수입업체		가공업체
		냉동	신선·냉장	
조사방법	방문조사	방문조사	방문조사	전화조사
	전수조사	표본조사	표본조사	표본조사
응답업체수	75	98	21	105
비고	도산, 연락두절 32개사 응답거부 2개사 제외	해수부 1차 조사 표본업체 중 도산, 연락두절, 응답거 부 23개사 제외	탐해운, 진해 해운 이용업체 대상	통조림업체 전부와 부산·경남소재 기타 가공업체 중 응답거 부 138개사 제외

- 항내오염, 접안시설 및 진입로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사업의 수익성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된 반입물량을 근거로 손익분석을 행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 가능성을 판단

2. 연구추진체계

○ 추진체계

- KMI가 주관하되, 연구의 유경험자인 부경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
- 연구결과의 현실 적합성과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시, 공동어시장 등 관계기관 및 연구진 간 수시로 업무협의회를 개최

○ 정책자문단과의 협의

-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책자문단에 대해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자문을 받음

<표 2-2> 정책자문단 보고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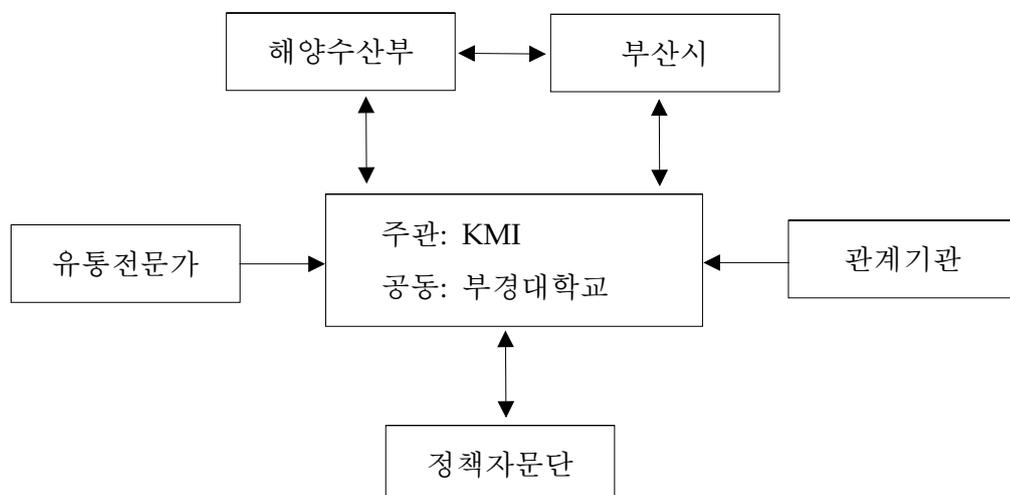
일 자	보고 내용	장 소
2005. 6. 8	연구계획안 착수보고	해양수산부
2005. 9. 8	연구 중간보고	부경대
2005.12. 5	연구최종(안)	감천 도매시장 건설현장 상황실

○ 연구진 구성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 KMI 8인, 부경대 3인

○ 전문가 활용

-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수입 및 비용 등 분야



<그림 2-2> 연구추진 체계도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본 보고서는 총 9개장으로 구성됨. 제 1~2장의 서론에 이어 제3장에서는 감천항 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의 개요와 함께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국제수산물교역센터 및 One-stop 수출단지에 대한 추진현황을 정리하였음
- 제4장에서는 제3장까지의 검토결과 및 해외출장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주요 사업별로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을 제시하였음
- 제5장에서는 수입수산물 및 원양어획물의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반입희망물량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손익분석을 시행하였음
- 제6장에서는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크게 물량확보 방안과 운영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 제7장과 제8장에서는 국제수산물교역센터 및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제9장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각종 대안을 종합하여,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중심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미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제시하였음

제3장 사업별 추진 현황

제1절 감천항 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의 개요

1. 사업 개요

- 21C 동아시아 최대의 수산물류·무역 중심기능 선점 확보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1991~2008년까지 감천항에 조성하고 있는 국제물류·무역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위치 : 감천항 일원(서구, 사하구)
 - 사업내용 : 14개 사업(부지 776천㎡, 연면적 900천㎡)
 - 사업비 : 1조 4,741억원(국비 19%, 시비5%, 융자 23%, 민·외자 53%)

2.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

- 1단계 사업(2개 사업, 397억 원) : 1999년 완료
 - 원양 어획물 전용부두 건설 : 1999년 11월
 - 국제 수산물종합보세구역 지정(257,694㎡) : 1999년 12월
 - 전국 최초로 외국 원료·제품을 관세유보 상태에서 보관·가공·전시·판매 등 가능
- 2단계 사업(4개 사업, 8,812억 원) : 공사 중(2007년 목표)
 - 공영수산물도매시장 : 공정 약 65%
 - 국제수산물거래소 : 태스크 포스팀 구성·운영 중
 - 수산물 유통·가공단지 : 총 34개 중 25개소 준공, 9개소 계획 중(2005년 목표)
- 3단계 사업(8개 사업, 5,532억원) : 추진 중(2010년 목표)
 -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 조성 : 기획예산처 사업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완료(2002년 8월)
 - 수산물종합배송·택배센터 외 3개 사업 : 검역원 측과 부지 협의 중
 - Fish Park : 부지확보 완료
 - 터널수족관, 해변 관광 리프터카 : 기초조사 중

〈표 3-1〉 감천항 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의 주요 사업 내용

구 분	주요 사업 내용
1단계 사업	원양 어획물 전용부두 건설 국제 수산물 종합보세구역 지정
2단계 사업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국제수산물거래소 개설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조성
3단계 사업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 수산물종합배송·택배센터외 3개 사업 Fish Park 터널수족관, 해변 관광리프트카

제2절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추진 현황

1. 사업개요

- 부산은 동아시아 4대 수산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의 40%를 차지)의 수산물류 중심축으로 21C 국제수산물류, 무역중심기지 기능 선점확보가 필수적 임
- 전국 원양어획물의 약70%, 수입수산물의 약 90%가 부산항으로 양륙되는 등 동아시아 최대의 수산물 집산 중심지 기능에 걸 맞는 21C형 국제적 통합물류 시스템 확보 필요
- 그러나 부산지역의 경우 국제 수산물류를 담당할 시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수산물의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임
 - 수산물 유통 및 가공분야의 경쟁우위 확보가 용이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므로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함
- 수산물도매시장 설립의 필요성
 - 부산시 수산물유통시장의 입지특성상 유리한 조건 구비
 - 부산지역은 많은 수산물 취급량 에서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이 개설되지 않아 자체 수산물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

- 국내외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필요성 : 부산을 통과하는 많은 원양어획물과 수입 수산물을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유통기구로서의 도매시장 개설이 필요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 : 수산업의 진흥과 수산물 수출의 지속적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공품의 원활한 원료확보와 유통기능을 수행할 도매시장의 개설이 필수적임
- 동 사업은 당초 부산 감천항에 1995년~2006년까지 총사업비 1,848억원을 투자, 21C형 국제적 통합물류시스템 확보필요에 따른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표 3-2>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산 193번지 지선(감천항 준설토 투기장 및 전면 공유수면)
규모	부지 : 212,147㎡ (36,647평), 건물 : 118,532㎡ (35,856평) 안벽 : 500m, 호안 : 80m
사업비(추정)	1,848억원 (국비70%, 지방비30%)
사업 기간(당초)	1995-2006(12년)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개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아시아를 포함한 광역적 관점에서의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선도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시장 기능과 소비지시장 기능을 동시에 지닌 국내 최대의 수산시장 조성
 - 수입수산물, 원양어획물과 함께 앞으로 크게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활어 중심의 수산시장
 - 적절한 가공·집배송 기능을 가진 수산시장
 - 선어에서 활어, 냉동, 염간 등에 이르기까지 선도를 유지시키면서 유통 가능한 수산시장
 - 한국의 수산정보 발신기지가 되는 수산시장
 - 소매점에서 백화점에 이르기까지의 폭넓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산시장
 - 매출인에 대한 배송서비스 기능을 가진 수산시장
 - 시민에 개방된 친근감 있는 수산시장
 - 거래를 포함하여 유통정보를 시스템화 한 수산시장
 - 기계화 및 자동화 등으로 작업을 대폭적으로 생력화 한 수산시장

〈표 3-3〉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 기능

구분	내용
운영시스템	분하기능 강화, 상품특성에 맞는 거래시간의 채용, 정보센터기능 도입, 공동배송의 유도, 전자거래시스템 채용
장내운영시스템	도매장, 중도매장, 매출인 적하시설·공동배송시설
물류시스템	자동선별장치, 수평반송분류장치, 수직반송장치, 엘리베이터(각층의 매장, 시설간의 상품반송에 사용)
위생·선도유지·가공시스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선도유지·보관시설 확충
시장정보시스템	시장정보센터를 만들어 운용 정보제공·수집기능, 거래정보처리기능, 공동계산센터기능, 스위칭기능(수·발주)

자료 : 부산광역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산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995년)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취급량 목표는 632,984톤 이며, 육상 반입 최대량은 64,000 톤임(인구 규모를 수산물 집하력 척도로 추정할 경우)

〈표 3-4〉 감천공영 수산물도매시장의 취급량 목표 예측

(단위: 톤)

연도	1999	2000	2001	3년평균 (1999~2001)	도매시장 목표취급량
연근해어획물	464,700	472,786	468,391	468,626	70,294
원양어획물	711,341	711,345	711,345	711,344	462,374
수입수산물	286,221	286,499	287,131	286,617	100,316
계	1,462,262	1,470,630	1,466,867	1,466,587	632,984

- 연도별 현금흐름 분석
 - 2005년 하반기를 개장 시점으로 2015년이면 농안기금융자상환이 끝나고 나머지 투자금액인 147,047백만 원은 2031년이면 회수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 투자비 회수년도는 2005년부터 2031년까지의 잉여금의 합이 152,704백만 원으로 약 2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2. 추진 경과

- 동 사업은 1995년에 부산시의 세계화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동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함
- 2000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 1월에 착공함
- 2005년 현재 공정률 65%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음

〈표 3-5〉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추진 경과

구분	추진 사항
1995. 2	부산시의 세계화 전략산업 선정
1995. 6	기본계획 용역완료
1997. 4	건설부지 확보완료 (121,147㎡)
2000. 2	기본설계 용역완료
2000. 2	항만기본계획 변경요청(2000.5.9 : 항만기본계획 변경고시→19개월 소요)
2000. 3	실시설계·시공 입괄 입찰 공고
2000. 7	T2 낙찰 ⇨ (주)대우컨소시엄 선정
2000. 12	기공식(국무총리, 해양수산부장관 등 2천여 명 참석)
2001. 1	착공
2002. 4	공사기간 변경(연장) 계약
2003.11	「 감천도매시장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수립용역 완료(부경대)
2004. 9	12월까지 원양·수입업체 시장이용 설문조사(203명 회신, 40만 톤 예상)
2004.12	감천도매시장 활성화방안 간담회 ▷ 시, 해수부, 업계, 학계
2005. 3	해수부장관 감천도매시장 방문 관련기관, 단체, 업계 간담회
2005. 4	해수부 전담팀(동북아 기획단), 부산시 전담팀(수산물류) 구성
2005. 4	해수부, 부산시, KMI와 감천기지 지원협력회의(4.8 해수부)
2005. 4	대통령직속농어업특위의 감천 기지 활성화 과제선정회의(19일, 특위)
2005. 4	네덜란드 RABO Bank의 감천기지(수산물거래센터)사업 전략 제안
2005. 4	감천도매시장 가능성(물량확보중심) T/F팀 3차 회의

3. 공사 진행 현황

가. 연도별 예산확보 및 집행

-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07년까지 1,995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3-6〉 연차별 감천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 원)

연도	계	국비(70%)			지방비(30%)					
					농안기금(20%)			시비(10%)		
		예산	집행	이월	예산	집행	이월	예산	집행	이월
계	199,547	138,850	71,907 (‘04까지)	-	40,742	17,928 (‘04까지)	-	19,955	11,596 (‘04까지)	-
1995	31	0	0	0	0	0	0	31	31	0
1998	1,056	317	0	317	528	0	528	211	0	211
1999	2,174	1,133	78	1,372	880	559	849	161	227	145
2000	16,217	12,475	2,133	11,714	3,742	0	4,591	0	0	145
2001	21,449	15,020	9,365	17,369	3,606	2,929	5,268	2,823	1,464	1,504
2002	27,143	22,000	12,883	26,483	0	3,681	1,587	2,143	1,840	1,807
2003	23,199	15,600	22,296	19,790	4,457	1,587	4,457	3,142	4,949	0
2004	13,800	6,000	25,152	638	4,715	9,172	0	3,085	3,085	0
2005	23,757	14,000	-	-	7,757	-	-	2,000	-	-
2006	29,000	20,000	-	-	6,000	-	-	3,000	-	-
2007	44,721	32,305	-	-	9,057	-	-	3,359	-	-

- 2005년 현재 공정률은 65%로 공사완료는 2007년 이후로 예상됨

〈표 3-7〉 연도별 감천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공사 추진 실적 및 계획

구분	추진 실적						
	계	2001까지	2002까지	2003까지	2004까지	2005까지	2006이후
공정률(%)	100.0	7.4	10	36	56.3	65	100
공사내용		매립공사	매립공사	매립 및 기초공사	건축공사	건축공사, 마감공사	장비구입, 마감공사

- 당초 2005년도에 사업을 종료코자 하였으나 2005년도부터 본 사업이 균특회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확보 차질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4. 기대효과

- 동북아 최대의 수산종합 물류 무역중심기지 기능 확보
 - 생산과급 효과 : 12,533억 원, 고용 창출 : 44,100명
- 국가 경제발전 및 21C 해양첨단도시 기반 구축
- 21C형 수산물류 시스템 확립 및 가격안정 도모
- 수산물 유통, 가공, 수출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국민 보건 증진

제3절 국제수산물교역센터의 추진 현황

1. 사업개요

- 국내외 환경 : 경쟁심화 ⇨ 부산국제수산물교역센터 조기 선점 시급
 - 국내 : 수도권(서울·인천)을 중심으로 수산물거래소 설치 등 연구
 - 해외 : 일본 7개 상품거래소 중 관서거래소(오사카) 냉동새우 선물거래
 - ▷ 년 간('02.6~'03.6) 251만건 계약, 거래액 2조 원(연간 수입 : 150억 원 추정)
 - ⇨ 미국(실물 자산관련 파생상품 개발), 중국(수산박람회 등 개최 기반조성)
- 부산의 강점을 살린 시너지 효과창출(지리적 이점, 항만, 창고, 금융, 물류, 전문인력 등)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내 180억원을 투자하고, 제3섹터 법인설립(100억원)으로 동북아 수산물 교역 중심역할 선점 및 국제수산물류·무역 기반 확보

<표 3-8> 국제수산물교역센터의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감천공영수산물도매시장 내
규모	연면적 4,845m ² (1,465평)
사업비(추정)	280억 원(직접투자 180억 원 + 배상책임기금 100억 원)
사업 기간(당초)	1999 ~2006
추진 방법	제3섹터 법인 설립 (시 +민간) ▷ 제 1단계(수산물교역센터): 수산물 현물거래 중심 ▷ 제 2단계(수산물거래소) : 수산물 현물·선물거래 검토 ▷ 제 3단계(상품거래소) : 수산물·축산물·선박·선용품의 거래 병행
목표 시장	5개국 (한 · 러 · 중 · 일 · 미) : 50만 톤/1.2조(1억 불) ⇒ 120만 톤/4.9조(45억 불)
취급 대상	현물(9종) : 명태, 명란, 연육, 오징어, 고등어, 대구, 새우, 참치, 연어 선물 : 거래규모, 표준화고려 4종 (새우, 명란, 명태, 참치)
수수료	중계 76%, 금융 18%, 검수 6%

- 사업추진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제3섹터(부산시+민간참여 주식회사)방식으로 추진
 - 부산국제수산물교역센터(BIFEX) 준비단(공무원4, 민간전문가5) 구성 추진
 - 수산물교역센터(냉동현물거래 기반확보) ⇨ 국제수산물거래소(현·선물, 옵션) ⇨ 국제 상품거래소(수산물, 축산물, 선용품)로 단계적 발전
-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 총 투자비 회수기간 : 6.57년
 - B/C(할인율8%) 2.2, 내부수익율(IRR) 15.5%
 - 순 현재가치(NPV) 66억원 (할인율8%)
 - ▷ 생산유발효과 : 연2,730억원 (사업 운영기간 8년간, 2조 1,844억 원)

2. 추진 경과

- 동 사업은 1998년에 관련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를 구성하여 시작되었으며, 2000년에 국제 수산물거래소 설치방안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음

〈표 3-9〉 국제수산물교역센터 사업의 추진 경과

구분	추진 사항
1998. 10 ~ 1999. 12	관련기관 및 전문가 연구회 구성, 운영 (부산 국제 선물거래소, 대학교, 업계 등 관계자 13명)
2000. 7	국제 수산물거래소 설치방안조사 용역 완료
2001. 8	기본계획 확정
2003. 11	국제수산물거래소 설치운영계획수립 용역 완료
2004. 1	부산시 수산행정과 내 BIFEX 설립 태스크포스팀 구성
2004. 7	제1차 해외 BIFEX 설립 및 참가유치 설명회 개최 (중국)
2004. 9	제2차 해외 BIFEX 설립 및 참가유치 설명회 개최 (베트남)
2004.11	제3차 BIFEX 설립 및 참가유치 설명회 개최 - 제2회 EXPO 참가국 대상
2005. 3	대통령 업무보고 시 “국제수산물교역센터” 추진 계획 보고 (해양수산부)
2005. 3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추진기획단’ 구성 (해양수산부)
2005. 4	“감천항 국제수산물 무역기지 활성화 추진팀” 구성
2005. 1 ~ 2006. 6	BIFEX 개설 준비 (제3섹터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 등)
부산시 금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FEX 설립 및 참가유치를 위한 국내외 설명회 개최(‘05) ◦ BIFEX 설치운영조례 제정 및 법인 설립 (‘06) ◦ BIFEX 운영시스템 구축 및 개설 (‘06)

- 2003년에 국제수산물거래소 설치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2004년 1월에 부산시 수산행정과 내 BIFEX 설립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음
- 2006년에 국제 수산물거래소 설치운영조례 제정 및 제3섹터 형식의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동시에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3. 기대효과

- 동북아 수산물 교역 중심역할 선점 및 국제수산물류·무역기반 확보
- 급변하는 국제 유통환경변화에 신속대응 및 외국 유통자본 국내 흡수
- 금융산업의 발전 및 수산물표준화 선도, 물류제도의 선진화 등

제4절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의 추진 현황

1. 사업개요

- 부산은 전통적으로 수산물가공이 성한 지역이며, 수산물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 수산물가공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부산에 소재하는 수산물 가공수출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한 수산물의 가공이 어려움
 - 물류비, 폐수처리, 제품개발 등 제 경비의 부담 가중과 공장입지 확보 곤란 등으로 경영환경 악화
 - 연구·개발여건이 미약하여 고부가 제품개발과 생산이 어렵고, HACCP 제도 등 식품안전에 관한 내수 및 수출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어려움
- 따라서 영세한 중소기업 수산물 가공·수출업체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임대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집합시켜
 - 공동으로 제품 및 포장 등을 연구·개발하고,
 - 물류비, 폐수처리 등 제 경비 절감을 가능케 하며,
 - HACCP 제도의 도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2008년 까지 감천항 동편(43,950㎡)에 사업비 1,015억원을 투자, 수산물 가공·수출업체의 집중화 및 제반 물류비를 감소,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이 가능한 실질적인 가공단지인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를 조성

<표 3-10>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사업의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위치	감천항 동편 : 서구 암남동 산193번지 지선 일원
규모	43,950㎡(약13,290평), 건축연면적 59,510㎡(약18천평) ▷수산물수출입전용부두(517m×30m)+One-Stop수출단지 (517m×55m)
사업비(추정)	1,015억원(국비 70%, 지방비 30%)
사업 기간(당초)	2000~2008

- 동 사업은 1, 2단계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수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3단계의 과정을 집약화, 전문화

〈표 3-11〉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의 주요 시설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 기본 운영 방안』 (2003. 8)
APT형 수산물 가공공장
수산물 수출·입 전용부두(APPON)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
공동 폐수처리시설
공동 연구시설 및 포장디자인센터
근로자 공동 편익시설 등
유치 업종 : 어육 연제품, 건포류, 해조류 등 가공 수출 업체, 수산물 용기제작 수출업체 수산물 냉동·냉장품 수출업체 등

2. 추진 경과

- 동 사업은 2001년 5월의 『감천항 국제수산물 물류·무역기지 조성 3단계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사업계획이 작성되었으며, 동년 7월에 320개 수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음
- 2002년의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 한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고, 이후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추진 경과를 보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임

<표 3-12>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경과

구분	추진 사항
2000. 8.	21C 수산 물류 무역 시스템』 구축 수산 관계자 간담회
2000. 10.	해양수산부에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건립 지원을 건의
2000. 12.	국무총리실에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건립 지원을 건의
2001. 4.	해양수산부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신청(국비 21억 원)
2001. 4.	해양수산부 차관, 부산지방해수청장에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건립 지원을 건의
2001. 4.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건립 부지 할애 긍정 검토 약속→해양수산부 장관
2001. 5.	『감천항 국제수산 물류·무역기지 조성 3단계 사업 기본계획』 용역 완료(동아대학교 부설 건설기술연구소)
2001. 6.	행정자치부의 2001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 입주 희망업체 조사와 기획예산처를 통한 국비 확보
2001. 6.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건립 부지 할애 요청 → 부산지방해수청
2001. 7.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입주 희망 업체 조사 완료 → 320개 업체 중 141개 업체 입주 희망, 소요면적 37,000평 (참여 비율 44%)
2001. 12.	항만기본계획 변경 신청 → 해양수산부 (잡화부두에서 수산물부두로 변경)
2002. 1.	2002년 국비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2002. 8.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완료(한국개발연구원(KDI))
2003. 8.	단지조성 계획 마련을 위한 기본 운영방안 용역(부산발전연구원)
부산시 금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까지 조사용역 및 기본·실시설계 등 국비예산 확보 ◦ '06. ~ '08. :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 조성

3. 기대효과

- 「원료수집- 제품생산- 제품포장- 선적」 등 수출의 One-Stop 체계 구축
 - 물류비 절감 : 5% 이하로 절감(현재 한국 17%, 일본 11%, 미국 7%)
 - 원료확보 용이 : 인근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국제수산물거래소 활용
- 중소수산물 가공 수출업체 중점 육성으로 수출역량 강화
 - 생산 파급효과 : 6,885억원/년, 고용창출효과 : 15천명/년
- 공영수산물 도매시장과 연계개발 ⇨ 시설비 절감 및 사업시너지 효과 제고
 - 현재 건설 중인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부두와 일괄 조성시 157억 원 예산 절감 예상

-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인근에 위치함으로써 상호 부대비용 절감 등으로 사업시너지효과 제고
- 저가임대료, 제반 부대비용 절감 ⇨ 제품가격 경쟁력 확보
 - 생산비의 20% 이상 절감
 - 경영 비용절감 ⇨ APT형 수산물 수출 전용단지 저가 제공
 - 수출입 과정 One-Stop 처리체계 확립 ⇨ 수산물 부두이용 수출입 절차 간소화
- 공동연구기능 단지 내 유치 ⇨ 제품의 부가가치 증대 및 수출시장 확대
 - 단지 내 연구기능 확보 ⇨ 고품질 제품생산
 - 업종별 수출입정보 공유 ⇨ 수출시장 다변화, 제품생산 다양화 촉진
-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개발투자액 73,942억 원
 - 연관부문의 총생산 파급 효과 1,415억 원
 - 신규고용 2,778여 명, 소득 유발 효과 140억 2천만 원으로 부산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제4장 사업별 활성화 제약요인

제1절 동북아 수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 최근 동북아 수산물 교역구조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시장에 대한 중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수산물 수입이 가공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 일본이 소극적인 수입관리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 러시아는 생산은 물론 무역에 있어서도 자국화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중국은 수산물 소비의 증가와 함께 소비패턴이 고급화되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이러한 동북아 교역구조의 변화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1. 일본의 수산물 무역구조 변화

가. 국별 수입

- 2004년도 일본의 수산물수입액은 15,128백만 불로서 전년 대비 12.0%가 증가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일본의 국내 생산액과 비슷한 것으로 앞으로 일본의 수산물수입액은 이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별로는 중국의 수출증가세가 괄목할 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1999년 2,167백만 불에서 2004년 3,104백만 불로 증가하였고, 동 기간 일본의 전체 수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2%에서 20.5%로 상승하였음
- 중국 다음으로 대 일본 수산물수출이 증가한 국가로는 베트남과 대만을 들 수 있음
 - 베트남은 동 기간 수산물 수출액이 415백만 불에서 767백만 불로 증가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에서 5.1%로 상승하였음
 - 대만은 동 기간 수출액이 747백만 불에서 1,004백만 불로 증가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에서 6.6%로 상승했는데 참치수출의 증가가 주 원인이 되고 있음

<표 4-1> 대 일본 국가별 수산물 수출액

(단위 : 백만 불, %)

국 가	1999		2004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합 계	15,248	100.0	15,129	100.0
중 국	2,167	14.2	3,104	20.5
미 국	,1525	10.0	1,362	9.0
러시아	1,188	7.8	1,079	7.1
태 국	1,038	6.8	1,019	6.7
대 만	747	4.9	1,004	6.6
칠 레	779	5.1	867	5.7
한 국	1,112	7.3	840	5.6
인도네시아	964	6.3	823	5.4
베트남	415	2.7	767	5.1
노르웨이	694	4.6	518	3.4
기 타	4,619	30.3	3,746	24.8

자료 : 일본 수산물 무역협회

○ 한편 이들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의 대 일본 수산물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으로서 동 기간 1,112백만 불에서 840백만 불로 272백만 불이 감소했음.

- 그 결과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3%에서 5.6%로 하락했음.

○ 한국 외에 인도네시아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고 노르웨이, 미국, 러시아, 태국 등도 일본에 대한 수산물 수출이 감소하였음.

나. 품목별 수입

○ 최근 들어 일본의 품목별 수산물 수입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가공품수입은 증가하고 활어수입은 다소 증가하는데 반해 신선·냉장·냉동품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

○ 가공품의 경우 특히 중국으로부터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대형 수산회사가 중국에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본격화되었음

○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이나 호주 등 국가에서도 원어를 중국에서 가공한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표 4-2〉 일본의 품목별 수산물 수입실적

(단위 : M/T, 백만 불)

구 분	2003		2004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활어 등	59,250	538	64,263	658
신선·냉장·냉동	2,310,019	9,668	2,378,981	10,508
염장·건조·훈제	38,856	342	38,719	354
조제품	355,272	2,170	413,445	2,719

자료 : 일본 수산물 무역협회

다. 수입단가 하락

- 일본의 수산물 수입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하나임. 즉 1970년도에 kg당 수산물 수입단가가 0.85불 이었으나 1980년에는 3.25불, 1990년에는 4.37불을 기록했으며 1995년에는 5.15불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
- 이후 2000년도에는 4.55불 이었고, 2004년에는 kg당 수입단가가 4.34불로 하락했음. 이렇게 일본의 수산물 수입단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가격이 싼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라. 시사점

- 일본은 세계 제1의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일본의 무역(수입)동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음
- 즉 중국의 대 일본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일본에 대한 수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크게 강화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음
- 한편 일본에서 신선·냉장·냉동품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가공품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일견 동북아 수산물류·무역기지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중국이 이미 세계 수산물 가공기지로서 입지를 굳혔고, 생산비가 높으며 후발주자인 우리가 중국을 추월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이에 대비한 신중한 전략수립이 필요할 것임

2. 일본의 수산물 수출촉진정책 강화

가. 수산물수출진흥정책의 추진경과

- 일본은 1971년을 고비로 수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고 2002년에는 수입금액이 국내생산액을 초과하였음. 따라서 그 동안 일본에서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수입할당제(IQ)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있음
-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수입수산물의 검사·검역제도를 강화하고 HACCP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입억제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2003년부터 수출촉진을 위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음
- 2003년 5월 「농림수산 일본브랜드 수출촉진 시도부현 협의회」가 설립되었고 2003년 7월에는 JETRO가 「일본식품 등의 해외시장개척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중국 등의 시장을 목표로 조사사업에 착수했음
- 동년 12월에는 자유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촉진 연구회」가 결성되었고 2005년 4월에는 대일본수산회의 「수출대책 특별위원회」조직을 강화하여 수출촉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함

나. 수산물 수출진흥정책의 배경

1) 국내적 배경

-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인구증가에 의한 수산물 소비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음
- 1990년대 들어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었음
- 일본 국내시장을 둘러싸고 국제적인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엔고 현상으로 인해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였음

2) 국내적 배경

- 세계적인 일식붐을 배경으로 한 일본음식에 대한 해외시장이 형성되었음
- 일본 식품재료의 수출국인 아시아 각국에 구매력을 갖춘 수요계층이 확대되었음
- WTO, FTA 등 협정 진전으로 인해 해외시장을 주목하게 됨

다. 지원대책 내용

- 판로개척·확대에의 지원
 - 각국의 수입제도나 유통실적 정보수집, 분석제공
 - 현지 백화점의 판매활동이나 요리 실습회 지원
 - 수출 상담창구의 활성화
- 수출저해요인의 시정
 - 수출저해요인의 데이터 베이스화
 - 상대국에의 개선요청
 - FTA교섭 등에서 고관세율 등의 장애요인 시정 요청
- 지적재산권·브랜드 대책
 - 지적재산권리 침해대책 매뉴얼 작성
 -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신제품 육성권 보호를 위한 체제정비 움직임
- 생산측면의 지원
 - 산지 주변에 신기술·신제품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
 - 수출을 위한 가공식품 창출이나 기술개발을 지원
- 유통의 효율화
 - 유통경로의 공동화 등 효율적 유통시스템 구축에의 지원

라. 지원분야

- 농림수산성에서는 2006년에 7억 엔을 다음 사업 부문에 지원
 - 농림수산물 해외판로 확립대책사업
 - 지역특산물 수출촉진 대책

- 수출촉진형 쌀소비 확대사업
- 식품산업과 생산자의 제휴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 식품산업 클러스터 촉진기술 개발
- 병충해 방제대책
- 경쟁력 강화 생산대책 등

마. 시사점

- 세계 제1의 수산물 수입국인 일본에서 자국의 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수산물무역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희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또한 일본의 이러한 수출촉진정책은 일본의 수산물이 감천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을 거쳐 반입되는 물량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3. 러시아의 수산물무역 자국화 강화 정책

가. 러시아 수산물 무역 특성

- 최근 러시아 수산정책은 그 동안의 불법조업 및 밀수출 근절을 통한 자원보호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범위를 넘어 자원을 이용한 국내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생산 및 고용창출을 지향하고 있음
- 즉 중국이 세계적인 수산물 가공국가로 성장하면서 러시아 수산물의 가격을 상승시켰는데 이에 자극을 받아 러시아에서도 자국 수산물을 자국에서 가공·수출하겠다는 입장임

나. 정책변화

-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은 구체적인 정책변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가 모든 어획물에 대한 해상 전채를 금지하고 생산된 어획물은 국내 항구로 일단 반

입한 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수출토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현재 시행을 준비 중에 있음

- 이 법규의 마련은 러시아 정부가 모든 어획물의 관리를 손쉽게 함으로써 불법 조업을 통한 밀수출을 막고
 - 자국 항만으로 어획물을 유치함으로써 가공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폐해진 냉동물류 시스템의 재건까지 노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러나 이 법은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아직 공식적인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
 - 그 동안 명태나 대구 등 대량 어획어종은 물론 킹크랩 등 운송에 시간을 다투는 어종들은 대부분 해상에서 직접 운반선에 전채해 수출해 온 관행을 들어 업계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법의 시행에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임
 - 실제 법이 시행될 경우 어획물을 항만으로 옮기면서 빼앗기는 조업시간의 손실과 운반경비의 가중, 어획물 선도의 저하, 항만 냉동시설의 노후화와 용량 부족에 따른 항만 정체 등 상당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둘째, 대규모 냉동창고 건설을 추진 중에 있음. 즉 연해주에서는 2만톤급 대형 창고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대적인 시설개보수에 착수하는 등 전국 주요 항만에 위치한 냉동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확충에 주력하고 있음
- 셋째, 원어상태의 수산물은 원천적으로 해외수출을 금지하고 자국에서 가공한 수산물만 수출토록 하자는 주장이 러시아 정부 내부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음
- 러시아 수산물의 40%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나 대부분 비가공 원료 형태로서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원어 상태의 수산물을 수출하지 않고 가공된 제품을 수출해야 수산물 생산고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음(연해주 주지사)
 - 러시아 업체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을 자력으로 개척하고, 앞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어획물을 자국업체에 존속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러시아 극동관구 전권대사)
- 넷째, 생산과 가공·유통 등 부문별로 산재해 있는 업체들을 합병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운용하고 가공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및 운영방법 개선 움직임
- 다섯째, 중국에 대한 수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러시아 무역업계는 우리나라보다 중국과 유럽을 중요한 거래대상으로 인식

- 국내 상주 러시아 중개인들이 상당수 철수
- 명태, 대구, 계류의 가격이 급증하여 우리나라 바이어들도 러시아산 수입 기피
- 여섯째,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 2004년 중국 수산물 박람회에 러시아가 처음으로 자체 전시관을 설치

다. 시사점

-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가공품의 자국 생산 확대, 원료어의 대중국 수출 확대 등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즉 원료어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수출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될 것임
 -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합작사업을 확대하고 현지 수산물 가공산업에 진출하는 등으로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4.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 증가와 소비패턴 변화

가. 중국의 수산물 무역 특성

-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수산물교역 대상시장이 인접 국가가 중심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세계의 많은 국가로 확대되고 있음
- 수출은 일반상품(신선, 냉장, 냉동)이 많고(전체의 62%), 가공품 수출은 37%, 기타 1% 수준이며, 수입은 가공품이 90%, 일반 상품이 3%, 기타가 2%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수입가격이 증가하고 수출가격이 하락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특정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너무 높고, 업체간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임

나. 수산물 소비 증가

-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라 수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외식을 중심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음
 - 즉 1984년에 중국의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6.5kg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이것이 25.0kg으로서 동 기간 3.8배 증가했음(2000년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 평균치 16kg의 1.6배)
 - 반면 수산물 소비방법을 보면, 1984년의 경우 수산물 소비량 6.5kg 중 가정내

소비가 4.8kg으로 73.8%, 외식을 통한 소비가 1.7kg으로 16.2%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들어서는 이들 비율이 각각 27.6%와 72.4%로 역전되어 외식을 통한 소비가 월등히 많음

<표 4-3> 중국의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

년도	합계	가정내 소비	외식
1984	6.5	4.8	1.7
1990	11.5	4.9	6.6
1995	20.8	6.1	14.7
2000	25.0	6.9	18.1

- 수산물 소비증가는 주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유통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임

다. 수산물 소비의 고급화

- 중국의 수산물 소비의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包特力根白乙, 중국의 수산물 수급특성과 소비형태, 2005년) 1인당 수산물 수요함수의 소득탄성치, 가격탄성치와 교차탄성치는 각각 0.648, -0.597, 0.459로 나타났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득증가로 인해 매우 빠른 속도로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수산물 소비가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즉 가격하락 시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D_t = 7.5758 + 0.0062I_t + 0.0843P_{s_t} + 0.0650P_{n_t} \quad (1)$$

(3.4363)
(30.9793)
(- 2.3089)
(2.4309)

**

$$R^2 = 0.9926 \quad \bar{R}^2 = 0.9909 \quad s = 0.6457 \quad DW = 1.6752$$

- 한편 1인당 가정내 수산물 소비의 수요함수 소득탄성치와 가격탄성치를 보면, 0.206과 -0.278로서 양자를 비교해 보면 (1)이 (2)보다 0.44포인트 큰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1인당 수산물 소비에서 외식이 소득에 더욱 크게 반응한다는 것

으로 외식의 비중이 가정 내 소비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외식을 통한 소비의 고급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냄

$$D_t = 5.8957 + 0.0007I_t + 0.0140P_{s_t} \quad (2)$$

(12.1336) (16.5681) (- 3.5084)

*** *** ***

$$R^2 = 0.9745 \quad \bar{R}^2 = 0.9708 \quad s = 0.1510 \quad DW = 1.5150$$

라. 시사점

- 중국의 수산물이 대부분 가공품 형태로 수입되고 있고,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급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생산증가에 한계가 있어 생산된 수산물을 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데 중국에서 대부분 가공품 형태로 수입을 한다는 것은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의 성공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냄
- 또한 중국의 수산물 소비의 고급화 추세는 품질 경쟁력 제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제2절 물량확보의 불확실성

1. 감천공영수산물도매시장

-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의 물량추정방법은 기존 상권이 있는 곳에 시장을 건설하는 경우와 새로운 시장을 건설하는 경우가 다름
 - 기존상권을 흡수하는 시장 즉,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는 정해진 물량에서 출발함
 - 그러나 기존 상권이 불명확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유통량 통계와 구매력지수(Buying power Index, BPI)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임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도매시장의 밖에서 거래되고 있는 수산물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고 정비하는 것임
 - 따라서 기존의 방법 이외에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물량유치 방법과 운영방안 등의 도출이 필요함
- 기본설계의 물량 추정 방법은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odel)을 이용하였음
 - 예측기간은 1999년부터 2001년의 3년간이며, 예측치와 실적치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1997년과 1998년의 2년을 추가하였음
 - 사용 자료는 다음의 <표 3-1>과 같음

<표 4-4> 감천 공영 수산물도매시장의 물량예측 사용자료

구분	사용자료	기간	자료 개수	기타
연근해	부산공동어시장, 어시장의 동태	1982~1998	17년, 68개	
원양	원양어업협회, 원양어업통계	1982~1998	17년, 68개	
수입	관세청, 무역통계월보	1989~1998	10년, 40개	HS코드 3류만 사용

○ 물량 추정 결과

- 도매시장의 최대 취급 예측물량은 633천 톤으로 이중 원양수산물이 가장 많은 73.1%, 수입수산물이 15.8%, 연근해수산물이 11.1%를 차지하고 있음
- 육상반입 최대량은 64천 톤으로 취급 예측물량의 10.1%임
- 이 때 각 부류별 수산물의 총량에서 도매시장 취급물량을 산출하는 기준은 연근해가 15%, 원양이 65%, 수입이 35%로 「부산광역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산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995. 6. p.65)」을 인용하였음

○ 그러나 위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재추정이 필요함

- 우선, 물량추정시기가 2001년까지 인데, 이후 2005년까지는 한·중·일 어업협정, 수입수산물의 급증 등 수산물시장의 구조가 큰 변화를 보인 시기이므로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추정이 필요함
- 부산지역 총 거래물량은 2004년 기준 총 6% 증가를 보였으나, 세부내역을 보면 수입수산물은 230.8% 증가, 원양은 70.6% 감소, 연근해도 15.1% 감소하여 내용면에서 큰 변화를 보였음

<표 4-5> 감천 공영 수산물도매시장의 물량 변화 검토

(단위 : 천 톤, %)

구분	2001년	2004년	B/A
연근해	469	398	-15.1
원양	711	209	-70.6
수입	287	948	230.8
합계	1,467	1,555	-16.7

○ 또 하나의 이유는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주 취급대상인 원양 및 수입수산물이 주로 도매시장의 바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임

- 원양수산물과 같은 냉동수산물은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여 시례로 적용할 시장이 없음
- 부산지역의 경우 상장 전례나 경험이 없음
- 특히 원양과 수입수산물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나 전문가의견, 사업 참여대상자의 의견 등이 없어 판단의 근거가 불분명함

2. 국제수산물교역센터

- 감천 공영 수산물도매시장과의 경합 및 중복 문제가 있음
 - 감천공영 수산물 도매시장과 국제수산물교역센터는 수산물 중 현물을 취급하는 측면에서는 중복되고 있음
- 현 단계에서 선물거래의 취급 근거는 선물거래법이나 2004년 1월 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법에 의해 수산물 선물을 한국선물거래소 외에서 취급 할 수 없음
- 국제수산물교역센터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전문성이 결합된 제3섹터 방식의 지방공기업법상의 주식회사 형태이나 민간 투자기관이 우수인력을 발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해외 메이저 사업자의 참여는 예상되나, 국내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상대적 영세성, 시장변화 주도능력 부족, 비전 및 이해 부족 등으로 참여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에서도 세원노출에 따른 업계의 부담으로 인해 참여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음
- 국내 및 국제간 어종에 따른 포장단위 및 규격화·표준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활발한 거래가 제약을 받을 수 있음

3.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는 영세한 중소 수산물 가공·수출업체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임대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집합시켜 이들 가공업체들의 생산품을 전량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 부산지역의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제품개발이나 디자인, 수출판로 개척 등이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하였음
-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100% 수출 보장 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익률이 비교적 낮음
- 따라서 본 사업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재검토 되어야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제 4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의 수산물 교역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점임

- 현재 부산에 소재한 상당수의 수산물가공업체들이 저차가공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 고차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미 필요한 시설 또한 갖추고 있어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임
- 둘째, 전량 수출만으로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재 여건상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업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임
- 즉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되어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입수산물과 경쟁을 해야 하고
 - 선어, 활어, 냉동품 뿐만 아니라 향후 수산물 가공품의 수입 또한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 세 번째로 입주해야 할 가공업체들이 기존의 시설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잇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임

제3절 시설자금 부족과 수입업체 지원의 어려움

1. 시설자금 부족

- 사업별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시설물의 완공 및 활성화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우선 국제수산물 교역센터를 포함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 경우 시설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음
- 즉 최근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은 국비 1,338억 원, 시비 607억 원 등 총 1,995억 원을 투자하여 2006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2005년까지 1,258억 원이 투자되었고, 미 투자액이 737억 원에 이르고 있음
- 미 투자액 737억 원 중 2006년 확보예정액 290억 원을 제외하면 2007년 이후 부족액이 447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 부산시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사업비 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투자액이 161억 원으로서 이것까지 합하면 부족액이 60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4-6>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 연도별 투자액

(단위 : 억 원)

구 분	합 계	2004까지	2005	2006 계획	2007 이후 ¹⁾
합 계	1,995	1,021	237	290	447
국 비	1,388	725	140	200	323
시 비	607	296	97	90	124

주 : 1)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투자액 161억 원 미 포함
 자료 : 부산시

-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원활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2004년 경우 국비 383억 원을 요구했으나 60억 원만이 확보되었고, 2005년에는 532억 원을 요구했으나 140억 원만 확보하였음
- 또한 2005년부터 도매시장 건설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부산시의 시비확보도 그리 용이하지 않는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즉 2006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던 시장동, 회관동, 냉장동 등 주요 건물의 골조 및 외벽공사 대부분 완료 후 내부설비 및 기계장치 등 마감공사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국비 지원방식의 변경(균특회계화)에 따라 마무리 예산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수입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의 어려움

-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 경우 상당한 물량의 수입수산물에 대한 반입이 이루어져야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나 수입수산물의 반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이 유력한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제도상 수산물 수입업체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려고 해도 국내 어업인 우선 보호차원에서 이를 시행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따라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수입수산물의 공영 도매시장 반입 유도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그 결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음

제4절 기반시설의 부족 등

1. 진입도로 협소

- 현재 건설 중인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로의 주 진입도로는 감천항 원양어업 조성계획에 따른 매립지 배후도로인 중로1-114호선이 있음(폭 24M, 왕복 4차선)
 - 공사명 : 원양어업 전용부두 집산도로 개설공사
 - 시공사 : 원양어업개발(주)
 - 공사기간 : 1993. 1~2005. 12
 - 미개설 구간 2개소, 차도는 개설 완료
 - 1개소는 암남동 산 109번지 일원(참손푸드~동영콜드프라자 구간)으로서 3가구와의 보상 미합의로 개설 지연
 - 다른 1개소는 도매시장 입구 곡각지점으로서 보도부분을 확보하지 못함
- 반면 연계도로는 대로1류8호선(감천사거리↔송도로터리, 감천사거리↔사하경철서 : 폭 35m), 암남공원 순환도로(폭 9~12m) 등이 있음.
- 그런데 감천항은 부산의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도매시장 개설 시 주변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소통에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음. 특히 감천사거리 지역은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시장접근을 위한 우회도로가 없음.
- 당초 본 사업지역 기본계획 및 교통영향평가지 교통영향 분석결과 사업 시행 시 주진출입인 중로1-114호선(감천사거리↔사업지)은 가로서비스수준이 「A~C」로 용량이 초과하지 않아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 처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업지 주진입교차로인 감천사거리가 지체를 보여 교차로 개선 또는 운영방법에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앞으로 사업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배후의 기존기간도로망과의 접속이나 감천항 일원의 개발에 따른 교통동선을 포함한 간선도로의 체계, 나아가 도심인 충무동이나 외곽도로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 등 종합적인 교통체계의 검토가 필요함

2. 접안시설의 부족과 구조상의 문제

가. 접안시설의 부족

- 현재 공사 중인 감천 공영수산물 도매시장의 접안시설은 약 500m로 수입수산물과 원양수산물만을 취급할 경우 부족하지 않음
- 그러나 연근해 수산물을 취급할 경우, 접안시설 500m에 수입수산물 운반선과 연근해어선이 동시에 접안해야 하므로 시설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물론 원양수산물과 수입냉동어류 등은 굳이 도매시장에 접안하여 양륙할 필요가 없으나 수입 선어와 연근해어류는 접안하여 양륙이 필요함

<표 4-7>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의 접안시설 비교

구 분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공동어시장
접안선 길이	500m	1,061m
접안가능 어선수	원양 2,000톤급 2척 연근해 100톤급 10척	연근해 100톤급 24척

나. 구조상의 문제

- 공사 중인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연근해어획물도 일부 양륙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재의 접안시설은 수입수산물 운반선 및 원양어획물 운반선(또는 본선)을 대상으로 축조한 것으로서 연근해어선이 접안하여 양륙하기는 다소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즉 수입수산물 운반선 등과 연근해어선 간에는 높이가 약 1.5m 정도 차이가 나므로 연근해어선이 접안하여 어획물을 양륙하기 위해서는 크레인이나 컨베이어 등 별도의 기계장치가 필요함.

3. 보안펜스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

- 감천항 종합보세구역 일원에 보안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물류비용 상승 및 유통시간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안펜스는 간첩, 마약, 총기반입 및 밀입국 방지를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길이 3,250m, 높이 3.2m 임

- 보안펜스의 설치근거는 통합방위법 제15조의 2(국가 주요시설 경비·보안·방호)이며, 국가정보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음
- 관계기관 및 업계의 입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정보원 : 보안펜스 설치는 법적 강제 이행사항으로서 철거가 불가
 -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업체에서 밀수 및 밀입국 방지보안대책 강구 시 개폐식 시설 설치 가능
 - 업계 : 감천항이 국가 기간시설로서 철거불가 입장은 이해하나 개폐식 자바라펜스 등의 자담 설치는 유보적 입장. 아울러 보안펜스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 설치비 94백만 원에 대해 지원을 건의

통합방위법 제15조의 2(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 ① 국가중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는 경비·보안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행한다.
-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 방호·방호지원계획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따라서 2001년 5월 원양어업개발(주) 외 12개사, 수협중앙회, (사)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등에서 우회운송에 따른 불편 및 물류비 증가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보안펜스의 철거를 건의하였음.
 - 즉 부두에서 냉동창고까지 직선거리는 30m에 불가하나 펜스설치 시 1,055m를 우회하여 입고하여야 함
- 이후 2001년 5월에서 9월까지 3차례의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건의사항의 일부를 수용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안펜스의 배면도로 이설과 개폐식 출입문 설치 등임

- 2005년 8월에 동영, 유림, 아시아, 인터불고, 사조냉장 등에서는 최종안을 수용했고, 기타 업체는 현재 개선사항을 관망 중에 있는데 최종안의 내용은 개폐식 자바라 펜스, 초소, CC-TV 설치 및 경비인건비의 업체부담 등임



(전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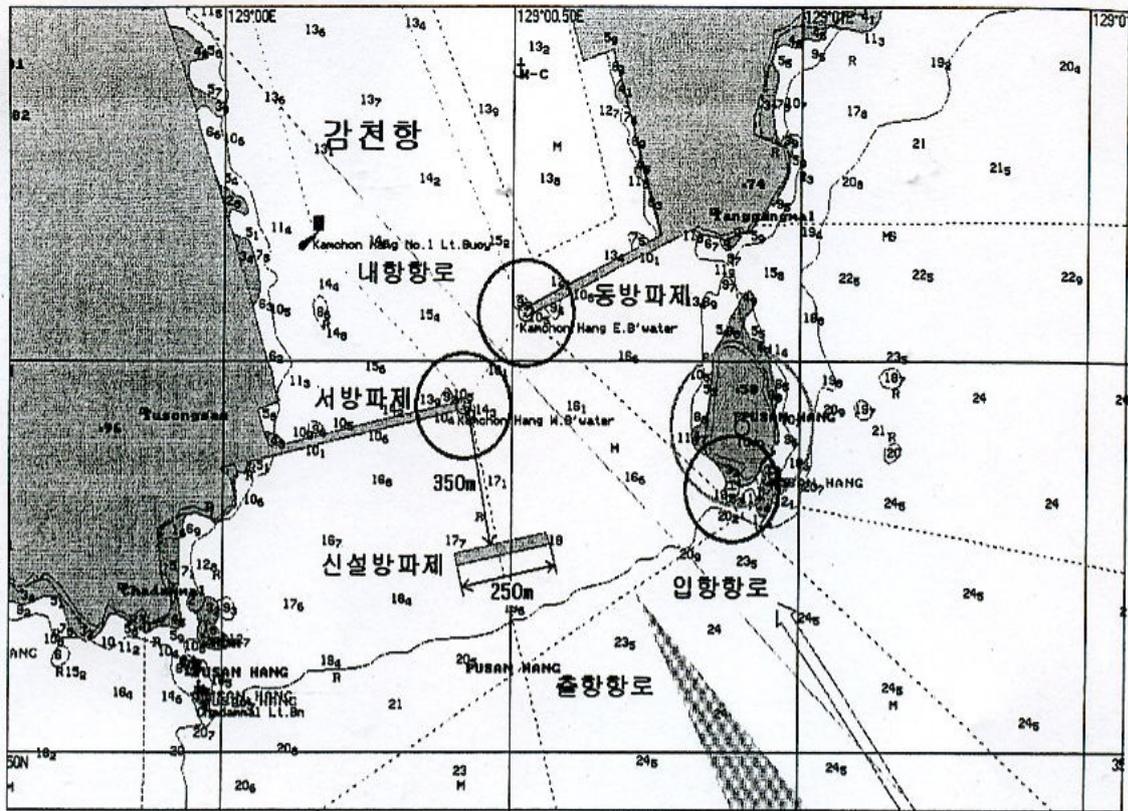
(보안펜스 설치 모습)

<그림 4-1> 보안펜스가 설치된 지역의 모습

4. 방파제 취약 및 항내오염 가능성

가. 방파제 취약

- 감천항은 부산 북항의 보조적 성격의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감천만이 파랑의 주진입 방향인 남측으로 개방되어 있어 평상시 하역한계파고인 0.5m를 초과하여 파랑의 출현율이 높고, 태풍 시 항내파고가 3.0m를 초과하는 지역이 많아 인근 항만으로 피항하고 있는 실정 임
- 감천항은 1979년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동·서방파제를 건설하였으나 S계열 파향의 파랑에 대하여 충분한 정온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부산광역시에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을 동방파제 배후에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감천항 항내 정온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그림 4-2〉 감천항의 현재 방파제시설 위치도

-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부산감천항 정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000」을 실시하였는데 방파제 건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치해석, 수리모형실험,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등의 용역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는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항내 오염 가능성

- 감천항 일대의 대조차는 117.8cm로서 부산의 타 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으나 (다대포항 132.4cm, 가덕신항만 166.0cm), 조류는 입구부에서 창조류 유속 82cm/s, 낙조류 유속 93cm/s로서 다소 빠른 편임. 그러나 동·서 방파제로 둘러 싸여 있는 항내의 경우는 유속이 느려 오염에 취약함
- 또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형선망어선이 접안하여 양륙할 경우 양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출수(고등어 등의 어체손상으로 인한 혈액 등) 인해 항내 오염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음

5. 제빙·저빙 시설의 부족

- 현재 건설 중인 냉동창고 경우 수입수산물 및 원양어획물의 보관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연근해어선에 대해 얼음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크게 부족한 실정임
- 즉 장기적으로 연근해어획물 26만 톤 전부를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 양륙한다고 할 경우 현재의 연간 제빙능력 30,000톤은 연근해어선의 얼음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 특히 위판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700톤의 저빙능력으로는 재고부족이 우려되고 있음

<표 4-8>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의 제빙·저빙능력 비교

구 분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공동어시장
1일 제빙능력	100톤	120(최대 145)톤
연간 얼음생산량 (연간 300일 생산 가정)	30,000톤	36,000톤 이상
최대 저빙능력	700톤	1,500톤

6. 폐수처리시설 부족

- 현재의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의 폐수처리능력은 당초 계획대로 수입수산물과 원양어획물 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부족하지 않으나 연근해어획물을 양륙할 경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임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천항의 내만 자체가 유속이 느려 기본적으로 오염이 심화될 가능성이 큰 데 위판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큼
- 참고적으로 현재 연근해어획물을 양륙, 위판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경우 1일 폐수처리량이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의 2배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폐수저장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표 4-9>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의 폐수처리시설 비교

구 분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공동어시장
1일 폐수처리량	650톤	1,300톤
폐수저장량	폐수저장시설 없음	3,500톤
취급폐수	활어 취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수	연근해어획물 위판 시 발생하는 오폐수 등

7. 유희지의 잡화부두 지정

- 공사 중인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과 동방과제 중간에 있는 구역은 현재 잡화부두로 지정되어 있어 현 상태로는 수산물 유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앞으로 감천항 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 구역에 대해서도 해양의 매립을 통한 부지조성이 불가피한데 현 상태로는 이것이 불가능함
- 즉,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의 하나로서 추진하고 있는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의 부지를 공사 중인 도매시장과 동방과제 사이의 500m 구역을 매립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금후 도매시장에 연근해 수산물까지 양륙한다고 할 때 공사 중인 도매시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동 구역에 대한 매립이 불가피한데,
- 매립을 하여 수산물류·무역기지로 활용코자 할 경우 현재 잡화부두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임

제5장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반입물량 추정

- 제4장의 제약요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 유통이 매우 취약한 원양 및 수입수산물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물량의 유치를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 가능성이 있는 원양업체, 수입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분석하였음
- 또한 이들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희망 상장물량을 토대로 수익성을 검토하였음

제1절 조사의 개요

1. 조사대상의 현황

가. 원양수산물

- 원양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는 감천항 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물량유치와 관련 되어 있으며 업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 하므로, 2004년 기준으로 생산량이 있는 109개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들 업체는 원양어업협회의 생산량 통계에 생산실적까지 있는 103개사와 원양어업 협회의 생산량 통계에 수록되지 않는 2004년 신규업체로서 생산이 있었던 6개사를 포함하였음
- 원양업체 109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산, 파산, 법정관리, 청산절차에 있거나, 연락이 두절된 업체가 32개사, 응답거부 2개사로 면접조사가 가능한 업체는 75개소 였음
- 기존의 원양어업협회의 생산통계와 조사대상 원양업체 75개사의 업종별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5-1> 및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음

<표 5-1> 원양어업 업종별 생산실적

(단위 : 톤)

업종 년도	참치연승 및 선망	오징어 채낚기	북양트롤	해외트롤	원양 봉수망	저연승	기타	합계
2002(108개사)	267,781	94,760	24,998	160,623	20,088	9,873	2,223	580,346
2003(107개사)	239,246	80,871	23,401	161,720	31,219	5,656	2,478	544,591
2004(103개사)	238,652	25,010	21,985	183,738	22,943	5,291	1,781	499,400

주: 기타는 원양외줄낚기와 모선식외줄낚기 포함
 자료: 한국원양어업협회, 원양어업통계 각 년도.

<표 5-2> 원양어업 업종별 생산실적 및 수출량(설문대상 75개사 통계)

(단위 : 톤)

업종 년도	참치연승 및 선망	오징어 채낚기	북양 트롤	해외 트롤	원양 봉수망	저연승	기타	합계	수출량
2002	266,801	57,731	22,730	136,873	15,957	7,975	1,200	509,267	220,219
2003	238,210	56,936	18,223	139,400	32,994	2,056	2,234	490,053	197,379
2004	238,755	19,075	24,385	164,970	28,997	4,986	1,168	482,336	116,842

주 1: 기타는 원양외줄낚시와 모선식외줄낚기 포함
 2: 원양봉수망은 원양협회에 등록이 되지 않은 신규업체 3개사의 생산량이 많아 75개사의 생산량이 103개사의 협회 생산량보다 6천톤 가량 많게 나타남

- 참치를 어획하는 업체의 경우 대부분은 참치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체를 통해 반입된 물량의 대부분은 동원산업, 사조산업, 동원수산, (주)정필 등의 가공업체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감천항 수산물공영도 매시장으로의 반입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물량 추정시 제외하였음
- 또한 설문조사시 업체의 어획물이 전혀 국내로 반입되지 않는 업체의 물량에 대해서 상장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가능 물량으로 포함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전체 물량에서 제외시켰음
- 2004년 기준 설문대상 업체의 원양어업 어획량은 478,572톤이었으며, 국내반입량은 302,701톤이었고, 부산반입물량은 176,304톤으로 나타남

〈표 5-3〉 원양 수산물의 부산반입물량(설문대상 75개사 통계)

(단위 : 톤)

어획량			국내반입량			부산반입량		
2002년	2003년	2004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2년	2003년	2004년
509,267	490,053	482,336	284,284	300,734	299,722	221,318	201,813	173,325

주) 설문대상 75개사의 어획량에서 수출물량 및 국내 미반입량을 뺀 것을 국내반입량으로 봄. 다만 참치 등 가공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와 저서어류 등 해외 선상판매되는 물량은 제외함

- 원양어획물의 생산은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지 2004년의 실적으로 향후 물량을 판단하기 힘들고, 설문대상 업체에 대한 장기적인 물량추정이 불가능하므로, 2002년, 2003년, 2004년도의 3개년 평균을 이용한 이동평균법으로 향후 계획년도의 물량을 추정하였음. 분석결과 2005년~ 2007년까지는 2004년의 물량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표 5-4〉 원양 수산물의 부산반입가능물량 추정

(단위 : 톤)

어획량			국내반입량			부산반입가능량		
2005년	2006년	2007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5년	2006년	2007년
493,885	488,758	488,326	294,913	298,456	297,697	198,819	191,319	187,821

나. 냉동 수입수산물

- 해양수산부는 2005년 5월~6월까지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산물 수입업체 121개소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를 실시함
 - 특히, 연간 수입물량이 50톤 이상인 1,036개 업체를 물량기준으로 그룹화 한 후, 그룹단위로 총 121개의 표본업체(285,252톤, 339,267백만 원)를 선정
 - 121개 표본 중 도산, 파산, 연락두절, 설문을 거부한 23개 업체를 제외한 98개 업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 해양수산부 설문조사 결과
 - 98개 업체(269천여 톤, 3,217억원) 중 상장을 희망한 업체는 7개 업체(13천여 톤)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부산항 통관 수입물량이 2004년 현재 75만여 톤임을 감안해 볼 때, 7개사의 상장 희망 물량은 2%, 13천여 톤에 불과함

- 대형업체는 보관시설, 유통망, 자금력 등이 안정되어 있어 거의 상장 의사가 없는 반면,
 - 중소기업의 일부가 대금결재의 신속 등을 이유로 상장을 희망할 뿐, 대부분은 인센티브(안) 등이 결정되지 않아 상장여부를 유보하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설문조사 결과 수입수산물만으로 정상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14%(7개사) 수준에 그치고, 연근해 수산물 등도 함께 상장해야 정상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부분 업체가 공감한 것으로 조사됨(88개사, 73%)
- 해양수산부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도매인제를 실시할 경우, 상장 의사의 변동을 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조사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재실시함

다. 선어 수입수산물

- 조사대상 업체들의 수산물 수입업에 종사한 기간은 평균 8.2년이며, 조사대상 업체 중 10%만이 타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5〉 수입선어 조사대상 업체의 거래 규모

구분	조사 대상 업체물량(톤)	금액(백만원)
부산시 전체(A)	34,494	95,548
조사대상 업체(B)	29,472	71,266
B/A	85.4%	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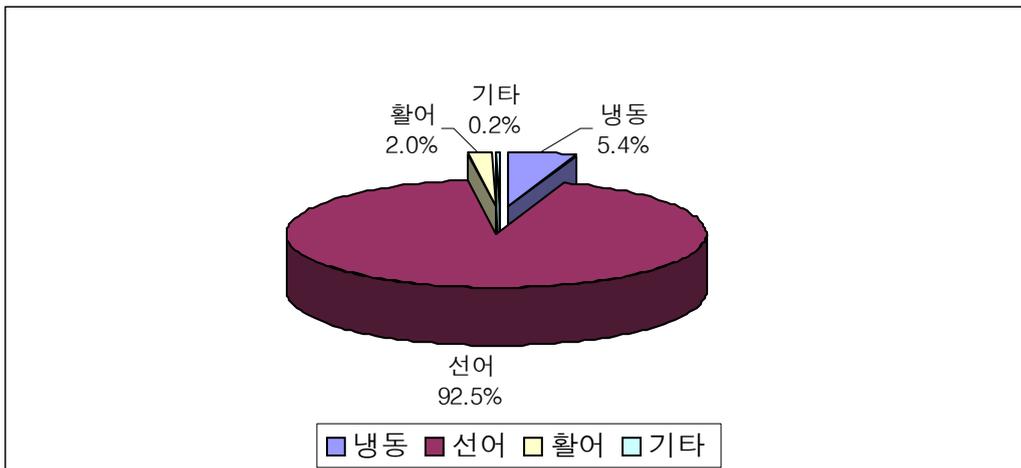
- 조사대상 업체들의 2004년 수입 물량과 금액은 각각 29,472톤, 712억원이며, 물량으로 볼 때, 2004년 부산으로 반입된 신선·냉장 수산물 34,494톤의 85.4%(금액기준으로는 74.6%)를 차지하고 있음
- 조사대상 업체들의 수입국은 대부분이 일본이며, 러시아, 중국 등에서의 수입은 주로 냉동물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 업체들은 갈치 16,428톤, 명태 8,156톤의 선어를 수입하였는데, 이들 어종은 각각 수입 물량의 55.7%, 27.7%를 차지하였음. 기타 수입어종으로는 꽁치, 대구 등이 있음

<표 5-6> 선어수입 조사대상 업체의 어종별 국별 거래 규모

대상국가	갈치		명태		기타	
일본	16,428톤	55.7%	8,156톤	27.7%	4,888톤	16.6%

○ 수산물 수입어종 및 판매방식

- 수입업체들의 수산물 수입형태 및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물량 중 선어로 수입하는 물량이 9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냉동 5.4%, 활어 2%, 기타 0.2%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5-1> 수입선어 조사대상 업체의 수산물 수입어종

- 수입업체들은 크게 냉동(장)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와 냉동(장)창고를 소유하지 않는 업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 별로 자체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 도매시장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방식, 자체 유통망과 도매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 있음
- 수입업체들의 수입수산물 판매방식은 주로 냉동(장)창고를 소유하고, 자체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과, 냉동(장)창고 없이 자체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 각각 38.5%와 32.5%로 가장 많았으며 도매시장 등에 상장 판매하는 방식도 20%에 달했음

<표 5-7> 수입선어 조사대상 업체의 판매방법

구 분		판매 비율
냉동(장)창고 소유	자체 유통망 판매(도·소매업자)	38.5%
	중간 유통업자 판매 위탁(자체 유통망 없음)	2.5%
냉동(장)창고 없음	자체 유통망 판매(도·소매업자)	32.5%
	중간 유통업자 판매 위탁(자체 유통망 없음)	6.5%
도매시장 등에 상장 판매		20.0%
합 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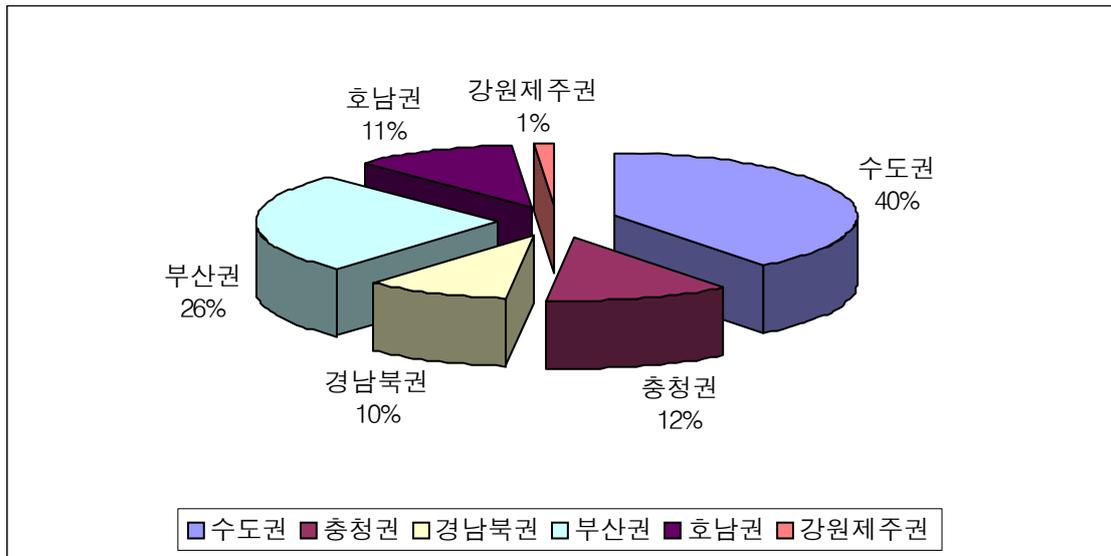
- 선어 수입업체들이 부산으로 반입한 수입수산물물의 주 판매지역은 수도권으로 조사대상 업체의 총 판매물량 중 39.5%인 11,627톤을 수도권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산권, 충청권 순으로 각각 26.2%와 12.4%를 차지함

<표 5-8> 선어수입업체들의 주요 판매지역

(단위:M/T, %)

판매지역	판매물량	구성비
수도권	11,627	39.5
충청권	2,650	12.4
경남·북권	2,875	9.8
부산권	7,333	26.2
호남권	3,209	10.9
강원·제주권	378	1.3

- 이 조사결과를 기초로 2004년 부산으로 반입된 전체 신선·냉장 수산물 34,494톤에 대해 각 판매지역별 물량을 추정해 보면, 수도권 지역에 약 13,625톤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며, 부산권에는 9,037톤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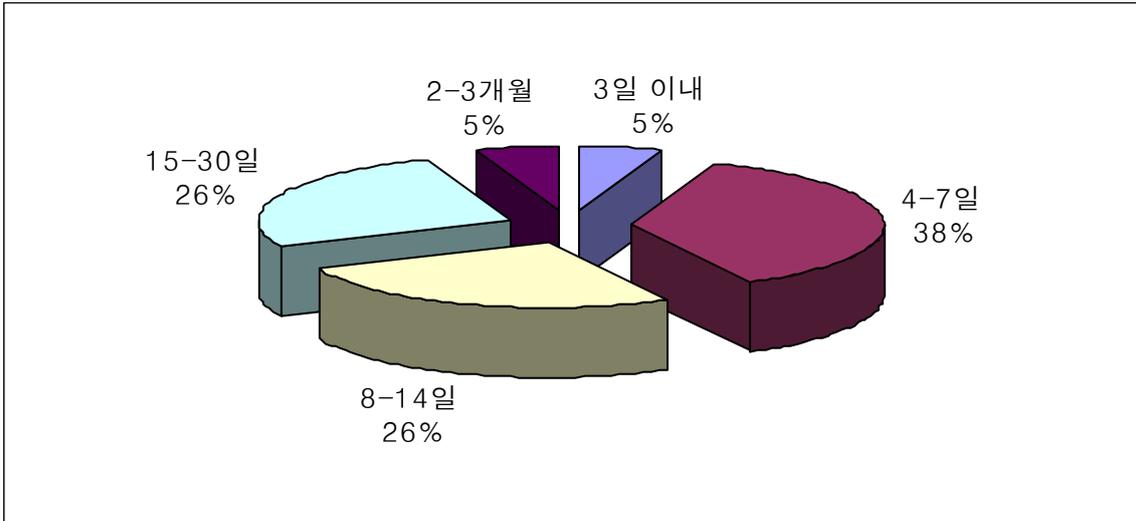
<그림 5-2> 선어 수입업체들의 수산물 판매지역

○ 수입수산물 냉동(장)창고 보관일수

- 도·소매업자의 판매전 냉동(장)창고 보관일수는 7일 이내가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상 냉동(장)창고에 보관하는 업체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일 kg당 보관료와 관련해서는 수입업체마다 각기 상이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거래 선사에 컨테이너 냉장창고를 갖고 있어 선사에 일정 수준의 전기세를 지불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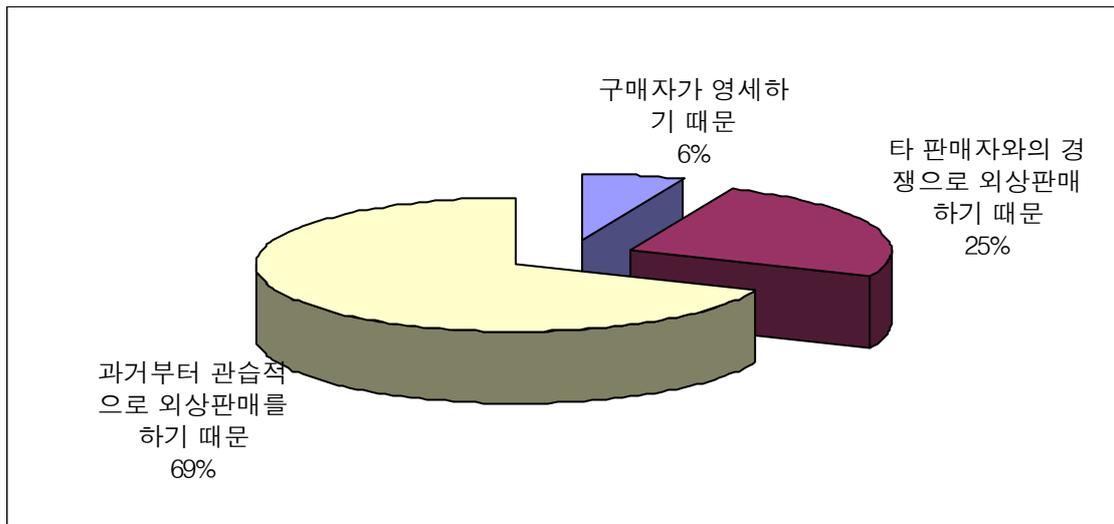
○ 판매대금 회수

- 수입수산물 판매 후 판매대금 회수기간은 4~7일 이내가 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금 회수일이 8~14일과 15~30일도 각각 26%를 차지함. 따라서 선어 수입업체의 95%가 판매 후 한달 이내에 대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 선어 수입업체들의 자금회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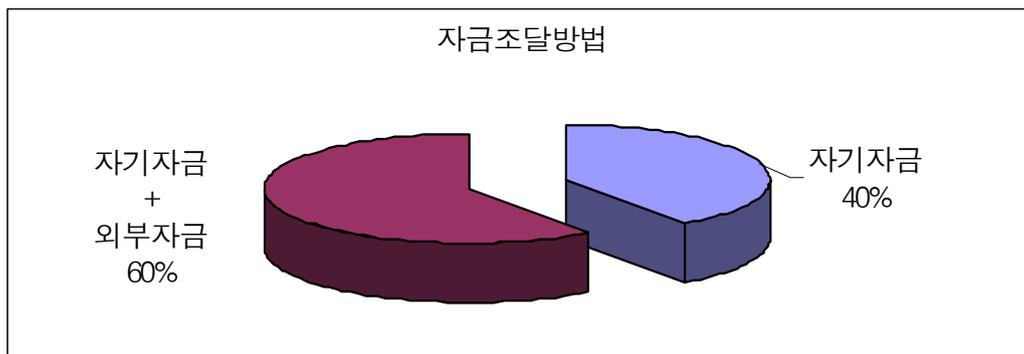
- 수입업체가 도·소매업자에게 판매(1회분)한 후 대금 회수율은 80.5%로 나타났고 약 19.5%는 미수상태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입업체의 판매대금 회수율이 낮은 이유로는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외상판매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6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타 판매자와의 경쟁으로 외상판매를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5%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5-4> 선어 수입업체들의 대금 회수율이 낮은 이유

○ 금융이용

- 수입업체들이 수산물 수입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자기자금과 외부자금을 같이 사용하는 업체는 전체 60%이고,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수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전체 업체의 40%인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자기자금과 외부자금을 같이 사용하는 업체의 자금 구성비는 자기자금이 60%, 외부자금이 40%인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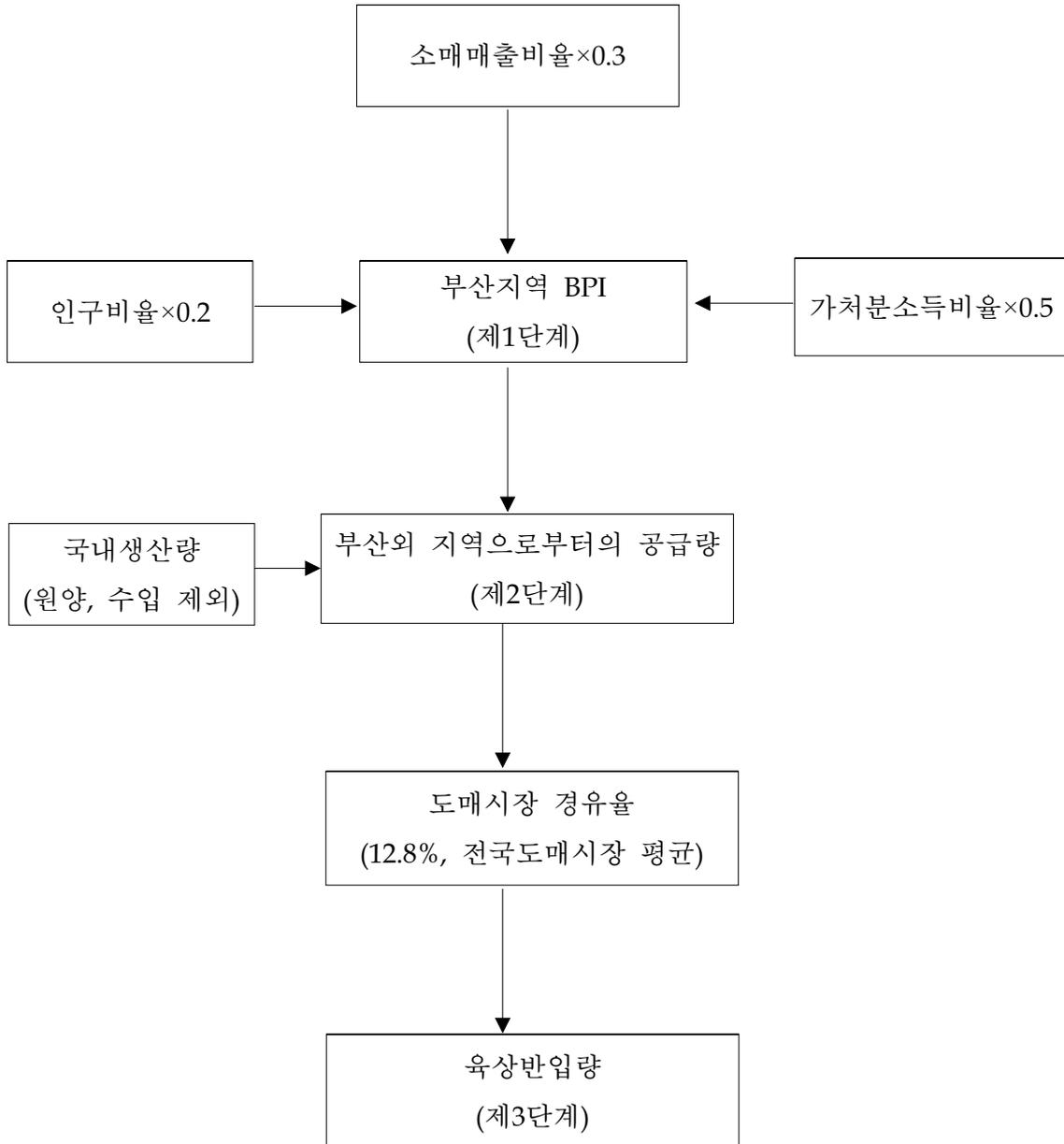


<그림 5-5> 선어 수입업체들의 자금조달 방법

- 수입업체의 대부분인 91.7%는 제1금융(은행) 자금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8.3%만이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 자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때 수입업체들의 자금 이용에 따른 이자율은 주로 6%~7% 사이로 평균 이자율은 6.8%인 것으로 나타났음
- 수산물 선어수입업체들이 신용장(L/C)을 직접 개설하는 비율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행한다는 5%에 그쳤는데 대행에 의존하는 주 원인은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임. 그러나 전신환(TT)의 방법을 이용하는 업체가 32%나 차지하고 있어 선지불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라. 육상반입량

○ 부산지역으로의 육상반입량 추정 단계는 <그림 5-6>과 같이 크게 3단계임



<그림 5-6> 공영 도매시장으로의 육상반입량 추정절차

○ 제 1단계인 부산의 BPI(Buying Power Index, 구매력 지수) 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하였음

- $BPI_i = 0.5E_i + 0.3R_i + 0.2P_i$

BPI_i : i 지역의 구매력지수

E_i : 전국의 가처분소득(Effective Buying Income)에 대한 i지역 가처분소득의 비율

R_i : 전국의 소매업 매출액에 대한 i지역 소매업 매출액의 비율

P_i : 전국 인구수에 대한 i지역의 인구수 비율

계수 : 가처분 소득, 소매업 매출액, 인구수의 가중치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BPI에 대한 전국적이며 지속적인 구매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물론 전국적인 구매력 조사는 황병일의 가치상권 및 이에 따른 구매력 측정에 관한 연구, 방송광고 연구총서(1994)에 의해 최초로 수행되었으나 오래 전에 조사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BPI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지역별 소매 매출액과 인구 자료는 각각 통계청의 '도소매통계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하였고, 가처분소득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부문 최종 소비지출'을 이용하였음
- 이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이 <표 5-9>의 국내 각 지역별 구매력 지수 비교표임

<표 5-9> 국내 각 지역별 BPI 지수 비교표

지역	BPI	소매점기대구매량		
		수입수산물	국내생산물	합계
서울	0.255	237,457	497,929	735,387
부산	0.090	83,808	175,740	259,548
대구	0.052	48,423	101,539	149,961
인천	0.048	44,698	93,728	138,426
광주	0.028	26,074	54,675	80,748
대전	0.028	26,074	54,675	80,748
울산	0.019	17,693	37,101	54,794
경기	0.200	186,241	390,533	576,774
강원	0.028	26,074	54,675	80,748
충청북도	0.028	26,074	54,675	80,748
충청남도	0.034	31,661	66,391	98,052
전라북도	0.034	31,661	66,391	98,052
전라남도	0.038	35,386	74,201	109,587
경상북도	0.050	46,560	97,633	144,193
경상남도	0.058	54,010	113,255	167,264
제주도	0.010	9,312	19,527	28,839
합계	1.000	931,204	1,952,665	2,883,869

주 : 대형할인점을 주요 소매점으로 파악하였음

자료 : 통계청, 지역별소매매출액; 인구주택총조사; 가계부문 최종 소비지출;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각연도; 무역협회, 무역통계

- 제2단계인 부산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음
 - 감천 공영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육상반입량 가운데 원양어획물과 수입수산물은 거의 전량이 부산으로 직접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육상반입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따라서 감천공영도매시장의 육상반입량의 대상이 되는 물량은 수입과 원양을 제외한 국내 생산물에 국한되는데, 2002년~2004년의 국내 수산물 평균 생산량(원양 제외)은 195만 2,665톤임
 - 이 물량을 감천공영도매시장의 물량 분산권인 부산과 경남(울산 포함)이 BPI를 곱하게 되면, 이들 지역에 있어서의 소매점의 구매량(공급량)을 추출할 수 있음
 - $1,952,665(\text{톤}) \times \{0.090(\text{부산의 BPI}) + 0.019(\text{울산의 BPI}) + 0.058(\text{경남의 BPI})\} = 326,095(\text{톤})$ 으로 추정됨
- 즉, 326,095톤이라는 수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소매점들이 구입할 수 있는 량으로 해석되며, 이들 소매점들은 수산물을 구매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감천공영도매시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량을 구매할 것인지의 여부가 바로 감천공영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육상반입량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들 소매점의 구매처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 수산물의 전국 도매시장 평균경유율을 도입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매시장 경유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법정도매시장,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을 국내 수산물 공급량(수입, 국내생산량)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였음
 - <표 5-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산물 도매시장(공영 및 법정)의 수산물 거래량은 연평균 36만 9,000톤임
 - 또한 국내 수산물 총공급량은 '국내생산+(수입-수출)+재고량'으로 나타나지만, HS-Code에 따른 수산물 수출량은 가공수산물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를 생중량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현 통계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며, 재고량 역시 정확한 공식통계가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수산물 총공급량은 '국내생산+수입'으로 간주할 경우 최근 3년 평균 2,883,869톤으로 추정되었음
 - 따라서 전국 수산물도매시장의 경유율은 $326,095(\text{톤})/2,883,869(\text{톤}) \times 100 = 11.3(\%)$ 로 추정되었음

<표 5-10> 전국 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량과 경유율

(단 위 :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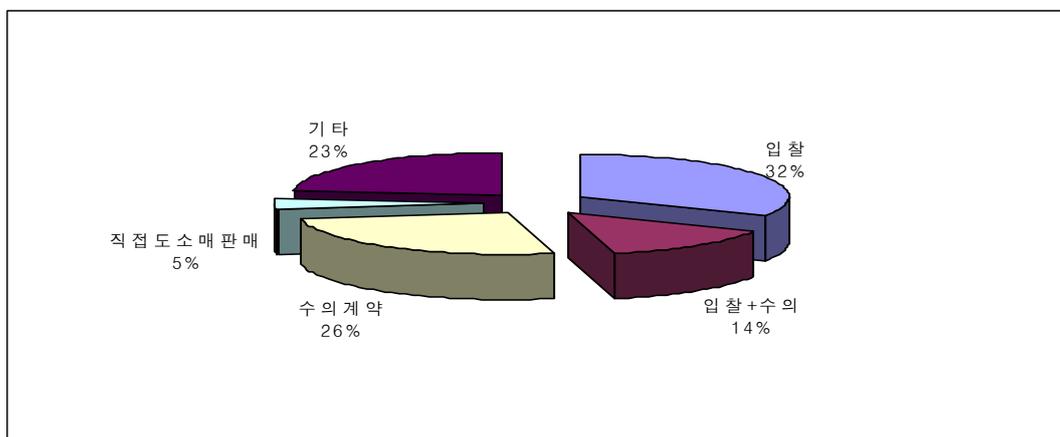
	공영도매시장	법정도매시장	합계
2001	273	122	395
2002	247	113	360
2003	242	110	352
3년 평균	254	115	369(A)
국내 수산물 총 공급량(B)	2,884		
경유율(A/B×100, C)	12.80		
국내 수산물 생산량(원양 제외, D)	1,953		
부산·울산·경남의 BPI(E)	0.167		
부산·울산·경남의 소매점 구매가능량(D×E, F)	326		
감천도매시장의 육상 반입량(F×C)	41		

- 그리하여 감천공영도매시장의 육상반입량은 부산·울산·경남의 소매점들이 구매 가능량 326,095톤에 전국도매시장의 평균 경유율인 0.128을 곱한 것으로 41,740톤으로 추정되었음

2. 원양 및 수입수산물의 유통구조

가. 원양수산물

- 원양수산물에 대한 주요 가격결정방식은 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32%,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입찰방식과 수의계약 방식을 병행하는 업체도 14%에 달하고 있음



<그림 5-7> 원양수산물의 가격결정 방식

1) 원양 명태의 유통 경로

- 원양 명태의 국내시장 유통경로는 다음의 <그림 5-8>과 같으며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7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음
- 여기에서 주된 유통경로는 ①과 ④인데, 이 경우 1차 도매업자가 밀접하게 개입되어 있음

① 생산자 → 1차도매업자 → 2차도매업자 → 도매상 → 소매점
② 생산자 → 1차도매업자 → 2차도매업자 → 소매점
③ 생산자 → 1차도매업자 → 가공업자 → 소비지도매시장 → 소매점
④ 생산자 → 1차도매업자 → 가공업자 → 소비지도매상(2차도매업자) → 소매점
⑤ 생산자 → 1차도매업자 → 가공업자 → 소매점
⑥ 생산자 → 가공업자 → 소비지도매상(2차도매업자) → 소매점
⑦ 생산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 소비지도매시장 → 소매점

<그림 5-8> 원양 명태의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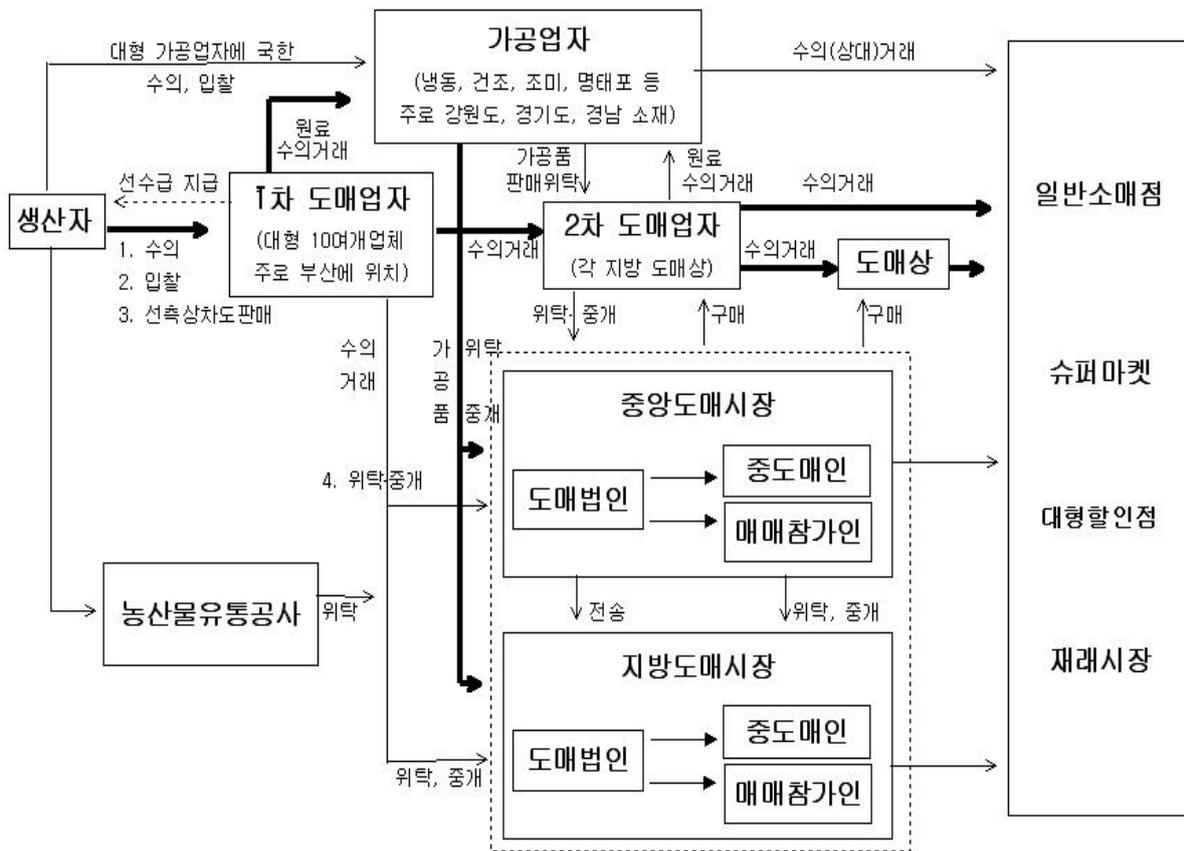
- ①은 현재 원양명태의 국내시장 유통 중 시판 냉동 명태(라운드 형태로 판매되는 냉동 명태)의 가장 일반적인 경로임
 - 이 경로의 특징은 물량분산형으로 공급 거점지인 부산을 출발점으로 하여 전국 각지로 분산시키는 것임
 - 여기에서 1차 도매업자는 유통경로의 주도권자(channel captain, channel commander)로 금융기능, 재고보관기능을 통한 막대한 거래 교섭력을 가지고 있고 그 하부 경로로 2차 도매업자, 도매상(3차), 소매상을 두고 있는 형태임
 - 1차와 2차, 3차 사이는 거래관계 중 금융 즉 외상거래에 따른 연결 고리가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②는 위의 ①과 거의 유사하고 단지 3차 도매상이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음
- 현재 이 같은 경로파괴가 상당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1차 도매업자의 매매차익의 감소에 따른 경영부진이 가장 큰 이유임.
 - 지금까지 1차 도매업자는 대량물량 판매-적정마진 확보를 통해 취급 물량의 양적인 확대 경영을 도모하여 왔음
 - 하지만 오늘날 원양명태의 공급 감소, 수입명태의 확대, 그리고 명태 취급 업체

의 다양화 등으로 2차, 3차의 개념이 없어지면서

- 1차 도매업자도 최소 판매물량 단위를 소량화 시키면서 마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경로파괴 현상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③은 원양명태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자와 명태 가공품의 유통경로를 나타내고 있음

- 대부분의 명태 가공업자는 경영규모 면이나 재무구조 면에 있어 영세한 업체가 중심으로 이루고 있어 실질 생산자로부터 대량물량을 구매하기에는 역부족임
- 따라서 1차 도매업자 등을 통해 명태 원료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림 5-9> 원양 명태의 국내 시장 유통경로

- 주 : 1. 수의거래는 주로 출어시 거래되는 방법으로 대개 대형 1차 도매업자로부터 선수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음. 현재 원양 명태의 경우는 대부분의 선사가 대규모 수산회사로서 선수금을 지원받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입찰의 경우 이전에는 대형 1차 도매업자 중, 일부 업체 내지는 1~2업체에 제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선사 사무실, 부두 등에서 입찰거래가 행해져 왔으나, 최근에는 선사에서 자격제한을 개방하고 있음.
3. 선척상차도 판매란 항구에 입항한 운반선에서 명태를 양륙하는 지점에서 거래가 행해지는 방법을 칭함. 명태의 경우는 대부분 선척상차도 판매를 행하고 있음.
4. 출하주가 도매시장 내의 도매법인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도매시장 내의 중도매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중개라고 칭함.
5. 원양 명태의 경우 소비지도매시장에서 위탁과 중개 비율은 20:80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④는 앞의 ③경로 중에서 명태가공업자에 대한 판매경로에 차이가 있음
- ⑤ 역시 앞의 ③경로 중에서 명태가공업자에 대한 판매경로에 차이가 있음
- ⑥은 가공업자 중에서 자금력과 규모를 갖춘 대규모 가공업체가 선택하는 유통경로임
- ⑦은 정부비축 냉동명태 수매사업과 그 이후의 판매경로를 나타내고 있음
 - 수매 물량과 금액은 매년 정하고, 수매 실시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임
 - 수매방법은 원양업체가 실시하는 입찰(경매)에 참여하여 수매하고 있으며,
 - 수매가격은 수매상한가 범위 내에서 당일 낙찰가격으로 하고 있음
 - 이렇게 수매된 명태는 거의 소비지도매시장에 위탁 판매되고 있음
-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양명태의 국내시장 유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1차 도매업자 임
- 이미 앞의 가격결정방법에서도 언급한 10여 개의 1차 도매업자들은 원양명태의 가격 및 시장 판매량까지도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구매력과 판매력을 가지고 있음
- 1차 도매업자는 막대한 자금력과 시장정보망 및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생산자는 시장에 대한 막연한 정보와 구체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또한 현 시점에 있어 원양명태의 일시 대량 판매처가 1차 도매업자에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생산자의 유통경로 관리는 거의 불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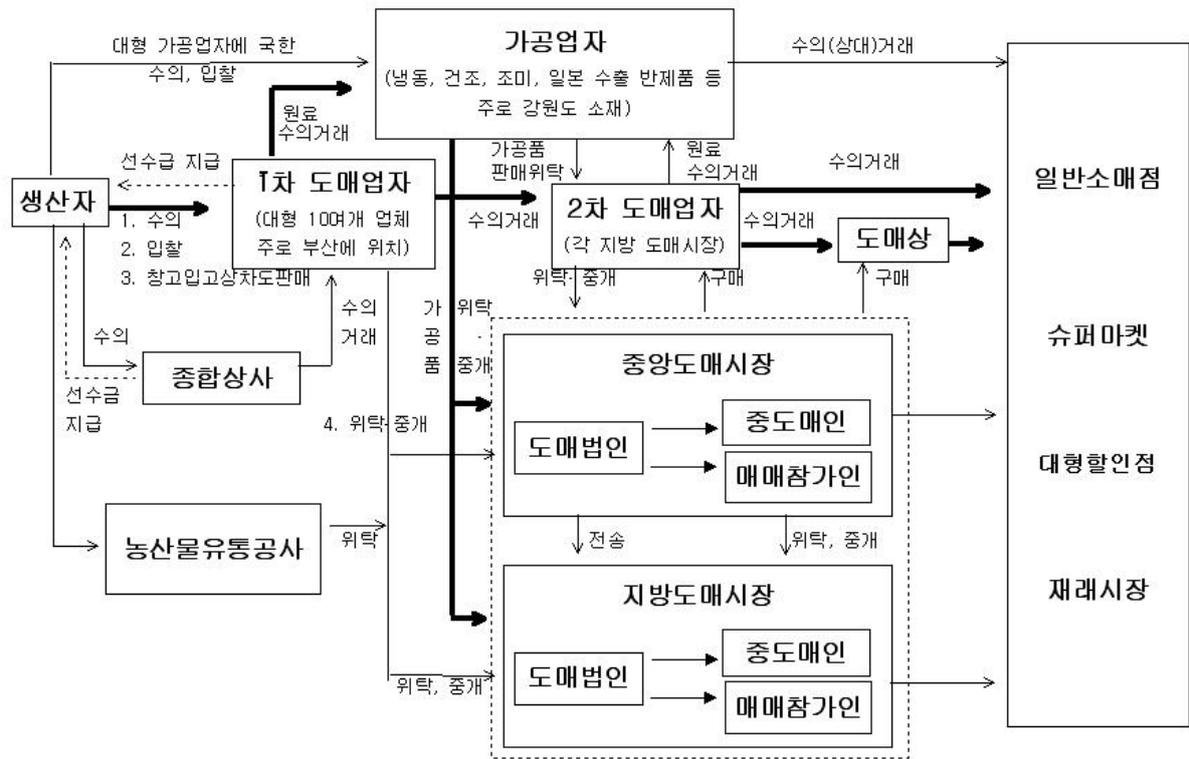
2) 원양오징어의 유통 경로

- 원양 오징어의 국내시장 유통경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양 명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종합상사가 생산자와 1차 도매업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특징이 원양 명태와의 차이임
- 원양 오징어의 주요 유통경로를 정리하면 크게 7가지 정도로 다음과 같음

- | |
|--|
| ① 생산자 → 종합상사 → 1차도매업자 (→ 2차도매업자) → 도매상 → 소매점 |
| ② 생산자 → 1차도매업자 (→ 2차도매업자) → 도매상 → 소매점 |
| ③ 생산자 → 1차도매업자 → 가공업자 → 소비지도매시장 → 소매점 |
| ④ 생산자 → 1차도매업자 → 가공업자 → 소비지도매상(2차도매업자) → 소매점 |
| ⑤ 생산자 → 1차도매업자 → 가공업자 → 소매점 |
| ⑥ 생산자 → 가공업자 → 소비지도매상(2차도매업자) → 소매점 |
| ⑦ 생산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 소비지도매시장 → 소매점 |
| ⑧ 생산자 → 수출(주로 중국 시장) |

〈그림 5-10〉 원양 오징어의 국내 시장 유통경로

- 가장 주된 유통경로는 ①,②와 ④가 지배적이고 1차 도매업자의 개입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①과 ②의 유통경로는 원양오징어의 국내시장 유통 중 가장 일반적인 경로임
 - 이 경로의 특징은 물량분산형으로 공급 거점지인 부산을 출발점으로 하여 전국 각지로 분산시킴
 - 여기에서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가진 종합상사와 1차 도매업자는 유통경로의 주도권자(channel captain, channel commander)로 금융기능, 재고 보관기능을 통한 막대한 거래교섭력을 가지고 있고
 - 그 하부 경로로 2차 도매업자, 도매상(3차), 소매상을 두고 있는 형태임
 - 1차와 2차, 3차 사이는 거래 관계 중 금융 즉 외상거래에 따른 연결 고리가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최근에는 ①과 ②의 유통경로에서 2차 도매업자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생략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생산자에서 1차 도매업자가 생략되면서 2차 도매업자에게로 판매되기도 함
- 이처럼 원양오징어의 국내 유통에서 경로파괴 현상이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 그 원인은 대부분의 원양물 1차 도매업자가 원양명태와 원양오징어를 같이 취급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영이 부진하기 때문임
 - 그리고 여기에 인근해 오징어 대형 유통업자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거에 형성되어 온 자본력에 따른 거래 사슬관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임



〈그림 5-11〉 원양 오징어의 국내 시장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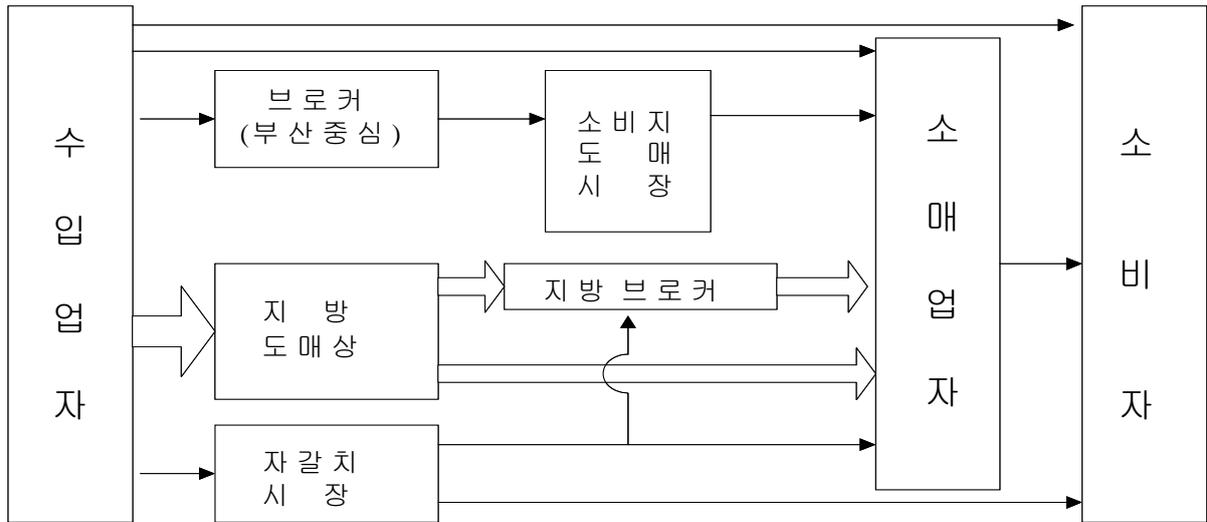
- 주 : 1. 수익의 거래는 주로 출어시 거래되는 방법으로 대개 대형 1차 도매업자로부터 선수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음.
2. 입찰의 경우 이전에는 대형 1차 도매업자 중, 일부업체 내지 1~2업체에 제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선사 사무실, 부두 등에서 입찰거래가 행해져 왔으나, 최근에는 선사에서 자격제한을 개방하고 있음.
3. 창고입고상도 판매란 항구 입항한 운반선에서 오징어를 양육하여 냉동창고에 판매 거래가 행해지는 거래 방법을 칭함. 오징어의 경우는 대부분이 창고입고상차도 판매를 행하고 있음
4. 출하주가 도매시장 내의 도매법인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도매시장 내의 중도매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중개라고 칭함.
5. 원양 오징어의 경우 소비지도매시장에서의 위탁과 중개 비율은 20:80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③은 원양 오징어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자와 오징어 가공품의 유통경로를 나타내고 있음
 - 대부분의 오징어 가공업자는 경영규모면나 재무구조면에 있어 영세한 업체가 중심으로 이루고 있어 실제 생산자로부터 대량 물량을 구매하기에는 역부족임
 - 따라서 1차 도매업자 등을 통해 오징어 원료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임
- ④와 ⑤의 ③경로 중에서 오징어 가공업자에 대한 판매경로에 차이가 있음
- ⑥은 가공업자 중에서 자금력과 규모를 갖춘 대규모 가공업체가 선택하는 유통경로임
- ⑦은 정부비축 냉동오징어 수매사업과 그 이후의 판매경로를 나타내고 있음

-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양오징어의 국내시장 유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원양명태와 마찬가지로 1차 도매업자 임

나. 수입선어

- 일본산 신선냉장 수산물의 한국 내 유통경로는 소비지시장 경유보다 시장의 유통이 압도적으로 많음
- 일본 내 신선냉장 수입수산물의 대부분이 소비지 도매시장을 경유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
- 한국 내 신선냉장 수산물 수입업자가 가락동 및 노량진 시장에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소비지 도매시장의 가격변동이 크다는 것임. 즉 수입업자에 의하면 시장 규모가 크고 가격변동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소비지 도매시장 조차 10kg 규격 상자의 수입 신선냉장물 경우 상자 당 2~3만 원의 가격 변동이 있으며, 1회의 출하에 1,000~2,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수입업자는 일본 수출업자와 개별적으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구매원가가 존재하지만 소비지 시장으로의 출하가격은 수시로 변동해, 이러한 가격변동 리스크는 전면적으로 수입업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됨
 - 즉 소비지시장 출하는 수입업자에게 있어서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
 - 둘째, 만일 소비지시장 출하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도매시장의 출하경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대금은 매출액에서 11~17%를 공제한 금액이 됨
 - 소비지시장의 법정 수수료율은 최대 11%로 정해져 있으나 어느 수입업자의 인터뷰에 의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물류비용이 7%, 하역비용이 2%, 도매시장법인 수수료가 3.5%, 이 외에도 중도매인 수수료가 3%로 되어 15%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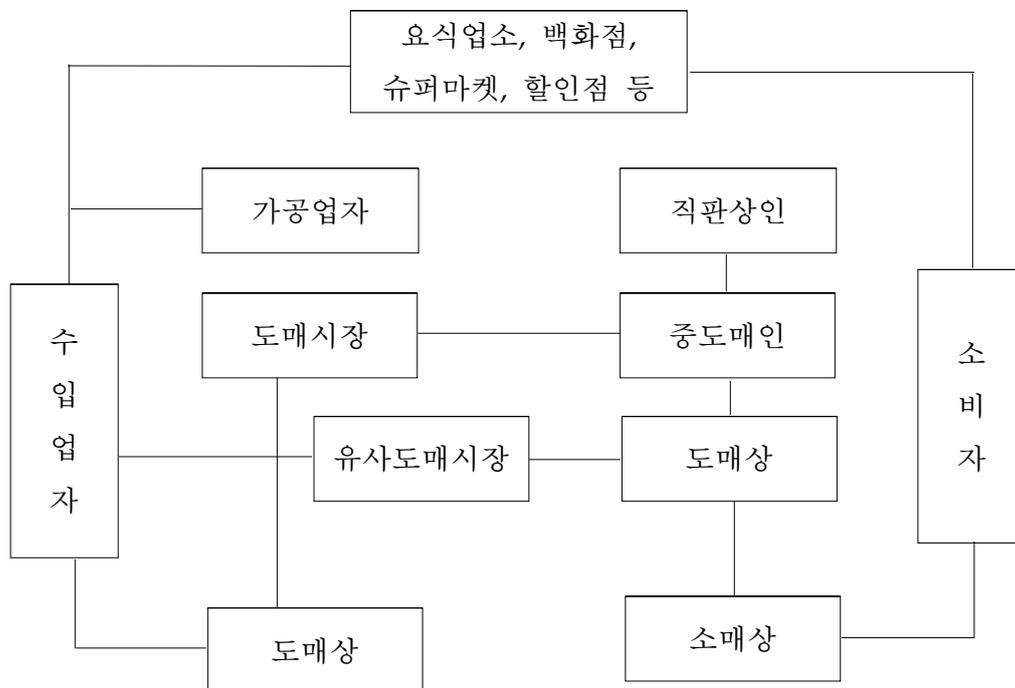
〈그림 5-12〉 일본산 신선냉장 수산물의 한국 내 유통경로

- 한편 일본의 도매시장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 소비지시장의 도매법인의 역량이 약하기 때문임
 - 특히 집하기능의 약화를 들 수 있음
 - 반대로 중도매인 중에는 산지에서 직접 집하하는 역량을 가진 업자가 있어 그들이 실질적인 도매시장 법인의 집하기능을 대신하고 있음
 - 단, 도매시장법 상 부분적으로 중도매인이 집하한 수산물을 도매시장법인 경유의 경매형태로 상장하는 경우가 많음
- 결국 수입업자가 소비지도매시장 출하를 피하는 것은 시장 출하를 할 경우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임
- 물론 수입업자가 직접 소비지 도매시장으로의 출하를 통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도매시장 법인의 경제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출하하는 그 자체가 리스크로 직결된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함
- 따라서 수입업자는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거래교섭이 가능한 시장 외의 도매상을 주된 판매처로 하고 있음
- 이때 소비지도매상은 소규모 영세 소매업자에 대한 분하기능 및 금융기능을 행함과 동시에, 매입상대(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소매업자의 수급동향에 관한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한편 도매상과는 별도로 일부 브로커와 자갈치시장 내의 도소매업자도 일본산 신선냉장 수산물 유통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음
- 물론 수입업자의 최대 판매처는 지방도매상이지만 수급상황이 시시각각 변동하기 때문에 지방도매상 경로를 통해 모든 수입수산물이 판매되는 것은 아님
 - 도매상 판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매입원가가 있는 수입선어를 판매하는 다른 경로의 확보가 필요함
 - 수입업자는 주요 판매처인 지방도매상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매상고의 변동에 대한 조정역할을 가지는 도매시장 경유가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브로커임
 - 브로커는 소형 냉장고와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소위 매매차익 상인을 칭하는데, 일본산 신선냉장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브로커는 매매차익보다도 수입업자가 수입원가에 일정비율(10% ~20% 정도)을 덧붙여 물건을 브로커에게 할당하는 경우가 많고, 소량 수입선어를 소비지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음
 - 따라서 이익은 적으나 소비지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의 구매대리기능을 함으로써 생업적 경영을 유지하고 있음
- 자갈치 시장도 수입업자의 수량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이 경우 ①부산 시내의 소비자가 자갈치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와 ②시장 내의 업자(일부 간이 냉장고를 구비)가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한 수입 선어를 지방 브로커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 물론 자갈치 시장 내의 업자 간에 전매되는 경우도 있음
- 일본산 신선냉장 수산물의 한국 내의 지역별 유통량 분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인터뷰 조사를 통한 의견을 정리해 보면,
 - 일본산 신선냉장 수산물의 70%는 부산광역시의 유통되고 있다고 보는 수입업자와 ②서울에도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다고 보는 수입업자 등 의견이 다양함
 - 인구 400만의 대도시인 부산에서 수산물 소비가 활발하다는 것에 수입업자들의 견해가 거의 일치하고, 인터뷰 조사한 10사 정도의 수입업자의 반출처를 보면, 서울의 비율이 낮았다는 점, 그들 수입업자가 서울 시내 도매상 및 소비지 시장에 출하·판매하고 있는 물량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본산 신선냉장 수산물은 서울에 그다지 유통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다. 수입 냉동물

- 국내 수산물 유통량 중 약 33%를 차지하는 수입 냉동수산물은 약 4%만이 도매시장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도매시장을 통하는 수입수산물도 중도매인을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분산되는 경우와 중도매인으로부터 직판상인을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분산되는 경우가 있음



<그림 5-13> 수입냉동수산물의 유통경로도

- 나머지는 수입업자 → 유사도매시장 → 도매상을 통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분산되는 경우, 수입업자 → 유사도매시장 → 도매상 → 소매상을 통하여 분산되는 경우, 또 수입업자로부터 요식업소, 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점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분산되는 경우도 있음
- 이외에도 가공업자를 통하여 처리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통 경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 수입 냉동수산물 유통경로의 특징을 살펴보면,
 - 첫째, 대량의 물량은 현실적으로 종합상사가 담당하고 있고, 소량의 물량은 전

- 문수입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다수의 도·소매업자들이 수입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단계에서의 수입경로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 둘째, 수산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마구잡이 식으로 수입하여 중복수입이나 과잉수입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셋째, 수입단계에서 수산물 비전문업체의 난립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내수입업자들의 행동은 국제무역 관행이나 기본질서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국가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음
 - 넷째, 수입국에서의 국내 수입업자 간의 과당경쟁에 의해 수입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다섯째, 수입수산물의 증가 및 무분별한 수입에 의하여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도매유통 단계에 있어서는,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이 수입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필요품목을 수입 의뢰하여 시장으로 반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중도매인은 타인명의로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고 도매시장법인은 수입국별, 품목별, 등급별로 작성된 가격조건표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금액만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 대중적 냉동물은 중판을 통하여 분산하고 포장 일식재료 등은 중도매인이 외부 도·소매상, 일식집,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있음
- 그 외에도 냉동물 중 일부 비허가상인(일명 "대판")이 수집·수탁한 물량은 수집상 명의로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고 중도매인 명의(허가권 대여)로 물량을 인수(수의매매)하여 판매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거래에서는 중도매인에게 명의 대여 대가로 거래금액의 1~2%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음
- 수입냉동수산물의 도매유통단계에서의 특징은
- 첫째, 공급량 및 가격면에서 보면 대량의 물량을 수입하는 종합상사에 의하여 조절(또는 지배)되고 있음
 - 둘째, 수입업자가 유사도매시장이나 신유통업체 등에게 분산하고 잔품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형태로 인하여 거래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가 사실상 곤란함
 - 셋째, 신용에 의한 거래질서 보다는 관행에 의한 연고판매가 주류를 형성함

제2절 실태조사 결과

1. 도매시장 상장 의향조사

가. 원양수산물

1) 도매시장 인지도

○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인식

- 현재까지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널리 홍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감천항에서 원양어획물을 취급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업체가 절반 가량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원양업체는 유류비 상승으로 유류비가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 50%~60%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과 관련된 설문조사 자체에 대해 불만을 나타냄
- 이와 같은 경영불안과 연계하여 조세 및 자금지원, 행정지원 등의 혜택이 있으면,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경유하여 판매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다는 응답이 많았음
- 그러나 판매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산물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어획물을 판매할 경우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가격형성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로서 개장 후의 추이를 봐서 결정하겠다는 응답도 있었고, 응답자의 대부분은 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음
- 관례처럼 행해지고 있는 지금의 유통구조에 대해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으며, 감천항 수산물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과 같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수수료의 부담 등을 가지면서 도매시장을 거쳐 판매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

○ 원양어업 업체에서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필요한 물량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음

- 원양업체들은 현재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의 잇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실제로 잇점이 없을 것으로 인식

- 많은 업체들이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있으며, 현재에도 양륙비를 제외하고는 유통과정에서 비용이 전혀 발생되고 있지 않아 도매시장 유통은 불필요한 절차로 인식
 - 원양어획물은 반입시 이미 판매처가 정해져서 양륙·하역 후 컨테이너를 통해 냉동창고에 바로 입고되므로 도매시장 경유가 불필요
 - 해외트롤어업의 경우 저서어종을 다양하게 어획하여 어종의 분류 없이 일괄판매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감천항 공영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어떻게 유통시킬 수 있는지 의문을 표시함
 - 최근 백화점 등 대형소매상에게 직접판매를 하고 있는 대규모 원양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전도자금 수령으로 사전에 판매대상자가 내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 거래해 온 믿을 만한 업자로서 판단하고 있음
 - 오징어의 경우 물량이 대량으로 반입되므로 공급 급증에 따라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함(반대의견을 가진 업체도 있음)
- 원양업체들이 생각하는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물량유치 방안
- 원양업체들을 협회 차원에서 전체 참여시켜, 모든 정보를 공개한 상태라면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상당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하나의 시장에 참여하여 적정가격 형성이 가능함으로써, 원양업체들이 도매시장에 물량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원양업체들 중에는 지방색이 강한 어종을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어 때로는 전국적 유통을 위해 마케팅을 해보는 경우도 있으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도매시장 유통을 통해 어종을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물량 유치가능성이 있음
 - 최근 쫄치의 경우 소량으로 국내에 수시 반입되고 있어 경매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어종으로 꼽히므로 이들 업체를 상대로 물량유치 전략을 세운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실제 면접조사에서 쫄치와 관련된 업체에서는 협회 차원 또는 부산시차원에서 공청회를 주선한다면 응할 용의를 포함
 - 기존의 원양어획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자들을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참여시키고 이들의 자금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상당량의 원양수산물을 유치할 가능성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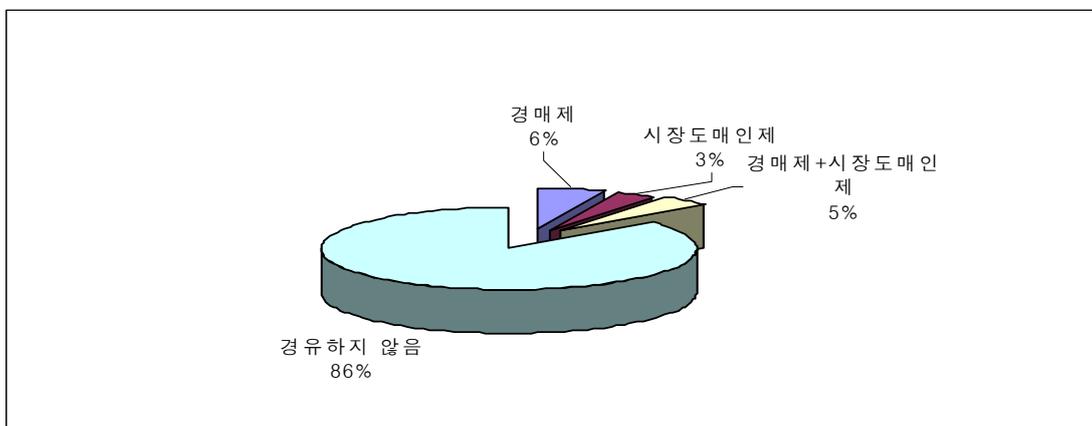
2) 도매시장 상장회사

○ 감천항 도매시장 개설 시 원양수산물의 도매시장 경유 판매의사

- 감천항 도매시장 개설시 원양업체가 도매시장에 경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 75개 업체 중 12개 업체(13%)만이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 경매제를 채택했을 때의 도매시장 경유 판매의사와 시장도매인제를 채택했을 때의 도매시장 경유 판매의사를 조사한 결과 경매제를 채택했을 때 도매시장을 경유·판매하겠다는 업체가 5개사(6%), 시장도매인제를 채택했을 때 도매시장을 경유·판매하겠다는 업체가 3개사(3%),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혼용할 때 상장하겠다는 업체가 4개사(5%)로 나타났음
-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할 때 경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4개사 중 1개사는 추후의 상황을 봐서, 물량을 판매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음
- 원양업체의 도매시장 경유 판매의사 물량은 20,721톤으로 조사되었으며, 경매제 일 때, 8,669톤을 시장도매인제 일 때, 12,052톤을 상장하여 판매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1> 원양업체의 감천항 도매시장 상장 판매희망 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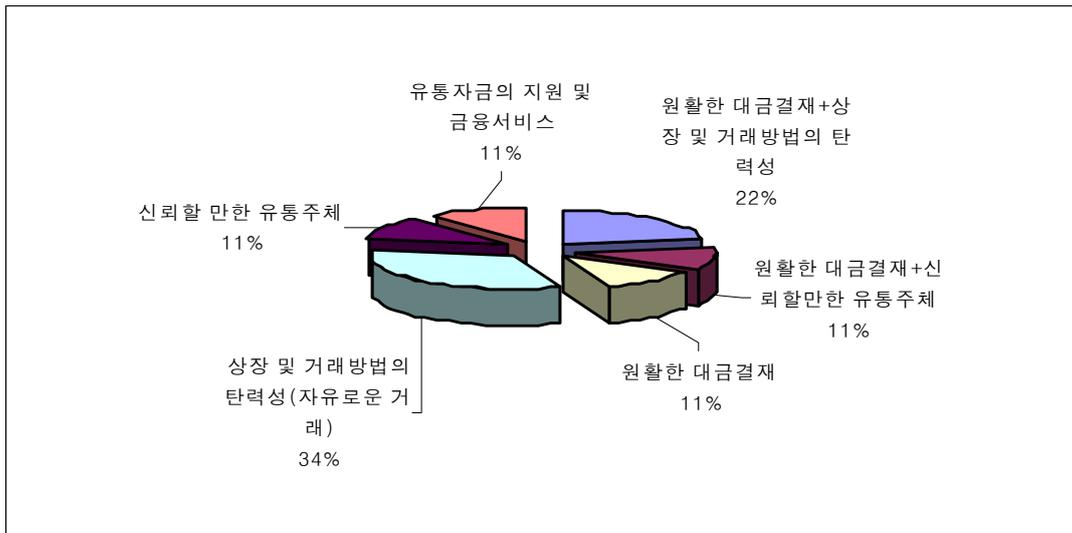
도매시장 상장 판매의사 물량	
경매제 채택	8,669톤
시장도매인제 채택	12,052톤
합 계	20,721톤



<그림 5-14> 원양업체의 감천항 도매시장 상장 판매의사

○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하여 판매하겠다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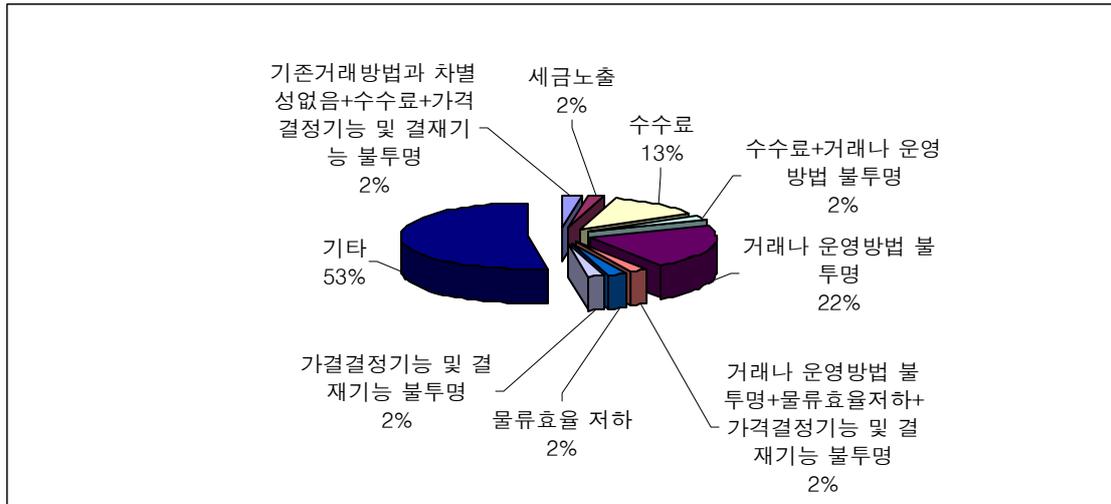
- 물량 상장 의사를 밝힌 업체 중 3개사(34%)는 상장 및 거래방법의 탄력성(자유로운 거래) 때문에, 2개 업체(22%)는 원활한 대금결제와 상장 및 거래방법의 탄력성 때문이라고 밝혔음



<그림 5-15> 원양업체의 도매시장 상장을 희망한 이유

○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하여 판매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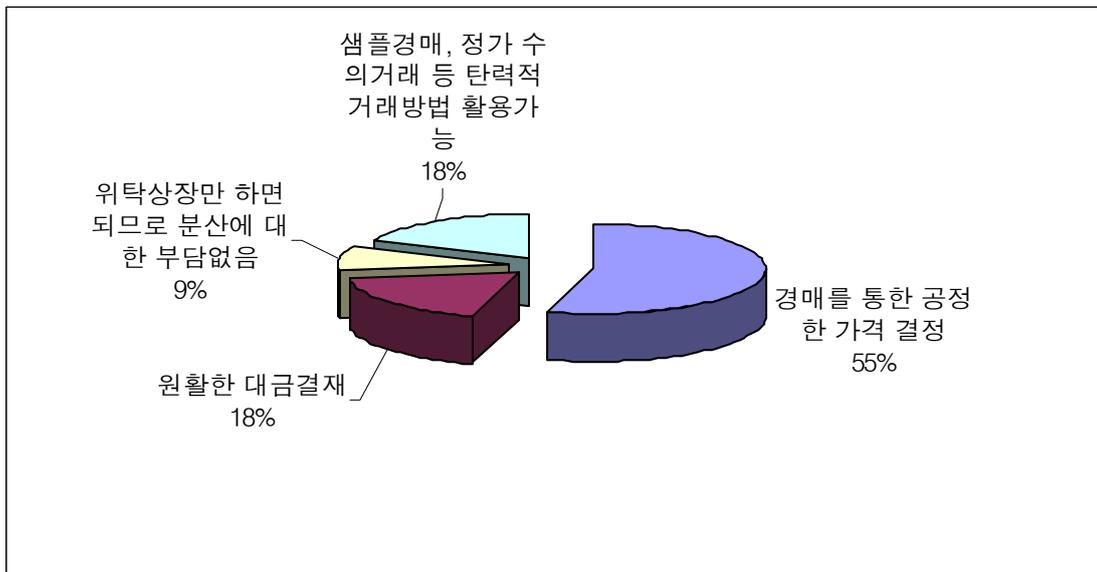
-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거래나 운영방법이 불투명하다”가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원양업체들이 아직 감천항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모르고 있으며, 현재 알고 있는 사실들은 거의 루머에 불과하여 아직 원양업체들에게 동 사업이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사료됨
- 기타 항목의 53%는 현재에도 원양어획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미 업자가 정해져 있어 도매시장을 경유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참치어업을 하는 업체의 경우 국내반입 물량이 극히 적을 뿐 아니라 반입물량의 경우 가공공장에 바로 입고되므로 도매시장이 필요 없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그림 5-16> 원양업체의 도매시장 상장을 거부한 이유

○ 경매제를 선택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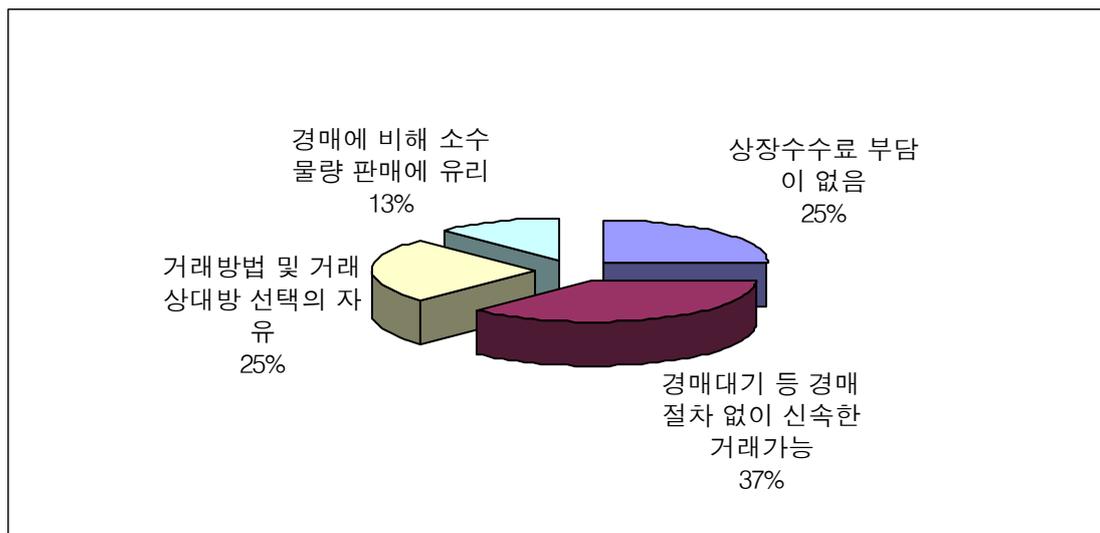
- 원양업체들이 경매제를 선택한 이유는 경매를 통해 공정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5%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는 원활한 대금결제와 샘플경매, 정가·수의거래 등 탄력적 거래방법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각각 18%로 나타났음



<그림 5-17> 원양업체에서 경매제를 선택한 이유

○ 시장도매인제를 선택한 이유

- 원양업체들이 시장도매인제를 선택한 이유는 경매대기 등 경매절차 없이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상장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의견과 거래방법 및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25%를 차지하였음



<그림 5-18> 원양업체에서 시장도매인제를 선택한 이유

나. 수입냉동물

○ 냉동물 수입업체 재조사 결과

-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98개사에 대한 재조사 결과, 상장을 희망한 업체는 11개사로 해양수산부 조사 시 희망했던 업체 7개사보다 4개사가 늘어났고 상장희망 물량은 34,744톤(41,256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이 물량은 부산시 통관 물량 75만톤의 4.6%에 불과하고, 98개 표본체의 수입물량 269,573톤의 12.9%를 차지함
- 시장도매인제 시행 시 상장의사를 묻는 설문으로 인해 해양수산부의 조사에서 나타난 상장희망 물량보다 2만여 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 수입냉동물의 감천항 수산물 도매시장 경유판매 의사

- 전체 98개사 중 참여 희망업체는 11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업체의 희망 물

량은 34,744톤임

- 전체 98개사 중 참여 희망업체 11개사를 제외한 87개사는 불참의사를 밝혔으며, 87개사 중 상황에 따라서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12개사에서 표명함
- 불참업체 중 조건부 의사를 밝힌 12개사는 연간 48,260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금액은 59,833백만원에 이룸

<표 5-12> 수입(냉동)수산물의 감천항 수산물 도매시장 경유판매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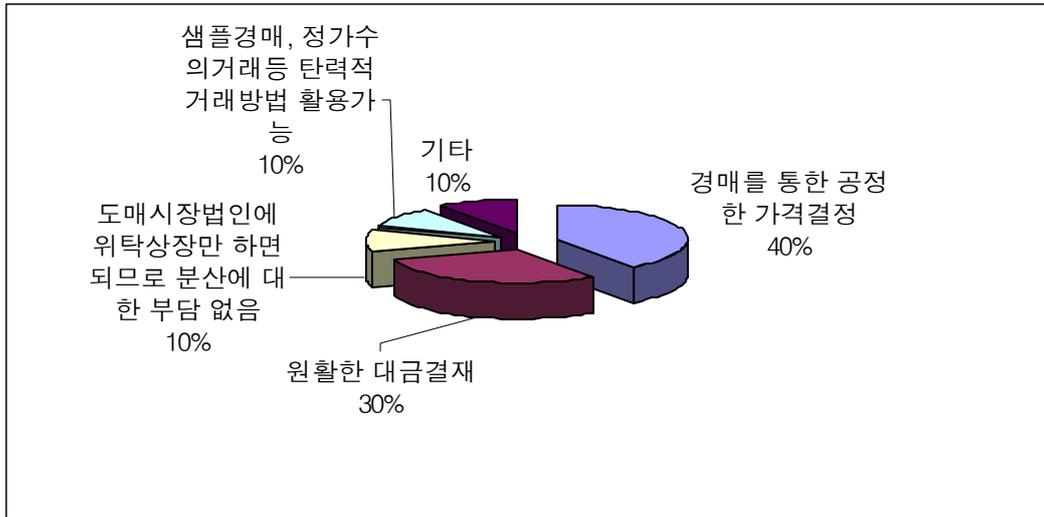
전 체	희망업체	불참업체
98개사	11개사(34,744톤)	87개사(12개사 조건부)

○ 조건부 의사를 밝힌 업체들의 입장

- 감천항 도매시장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도매시장 자체가 활성화 되어 품목에 따라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다면 도매시장을 경유해서 판매하겠다는 의사가 지배적임
- 시장도매인제를 설명하지만 지금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판매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에 대한 큰 잇점을 갖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의 유통방식보다 더 낫다는 확실한 대안이 나온다면 판매할 의사가 있다고 하고 있었음
- 수입업자들이 수입수산물을 통관하고 일본처럼 운반선이 들어가서 거래가 가능하다면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할 의사가 있음
- 도매시장 위탁시 우려되는 가격하락의 문제와 마진폭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까지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경매제가 도입가능할 지가 가장 의문이며, 도입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안을 보여준다면, 도매시장 유통을 통한 판매의 의사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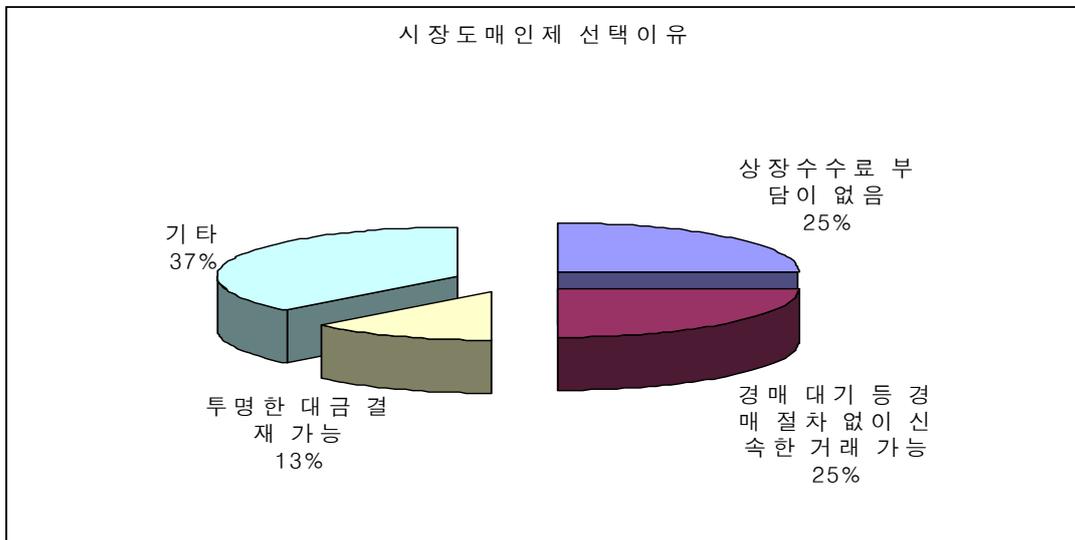
○ 희망업체 중 7개사는 시장도매인제를 채택할 때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3개사는 경매제를 채택할 때 도매시장을 경유를 희망하였고, 나머지 1개사는 시장도매인과 경매제의 혼합형일 때를 희망하였음

○ 경매제 선택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경매를 통한 공정한 가격결정이 40%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원활한 대금결제(30%)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19> 냉동물 수입업체에서 경매제를 선택한 이유

- 시장도매인제를 선택이유로 답한 희망업체의 경우 상장수수료 부담이 없다(25%)는 것과 경매대기 등 경매절차 없이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다(25%)는 점이 가장 주요한 시장도매인제 선택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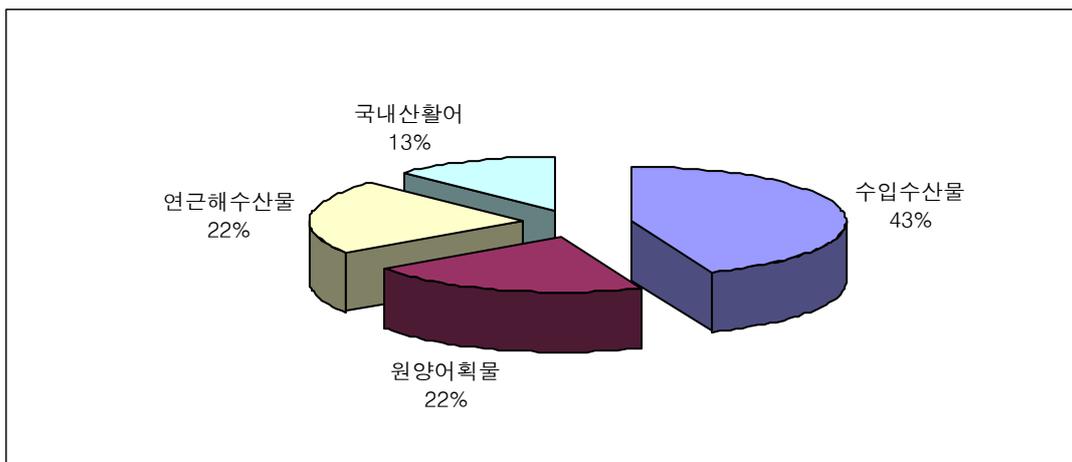
<그림 5-20> 수입업체(냉동)에서 시장도매인제를 선택한 이유

-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판매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희망이유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감천항 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은 거대한 시장으로 많은 전문 유통인들이 참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잇점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회사의 취급물량이 많아 판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나, 판매에 대해서는 일단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다. 수입선어

1) 도매시장 인지도

- 수산물 선어수입업체의 95%는 감천항에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5%만이 건립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되어야 할 대상 수산물에 대해서는
 - 수입수산물을 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근해 수산물과 원양어획물이 각각 22%, 국내산 활어를 취급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3% 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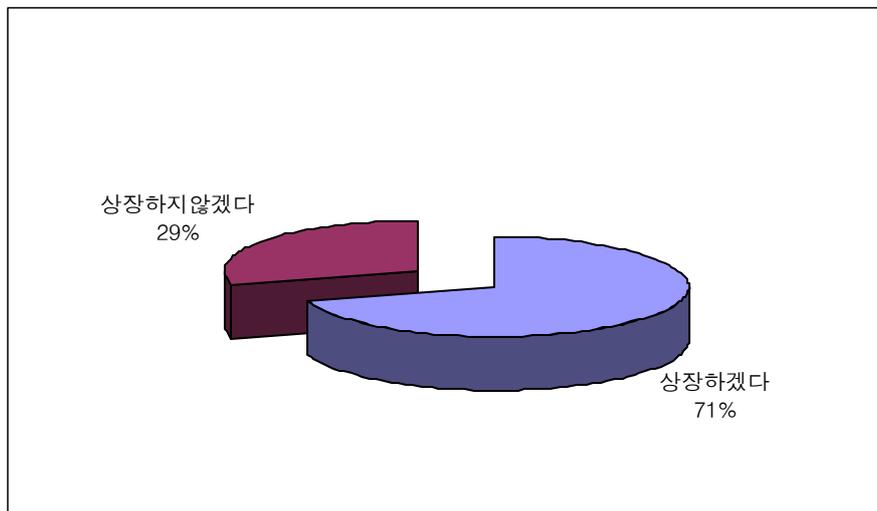
<그림 5-21> 선어 수입업체에서 선택한 감천시장의 취급수산물

- 선어수입업체들은 감천 수산물공영도매시장에서 수입수산물 중 선어를 취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85%로 가장 높았음
 - 반면 수입냉동품, 수입가공품, 기타를 취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를 차지하였음
 - 아울러 외국인 선단에 의한 직접적인 물량판매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되어야 할 대상 수산물로 수입수산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 연근해 수산물은 공동어시장 등 다른 판매처가 있다는 의견이 75%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연근해 및 원양수산물의 양륙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8.7%로 나타났음
 - 반면 원양어획물의 경우 전용부두에서 별도로 양육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을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6.3%로 나타났음
-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연근해어획물도 함께 상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1%로 가장 많았으며, 수입 및 원양수산물만으로도 정상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23.5%로 조사되었음

2) 도매시장 상장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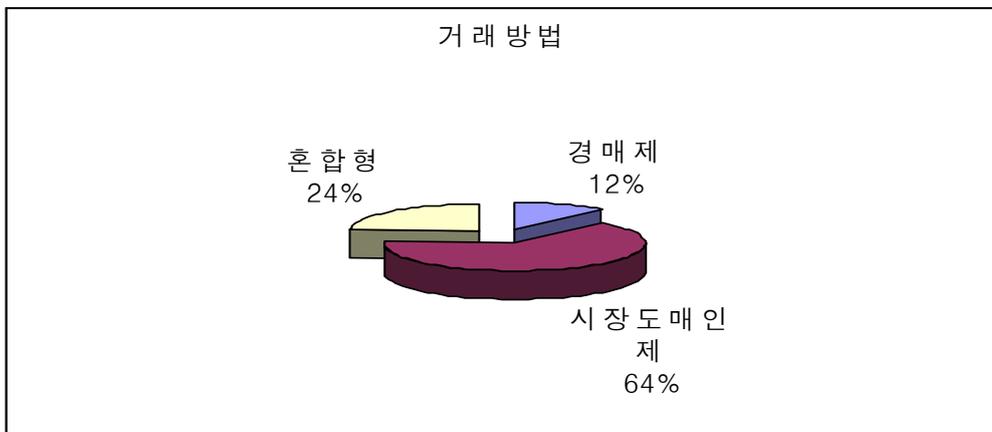
- 조사대상 중 71%는 감천항에 도매시장 개설 시 수입수산물(전부 또는 일부)을 상장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장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29%로 나타났다



<그림 5-22> 선어 수입업체의 도매시장 상장의사

- 수입수산물의 상장의사를 표시한 업체들(71%)의 2004년 총 수입물량은 25,147톤이며, 도매시장 개설시 상장예상물량은 17,990톤으로 나타났다
- 도매시장 개설 시 “상장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이유로서
- 도매시장이 수수료 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으며,

- 도매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나 결제기능이 불확실하기 때문이 25%
- 거래나 운영방법 등이 아직 불확실해 결정이 곤란하다는 의견과 감천도매시장이 물류비용과 도로문제 등 물류효율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각각 12.5%로 나타났음
- “상장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업체 중 원하는 조건이나 지원이 갖추어진다면 상장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85.7%였고, 조건이나 지원이 갖추어져도 상장하지 않겠다고 의사 표시한 업체는 14.3%인 것으로 나타났음
- 조건부 상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업체의 상장을 위한 조건으로는
 - 원활한 대금결제가 가장 많은 30.7%를 차지하고 있으며,
 - 그 다음으로 저렴한 상장수수료 및 거래비용, 하역 등 비용 절감, 상장 및 거래방법의 탄력성,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유통주체 유치 등이 중요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 조건부 상장 의사를 밝힌 업체의 2004년 총수입물량은 3,615톤이며, 이 중 50.2%인 1,814톤을 상장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할 경우, 어떤 거래방법을 선호하는 지에 대한 조사에서 대상 선어수입업체의 64%는 시장도매인제를 선호하였으며, 경매제를 선호하는 업체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혼합한 혼합형을 선호한 업체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23> 수입업체(선어)의 거래방법 선호도

- 선어수입업체들이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할 경우, 경매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경매를 통한 공정한 가격결정과 원활한 대금결제가 각각 36.4%, 36.4%로 가장 많았으며,
 - 그 다음으로 샘플경매, 정가·수의거래 등 탄력적 거래방법의 활용 가능성 때문에 경매제를 선호한다는 업체는 27.2%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각 설문별 우선순위는 경매를 통한 공정한 가격 결정 때문에 경매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1순위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원활한 대금결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선어수입업체들이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할 경우, 시장도매인제를 선호한 이유로는 상장수수료 부담이 없고, 경매대기 등 경매절차 없이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각각 17.5%,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상장수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3) 기타 의견

-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 기타 건의하고 싶거나 애로 및 건의사항
- 운영방안으로서 다음의 5가지를 지적하였음
 - 현재 선어수입 종사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개장 이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먼저 장단점 파악 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도매시장의 운영에 관련된 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물량 상장의사를 정확히 밝힐 수 있음
 - 현행의 탐해운 및 진해해운의 역할을 모두 흡수하여 수입선어의 총괄창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수입수산물 유통은 수입업자 스스로 유통하여야 상장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됨
- 홍보와 관련하여서는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현재 정부차원의 홍보가 없이 소문에만 의존하고 있어 확실한 홍보가 필요함
- 기타사항으로서 선어수입업체에 할당할 수 있는 공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도로여건과 상장수수료, 물품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수입수산물의 검역, 통관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함

2. 조사결과의 종합

- 원양업체의 도매시장 경유 판매희망 물량은 20,721톤으로 조사되었으며, 경매제를 채택할 경우, 8,669톤을 시장도매인제를 채택할 경우, 12,052톤을 도매시장을 통해 판매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선어수입업체의 도매시장 상장의사를 표시한 업체들(71%)의 2004년 총 수입물량은 25,147톤이며, 도매시장 개설시 상장희망물량은 17,990톤으로 나타났음
- 냉동수산물 수입업체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98개사(부산시 통관 물량의 38%)를 재조사한 결과, 도매시장 상장을 희망한 업체는 11개사로 해양수산부 조사 시 희망했던 업체 7개사보다 4개사가 늘어났고 상장희망 물량은 34,744톤(41,256백만원)으로 늘어났음
- 그런데 원양생산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러한 수치는 표본조사 결과이므로 부산지역 반입물량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여 상장희망 물량을 추정하였음

상장희망 물량 추정방식

- 부산지역 반입물량 합계(A)
- 설문조사 대상업체의 생산 및 수입물량(B)
- 설문조사 대상업체의 상장희망 물량(C)
- 환산율(A/B)
- 상장추정량 : $A/B \times C$

- 한편 조건부 또는 상장유보업체의 상장물량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추정하되,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전량 상장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조건부 상장물량 추정치의 20%, 40%, 60%, 80% 및 100% 상장하는 것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였음

- 마지막으로 원양수산물 및 수입수산물의 무조건상장 물량추정치, 조건부상장의 시나리오별 상장물량 추정치 및 육상반입량 추정치를 합하면 공영수산물 도매 시장에 있어서의 상장물량 합계가 되는데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표 5-13>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 상장물량 합계

(단위: 톤)

구 분		합 계	원양수산물	수입냉동물	수입선어	육상반입량
무조건 상장		180,180	20,721	96,664	21,055	41,740
조 건 부 상 장	20% 상장	237,980	51,242	123,518	21,480	41,740
	40% 상장	295,779	81,763	150,371	21,905	41,740
	60% 상장	354,577	113,283	177,225	22,329	41,740
	80% 상장	411,376	142,804	204,078	22,754	41,740
	전량 상장	469,176	173,325	230,932	23,179	41,740

제3절 반입물량에 따른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손익변동 분석

1. 분석방법과 전제

- 본 절에서는 앞에서 추정한 감천공영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상장물량을 기초로 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손익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를 다음과 같은 단계별로 분석하였음
 - 1단계: 수입 및 원양업체들의 무조건 상장 물량과 육상반입량을 합한 물량의 거래를 통해 도매시장이 내구연수 기간 중에 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분석함
 - 2단계: 1단계에서 내구연수 기간 내 수지균형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유보 및 조건부 상장물량과 육상반입량을 합한 물량의 거래를 통해 도매시장이 내구연수 기간 중 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분석함
 - 3단계: 2단계에서도 수지균형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조건부/유보물량과 육상반입량 및 연근해 수산물까지 합한 물량의 거래를 통해 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분석함



<그림 5-24>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손익 분석 흐름도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손익분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비용항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었음
 - 변동비는 취급물량이 따라 증가하는 비용을 의미함
 - 고정비는 생산량 즉 반입 거래량에 관계없이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함
 - 따라서 고정비(F), 단위당 변동비(e), 단위당 판매가(p), 판매수량(N)이라고 할때 경영정상화 또는 수지균형 달성 시점은 $Np - Ne - F = 0$ 이 되는 시점을 의미함
- 본 손익분석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가정함
 - 첫째, 감천공영도매시장의 개장은 2008년이며 도매시장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인 건물의 내용연수인 40년을 적용하였음. 단, 연근해 수산물을 위관하는(제3단계 분석에서는) 2008년 개장 이후 2011년까지 제 2도매시장 건설 기간으로 설정하였고, 도매시장에 물량이 반입되는 것으로 보았음
 - 둘째,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부산시)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특성 상 다수의 수혜자가 발생하는 공공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환(상환일 경우에는 국고채 할인율인 7.5%와 5.0%를 적용)과 비상환의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함
 - 셋째, 본 보고서에서 이용한 비용항목은 인건비, 일반경비, 감가상각비, 법인세로서 감가상각비는 도매시장의 상장물량(거래량)과는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인건비, 일반경비, 법인세는 변동비로 구분하였는데, 수입수산물의 반입 추정량과 원양어획물의 반입 추정량은 2008년부터 일정하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변동비의 변동은 사실상 연별로 발생하지 않고 도매시장 물량 변화에 의해 변동하게 됨
 - 다섯째, 시장사용료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에 대해 0.5%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대 0.5%를 시장사용료로 적용하였음

2. 상장 희망 물량에 따른 손익분석 결과(제1단계)

가. 연도별 수입

1) 추정방법

-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총 수입은 시장사용료, 주차료, 시설사용료, 임차료를 합하여 구하였음
- 시장 사용료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도매시장 상장물량은 수입수산물, 원양어획물, 육상반입량의 합계임
- 수입수산물은 다시 선어와 냉동수산물로 나누어 추정하였고, 원양어획물과 육상반입량은 앞에서 추정한 물량을 사용하였음

2) 시장사용료

- 감천 공영도매시장이 상장 희망물량 만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시장사용료 수입은 결국 수입수산물, 원양어획물, 육상반입량의 상장물량에 의해 결정됨
 - 수입 신선·냉장 및 냉동수산물의 평균단가는 2004년의 평균 수입단가를, 원양어획물은 국내 원양어획물의 2000~2004년 평균단가를, 육상반입량에 대한 단가는 국내 소비지 도매시장의 2002~2004년의 3년 간 평균 단가를 적용하였음
 - 이를 시장사용료율 0.5%를 이용하여 추정하면, 시장사용료 수입은 2008년부터 매년 1,970백만 원이 됨

<산 출 식>

$$\text{시장사용료} = \{ \text{냉동수산물 수입량 (kg)} \times 1,759 \text{원/kg} + (\text{신선냉장 수산물 수입량 (kg)} \times 2,770 \text{원/kg}) + (\text{육상반입량 (kg)} \times 3,168 \text{원/kg}) + (\text{원양반입량 (kg)} \times 1,613 \text{원/kg}) \} \times 0.005$$

3) 임대수입

- 임대수입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의 1㎡ 당 월 보증금 10,445원에다 감천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장동의 임대 공간인 11,144㎡을 곱하여 추정하였음
 - 또한 도매시장 건설 시 계획이 70만 톤 규모를 산정하고 있는데, 상장 희망 물량은 70만 톤의 26%인 약 18만 톤이므로 임대수입은 총 임대면적의 26%만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음
 - 따라서 감천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임대료는 2008년부터 매년 363백만 원의 임대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됨

<산 출 식>

$$\text{임대료 수입} = 11,144 \text{ m}^2 \times 10,445 \text{ 원} \times 12 \text{ 개월} \times 0.26$$

4) 주차장 수입

- 주차장 수입의 경우도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의 경우를 적용하여 시장입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480,000원/연으로 산정하였으며, 시장이용자를 대상으로 500원/10분으로 초기 30분 무료에 총 300일 동안 연간 1시간 이용으로 상정함
 - 이 역시 감천도매시장의 설계 규모에 대한 상장 희망 물량의 비율인 26%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 따라서 감천 공영도매시장의 주차장 이용료 수입은 2008년부터 매년 128,640천 원, 시장이용자는 매년 98,631천 원으로서 이들을 합하면 매년 227백만 원으로 추정됨

<산 출 식>

$$\text{주차장 수입} = \text{시장입주자 주차수입} + \text{시장이용자 주차수입}$$

$$\text{시장입주자 주차수입} : 824 \text{ 대} \times 0.26 \times 480,000 \text{ 원}$$

$$\text{시장이용자 주차수입} : (1,667 \text{ 대} - 824 \text{ 대}) \times 0.26 \times 300 \text{ 일} \times 1,500 \text{ 원}$$

5) 시설(냉동냉장창고)사용료

- 시설사용료는 감천 공영도매시장 내에 시설될 냉동냉장창고(20,395㎡=6,169평)를 기준으로 추정하였고, 연간 평당 1,200천원을 단위이용료로 하여 추정하였음
- 이때 냉동냉장창고의 가동률을 감천도매시장 설계 규모 대비 상장 희망 비율은 26%를 고려하였는데, 신선·냉장 등 냉동·냉장이 요구되지 않는 물량을 감안하여 가동률을 20% 기준으로 산정함
- 따라서 시설사용료는 2008년부터 매년 1,481백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산 출 식>

$$\text{시설사용료} = 6,169(\text{평}) \times 0.2 \times 1,200(\text{천 원/연})$$

6) 총 수입

- 따라서 감천 공영 수산물도매시장의 연간 총수입은 시장사용료+임대수입+주차료+시설사용료로서 매년 4,041백만 원으로 추정됨

<표 5-14>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연도별 수입 추정 결과(제1단계)

(단위 : 백만 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008	~	2048
총수입	영업수입	시장사용료	1,970	~	1,970
		주차료	227	~	227
		시설사용료	1,481	~	1,481
	영업외수입	임대료 수입	363	~	363
	합 계			4,041	~

나. 연도별 비용

1) 추정방법

-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의 2004년도 수입·지출자료를 내역을 근거로 작성하였는데 인건비, 일반경비, 감가상각비가 주요 항목임

2) 인건비 추정

- 인건비 추정은 가락동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인원인 348명(정규직 303명, 계약직 45명)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의 반입량은 전체 반입량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348명의 33%인 115명을 감천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사무소의 인원으로 추정함
 - 115명 가운데 정규직 인원은 가락동 시장의 경우를 고려해 100명으로 추정하였고, 계약직은 15명으로 추정하였음
 -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경우 대졸 초임인 2,500만 원/연, 계약직은 1,200만 원/연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가락동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기준임
- 또한, 상장희망물량의 경우는 1단계에서 18만 톤(감천도매시장 설계 규모의 26%)에 불과하므로 관리사무소 유지에 필요한 절대 인원수를 감안하여 정규직과 계약직의 50%만을 적용하였음
 - 따라서 계약직의 인건비는 2008년부터 매년 96백만 원, 정규직 인건비는 2008년부터 매년 1,250백만 원으로서, 총인건비는 매년 1,346백만 원으로 추정됨

<산출식>

총인건비 : 정규직 인건비 + 계약직 인건비

정규직 인건비 : $(100\text{명} \times 0.5) \times 25\text{백만 원}$

계약직 인건비 : $(115\text{명} \times 0.5) \times 12\text{백만 원}$

3) 일반경비 추정

- 일반경비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비용구조를 적용하여 총수입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따라서 일반경비는, 2008년부터 매년 808백만 원으로 추정됨

<산 출 식>

일반경비: 총수입 × 0.2 = 4,041(백만 원) × 0.2

4) 감가상각비 추정

-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는 앞에서 가정한 대로 40년으로 보았는데, 도매시장은 건물이므로 정액법에 따라 시설투자비를 40년으로 나눈 값을 매년 비용을 적용함
 - 그러나 매립비용 등 토목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전체 총 투자비용인 452억 원은 1,995억 원에서 제외함
 -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매년 3,858백만 원으로 추정됨

<산 출 식>

감가상각비: (199,500백만 원 - 45,200백만 원) ÷ 40년

5) 총비용의 추정

- 총비용은 인건비 + 일반경비 + 감가상각비로서 2008년부터 매년 6,012백만 원으로 추정됨

<표 5-15>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연도별 비용 추정 결과(제1단계)

(단위 : 백만 원)				
대분류	소분류	2008	~	2048
총비용	인건비	1,346	~	1,346
	일반 경비	808	~	808
	감가상각비	3,858	~	3,858
	합 계	6,011	~	6,011

다. 손익(법인세 부과 전)

- 법인세 부과 전의 수익은 2008년부터 △1,970백만 원으로 추정됨
- 법인세의 추정은 2005년 이후부터 연간 1억 원 이상의 매출기업의 경우 27%의 법인세를 적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0.27을 곱하여 구할 수 있으나, 법인세 부과 전의 경영수지가 적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음

라. 손익분석 결과

- 상장희망물량을 기준으로 손익분석을 한 결과 법인세 부과 이전의 경영수지가 적자로 나타나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용연수 40년 내에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앞의 손익분석 흐름도에 따라서 제2단계인 조건부/유보 물량을 기준으로 손익분석을 시도하되 제2단계 분석에서는 연근해 수산물은 포함되지 않음

3. 조건부/유보 물량 상장시 손익분석결과(제2단계)

가. 연도별 수입

1) 추정방법

- 도매시장의 총 수입은 시장사용료, 주차료, 시설사용료, 임차료를 합하여 구하였고, 이들을 계산하기 위한 도매시장 상장물량은 수입수산물, 원양어획물, 육상반입량의 합계임
- 이때 수입수산물의 도매시장 상장물량은 선어와 냉동 수산물로 나누어 추정하였는데 냉동 수입수산물의 조건부/유보 최대 물량은 연간 469,176톤으로 추정되었음
- 그런데 조건부 및 유보물량을 전량 상장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것은 20~100% 상장하는 것으로 5개 시나리오로 나누어 설정하고 이에 따른 손익을 분석함

2) 시장사용료

- 감천 공영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는 1단계 분석과 같이 결국 수입수산물, 원양어획물, 육상반입량의 상장물량에 의해 결정됨
- 수입 신선·냉장 및 냉동 수산물의 평균 단가는 2004년의 평균 단가, 원양어획물은 국내 원양어획물의 2000~2004년 평균판매단가, 육상반입량에 대한 단가는 국내 소비지 도매시장의 2002~2004년의 3년 간 평균 단가를 적용하였음
- 이를 시장사용료 0.5%를 곱하면, 시장사용료 수입은 2008년부터 매년 4,808백만 원으로 추정됨

<산 출 식>

$$\text{시장사용료} = \{\text{냉동수산물 수입량 (kg)} \times 1,759 \text{원/kg} + (\text{신선냉장 수산물 수입량(kg)} \times 2,770 \text{원/kg} + \text{육상반입량(kg)} \times 3,168 \text{원/kg}) + (\text{원양반입량(kg)} \times 1,613 \text{원/kg})\} \times 0.005$$

-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조건부/유보물량의 시나리오별 시장사용료를 다시 산정하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표 5-16> 2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시장사용료 산정결과

(단위: 백만 원)

상장물량 비율	시장사용료 수입
100%	4,411
80%	3,923
60%	3,442
40%	2,946
20%	2,458

3) 임대수입

- 각 상장비율의 물량을 감천도매시장 건설 규모에 대비하여 임대료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17>과 같음

<산 출 식>

임대료 수입 = 11,144m²×10,445원×12개월×조건부 유보물량 비중에 따른 임대율

<표 5-17> 2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임대료 수입 산정결과

(단위: 백만 원)

상장물량 비율	임대료 수입
100%	936
80%	821
60%	707
40%	590
20%	475

4) 주차장 수입

- 주차장 수입은 제1단계의 산출식과 비슷하나 조건부/유보 물량 비중에 따른 주차 대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표 5-18>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음

<산 출 식>	
주차장 수입 = 시장입주자 주차수입 + 시장이용자 주차수입	
시장입주자 주차수입 : 824대×0.26×480,000원	
시장이용자 주차수입 : (1,667대-824대)×0.26×300일×1,500원	

<표 5-18> 2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주차료 수입의 산정결과

(단위: 백만 원)

상장물량 비율	주차료 수입
100%	519
80%	455
60%	392
40%	327
20%	263

5) 시설(냉동냉장창고)사용료 수입

- 시설사용료도 기본적으로는 1단계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였음
- 따라서 냉동냉장창고의 시설 사용료는, <표 5-19>과 같음

<산 출 식>	
시설사용료: 6,169평 × 조건부 유보물량 비중에 따른 가동률 × 1,200천원/연	

<표 5-19> 2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시설사용료 수입의 산정결과

(단위: 백만 원)

상장물량 비율	가동률	시설사용료(매년)
100%	70%	5,182
80%	60%	4,442
60%	50%	3,701
40%	40%	2,961
20%	35%	2,591

5) 총 수입

- 감천 공영 수산물도매시장의 연간 총수입은 시장사용료+임대수입+주차료+시설사용료로서 <표 5-20>과 같이 추정됨

<표 5-20>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연도별 수입 추정 결과(제2단계)

(단위 : 백만 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008	~	2048	
총수입	영업수입	시장 사용료 수입	100%	4,411	~	4,411
			80%	3,923		3,923
			60%	3,442		3,442
			40%	2,946		2,946
			20%	2,458		2,458
		주차료 수입	100%	519	~	519
			80%	455		455
			60%	392		392
			40%	327		327
			20%	263		263
		시설 사용료 수입	100%	5,182	~	5,182
			80%	4,442		4,442
			60%	3,701		3,701
			40%	2,961		2,961
			20%	2,591		2,591
	영업외수입	임대료 수입	100%	936	~	936
			80%	821		821
			60%	707		707
			40%	590		590
			20%	475		475
	합 계		100%	11,049	~	11,049
			80%	9,641		9,641
			60%	8,244		8,244
			40%	6,825		6,825
			20%	5,787		5,787

나. 연도별 비용

1) 추정방법

- 제1단계 분석에서와 같으며 인건비, 일반경비, 감가상각비가 주요 항목임

2) 인건비의 추정

- 인건비 추정도 제1단계와 같으나
 - 조건부/유보 물량은 상장 가정에 따른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 인원 수도 이 물량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였음
 - 그러나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절대 인원 수를 고려하여 감청공영도매시장 건설 규모에 필요한 인원 수의 50% 이상만을 고려하였음
 - 이를 감안하여 조건부/유보 물량 비중의 인건비를 추정하면 <표 5-21>과 같음

<산출식>

총인건비 : 정규직 인건비 + 계약직 인건비

정규직 인건비 : (100명×조건부 물량 비중 따른 인원 수)×25백만 원

계약직 인건비 : (15명×조건부 물량 비중 따른 인원 수)×12백만 원

※ 단, 필요 인원의 50% 이하로 내려가지는 못함

<표 5-21> 2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인건비 산정결과

(단위 : 백만 원)

상장물량 비율	인원 수	인건비(매년)
100%	민간 : 11, 정규 : 71	1,978
80%	9, 62	1,720
60%	8, 54	1,500
40%	8, 50	1,396
20%	8, 50	1,396

2) 일반경비 추정

- 일반경비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비용구조를 적용하여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조건부/유보 물량의 비중에 따라 <표 5-22>와 같이 추정됨

<산 출 식>
 일반경비: 조건부 물량 비중에 따른 총수입 × 0.2

<표 5-22> 2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일반비용 산정결과

(단위 : 백만 원)

상장 물량 비율	일반비용(매년)
100%	2,210
80%	1,928
60%	1,649
40%	1,365
20%	1,157

3) 감가상각비 추정

- 감가상각비의 추정 방법과 결과는 제1단계와 같은데 매년 3,858백만 원으로 추정됨

4) 총비용의 추정

- 총비용은 인건비 + 일반경비 + 감가상각비로서 조건부/유보 물량의 비중에 따라 <표 5-23>과 같이 나타남

<산 출 식>
 총비용: 인건비 + 일반경비 + 감가상각비

<표 5-23>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연도별 비용 추정 결과(제2단계)

(단위 : 백만 원)

대분류	소분류		2008	~	2048
총비용	인건비	100%	1,978	~	1,978
		80%	1,720		1,720
		60%	1,500		1,500
		40%	1,396		1,396
		20%	1,396		1,396
	일반 경비	100%	2,210	~	2,210
		80%	1,928		1,928
		60%	1,649		1,649
		40%	1,365		1,365
		20%	1,157		1,157
	감가상각비		3,858	~	3,858
	합계	100%	8,045	~	8,045
		80%	7,506		7,506
		60%	7,006		7,006
		40%	6,618		6,618
20%		6,411	6,411		

다. 법인세 부과 전 손익

○ 법인세 부과 전의 수익은 <표 5-24>과 같음

<산 출 식>
법인세 부과 전 손익: 총수입 - 총비용

<표 5-24>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세 부과 전 손익(제2단계)

(단위 : 백만 원)

상장비율	총수익(매년)	총비용(매년)	법인세 부과 전 손익(매년)
100%	11,049	8,045	3,003
80%	9,641	7,506	2,135
60%	8,244	7,006	1,237
40%	6,825	6,618	206
20%	5,787	6,411	△ 624

라. 법인세 부과 후 손익

- 2005년 이후부터 연간 1억 원 이상의 매출기업의 경우 27%의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할 경우, 법인세 부과 후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부터 매년 <표 5-25>와 같음

<산 출 식>	
법인세 부과 후 손익 : 법인세 부과 전 손익 × 0.27	

<표 5-25>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세 부과 후 손익(제2단계)

(단위 : 백만 원)

상장비율	법인세 부과 전 손익(매년)	법인세 부과 후 손익(매년)
100%	3,003	2,192
80%	2,135	1,559
60%	1,237	903
40%	206	151
20%	△ 624	-

마. 손익 분석 결과

- 조건부/유보의 물량을 비중별로 손익 분석을 한 결과, 법인세 부과 이후의 당기순이익(법인세 부과 후 손익)은 <표 5-26>과 같이 추정되었음
- 그러나 초기투자비용인 1,995억 원에 대한 상환을 할 것인가의 그리고, 그 이자율을 얼마나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임
 - 우선 공공사업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 투자의 사회적 할인율은 기금관리법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500억 원 이상의 공공투자사업시 예비타당성 할인율은 7.5%로 보고 있음. 한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국고채의 할인율은 약 5.0%임
 - 이 두 기준을 이용하여 순현재가치(NPV)를 산정한 후 이를 상환한다고 했을 때 다음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내구연수 4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자율을 7.5%와 5%로 가정한 경우 내구연수 40년 후에도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 이자율을 0%로 가정한 경우도 2008년 이후 내구연수 40년이 지난 2048년까지 원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6>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투자비용 상환시 미상환 누적액(제2단계)

(단위 : 백만 원)

조건부 물량 비중	이자율(할인율)	2008년	2012년	2048년
투자비		199,500	추가 투자 발생 없음	
조건부 20% 상장 시	7.5%	이미 이윤을 낼 수 없는 손익 구조임		
	5.0%			
	0.0%			
조건부 40% 상장 시	7.5%	199,349	265,551	3,562,890
	5.0%	199,349	241,661	1,385,229
	0.0%	199,349	198,747	193,827
조건부 60% 상장 시	7.5%	198,597	261,179	3,378,216
	5.0%	198,597	237,501	1,288,985
	0.0%	198,597	194,983	162,460
조건부 80% 상장 시	7.5%	197,941	257,373	3,217,510
	5.0%	197,941	233,881	1,205,232
	0.0%	197,941	191,707	135,559
조건부 100% 상장 시	7.5%	197,308	253,691	3,062,009
	5.0%	197,308	230,379	1,124,192
	0.0%	197,308	188,538	109,608

- 결론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인 1,995억 원에 대해서는 조건부 상장물량의 100% 상장 시에도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5-26> 참조), 시설비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개장 초년도인 2008년부터 <표 5-25>와 같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물론, 원금 상환을 제외한 이자 상환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각 비율별 조건부 상장에서 발생한 당기 순이익(법인세 삭감 후 이익)이 1,995억 원의 연이자인 150억 원(이자율 7.5%)과 100억(이자율 5%)을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제3단계 분석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원리 혹은 이자 상환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4. 조건부/유보 물량 및 연근해 어획물을 포함할 경우의 손익분석 결과(제3단계)

가. 연도별 수입

1) 추정방법

- 추정방법은 제1단계 및 제2단계의 경우와 같으나 연근해 어획물에 대해서는 상장 희망 물량에서는 부산공동어시장 위판물량 26만 톤에 전량을 상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연근해 어획물 26만 톤을 반입하게 되면 현재의 건설 중인 도매시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근해 전용시장의 건설을 전제로 해야 함
 - 그러나 연근해 전용시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매립 및 도매시장동의 건설비 등이 추가되는데, 매립비 등의 토목공사비는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의 건설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연근해 어획물 취급에 필요한 추가시설 투자비용은 연근해 전용시장 건설에 따르는 직접비용으로 한정하며, 추정한 결과 358억 원으로 나타났음
 - 연근해 전용시장의 추가 건설은 2008년 현재 공사 중인 도매시장 개장과 함께 4년간의 매립, 건설 공정을 거쳐 2012년에 개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근해 어획물의 도매시장 반입은 2012년부터 전량 반입되며 그 이전에는 반입이 없는 것으로 가정했음

2) 시장사용료

- 감천 공영도매시장이 연근해 어획물을 포함하여 수입 및 원양 수산물의 희망 및 조건부/유보 물량으로 운영된다고 가정하면, 시장사용료 수입은 수입수산물, 원양어획물, 육상반입량, 연근해 어획물의 상장물량에 의해 결정됨
- 따라서 수입 신선·냉장 및 냉동 수산물의 2004년의 평균 수입단가, 원양 어획물은 국내 원양어획물의 2000~2004년 평균 판매단가, 육상반입량의 소비지

도매시장의 2002~2004년의 3년 간 평균 단가, 연근해 어획물의 2002~2004년의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시장사용료를 추정하였음

- 이들 판매금액에서 시장사용료율 0.5%를 적용하여, 시장사용료 수입을 추정해 보면, <표 5-27>과 같음

<산 출 식>

$$\text{시장사용료} = \{ \text{냉동수산물 수입량 (kg)} \times 1,759 \text{원/kg} + (\text{신선냉장 수산물 수입량(kg)} \times 2,770 \text{원/kg}) + (\text{육상반입량(kg)} \times 3,168 \text{원/kg}) + (\text{원양반입량(kg)} \times 1,613 \text{원/kg}) + (\text{연근해어획물 (kg)} \times 1,276 \text{원/kg}) \} \times 0.005$$

<표 5-27> 3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시장사용료 산정결과

(단위: 백만 원)

상장비율	시장사용료	
	2008~2011	2012~2052
100%	4,411	6,070
80%	3,923	5,582
60%	3,442	5,101
40%	2,946	4,605
20%	2,458	4,117

3) 임대료 수입

- 임대수입은 2008년~2011년까지는 제2단계의 산정 방법과 같지만, 2012년에 연근해 어획물의 상장을 위한 제2도매시장동이 건설되므로, 이에 따른 임대료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게 됨
- 그러나 제1도매시장동에 있는 제반 임대 시설 중에서 제2도매시장에서 필요없는 직판장과 특산품 판매장 등을 제외한 임대료로 산정하였음
- 이에 따른 결과는 <표 5-28>과 같음

<표 5-28> 3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임대료 수입의 산정결과

(단위: 백만 원)

상장비율	임대료 수입	
	2008~2011	2012~2052
100%	936	2,318
80%	821	2,225
60%	707	2,049
40%	590	1,831
20%	475	1,646

4) 주차료 수입

- 주차장 수입의 산출식은 제2단계와 같으나, 2012년부터 연근해 어획물의 상장으로 인해 반입물량의 증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중을 고려하였음
- 따라서 주차료 수입은 <표 5-29>와 같이 나타났음

<표 5-29> 3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주차료 수입의 산정결과

(단위: 백만 원)

상장비율	주차료 수입	
	2008~2011	2012~2052
100%	519	775
80%	455	744
60%	392	655
40%	327	517
20%	263	367

5) 시설(냉동냉장창고)사용료

- 시설사용료는 제2단계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했음. 이때 연근해 어획물이 반입되지 않는 2008~2011년 사이에는 냉동냉장창고의 가동률을 조건부/유보 물량의 상장 비율에 따라 가정하였음
- 또한 연근해 어획물이 반입되는 2012년부터는 연근해어획물의 상장을 고려하여 냉동냉장창고의 가동률을 제고하였음

- 따라서 냉동냉장창고의 시설 사용료는, <표 5-30>과 같음

<산 출 식>

시설사용료: 6,169평 × 조건부 유보물량 비중에 따른 가동률 × 1,200천원/연

<표 5-30> 3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시설사용료 산정결과

(단위: 백만 원)

상장물량 비율	시설사용료			
	가동률	2008~2011(사용료)	가동률	2012~2052(사용료)
100%	70%	5,182	100%	7,403
80%	60%	4,442	96%	7,107
60%	50%	3,701	88%	6,514
40%	40%	2,961	79%	5,848
20%	35%	2,591	71%	5,256

6) 총 수입

- 감천 공영 수산물도매시장의 연간 총수입은 시장사용료+임대수입+주차료+시설사용료인데 이는 연근해 어획물의 반입이 없는 2008년~2011년과 연근해 어획물의 반입이 시작되는 2012년~2052년으로 구분됨(<표 5-31> 참조)

<산 출 식>

총수입 2008~2011년 : 시장사용료+임대료+주차료+시설사용료

총수입 2012년 이후 : 시장사용료(연근해 포함)+임대료+주차료+시설사용료(연근해 포함)

〈표 5-31〉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연도별 수입 추정 결과(제3단계)

(단위 : 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008	~	2012	~	2048~2052	
총 수입	영업 수입	시장 사용료 수입	100%	4,411	~	6,070	~	6,070
			80%	3,923		5,582		5,582
			60%	3,442		5,101		5,101
			40%	2,946		4,605		4,605
			20%	2,458		4,117		4,117
		주차료 수입	100%	519		775		775
			80%	455		744		744
			60%	392		655		655
			40%	327		517		517
			20%	263		367		367
		시설 사용료 수입	100%	5,182		7,403		7,403
			80%	4,442		7,107		7,107
			60%	3,701		6,514		6,514
			40%	2,961		5,848		5,848
			20%	2,591		5,256		5,256
	영업외 수입	임대료 수입	100%	936	2,318	2,318		
			80%	821	2,225	2,225		
			60%	707	2,049	2,049		
			40%	590	1,831	1,831		
			20%	475	1,646	1,646		
	합계	100%		11,049	16,566	16,566		
		80%		9,641	15,657	15,657		
		60%		8,244	14,310	14,310		
		40%		6,825	12,801	12,801		
		20%		5,787	11,385	11,385		

나. 연도별 비용

1) 추정방법

- 제2단계와 같으나 2012년에 연근해 수산물이 26만 톤 반입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른 제2도매시장동의 건설이 완공되며, 감가상각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됨

2) 인건비의 추정

- 추정방법은 제2단계와 같으며 2012년부터 연근해 어획물의 상장량에 따른 인원 충당을 상장물량비율에 근거해 산정하였음
- 따라서 2008~2011년의 인건비와 2012년 이후의 인건비는 <표 5-32>과 같이 추정되었음

<산 출 식>	
총인건비 : 정규직 인건비 + 계약직 인건비	
정규직 인건비 : (100명×물량의 상장 비율에 의한 인원비율)×25백만 원	
계약직 인건비 : (15명×물량의 상장 비율에 의한 인원비율)×12백만 원	
※2012년부터는 연근해 어획물의 상장을 감안하였음	
※절대 인원수를 감안하여 총인원의 50%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음	

<표 5-32> 2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인건비 산정결과

(단위 : 백만 원)

상장비율	인건비	
	2008~2011	2012~2052
100%	1,978	2,732
80%	1,720	2,682
60%	1,500	2,582
40%	1,386	2,242
20%	1,386	2,022

3) 일반경비 추정

- 일반경비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비용구조를 적용하여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했는데 연근해 어획물의 반입이 시작되는 2012년을 기준으로 2008~2011년과 2012~2052년으로 구분하고, 조건부/유보 물량의 상장비율을 고려하였음(<표 5-33> 참조)

<산 출 식>

일반경비(2008~2011)= 수입 × 0.2

일반경비(2012~)= 수입 × 0.2

<표 5-33> 2단계 시나리오별 상장물량에 따른 일반비용 산정결과

(단위 : 백만 원)

상장비율	일반비용	
	2008~2011	2012~2052
100%	2,210	3,313
80%	1,928	3,131
60%	1,649	2,862
40%	1,365	2,560
20%	1,157	2,277

4) 감가상각비 추정

- 감가상각비 추정액은 표와 같은데, 2008년부터 시작되는 3,858백만 원은 초기 투자비용 중 매립비용을 제외한 154,300백만 원을 정액법으로서 내구연수인 40년으로 나눈 것임

<표 5-34>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연도별 수입 추정 결과(제3단계)

(단위 : 백만 원)

연도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제1도매시장동)	연근해 전용시장 (제2도매시장동)	합계
2008	3,858	:	3,858
:	:	:	:
2012	3,858	895	4,753
2048	3,858	895	4,753
2049	:	895	895
:	:	:	:
2052	:	895	895

- 그리고 연근해 상장을 위한 제2도매시장동의 감가상각비인 895백만 원은 연근해 전용시장의 추가 시설 투자비용인 35,800백만 원을 정액법에 따라 내구연수 40년으로 나눈 것임
- 따라서, 연근해 어획물을 취급하게 되는 제3단계의 감가상각이 마감되는 해는 2052년으로 제1단계와 제2단계에 비해 약 4년이 늘어난 결과를 가져왔음(<표 5-34> 참조)

5) 총비용의 추정

- 총비용은 인건비 + 일반경비 + 감가상각비인데 감가상각비의 경우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며, 조건부/유보 물량의 상장 비율을 감안하여 <표 5-35>과 같이 추정되었음

<표 5-35>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연도별 비용 추정 결과(제3단계)

(단위 : 원/연)

대분류	소분류	2008~2011	2012~2048	2048~2052	
총비용	인건비	100%	1,978	2,732	2,732
		80%	1,720	2,682	2,682
		60%	1,500	2,582	2,582
		40%	1,386	2,242	2,242
		20%	1,386	2,022	2,022
	일반 경비	100%	2,210	3,313	3,313
		80%	1,928	3,131	3,131
		60%	1,649	2,862	2,862
		40%	1,365	2,560	2,560
		20%	1,157	2,277	2,277
	감가상각비		3,858	4,753	895
	합계	100%	8,045	10,798	6,940
		80%	7,506	10,566	6,708
		60%	7,006	10,197	6,339
		40%	6,618	9,555	5,697
		20%	6,410	9,052	5,194

다. 법인세 부과 전의 손익

○ 법인세 적용 전의 수익은 제2단계와 같으며 <표 5-32>와 같이 추정되었음

<표 5-36>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세 부과 전 손익

(단위 : 백만 원)

상장비율	법인세 부과 전의 손익		
	2008~2011	2012~2048	2049~2052
100%	3,003	5,768	9,625
80%	2,135	5,091	8,949
60%	1,237	4,114	7,971
40%	206	3,247	7,104
20%	△ 624	2,334	6,191

라. 법인세 부과 후의 손익

○ 법인세 적용 후의 손익은 제2단계와 같으며, <표 5-33>과 같이 추정되었음

<표 5-37>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세 부과 전 손익(제2단계)

(단위 : 백만 원)

상장비율	법인세 부과 후의 손익(27%)		
	2008~2011	2012~2048	2049~2052
100%	2,192	4,211	7,027
80%	1,559	3,717	6,533
60%	903	3,003	5,819
40%	151	2,370	5,186
20%	-	1,704	4,520

마. 손익 분석 결과

- 제3단계 분석에서 손익이 제1단계와 제2단계 분석과는 달리 연별 변동이 나타난 것은 연근해 전용시장 완공에 4년이 소요됨에 따라 시장사용료, 냉동·냉장 창고의 가동률, 주차료, 임대료, 필요 인원수, 일반경비, 감가상각비에서 연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
- 제3단계의 손익분석의 결과에서 보듯이, 연근해 어획물이 상장되기 전인 2008년~2011년에는 ‘조건부/유보 물량 비율 중에서 20%’의 경우 적자가 발생하고 연근해 어획물이 상장되는 2012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상장비율이 40~100%의 경우는 개장 초기년도부터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초기투자비용인 1,995억 원과 2012년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연근해 전용시장 건설비 358억 원에 대해 내구연수 내에 투자비용을 상환할 것인가의 여부, 이자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 따라서 이자율을 7.5%와 5%로 가정한 경우는 내구연수 종료 연도인 2052년까지 원리를 모두 상환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자율 0%로 가정하더라도 2048년까지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음(<표 5-34> 참조)
- 뿐만 아니라 이자율을 7.5%와 5.0%로 설정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연이자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그러나 조건부/유보 물량 100%를 가정으로 연이자율이 1.09% 이하로 설정되면, 2008년~2011년까지는 이자 부문은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 2012년~2048년까지는 제2도매시장 건설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이자가 부가되면서 연이자 1.78% 이하로 설정되면 이자가 상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후 2049년~2052년에는 2.9% 이하로 연이자 상정되면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38>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초기투자비용 상환(제3단계)

(단위 : 백만 원)

조건부 물량 비중	이자율(할인율)	2008년	2012년	2048년	2052년
투자비		199,500	35,800	추가 발생	투자 없음
조건부 20% 상장 시	7.5%	200,124	303,523	3,816,841	5,077,058
	5.0%	200,124	279,414	1,455,034	1,749,122
	0.0%	200,124	200,292	138,958	120,879
조건부 40% 상장 시	7.5%	199,349	299,132	3,646,356	3,846,340
	5.0%	199,349	275,242	1,367,012	1,639,259
	0.0%	199,349	196,528	111,205	90,461
조건부 60% 상장 시	7.5%	198,597	294,879	3,483,311	4,625,827
	5.0%	198,597	271,202	1,282,958	1,534,363
	0.0%	198,597	192,883	84,776	61,500
조건부 80% 상장 시	7.5%	197,941	291,015	3,312,032	4,394,896
	5.0%	197,941	297,523	1,193,246	1,422,240
	0.0%	197,941	189,549	55,746	29,615
조건부 100% 상장 시	7.5%	197,308	287,473	3,181,784	4,217,745
	5.0%	197,308	264,161	1,126,438	1,338,906
	0.0%	197,308	186,519	34,937	6,830

- 주 : 1) 초기개장 연도로 초기투자비용은 1,995억 원임.
 2) 연근해 물량 반입 시작, 연근해 전용시장 설비비용(358억 원) 감가상각이 시작됨.
 3) 2048년은 초기 투자비용인 1,995억 원의 내용연수 40년이 종료되는 연도임.
 4) 2052년은 2012년부터 시작된 연근해 전용시장의 시설 투자비용의 내용연수 40년이 종료되는 연도임.

5. 손익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 제1단계에서 제3단계에 걸친 결과를 정리하면, 제1단계의 상장 희망 물량만으로 도매시장이 운영될 경우에는 개장 초기연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2단계 분석에서는 조건부/유보 상장물량 20% 이하일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못하고, 40%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조건부/유보 상장 물량 40%, 60%, 80%, 100% 경우 개장 초기연도부터 흑자운영이 가능하나, 초기투자비용인 1,995억 원을 연리 7.5%(기금관리 규정)와 5.0%(국고채)로 상환할 경우에는 상환부담으로 인해 적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근해 어획물을 포함하는 제3단계 분석에서는 상장비율에 관계 없이 초기연도부터 흑자운영으로 나타났으나, 초기투자비용 및 연근해 전용시장의 시설투자비용은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장 초기연도부터 적자로 운영되는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의 조건부/유보 상장 물량 20%를 제외하고, 제2단계와 제3단계분석을 비교하면
 - 이자율 7.5% 적용 시(조건부/유보 상장 물량 100%의 경우)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2048년에 제2단계에서는 초기의 1,995억 원이 3조 412억 원으로 증가했고, 제3단계 분석에서는 약 3조 1,643억 원까지 증가했음. 제3단계의 경우는 2052년에 4조 1,944억 원까지 증가했음
 - 이자율 5% 적용 시(조건부/유보 물량 100%인 경우) 2048년에 제2단계 분석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인 1,995억 원이 약 1조 1,133억 원으로 늘어났고, 제3단계 분석에서는 약 1조 3억 원, 2052년에는 제3단계는 1조 3,303억 원까지 증가했음
 - 그러나 이자율을 0%로 가정하고 원금만을 상환하는 조건에서는(조건부/유보 물량 100%인 경우) 제2단계 분석의 경우 2048년에 초기 투자비용 1,995억 원 중 약 53%에 해당하는 1,061억 원이 상환하지 못한 채 남아있고
 - 제3단계 분석에서는 2048년에 339억 원, 2052년에 58억 원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시사점

- 앞의 분석에서 보듯이 시설투자비는 어떤 경우와 하더라도 상황이 불가능하고 이자율 적용 여부와 조건부 물량의 상장 정도에 따라 미상환 누적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임
- 그렇다고 하여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더 큰 손실을 야기하므로 현시점에서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본 연구에서 추정된 물량 이상으로 취급물량을 유치하는 것임
- 그러나 시설투자비 상환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양 및 수입수산물의 상장희망 물량과 육상반입량만으로는 도매시장 운영이 적자상태이나 여기에다 조건부 상장물량의 40% 수준 이상에서 상장한다면 (합계 295,749톤) 흑자로 반전되어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이상과 같은 원양 및 수입수산물 상장희망물량, 조건부 상장물량 및 육상반입량 외에 연근해 수산물까지 도매시장에 상장할 경우 전체적으로 흑자폭이 확대되어 연근해 수산물의 도매시장 건설은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런데 연근해 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부산공동어시장의 정리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부산공동어시장의 경우 시설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을 하거나 이전해야 할 상황에 있고
- 과거 노량진 수산물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마포의 수산물 재래시장을 정리하면서 재래시장의 상인을 중도매인으로 수용한 바 있으며, 구리시장의 경우도 청량리 시장의 상인을 중도매인으로 수용한 바 있음
- 따라서 현재 부산공동어시장이 처해 있는 현실과 새로운 도매시장의 재래시장 흡수 사례 등에 비추어 부산공동어시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6장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

- 여기에서는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크게 물량확보 방안과 운영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 물량확보방안에서는 설문조사결과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수입 및 냉동 수산물의 물량유치방안을 제시하였고, 연근해수산물유치를 위한 연근해 전용시장의 건설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가공 시설 및 자금 등의 지원방안을 정리하였음
- 운영방안에서는 관리 및 운영주체, 시장도매인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도매시장 개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도매시장업무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제1절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의 물량확보 방안

1. 수입 및 원양수산물 필요물량 확보 방안

가. 수입수산물

1) 외국 수출업체 대상 직접 홍보 및 유치

- 제5장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국내 수입업체들, 특히 냉동수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을 이들의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장의 개설로 인해 판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 수입업체를 시장도매인 등으로 도매시장의 운영주체로 유치하는 방안과 외국 수출업체 등이 직접 도매시장에 상장하게 하는 방안이 그것임

-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국내 수산물 수입업자들을 전부 도매시장의 주체로 영입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일부 자본력이 있는 업체를 영입하고
- 이들이 도매시장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외의 수출업자들에게 사업설명회나 외국 대형수출업자들과의 협약을 통해 물량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지향하는 국제적 수산물시장으로서의 위상에도 걸 맞는 사업추진 방향임
- 아울러 외국의 수출업체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렴한 수수료와 신속한 대금결제에 대한 신뢰, 수입통관 등에 대한 서비스 등임

2) 실적 및 자본력을 갖춘 유통주체의 유치

- 냉동 및 선어를 포함한 수입업자들이 직접 도매시장에 참여하여 활동할 경우 시장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따라서 합리적인 유통주체의 모집과 융통성 있는 거래방법의 채용, 각종 규제 완화, 지원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된다면 물량유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때 수입업자들, 원양어업자들, 연근해어업자들은 대상이 아니고 기존의 도매시장에서 활동하거나 장외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통주체 중에서 거래실적이 크거나 대량의 물량확보가 가능하고, 자본 확보가 용이한 업체들이 대상이 됨
- 유치방안으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기존업자를 중심으로 하되, 신규진입을 업자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물류중심시장이므로 외국자본도 유치대상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수입수산물의 직접 양륙 및 현장 검역 실시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부산이 수입항으로서 적지라는 점 이외에도 상당한 가공업체들이 입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수출업체들에게 매력적임
- 특히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도매시장은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수입수산물 검역 및 통관의 One-Stop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음

〈표 6-1〉 수입수산물 검역 및 통관의 One-Stop서비스 방안

구분	내용
검역	- 국립수산물검사원의 분원 유치 혹은 검사인원 파견
통관	- 도매시장에 세관원이 파견되어 통관절차 처리 - 필요서류는 도매시장에서 통관사를 고용하여 실비로 처리
휴일 검사 및 통관	- 토요일 등 휴일의 검사 및 통관 서비스 제공
정산	- 정산창구를 통하여 원활한 국제 정산체제 구축
편의	- 운반선 등의 어선원 등에 대한 편의서비스 제공(시장시설 활용) - 선박의 급유, 수리, 선수품 등 편의서비스 제공(각 업체와 연결)

4) 보세구역의 설치

- 감천 공영 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 혹은 수입되는 수산물의 외국 수출에 대비하여 거래 후 다시 외국에 수출되거나 인근의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를 통해 가공 수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불필요한 관세를 줄여 수출경쟁력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외국 가공업자나 수입업자가 동 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관세부담을 줄여 국제적 원료공급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대가 있으나 전체 거래량 중 일부만이 재수출되므로 보세구역의 설정이 바람직함
 - 이때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와 연계하여 보세용 냉동, 냉장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아울러 수산물 화물터미널의 설치도 필요함

나. 원양수산물

- 원양수산물은 기존의 유통업자들과 대형 원양업자들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어 도매시장의 상장이 곤란한 물량이 많음
 - 특히 참치의 경우는 시장에 반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 오징어의 경우는 중소 원양업체들이 대부분 상장의사를 가지고 있음

- 또한 해외트러업체들의 경우, 기존 판매방식이 어종을 분류하지 않고 어획량 전부를 판매하는 방식임
 - 따라서 도매시장에서 이를 수용하고, 시장 내부에서 선별, 분류,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참여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 원양업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원양어업협회 차원에서 전체 업체가 동참할 경우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유통주체를 선정하여, 공동사업으로서 도매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적극적인 홍보

- 사업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수산물유통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비해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와 호응도가 낮음
 - 국내는 물론 수입대상국에 대한 홍보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음
-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내적으로도 사업자체를 모르거나 실체가 무엇인지 몰라서 참여여부를 답하기 곤란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물량유치는 사업의 내용이 정해지고, 이를 홍보하는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인식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홍보는 부산시가 주관을 하되, 도매시장 개설준비위원회 등의 T/F를 구성하여 민관이 같이 참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표 6-2> 감천 공영도매시장의 홍보 방안

구분	내용	주체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사업에 대한 비전과 역할 등 내용으로 국내, 국외용으로 제작하여 관련업체, 시장 등에 배포	부산시
사업 홈페이지 제작	- 부산시 홈페이지, 각급 관공서, 기관 등에 연계 - 향후 시장홈페이지로 변경 활용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장점과 제공서비스에 대한 설명회 주기적 마련	개설준비 T/F
국제심포지엄의 개최	- 홍보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
각국 방문 홍보	- 각국의 주요 시장, 대형수산업체, 물류회사 등 대상	"

2. 연근해수산물 전용시장 건설 방안

- 수입 및 원양수산물만으로는 도매시장 시설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공사 중인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연근해 어획물의 양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부산공동어시장의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임
- 한편, 이 문제와는 별도로 부산공동어시장은 시설을 전면 보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 있고,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 동시에 기획된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도 공사 중인 공영도매시장 인근에 입지를 계획하고 있어
-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잡화부두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해면을 매립하여 연근해 수산물 전용시장과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 연근해 수산물 유통 주체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연근해수산물을 취급하는 방안으로는
 - 상권형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입과
 - 실적 있는 유통주체를 영입하여 연근해 수산물의 수집과 분산을 맡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연근해수산물을 취급조건을 검토해 보면, 부산지역의 경우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실질 경매를 실시하고 있고, 연근해 수산물의 특성상 산지에서는 경매가 적합하기 때문에 경매를 필수조건으로 함
 -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할 경우, 거래방법에 제한이 없으나 수의매매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실질 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기존 시장의 출하자들이 상장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대형 근해 업종일수록 가격 결정에 대한 어선원 노조의 감시가 심하므로 선주가 임의로 수의거래를 하기 곤란함
 - 현재 공동어시장에는 선어부문 108명, 활어부문 4명의 중도매인이 활동하고 있는데, 경매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모두 시장도매인으로 영입하는 수밖에 없어 곤란함
 - 결국, 농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매제가 잘 정착되어 있는 부산지역의 연근해

수산물 유통에 경매 이외의 다른 거래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반입되는 수산물의 유형에 따라 부산공동어시장과 경합 가능성이 있음
 - 연근해 수산물의 반입형태별로 육상반입과 기존 공동어시장 등에서 취급하는 물량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육상반입은 타 지역에서 1차 경매되거나 혹은 부산지역에 유입되는 물량이므로 경합의 여지가 거의 없음
 - 그러나 기존 공동어시장 등에서 취급하는 물량은 상호 경쟁적인 상황이 나타나므로 상대적으로 공동어시장이 불리해져 경영 상태의 악화를 가져옴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육상반입량은 충분히 취급가능하나, 만일 부산공동어시장이 무리한 경쟁 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무너진다면 부산지역의 연근해수산물을 취급할 주체가 사라짐
- 만일 부산공동어시장이 무너진다면, 어업인들의 피해는 물론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대량 어획되는 대중선어의 수급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 그러나 현재의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로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취급하는 물량을 전부 수용할 수 없고, 시설 보완으로도 전량 수용이 불가능하여 공동어시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시설을 건설하는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음
 - 첫째, 연근해 수산물의 취급은 육상반입만으로 한정하고, 공동어시장의 양륙물량은 취급하지 않는 방법
 - 둘째, 공동어시장의 양륙물량을 전량 수용하되, 시설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연근해 전용시장을 건설하는 방법
- 하지만,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선망이나 저인망류어업 등이 자의에 의해 양륙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경쟁상황이 발생함
- 따라서, “새로운 연근해 전용시장을 건설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공동어시장의 물량을 전량 취급할 경우의 운영주체는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이 있음
 - 1안 : 생산자단체 혹은 생산자단체 등의 연합체에서 도매법인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법
 - 2안 : 공동어시장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기존 형태로는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정리 후 도매법인으로 참여하는 방법

<표 6-3>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연근해 어획물 확보 주제 대안

대안	구분	대상	특징
I	- 생산자단체	- 수협중앙회 및 수협 - 기타 생산자 단체	- 연근해어획물의 생산자단체 수집 기능 활용 - 생산자단체의 투명성 및 공정성 도입
II	- 공동어시장	- 정리 후 도매법인으로 참여	- 기존 공동어시장의 상권 활용 - 거래기반 및 노하우 활용

<표 6-4> 연근해 어획물 확보 주제 대안의 장단점

대안	구분	장점	단점
I	생산자단체	- 기존의 거래기반 활용 - 생산자단체의 투명성 및 공정성 - 연근해 수산물 취급의 명분 - 각종 정부자금 투자 용이 - 거래규모가 크고 전국적	- 자본구조 취약성, 투자규모 축소 - 수집은 용이하나 분산기능이 취약 - 지역의 기존 시장과 경합 및 갈등
II	공동어시장	- 기존의 거래기반 유리 - 기존 거래 및 운영 노하우 보유 - 지역 내 경합 방지로 비용 감소	- 자본구조 취약성, 투자규모 축소 - 새로운 거래제도 도입 곤란 - 신규투자의 경직성 - 수집은 용이하나 분산기능 취약 - 기존 조직 내 갈등 상존

-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투자가 용이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법인 형성이 가능하지만 공동어시장과 경합될 수 있어 사실상 실현이 어려움
- 따라서 최적 대안으로서 II안(공동어시장)을 권장함

나. 공동어시장 정리방안

1) 필요성

-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반입물량 조사결과 및 손익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연근해어획물을 상당량 신설 도매시장에 반입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우나 적자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이와 같이 연근해어획물을 신설 도매시장에 반입코자 할 경우 부산공동어시장의 상장물량 감소가 불가피한데 이 경우 부산공동어시장은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부산공동어시장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양자 모두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부산공동어시장을 정리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 공동어시장의 시설이 크게 노후화되어 있어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시설보수가 필요한데 신설 도매시장을 활용하지 않고 노후시설을 보완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임

2) 제약요인

- 부산공동어시장의 정리(해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부산공동어시장의 정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
- 첫째, 부산공동어시장은 부산시수협, 경남정치망수협, 대형선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및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의 5개 수협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 주요 사안은 이들 수협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대형선망수협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및 부산시수협을 제외한 2개 수협에서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공동어시장의 배당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임

〈표 6-5〉 경남정치망수협 및 서남구기저수협의 수입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경남정치망수협	서남구기저수협
총수입(A)	54	29
공동어시장 운영조성금(B)	4.7	4.7
B/A	8.7	16.2

자료 : 부산공동어시장, 2004 결산보고서 및 수협중앙회, 2004 조합현황을 이용하여 작성

- 둘째, 현재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총 19,437평으로서 이중 공동어시장 소유 부지는 9,109평에 불과하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항만시설 부지가 9,067평, 그리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시유도로가 1,261평 임

〈표 6-6〉 부산공동어시장 시설부지 현황

(단위 : 평)

구 분	면 적	사용료	비 고
공동어시장 소유부지	9,109		
항만시설	기존시설	무 료	본 위판장 내
	연접시설	무 료	
	돌제부두	무 료	2기
	소 계		
시유도로	위판장	유 료	
	기 타	유 료	
	소 계		
합 계	19,437		

- 따라서 매각가능부지 9,109평을 매각하여 직원들의 퇴직금 등 법정적립금을 정산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많지 않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임.
 - 부지 매각대금 예상액(A)
 - 장부평가액 기준 : 63억원
 - 공시지가 기준 : 271억원(9,109평× 297만원)
 - 시가기준(추정) : 455억원(9,109평×500만원)

- 5개 수협 출자금(B) : 80억원(16억원×5개 수협)
 - 법정적립금(C) : 97억원
 - 부지매각대금 예상액(A)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앞에서 살펴본 3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공동어시장 정리 후의 잔액은 부지매각 대금 예상액에서(A) 5개 수협 출자금(B) 및 법정적립금(C)를 차감한 것으로서 94억원이 됨(271억원-80억원-97억원=94억원)
- 셋째, 현재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보장 여부와 항운노조와의 관계 문제임. 직원들 경우 신설 도매시장에서 희망자들을 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분쟁요인이 될 수 있고, 항운노조는 해산 후 도매시장 참여 자체에 큰 반발을 할 수 있음
- 2004년 말 현재 부산공동어시장의 인원은 정원110명 중 9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급별 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6-7〉 부산공동어시장의 인원현황(2004년말 현재)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합 계	110	97
회장	1	0
간부직	3	3
일반관리계	21	20
기술계	38	33
기능계	47	41

자료: 부산공동어시장

- 그런데 공동어시장이 해산할 경우 경매직 등 신설 도매시장에서 고용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가 하면 행정직이나 시설관리담당자 및 폐수처리기술자 등은 신설 도매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행정조직을 갖추고 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을 관리할 것인가에 따라 고용승계 여부가 불투명함으로써 이들은 당연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음

3) 추진방안

- 앞에서 제시한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정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첫째, 대형선망수협 및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및 부산시수협을 제외한 2개 수협의 동의 여부와 부지매각대금의 과소 문제는 본질적으로 분배금액 문제로 부산공동어시장이 신설되는 도매시장에 법인으로 참여 시 별도의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임
 - 경남정치망 수협 및 서남구기저수협의 경우 공동어시장에서 지원하는 운영조성금이 각각 총수입에서 8.7% 및 16.2%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어시장 정리 후 매년 5억원 가까운 수익원이 소멸되므로 정리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아울러 잔액 94억원에 대한 처리도 문제가 되는데 이 금액도 5개 수협에서 분배한다면 추후 도매시장 법인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자금확보가 쉽지 않을 것임
- 둘째, 근무직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희망자를 수용하도록 하고, 향운노조와의 분쟁가능성에 대해서는 향운노조의 상용화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운노조 관련 법안(항만인력 공급체계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 11월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항만인력공급체계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 주요 내용

- 향운노조가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을 갖고 있는 현행 인력공급체계를 바꾸어 사업자들이 직접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향운노조원들의 대규모 퇴직에 대비해 정부가 부족한 퇴직금을 융자해 주고 조기 퇴직자들에 대해 생계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다. 연근해 수산물 전용시장 건설방안

- 연근해 전용시장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연근해와 수입 및 원양수산물을 모두 취급하기에는 접안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의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의 부지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의 접안시설로는 공동어시장에 위판하는 연근해어선 전량을 소화하기 힘들며, 원양어선과의 동시 접안은 무리가 있음
 - 원양어선을 기준으로 축조한 접안선의 높이도 연근해 어선이 접안할 경우 약 1.5m 정도 높음

〈표 6-8〉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의 접안시설 비교

구분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부산공동어시장	잡화부두 ¹⁾ 매립시
접안선 길이	500m	1,016m	1,017m
접안가능 어선수	원양어선 2,000톤급 2척 연근해 100톤급 10척	연근해 100톤급 24척	

1) 공사중인 공영도매시장과 동방파제 사이의 구간으로서 현재 잡화부두는 지정되어 있는데 연근해 수산물 위판시 매립이 필요한 부분임

- 따라서 연근해 전용시장의 건설은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인근부지가 원래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로 설계되었으며
-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의 토목공사비에는 부지매립 및 선박 접안시설(부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연근해 전용시장과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의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연근해 전용시장의 건설비용은 접안부두 500m와 1층의 경매장 등의 기본시설, 기타 부대시설이 있으면 되므로 매립공사비 371억 원을 제외한 357억으로 가능함

<표 6-9> 연근해 전용시장의 건설 비용

구분	규모	건설비용	비고
합계		357억	
판매장 시설	약 8,000평	250억	
업무동 시설	약 1,000평	30억	
폐수처리장	약 2,000평	50억	2,000㎡/일
선어 세척수 시설	1,000㎡	10억	
선박 급수시설	1,000㎡	5억	
선박 저유시설	1,200㎡	10억	
어민 복지시설	약 300평	1억	
간이 창고시설	약 500평	2억	
제방·저방시설	기존 시설 보완		

3. 사업활성화 지원 방안

가. 시설자금 지원

-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준공이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부담액이 증가하고 있어 부산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첫째, 2006년도에 균특예산을 추가 지원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2007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균특회계에서 국가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여 전액 국고지원하는 방안
 - 둘째, 선 채무부담 및 시비투입 후 균특회계로 이를 상환하는 방안이 그것임.
- 그런데 도매시장 시설자금을 균특회계에서의 국고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행 후 2년도 안된 시점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선 채무부담을 통한 조기 투자도 도매시장 자체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우선 부산시의 균특예산에서 도매시장 시설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만 도매시장 개장 후 시설보완에 필요한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다음 해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에서 이를 반영하여 동 기금의 지원을 증액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부족한 재원에 대해 우선 채무부담 및 시비투입을 통해 도매시장을 조기에 완공하고 이후 균특회계로 상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앞의 손익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도매시장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시설투자비를 상환하지만 않는다면 수입 및 원양어획물 유보물량만 유치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점을 예산당국에 충분히 설명하여 도매시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나. 운영자금 지원

- 현재 수산발전기금에서 도매시장 수산물유통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 조건,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지원 가능성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수산물 공정거래 및 상장경매제도를 정착시키고 도매시장법인의 대금결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매시장으로의 출하증가를 유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 지원대상 :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 총 사업비 : 4,000백만 원(사업자당 40억 원, 부산지역 지원액 135백만 원)
 - 지원조건 : 1년 이내, 대출금리 연 5.5%, 사업의무 연 24회전
 - 지원조건 : 1년 이내
- 지원가능성
 -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며, 도매시장의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금리인하 등 융자조건 완화 추진이 필요함

- 현재 부산공동어시장에 지원되는 금액이 60억 원이므로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 시장이 연근해어획물을 취급하고 부산공동어시장이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 지원액 외에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명칭이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임.
- 반면 부산공동어시장이 아닌 다른 주체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될 경우에도 동 자금의 지원이 가능할 것임.

2) 산지 및 소비지 중도매인 유통자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위판장,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산물유통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산지 및 소비지 중도매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생산어업인 보호
- 지원대상 : 산지 및 소비지 중도매인
- 총 사업비 : 21,000백만 원

〈표 6-10〉 중도매인 유통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산지 중도매인1)	소비지 중도매인
기 존	13,500(300×45명)	-
신 규	2,500(20×125명)	5,000(20×250명)

주 : 1) 부산지역 지원액 : 3,168백만 원

- 지원내용 : 중도매인의 수산물 구매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 집행절차 : 사업집행지침 공고(해양수산부) → 사업지운 신청(산지 및 소비지 중도매인) → 지원대상자 추천(산지는 전국 수산물중도매인 협회, 소비지는 도매시장법인) → 사업자 선정(수협중앙회) → 용자금 대출(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 지원조건 : 용자 100%(한도 200백만 원), 대출금리 연 4.0%, 1년 일시상환

○ 지원가능성

-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은 산지 및 소비지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사업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도매시장의 조기활성화 차원에서 용자금액 증액, 용자조건 완화 등의 추진이 필요함

3) 산지유통인 출하촉진자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된 수산물 산지유통인에게 출하선도금을 지원하여 소비지 도매시장 및 공판장으로의 수산물 촉진으로 안정적인 출하기능을 유지하고 규격출하를 유도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
- 총 사업비 : 1,597백만 원
- 지원조건 : 1년 이내, 대출금리 연 5.5%, 사업의무 대출액의 220% 이상 운용

○ 지원가능성

-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된 산지유통인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며, 도매시장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 등 융자조건 완화의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기타 신규 자금지원

-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운영자금 외에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칭) 수산물 수입업체 운영자금

- 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수입하는 품종은 냉동명란, 냉동연육, 냉동홍어, 냉동꽂치 등 국민식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종이 많음
 - 따라서 국내수산물 가격안정이나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수입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한데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도매시장 상장조건으로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국내 어업인 보호차원에서 순수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정부자금을 지원받는 중도매인의 수입수산물 취급여부 등 실태조사 후 연근해산 취급비중 등을 조건으로 하거나 융자한도나 금리를 차별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연근해어획물을 30% 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해 취급한도 100백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리 6%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그것임
- ※ 산지 및 소비지 중도매인 유통자금 경우 200백만 원 범위 내에서 연 4%로 지원

- 이때 자금지원근거는 어업인지원등에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5조(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사업)가 될 수 있고 재원은 수산발전기금이 될 수 있음
- (가칭) 시장도매인 운영자금 지원
 -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 수산물류 최초로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된다면 시장활성화 및 새로운 거래제도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시장도매인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임

4. 시설 확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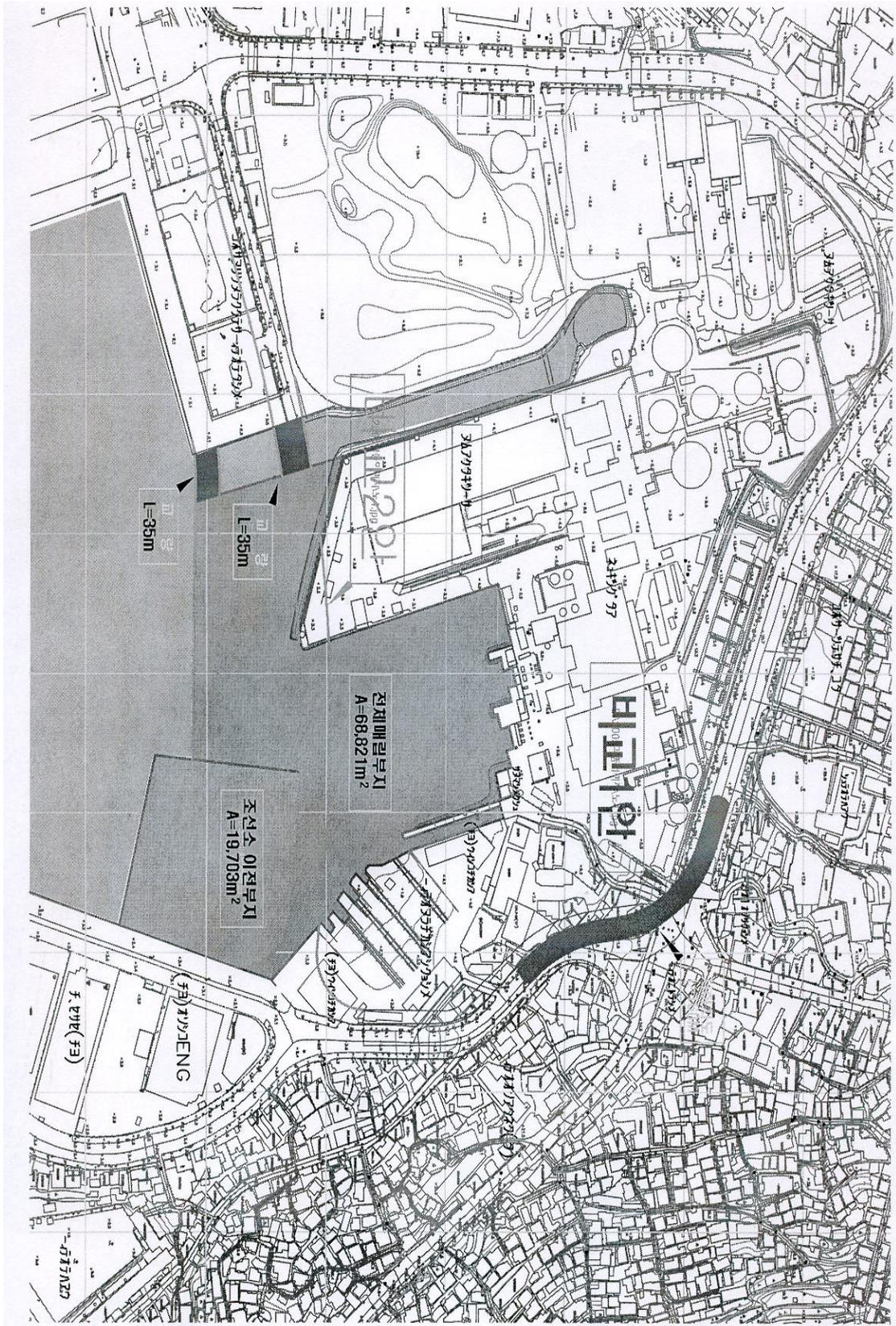
가. 진입도로 개설

- 감천 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로의 진입·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의 3가지 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제1안 : 명지와 감천항 간 지하차도(왕복 2차로)를 설치, 연장 570m에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608억 원 소요 예상
 - 제2안 : 감천화력발전소 구간에 매립도로를 개설, 연장 420m에 약 855억 원이 소요 예상
 - 제3안 : 감천항과 송도 구간에 터널을 개설하고 기존 도로를 확장, 연장 1,200m에 약 965억 원 소요 예상
- 위의 3가지 대안에 대한 공사의 개요와 연장, 추정사업비, 특징 등은 다음 <표 6-10>에서 보는 바와 같고 각 안에 대한 위치도는 <그림 6-1> 및 <그림 6-2>에서 보는 바와 같음.
- 즉 제1안은 평면 및 종단선형이 양호하고 고질적인 감천사거리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상액을 포함한 추정사업비가 가장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지하차도 공사부의 복공·시공이 필요하고 도로 확장부를 선시공한 후 지하차도 건설이 필요하며 천마터널 접속 고가교량 시공시 기초형식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음
- 제2안 역시 평면 및 종단선형이 양호하고 감천항 전체 내부순환도로로의 역할이 가능하며 남항대교 접속이 양호할 뿐 아니라 민원요소가 가장 적다는 장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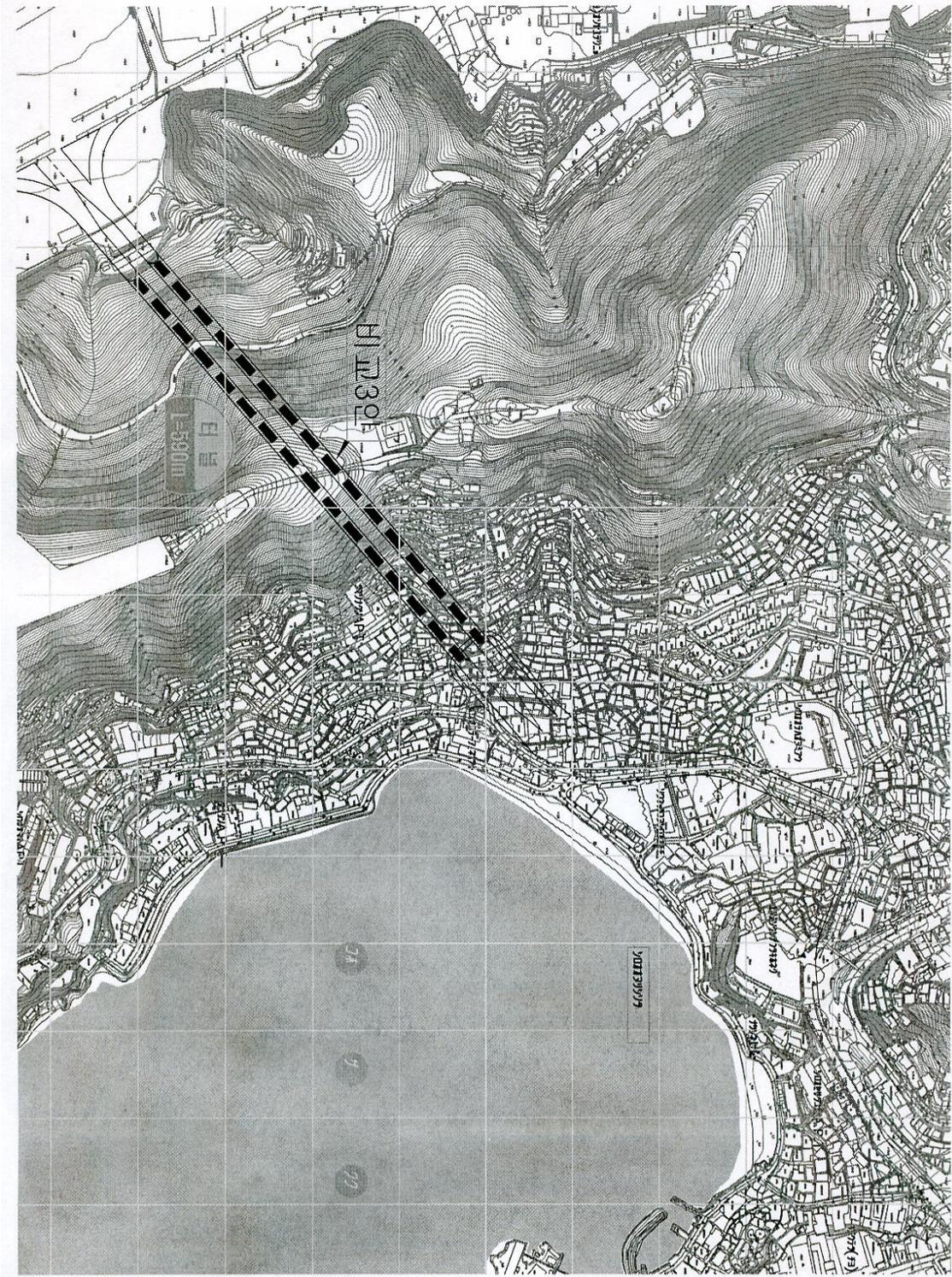
- 반면 공사비가 제1안에 비해 345억원이나 많이 들고 행정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이전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 제3안은 기존 감천항 내부도로에 대한 교통 분산효과가 크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고 송도 삼거리서 명지 방향으로 대형 트럭이 좌회전할 때 차로확보가 어려우며 보상비가 과다하여 타안에 비해 가장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음

<표 6-11> 감천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 진입도로 대안별 비교

구 분		비교 1안	비교 2안	비교 3안
개 요		·명지↔감천항 : 지하차도(왕복2차로)설치	·감천항 화력발전소 구간 매립	·감천항↔송도 : 터널 및 기존도로 확장
연 장		570m	420m	1,200m
최소곡선반경		140m	300m	140m
최대종단경사		5.0%	0.2%	터널:2.0%, 접속도로:8.0%
설 계 속 도		60km/hr	60km/hr	60km/hr
지 장 물 건	토 지	6,890㎡	23,400㎡	36,100㎡
	건 물	28동	조선수리소 1개소 이전	65동
주요 공사량	주 요 공 종	지하차도 : 480m	항만매립 : 68,821㎡	터널 : 590m
	확 장	B=12m, L=640m	B=10m, L=240m	B=10m, L=450m
	신 설		B=25m, L=420m	B=40m, L=310m
추정 사업비	공사비	380억 원	725억 원	380억 원
	보상비	138억 원+90억 원=228억 원	100억 원+30억 원=130억 원	525억 원+65억 원=585억 원
	계	608억 원	855억 원	965억 원
특 징		·평면 및 종단선형 양호 ·고질적 감천사거리 교통 체증 해소 ·지하차도 공사부 복공시공 필요 ·도로 확장부 선시공 후 지하차도 건설 필요 ·천마터널 접속 고가교량 시공시 기초형식 복잡 ·사업비 저렴	·평면 및 종단선형 양호 ·감천항 전체 내부순환도로 역할 가능 ·남항대교 접속 양호 ·민원요소 최소화 ·공사비 고가 ·행정기간 과다 소요 ·조선소 이전 비용 과다	·평면 및 종단선형 불량 ·기존 감천항 내부도로 교통 분산 효과 ·송도삼거리 → 명지방향 대형 컨테이너 트럭의 좌회전 차로확보 어려움 ·송도 주변 상업시설 과다 보상 필요 ·사업비 고가



<그림 6-1> 감천하천 진입도로 제1안 및 제2안 위치도



<그림 6-2> 감천항 진입도로 제3안 위치도

- 이들 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종합하면, 감천항 내부도로가 고질적인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감천항에서 명지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의 신호대기가 가장 큰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가장 적고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개통 후 고질적인 감천항 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제1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나. 접안시설 확충

- 장기적으로 원양어획물 및 수입수산물 외에 연근해어획물까지 양륙할 경우 현재 공사 중인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과 남측 외곽 방파에 간 약 500m 구간을 매립하여 접안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동 구간이 현재 잡화부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정부(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항만기본계획에서 용도지구 변경을 통해 수산물 전용부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공사 중인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은 수입수산물 또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등과 함께 저인망어선의 양륙부두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저인망어선은 위판량이 많지 않고 어선 내에 어창컨베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현재의 접안시설이 가지고 있는 하역상의 불편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반면
 - 선망어선이 현 접안시설에서 양륙하기 위해서는 크레인과 같은 기계설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위판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어체손상의 우려가 있어 자칫 어가하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다. 보안펜스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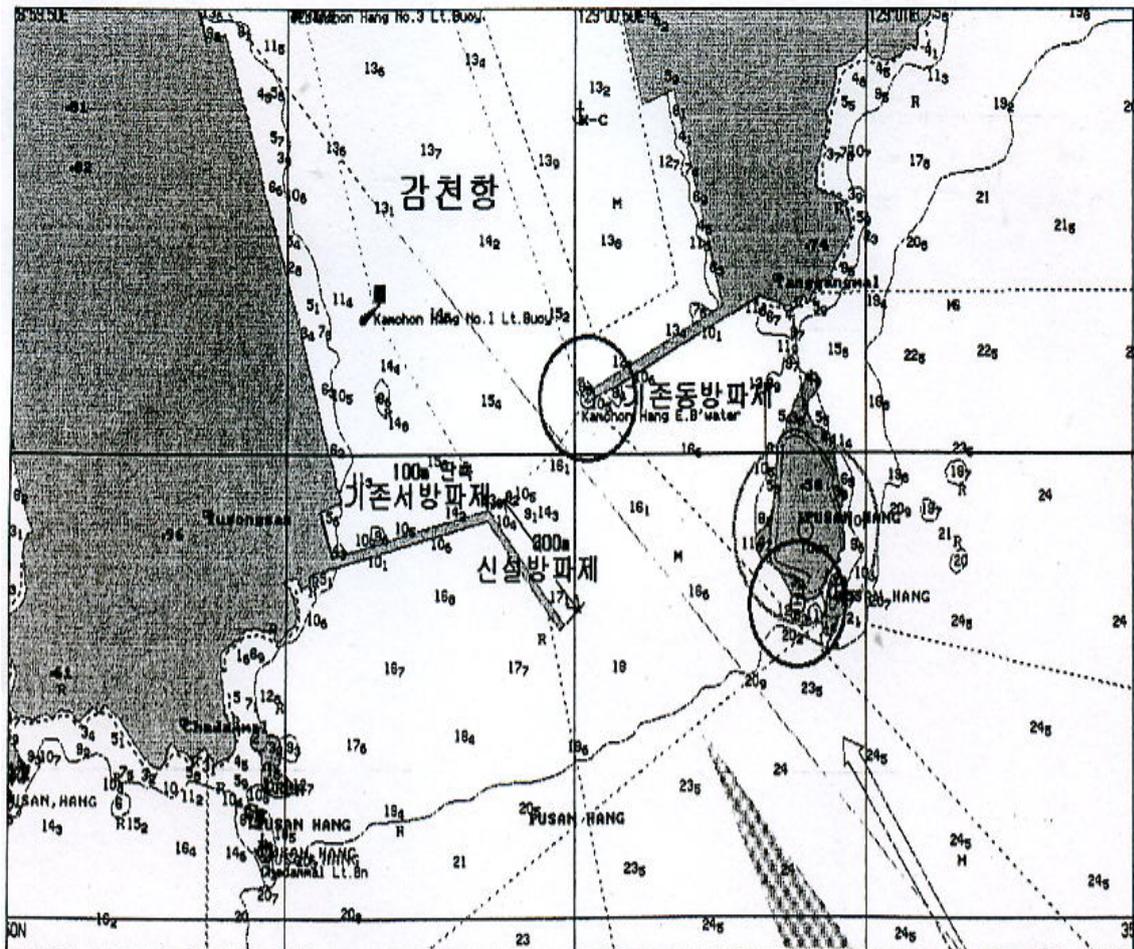
- 보안펜스 문제는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관계당국과 업계 간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태임. 즉 개폐식 출입문 설치 등에 관계당국에서 수용하는 대신 펜스 및 초소와 CC-TV 등 시설물 설치비와 경비인건비는 업계가 부담한다는 것임.
- 그런데 펜스나 CC-TV 등 시설물은 보안 및 방호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반면 경비인력은 개폐식 출입문 설치 등을 통해 업계가 과거에 비해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요소임.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와 경비인건비를 관계당국과 업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장기적으로는 보안펜스 대신 다른 보안·방호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라. 항내 정온도 유지 및 오염저감을 위한 방파제 보강

1) 정온도 유지를 위한 방파제 보강

- 항내 정온도 유지를 위해 2005년 6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감천항의 정온도 향상을 위한 용역(감천항 정온도 향상방안 검토용역)을 시행한 바 있는데 여기서 제안한 안은 다음의 3개로 요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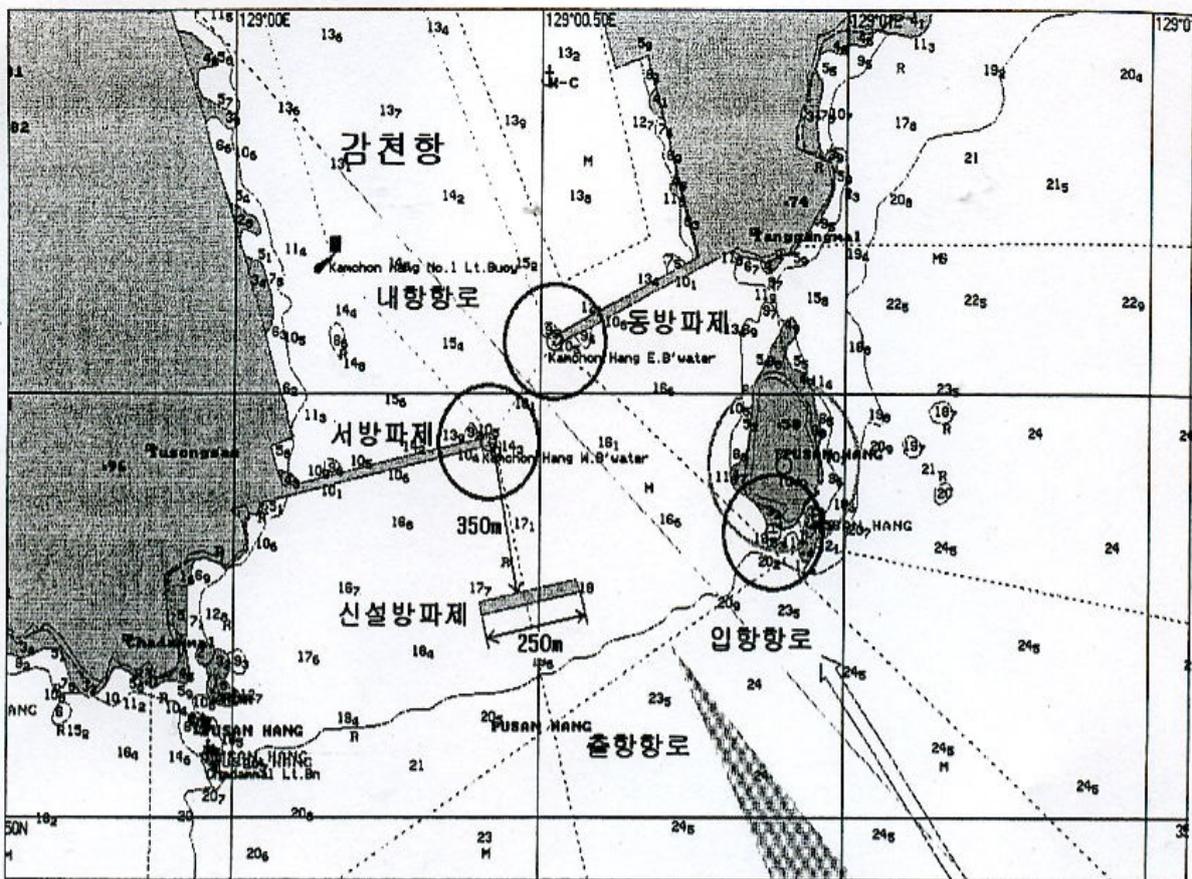


<그림 6-3> 방파제 대안1의 평면배치도

- 제1안 : 서방파제 100m를 제거하고 300m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상파랑에 대하여 신기조합 구역을 제외하고는 현 상태보다 정온도가 다소 향상되고 평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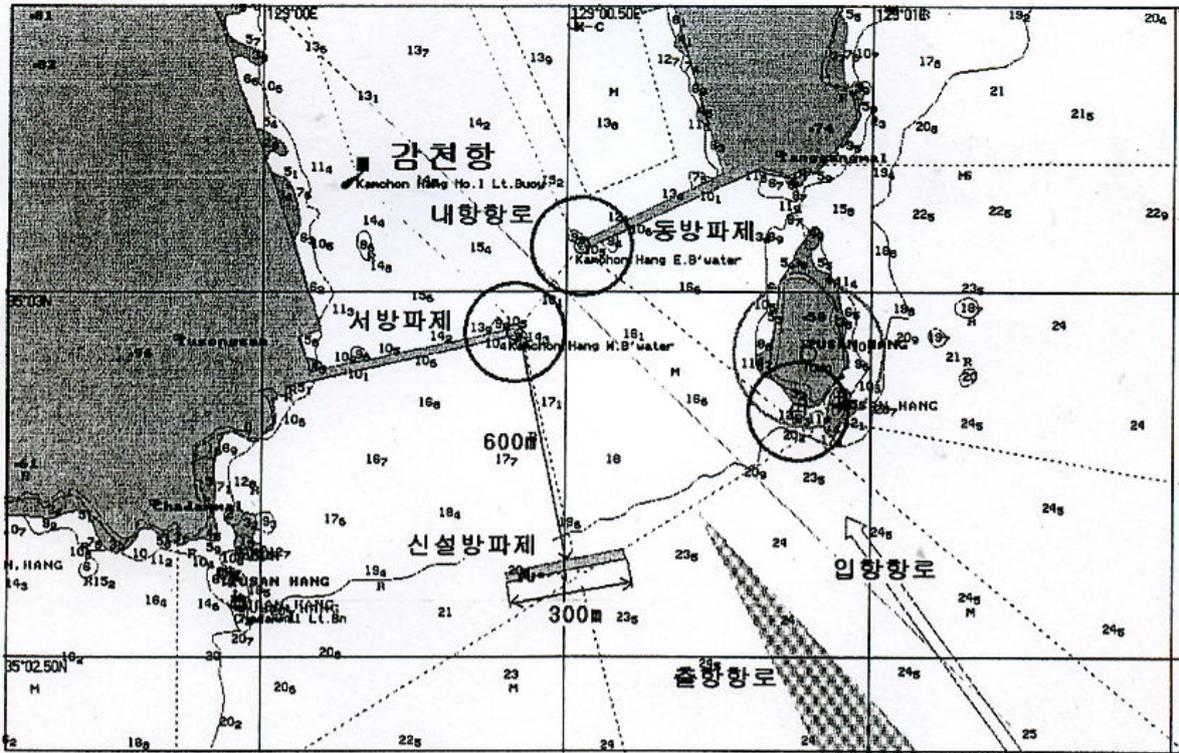
파랑에 대해서도 현 상태보다 다소 개선이 되나 S, SSE, SE 방향의 파랑에 대해서는 정온도가 미 확보된다는 단점이 있음. 또한 이때 선박조종성 면에 있어서 근접도는 양호하나 제어도 면에서는 다소 불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제2안 : 기존 외곽시설은 현 상태를 유지하되 서방파제 전면 350m를 이격하여 이안방파제 250m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상 시 및 평상 시 현 상태나 제1안보다 정온도 확보에 다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선박조정성 면에 있어서 근접도와 제어도는 대체로 양호하나 입항 시나 낙조 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6-4> 방파제 대안2의 평면배치도

- 제3안 : 기존 외곽시설은 현 상태를 유지하되 서방파제 600m를 이격하여 이안방파제 300m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상 시 및 평상 시 파랑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현 상태 및 제1안보다 양호한 정온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선박조종성 면에 있어서도 근접도가 양호하고 제어도도 제1안 및 제2안에 비해 유리하여 신설 방파제로 인한 어려움이 작은 것으로 평가됨.



<그림 6-5> 방파제 대안3의 평면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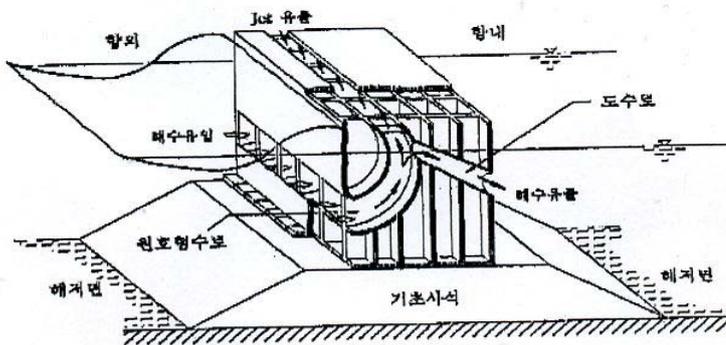
- 결론적으로 용역보고서에서는 항내 정온도 개선효과 및 경제성 면에서는 제2안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선사협회에서 방파제 신설에 대해 부정적이므로 정온도 개선효과는 제2안과 비슷하나 선박조종성 면에서 유리한 제3안의 채택을 건의하고 있음
- 물론 제3안에 있어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충족되지 않는으나 선박조종의 용이성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서 종합적으로 볼 때 제3안이 가장 바람직하며 제3안의 개략적인 공사비는 다음과 같음

<표 6-12> 방파제 대안3의 개략 공사비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구조형식	사업량	사업비
이안방파제	TTP 피복 사석경사제	192m	568
	케이슨식 혼성제	108m	320
	방파제 두부	2개소	44
	등 표	2개소	11
	관 제 소	1식	24
합 계		300	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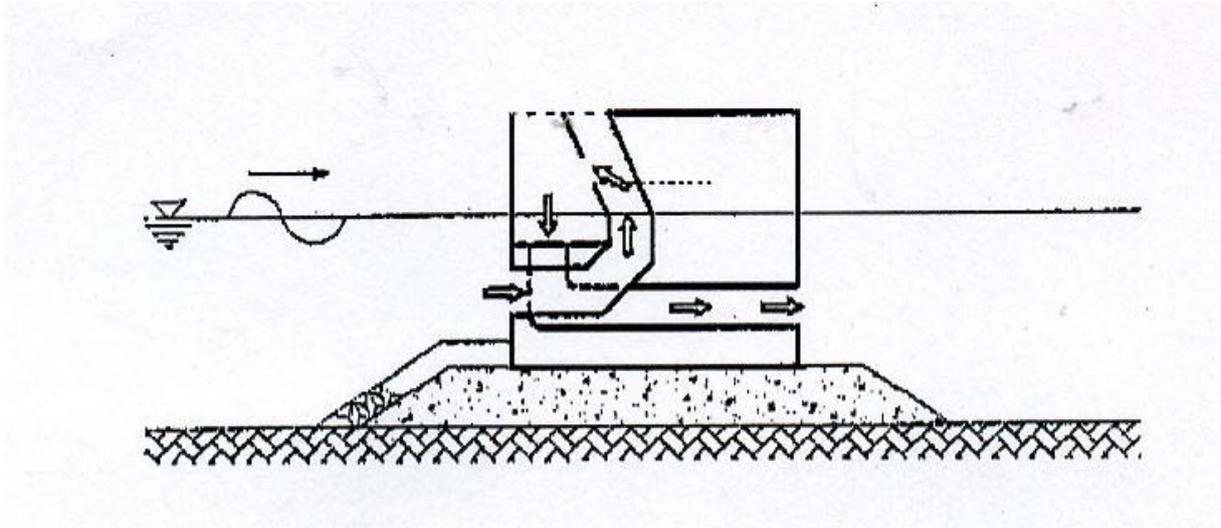
2) 항내 오염도 저감방안

- 감천항 내 오염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유력한 방안의 하나가 해수교환방과제를 설치하는 것임. 동 시설은 항내의 정온도를 유지하는 기능과 더불어 항내의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까지 부가된 다기능 어항으로서 동 시설이 가져야 할 구조적·수리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항내로의 일 방향 흐름 형성 : 방과제 내의 관로에서 유입된 해류의 역류를 차단하여 방과제로부터 항내로의 흐름을 일 방향으로 형성케 함.
 - 평상시 파랑의 적용효율이 높은 구조 : 방과제 내에 항 내·외의 수위차를 증폭시키는 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량을 증가시키는 형식이 필요
 - 유입수의 항내 전달과 저감 형식 : 방과제 인접 구역에서는 다량의 해수유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흐름의 형태로 유입되게 하는 구조가 필요
 - 이상파랑 발생 시 파랑에너지 저감 구조 : 해수교환 방과제는 일반방과제에 비해 안정성 면에서 불리하므로 파력에 대해 분산을 일으키는 구조가 필요
- 국내에서도 해수교환 방과제에 대한 연구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원형 진동수로 : 방과제의 케이슨 전면에 원형수로를 내장하는 형식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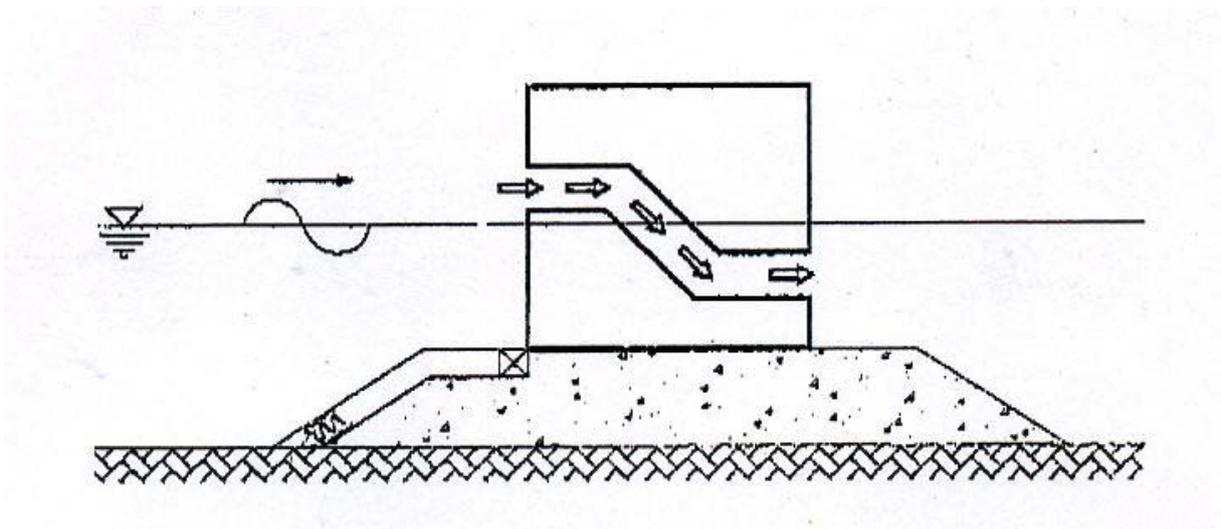
<그림 6-6> 원형 진동수로 단면도

- 전위 유수실 내장 진동수로 : 지유수면이 있는 유수실을 진동수로의 전방에 내장 시킨 형식



<그림 6-7> 전위 유수실 내장 진동수로 단면도

- 파이프 내장 혼성제 : 내장된 파이프의 전면을 정지수면보다 높게 하였으며, 후면부는 수중에 설치하여 항내에서 항외로의 역류현상을 억제하는 형식



<그림 6-8> 파이프 내장 혼성제 단면도

○ 국내 시공사례

- 남해 미조항과 동해 주문진항에 대해서 시공한 바 있고, 동해의 후포 및 묵호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표 6-13〉 국내 해수교환방파제 시공사례

항 명	형 식
남해 미조항	양방향 흐름방식을 이용하여 수질을 보전
동해 주문진항	기존 방파제의 일부를 제거하고 제거구간에 방파제를 축조
동해 후포항, 묵호항	사업을 진행 중

○ 일본의 시공사례

-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해수교환방파제를 시설해 왔는데 크게 양 방향 흐름을 유도하는 형식과 일 방향 흐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표 6-14〉 일본의 양 방향 유도 해수교환방파제 시공사례

항 명	형 식
Murorang, Nemuro항	투과식 방파제를 이용한 양 방향 흐름방식 채택
Onoda항	투과식 방파제를 이용한 양 방향 흐름방식 채택
Mitajiri항	케이슨 전면에 종 슬리트의 유공을 설치하여 반사율을 감소시키고 하부에 해수연결통로를 설치
Urakawa항	소파블럭층에서 파랑에너지가 흡수될 때 발생하는 수위상승을 이용하여 케이슨 내에 설치된 통수공을 통하여 해수를 유입

〈표 6-15〉 일본의 일 방향 유도 해수교환방파제 시공사례

항 명	형 식
Setana항	항 외측 입구가 종의 입구 형식으로 되어 있고, 평판형 날개를 부착하여 항내로의 일 방향 흐름을 유도
Teuri항	통수공의 중간에 큰 구체를 삽입하여 방파제 전면에 파곡이 형성될 경우 움직여 해수의 역류를 억제
Samani항	제체의 외해 측 전면 직벽을 따라 아파트 발코니와 비슷한 유수부를 설치하여 월파에 의한 수위상승으로 해수를 유입
Bakki항	외해 측에 블록식 경사제, 내해 측에 유공을 가진 케이슨식 투과제를 배치하여 정온기에도 해수의 순환을 유지

- 이상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해수교환 방파제의 구조적 특징과 국내외 시공사례를 살펴보았으나 공영 도매시장이 인접한 수산물 감천항 동방파제에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함

마. 제빙·저빙시설 확충

- 현재 공사 중인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냉동공장은 주로 수입 수산물 및 원양어획물을 대상으로 한 것임.
- 따라서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연근해어획물을 양륙할 경우 제빙시설과 저빙시설은 제4장 제4절에서 비교·분석한 결과를 고려할 때 최소한 현재 건설 중인 냉동공장 규모의 시설은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즉 현재 감천공영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건설 중인 냉동공장의 경우 최대 저빙능력을 제외하고는 부산공동어시장의 그것과 비슷한데 앞으로 부산공동어시장에 양륙하는 연근해 수산물의 전량이 감천 공영도매시장으로 옮겨온다 하더라도 건설 중인 규모의 냉동공장 1개소를 증설할 경우 부족하지는 않을 것임

<표 6-16> 현재 건설 중인 냉동공장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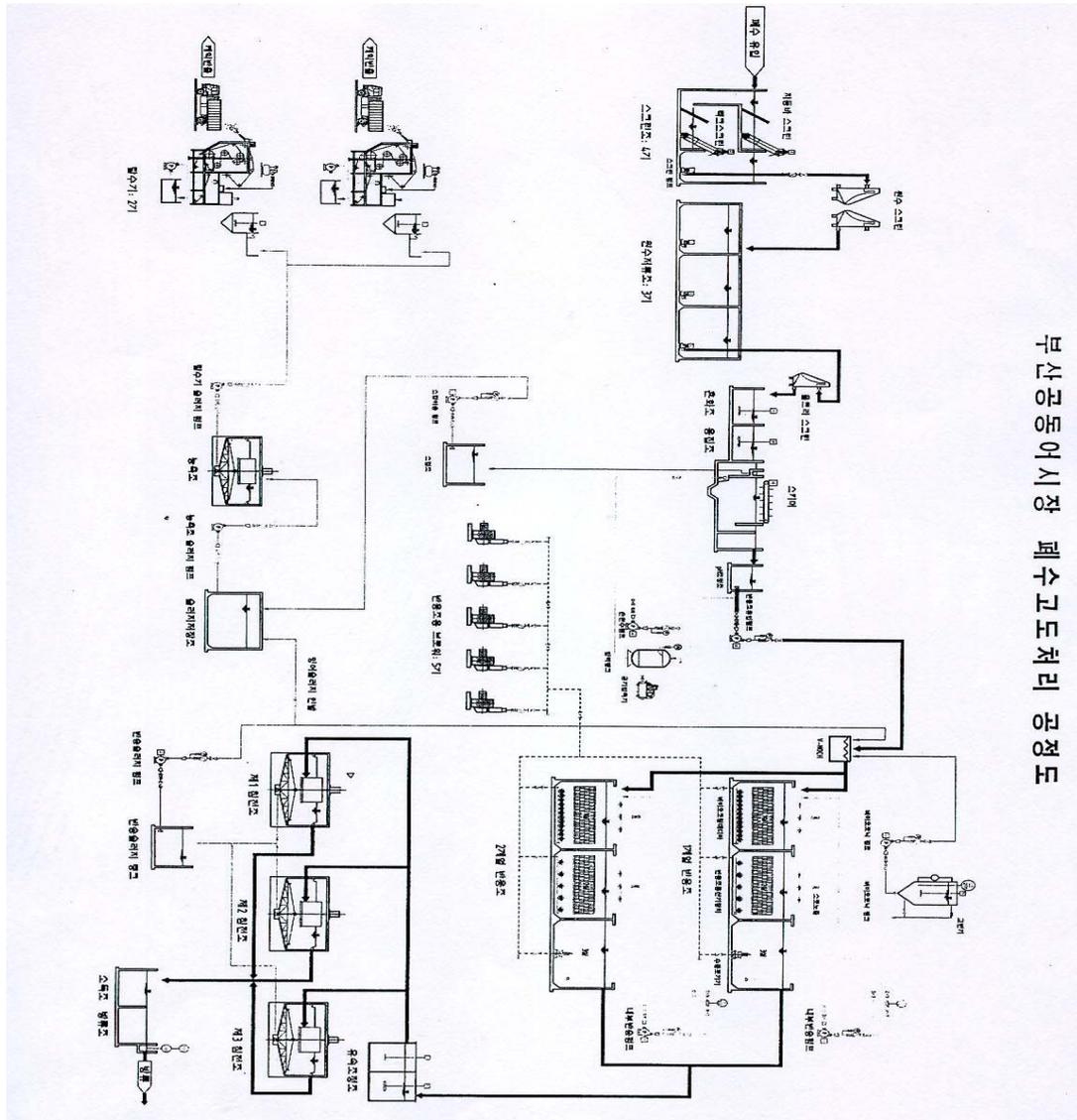
구 분	실내온도	용 량
동 결	-35도	100T/D
냉 장	-20 ~ -25도(F급)	20,000M/T
	-20 ~ -25도(CF급)	
	-50 ~ -55도(SF급, 초저온)	
제 빙	-10도	100T/D
저 빙	-10도	700M/T

- 그리고 이러한 규모의 냉동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개략적으로 18,444백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음(부산광역시,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기본설계. 2000, p.206 참조)

바. 폐수처리시설 확충

- 현재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취급하는 연근해 수산물을 앞으로 감천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취급한다면 부산공동어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규모의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약 2,000평의 부지와 시설비 50억 원 가량이 필요함

- 이때 소요부지 세부내역은 폭기조 250평, 침전조 250평, 사무실 및 실험실 50평, 탈수기실 50평, 저류조시설(25m×25m 크기의 저류조 3대) 600평, 위판장 저류조 350평, 기타 시설 및 유희부지 400평 등임
- 한편 시설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개략적인 금액의 견적을 의뢰한 결과 약 5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회신하였음



<그림 6-9> 부산공동어시장의 폐수 고도처리 공정도

제2절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방안

- 본 절에서는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에 대비하여 관리주체와 운영주체 및 거래 방법, 개장 준비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고자 함
- 도매시장의 관리주체와 운영주체 및 거래 방법에 대한 사항은 현행 농안법을 기준으로 제5장에서 분석한 설문결과에 기초하여 최적 대안을 도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함
 - 특히 수입수산물과 원양수산물의 경우는 대상 수산물의 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함
- 도매시장의 개장에 관해서는 각종 절차 및 준비 사항, 도매시장 업무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함

1.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

가. 도매시장 관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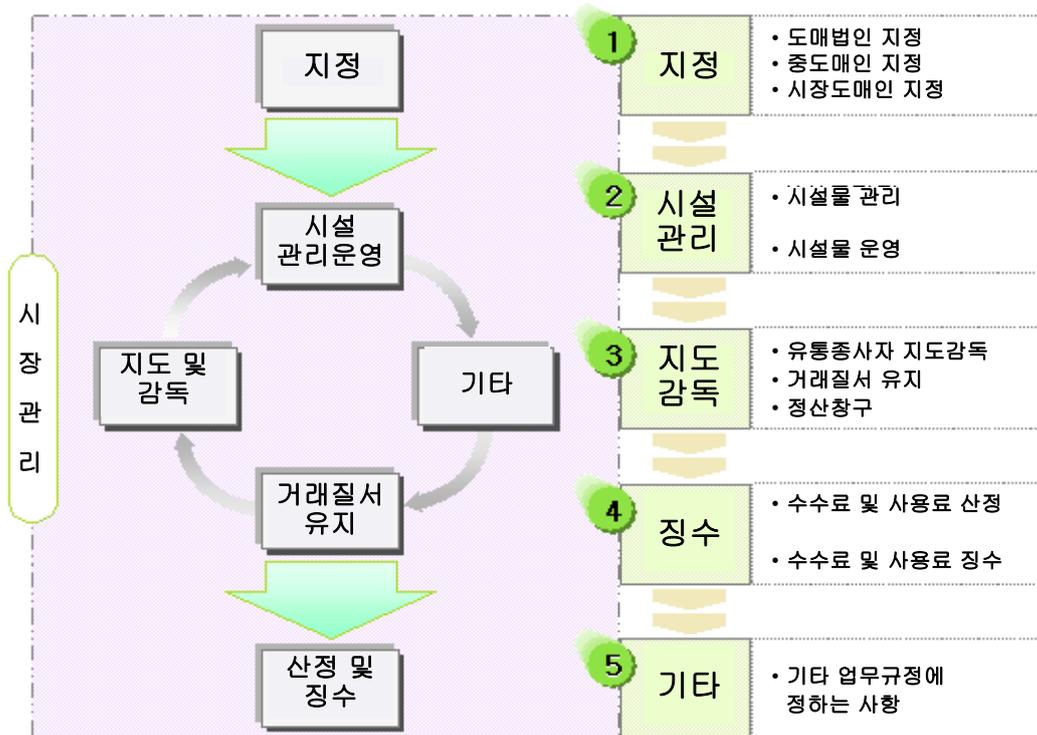
- 농안법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에 의하면, 도매시장의 관리조직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가 많고, 국내 32개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28개소가 관리사무소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관리공사(지방공사)로서 이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로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두 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구리시장도 관리공사 체제임
 - 공공출자법인은 강릉도매시장이 이에 해당되는데, 농안법 21조에서는 관리주체로 설정함과 동시에, 동법 제24조에서는 “도매시장법인에 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관리와 운영을 같이 할 수 있음

<표 6-17>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조직 형태

구분	기능	형태	특징	사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시장 관리	지자체 부서	- 개설자가 직접 관리	부산 등 28개
관리공사(지방공사)	시장 관리	지방공기업	- 개설자가 공사에 관리를 위임	3개(가락, 구리, 강서시장)
공공출자법인	시장 관리·운영	상법의 법인	- 개설자가 법인에 관리를 위임 - 관리, 운영 겸임 가능	1개(강릉시장)

- 관리조직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행해야할 기능과 시장의 규모 등이 중요함

<그림 6-10> 도매시장 관리조직의 기능



- ① 규모 : 일반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관리조직의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관리사무소는 공무원 조직이므로 인원 증가에 한계가 있음
- 가락시장 관리공사의 총 인원은 346명인데 반해, 공영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평균 인원은 22명임

<표 6-18> 관리공사와 관리사무소의 직원 수 비교

(단위 : 명)

구분	합계	임원	직 원			청경	일용직	1인당 취급고		
			사무직	기술직	계			물량	금액	
관리공사 (3개소)	계	506	6	247	127	374	51	75		
	가락	346	3	173	90	263	36	44	6,540	9,191
	강서	78	1	34	21	55	8	14	3,177	3,551
	구리	82	2	40	16	56	7	17	4,130	5,596
관리사무소 (28개소)	평균	22	-	10	4	14	6	2	5,054	3,943

자료 : 농림부, 2004년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 ② 관리대상 : 소수의 도매법인만 있는 시장과 다수의 시장도매인이 있는 시장은 업무량에 큰 차이가 있고, 도매법인인 경우는 관리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도 있으나 시장도매인은 곤란함
- 가락시장의 관리공사가 관리해야할 운영주체는 법인 10개소와 공판장 3개소로 총 13개소, 구리시장은 법인 3개소와 시장도매인 52개소의 56개소인데 반해
 - 관리사무소 체제인 시장들의 평균 관리대상 운영주체는 2.9개소임

<표 6-19> 관리공사와 관리사무소의 관리대상 비교

(단위 : 개소)

구분		관리 대상		
		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관리공사 (3개소)	가락	10	3	-
	강서	2	1	52
	구리	5	2	-
관리사무소 (28개소)	평균	1.6	1.3	-

자료 : 농림부, 2004년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 ③ 정산업무 : 정산창구의 운영은 도매법인의 경우 은행 등과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지만,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관리조직이 은행과 공동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어 업무량에서 큰 차이가 있음
- ④ 징수 : 시장의 관리주체가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 및 사용료의 종류는 크게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임대료, 주차료, 쓰레기유발금 등이며, 이중 시장사용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시장사용료 :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항의 1에서는 “당해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함
- 농축산부류 시장에서는 0.2~0.5%까지 다양한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수산부류는 모두 0.5%를 받고 있음

<표 6-20> 각 공영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 현황

(단위 : %)

시도	법 인 명	시장사용료의 비율	시도	법 인 명	시장사용료의 비율
서울	강동수산	0.5	경기	수원수산	0.5
	서울건해산물	0.5		남부수협(공)	0.5
	수협가락(공)	0.5		강북수산	0.5
	노량진수산	-		수협구리(공)	0.5
대구	대구수산	0.5		충북	안산수산
	대구종합수산	0.5	청주수산		0.5
광주	수협광주(공)	0.5	전북	충주수산	0.5
대전	대전수산	0.5		전주수산	0.5
	한밭건해산물	0.5		수협전주(공)	0.5
울산	울산중앙수산	0.5	경북	이리수산	0.5
	울산건해산물	0.5		포항수산	0.5
	울산수협(공)	0.5		경주수산	0.5

자료 : 농림부, 2004년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 ⑤ 관련업무 : 최근 도매시장은 농안법에서 정한 업무 이외에도 각종 평가 및 조사, 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가 많고, 시장의 발전을 위한 기획업무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또한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수입수산물과 원양수산물 등을 취급하게 되므로 출하자 및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 각종 통관 및 세금관련 문제, 수산물 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주체에 대해 기존 보고서 등에서 제시한 대안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음
 - 기존 보고서 등은 관리공사를 추천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관리사무소 체제를 원하고 있음
 - 관리사무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고 관리 권한이 크지만, 시장규

모가 클수록 인원 확보와 관리가 곤란하고 소속 공무원의 잦은 전보로 업무일 관성 확보가 어려움

- 관리공사는 큰 규모에 유리하고 업무 지속성 및 전문성의 확보가 가능하지만, 관리권한에 한계가 있고, 공기업의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일반적 단점이 있음

〈표 6-21〉 관리조직의 형태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규모가 적을 때 유리 ·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 개설자 관리로 권한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보직, 업무일관성 확보 곤란 · 규모가 크면 인원 확보 및 관리 곤란 · 전문성 확보 곤란
지방공사 (혹은 관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가 큰 시장에 유리 · 관리효율 제고 · 업무 지속성 및 전문성 확보 가능 · 다양한 업무 수요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권한에 한계 · 관리체계 이원화 · 조직 비대화 경향 · 공기업의 업무효율 저하 우려

○ 관리주체의 형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두 가지의 대안 모두 관리주체의 핵심 업무를 제외하고는 아웃소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안임
- 두 가지 안의 차이점은 관리사무소는 일상 업무를 비롯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까지도 아웃소싱하는 것이며, 관리공사는 전문적인 부분은 조직에 포함하고, 일상 업무만을 아웃소싱하는 것임

〈표 6-22〉 감천 공영도매시장 관리조직의 대안

구분		단점 보완 방안	기 능
1안	관리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사무소는 최소화 · 2개 이상의 전문 관리 업체 아웃소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사무소는 거래질서 확립과 정산 감시, 기획에 중점 · 관리 업체는 경쟁시켜 평가 후 매년 재계약
2안	관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공사 규모를 전문성 위주로 슬림화 · 일상 업무는 아웃소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업무 중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만으로 조직 구성 · 나머지는 하청업체 등 활용

○ 추천안 : (1안)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기존 시장의 관리조직이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도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된 통관 및 검사 등의 업무가 있고,
- 시장도매인 도입이 예상되므로 관리업무에 책임이 따르고, 정산창구의 운영을 위한 강한 감시감독 체제가 필요함
- 또한 부산시의 기존 도매시장들이 관리사무소 체제로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능력이 큰 관리사무소 체제를 추천함

나. 운영주체

- 도매시장의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형태의 결정이 아니라 거래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물량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침
 - 도매법인은 주로 상장경매 혹은 입찰을 하고, 시장도매인은 거래방법에 제한이 없으나 수의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취급상품이나 출하자의 성격에 따라서도 상장여부를 결정하는 큰 변수로 작용함
- 이하에서는 농안법을 기준으로 운영주체의 거래 방법과 감천 공영수산물도매 시장에서 거래될 상품의 특성을 기준으로 고찰해 보고자 함
- 현행 농안법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에서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게끔 하고 있음

- 현재 32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대부분이 경매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 우리나라 최초로 2004년 6월에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개장하였음
-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2004년 2월에 경매제 시장을 개장한 이후, 동년 5월에 52개 법인의 시장도매인을 지정하고, 6월에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개장함

<표 6-23> 시장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의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고
기본 역할	농산물을 위탁 받아 경매를 주관해 중도매인에게 판매	농산물을 매수, 위탁 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	농산물의 유통원활화
유통정보 제공	유통정보를 개설자에게 제공하거나 직접 산지에 전파	좌동	
농산물 규격화 촉진	산지에 대한 표준규격품 지도 시장 내 표준규격 우대 및 개설자의 쓰레기유발 부담금 징수 대행	좌동	
하역개선	표준규격품 하역비 부담, 용역업체를 통한 하역개선 및 하역기계화 도모	좌동	
출하자 대금 결제	자체 대금결제 및 대금결제를 위한 보증금을 개설자에게 예치(5천만 원)	개설자가 정한 정산창구를 이용한 결제 거래보증금예치(5천만 원)	출하자 보호
농산물 안전성 보장 노력	잔류농약검사 시 협조 및 위반자에 대한 출하금지 협조	좌동	

자료 :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 교육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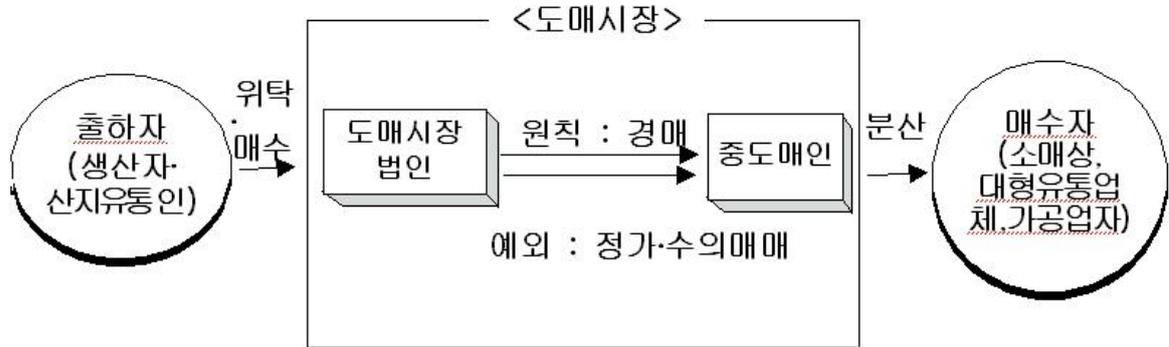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주체를 결정하기 전에 농안법 제22조의 단서 조항인 “다만,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 성격이 중앙도매시장인 경우에는 도매법인만을 두거나 혹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병립할 수 있음

<표 6-24> 시장 형태별 운영주체의 유형

구분	개설자	개설 허가자	운영주체의 유형
중앙도매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① 도매법인 단독 ②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병행
지방도매시장	시 또는 특·광역시장	시→도 특·광역시→자체	① 도매법인 단독 ②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병행 ③ 시장도매인 단독
민영도매시장	민간	특·광역시, 도	상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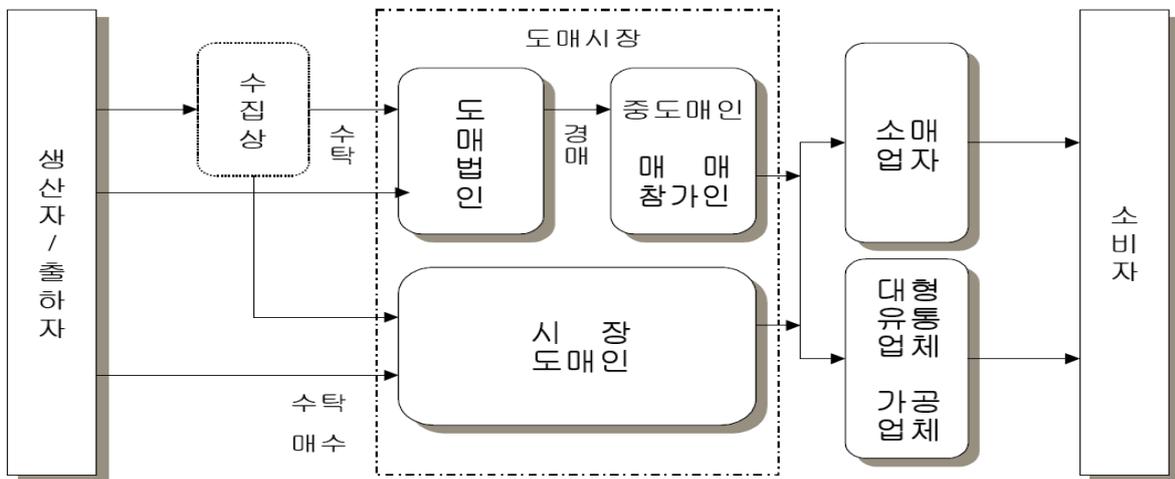
- 그러나 지방도매시장인 경우에는 시장도매인만으로도 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 현재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구분이 없으므로 만일, 시장도매인만을 두어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도매시장으로의 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운영주체에 대해 기존에 제시된 대안은 두 개의 도매법인(부산발전연구원), 도매법인 1개와 복수의 시장도매인(부경대), 단수 도매법인(부산시)으로 다양함
 - 부경대의 경우는 도매법인 1개와 복수의 시장도매인(부경대) 이외에 공공출자법인이 관리와 운영을 동시에 하는 안도 제시하고 있으며,
 - 부산시는 부경대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시장관리는 관리사무소, 운영은 단수법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선택 시 중요한 것은 도매시장의 거래 방법임
 - 도매법인의 수집 방법은 농안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야 함.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음
 - 또한 농안법 제32조에 의해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해야 하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제한되어 있음

<그림 6-11> 도매시장법인의 거래 방법



- 그러나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농안법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에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거래 방법의 제한이 없음

<그림 6-12>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체계도



<표 6-25>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의 장단점 비교

구분	경매제 (도매법인제)	시장도매인제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효율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을 통한 공정한 가격형성 - 정확한 가격의 발견 및 시장 정보 제공 - 시장의 투명성 확대로 경쟁 촉진 ◦ 상품의 전체적인 품질 향상 촉진 ◦ 정확한 거래대금 정산으로 출하자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거래 가능, 신선도 유지 가능 ◦ 경매장, 경매사가 필요 없고 거래시간 단축으로 거래비용 절감 가능 ◦ 출하자와 시장도매인간 직접 교섭으로 대량 거래 촉진 ◦ 시장도매인의 출하자 관리로 출하자 유리 ◦ 예약거래, 상대매매 등으로 거래가격 안정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효율성의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단계의 확대(도매법인의 개재) - 경매를 위한 진열, 상품의 이전 등으로 물류비 증가 - 많은 거래시간 소요 ◦ 거래가격 불안정, 등급간 심한 가격 격차 ◦ 대량거래 이점 없음 ◦ 다수의 출하자 상대로 출하자 보호 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과정 폐쇄성으로 작위적인 거래조작 가능(가격 조작, 등급 조작 등) ◦ 개별 정산시 대금정산 지연, 부도시 대금지불 곤란 등 출하자 불안정 ◦ 영세 출하자의 거래교섭력 취약으로 제값받기 어려움

자료 : 허길행 외, 「영등포 상권 이전과 후적지 정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11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의 선택은 취급하는 수산물의 특성, 출하자 및 구매자의 형태, 시장의 운영 효율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취급상품의 특성을 보면, 연근해와 원양 품치를 제외하고는 도매시장 외에서 수의매매로 거래되고 있어 물량유치를 위해서는 시장도매인제가 적합함
 - 출하자는 수입업자나 원양어업자가 많아 수의매매를 선호하며, 연근해 수산물과 원양품치의 경우는 가격차가 크고 불안정하므로 경매제를 선호함
 - 시장의 운영효율은 경매제의 경우 물류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기록상장의 가능성이 있지만, 출하자 보호나 정산에서 유리함
 - 시장도매인제의 경우는 물류효율이 높지만 가격 및 정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영세 출하자가 가격 교섭력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음

<표 6-26>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비교

구분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기존 방식
			경매제	시장도매인제	
취급상품 특성	수입	신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있어 수탁이 어려움	- 기존 방식 고수로 물 량 확보 쉬움	수익매매
		냉장			수익매매, 일부 입찰
	원양	- 품치 : 가격차가 커 서 경매 가능 - 기타 : 기존 경로 선 호로 수탁 어려움	- 합리적 가격 결정이 가능 - 정가수익매매 조건 구비	수익매매, 일부 입찰	
	연근해	1차 가격이 없고, 가격 차가 커서 정가수익매 매가 곤란	가격 발견이 어려움	공동어시장 등 경매	
출하자 및 구매자의 선호도	원양		품치 이외 선호 없음	품치 이외 선호	직접 판매 혹은 중간유통업자
	수입	신선	선호 없음	선호	수입업자
		냉장	선호	선호 없음	수입업자
연근해		선호	선호 없음	생산자	
시장의 운영 효율	물적 유통		- 비용이 많이 듦 - 시간 낭비 많음	- 거래 시간 단축으로 거래 비용 절감 - 신속한 처리 가능	
	상적 유통		- 기록상장 가능성 - 가격불안정 - 안전한 정산 가능 - 영세 출하자 보호	- 정산에 대한 우려 - 가격조작 가능 - 영세 출하자 취약	

<표 6-27>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의 하역시간 비교(수박의 경우)

구분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비고
	시장도매인	경매제		
합계	2시간	14시간 30분	17시간 30분	
하역·경매대기	-	12시간	15시간	
이송시간	-	30분	30분	이송비 발생
하역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자료 : 권상구, 상서시장의 운영성과와 과제, 제47차 농식품 신유통 토론회, 2005. 7
주 : 5톤 차량, 8인 작업 기준

○ 이상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할 경우, 총 3개의 대안이 가능함

<표 6-28>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대안별 운영주체

대안	형태	취급 수산물의 분류	특징	
			주체	주요 취급시장
I	복수 도매법인	제1법인 : 국제 수산물 (수입수산물)	-국내 대형자본 -다국적 유통자본	감천시장
		제2법인 : 국내 수산물 (연근해, 원양 등)	-생산자단체	연근해 수산물 전용시장
II	시장도매인과 도매법인 혼용	수입 및 원양	-기존 유통업자 -국내 대형자본 -다국적 유통자본	감천시장
	단수 도매법인	연근해	-생산자 단체	연근해 수산물 전용시장
III	시장도매인	수입 및 원양	-기존 유통업자	감천시장
	단수 도매법인	연근해	-생산자 단체	연근해 수산물 전용시장

○ 대안 I : 복수 도매법인

- 총 2개의 법인으로 제1법인은 다국적 유통자본 혹은 국내 대형유통자본으로서 수입수산물 전반을 취급하고, 제2법인은 연근해 수산물 및 원양어획물을 취급함

○ 대안 II : 원양 및 수입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연근해는 도매법인

- 원양 및 수입수산물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경쟁체제
- 연근해 수산물은 단일 도매법인이 운영

○ 대안 III : 단수 도매법인과 복수 시장도매인

- 복수 시장도매인은 현재 건설 중인 시장에서 수입 및 원양어획물을 취급하고, 단수 도매법인은 연근해 전용시장이 건설될 경우 연근해만을 취급함

〈표 6-29〉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주체 대안별 장단점

대안	형태	장점	단점
I	복수 도매법인	- 농안법의 원 취지에 부합	- 수입 및 원양의 전량 경매 불가능 - 편법적 운영의 가능성 있음
II	시장도매인과 도매법인 혼용	- 거래 원활화 기능 - 원양 및 수입수산물은 시장도매인과 법인의 경쟁체제로 효율화 - 수의매매와 경매 혹은 입찰의 수요를 모두 충족	- 시장도매인은 수산부류 도매시장에 도입된 바 없음 - 편법적 운영의 가능성 있음 -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가능
	단수 도매법인		
III	시장도매인	- 거래 원활화 기능 - 유통주체 영업 폭 넓음 - 시장도매인은 낮은 수수료로 물량유치 수월	- 시장도매인은 수산부류 도매시장에 도입된 바 없음 - 편법적 운영의 가능성 있음 - 원양 및 수입의 경매 포기로 가격결정 기능에 장애 발생 우려
	단수 도매법인		

- 원양 및 수입 냉동품 등은 수의매매와 입찰, 경매 등의 선호가 중복되고, 시장도매인제는 수산부류시장에 도입된 바가 없으므로
- 부산시와 시장개설 T/F 등 협의체가 3가지 대안 중에서 신중한 고려 후 선택 필요
 - 도매법인 만으로 수입과 원양수산물을 취급하여 물량유치에 실패할 경우,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단기간에 회복이 곤란함
 - 경매제를 선호하지 않는 기존 원양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시장에 상장을 꺼려하고 있으나, 동시에 수입선어와 원양 품치 등은 경매나 입찰을 원하고 있음
 - 기존 유통업자들을 시장도매인으로 영입이 가능함
 - 시장도매인제는 위탁 및 중개수수료가 경매제의 절반이므로 출하자의 수수료부담으로 인한 상장기피를 줄일 수 있음
 - 연근해 수산물의 경우는 적극적인 취급을 할 경우, 상품의 특성상 경매제가 바람직하므로 경매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단,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기존의 시장으로만 운영할 경우와 연근해를 취급할 수 있는 신규 시장을 증설할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현 시장만으로 운영할 경우, 접안부두의 협소로 인해 연근해 수산물의 적극적인 취급이 곤란하므로 원양 및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운영주체들이 육상으로 반입되거나 일부 수탁을 원하는 생산자들의 상장물량을 취급하여야 함
- 제2안과 제3안의 단수 도매법인은 연근해 수산물 전용시장이 건설된다는 가정 하에서 제안한 것임

〈표 6-30〉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주체(추천 대안)

구분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현 건설 중인 시장)		연근해 수산물 전용시장 (신규 증설 시장)	
		도매법인	복수 시장도매인	단수 도매법인	
운영주체		도매법인	복수 시장도매인	단수 도매법인	
거래방법		경매(입찰)	수의매매	경매	
취급 수산물	수입	신선	○	○	
		냉장	○	○	
	원양		○	○	
	연근해	생산자양륙	×	×	○
		육상반입	○	○	○

- 따라서 현재 건설 중인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완공되면, 개장 준비를 거쳐 원양과 수입수산물 중심 시장으로 개장하고, 연근해 수산물 전용시장의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 연근해를 취급할 단수 도매법인의 도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다. 개장 초기의 시범 운영

1) 시범운영의 필요성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수입수산물과 원양수산물, 연근해 수산물을 망라하는 국내 최초의 시장이므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개장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음

- 시범운영은 수입수산물과 원양수산물을 중심으로 하고, 최소의 운영주체를 두면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시장의 개장을 크게 3가지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1단계 : 소규모 형태로 파일럿 사업 시작
 - ② 2단계 : 수입수산물 및 원양수산물 중심으로 개장
 - ③ 3단계 : 연근해 수산물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개장
 - ④ 4단계 : 국제적 시장으로 도약

〈표 6-31〉 감천 공영도매시장의 개장 단계

구 분		주요 내용
1단계	소규모 형태로 파일럿 사업 시작	- 시장의 개장 초기는 시행착오가 많으므로 준비 단계로 1년간 시범 운영
2단계	수입수산물 및 원양수산물 중심 개장	- 수입 및 원양수산물 전량, 연근해 수산물 일부 취급 - 연근해 수산물의 접안시설이 부족하므로 일부만 양륙
3단계	연근해 수산물을 포함한 전면 개장	- 시범 개장 후 3년간 연근해 수산물 접안시설 증설(연근해 전용시장)하여 전면 개장
4단계	국제적 시장으로 도약	- 국제적인 수산물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위치 선정

2) 수입선어의 시범 양륙

- 수입선어는 전용운반선을 운용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현재 2개 선사가 일본산 선어를 운반하고 있음
- 이들 업체는 부산지역에 적절한 양륙부두가 없어 원양어선 전용부두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으며, 인천 등 다른 지역도 무역항에 양륙하고 있는 실정임
 - 연간 4억 원 가량의 부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양륙항에서 수입검사나 통관 등의 업무가 모두 이루어지고 부두에 냉장컨테이너 등을 활용하여 적재하고 있음

<그림 6-13> 수입선어 운반선의 전경



<표 6-32> 부산지역 수입선어 운반선사의 현황

구 분	탐해운(주)	진해해운(주)
운행구간	부산 감천항 ↔ 일본 시모노세키	좌 동
취급물량	연 21,000톤	연 15,000톤
보유선박	5척(1,200톤급 1척 및 4~5백 톤급)	3척(4~5백 톤급)
운행횟수	주 5회	좌동
이용업체수	24개	31개
하역장소	감천항 동편 원양어업 전용부두	좌동
부지임대	3천 평, 월 3천만 원	하주가 사용료 부담
하역업무	선사 직접 수행	하역회사 수행, 하주가 비용부담

- 부산에서 일본산 선어를 수입하는 업체는 대부분 이 두 선사를 이용하고 있어 이들을 도매시장에 유치할 경우, 수입업체는 자연스럽게 수입물량 전체를 도매시장에 상장하게 됨
 - 운반선사들도 도매시장에 직접 양륙 시 부지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어 도매시장 양륙을 희망하고 있음
- 현재 부두시설은 완공되어 있고, 도매시장동의 1층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므로 우선 수입선어 운반선사들을 유치하여 정식 개장 전까지 무료로 양륙하게 하는 방안을 추천함
- 이들을 유치할 경우의 장점으로서는
 - 선어수입업체는 물론 냉동수산물 수입 및 원양업체, 부산 수산물유통업계에 훌륭한 홍보가 되며, 일본 등 외국 수출업자에게도 알릴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선어수입업체들은 자동적으로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이들을 시장도매인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발판이 됨
- 운반선사에 대한 시장시설의 일시적인 무료 개방 후, 시장의 정식 개장 시에는 전문 운반업체로 지정하여 선어물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 검역, 통관 등도 사전에 준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음

2. 시장도매인제 도입방안

- 현재 수산부류 도매시장에서는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된 바가 없고, 기존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과 도매법인 간에 도입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있음
- 그러나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신규로 개장되는 시장으로서 도입에 걸림돌이 없고, 수입 및 원양수산물은 상품의 특성이나 출하자 등의 선호가 경매와 수의거래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운영주체에 대한 대안에서 제1안을 제외한 나머지 대안이 모두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기존 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 경과와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를 도입하기 위한 실무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가.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 실태

- 2004년 6월에 전격적으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도입된 시장도매인제도는 2000년 6월에 농안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음
 - 도입 초기에는 다수의 반대자가 존재하여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으며, 아직까지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음
-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도매법인 3개소(중도매인 504명)와 시장도매인 52개소가 혼재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
 -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이 경쟁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법인 당 자본금 규모는 최저 8억 원이며, 출하대금 보장을 위해 최저 5,000만원 이상의 예탁금 제도와 정산창구를 운영하고 있음

<표 6-33>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경과

구분	경과
1998.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에서 도입 방안 제시 - 국내외 유통 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통 개선 대책 수립 - 법적 뒷받침을 위해 농안법 개정 추진
2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농안법에 시장도매인제의 법적 근거 마련 - 농안법 시행일인 2000. 6. 1부터 지방도매시장은 도입 가능 - 중앙도매시장은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도입 가능
200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안법 시행령 등에 지정 절차 등 구체화 - 적정 수, 자본금, 보증금, 최저 거래금액 등 지정 조건에 관한 사항 - 송품장·정산서 신고 절차, 거래신고소·정산창구의 설치운영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
200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적정 수 등 도입 방침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2000.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도매시장 제도개선 심의회의 심의
200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에 시장도매인제 운영 지침 시달
200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표 6-34>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 현황

구분	경매제	시장도매인제
규모	부지 43,469평, 건물 25,514평	부지 20,165평, 건물 9,215평
유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매법인 : 3개 법인 - 농협(공), 서부청과, 강서청과 ▶중도매인 : 504명(과일 192, 채소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도매인 : 52개 법인 - 과일 : 30개 - 채소 : 22개
주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매장 : 4,910평 ▶중도매인 점포 : 192개소 - 1점포 : 27평 (매장 13, 사무실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도매인 점포 : 52개소 - 1점포 : 69평 (매장 21, 저온창고 27, 사무실 21)

나. 시장도매인제 도입 방안

1)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와 규모

- 현재 농림부에서는 「시장도매인 운영지침 (2000. 10)」 을 두어 시장도매인의 규모와 적정 수에 관해 제시하고 있음
 - 적정 수는 농안법 시행령 제18조 6의 2에 도매시장 업무규정으로 적정 자본금 및 적정 수 범위 내에서 개설자가 정하게 되어 있으며,
 - 농림부의 운영지침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병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 금액 및 물량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표 6-35〉 시장도매인의 적정수와 자본금 규모(시장도매인 운영지침)

구분	적정 자본금	적정 수	비고
대규모시장	10억 원 이상	40개 이하	연평균 거래액 1,500억 원(20만 톤) 이상
중규모시장	7억 원 이상	20개 이하	연평균 거래액 750~1,500억 원 (10~20만 톤) 미만
소규모시장	5억 원 이상	15개 이하	연평균 거래액 750억 원(10만 톤) 미만

자료 : 농림부, 「시장도매인 운영지침」, 2000. 10

- 그러나 동 운영지침에는 단서 조항으로서
 - 개설자가 출하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예 : 일정 수준 이상의 출하대금 지급보장보험의 가입, 경영상태의 주기적 공시 등)를 갖춘 경우,
 - 부류별 특성,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시된 자본금과 시장도매인수의 20%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이 가능함
 - 다만 적정수의 경우 시장별(부류별) 최소수는 3개 이상으로 운영
- 그러나 각 지자체가 개설한 시장의 업무조례에 나타난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와 규모는 운영지침의 기준안과는 다르게 나타남
 - 예를 들어 강서시장은 적정 수가 52개이며, 포항시는 2개임

<표 6-36> 실제 시장도매인의 적정수와 자본금 규모(각 시장 조례)

구분	적정 자본금	적정 수	비고
강서농산물도매시장	8억 원	52개	
양재동양곡도매시장	5억 원	40개	
춘천시농수산물도매시장	5억 원	청과부류 : 2개 수산부류 : 1개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5억 원	청과부류 : 9개 수산부류 : 6개	<최저 거래금액> 청과부류 : 5억 원 수산부류 : 2억5천만 원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 15억 원 이상 수산부류 : 15억 원 이상	청과부류 : 1개 수산부류 : 1개	
광주시농산물도매시장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시에 설정		유보되어 있음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적정 수와 자본금 규모는 상장물량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방식을 통해 산출할 수 있음

$$\text{시장도매인 적정 수} = \frac{\text{상장금액 (상장물량} \times \text{단가)}}{\text{연간취급금액 (농림부지침기준)}}$$

- 상기 산출식을 기준으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 농림부의 시장도매인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거래물량과 금액은 최대일 때 연간 13만 톤, 1,500억원이며, 최소일 때 7만 톤, 750억 원
 - 1안 : 제5장에서 조사된 상장희망물량을 기준으로 2~4명
 - 2안 : 제5장에서 조사된 조건부 포함 물량을 기준으로 8~16명
 - 자본금 규모는 농림부의 시장도매인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임

<표 6-37>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의 최소 적정 수(안)

구분		1안	2안	비고
상장물량	톤	117,719	427,435	조사 물량
단가	원/kg	2,815	2,815	'04년 도매시장 평균 단가
상장금액	억 원	3,314	12,033	
시장도매인	최소 수	명	2명	1,500억 원/년(13만 톤)
		명	4명	750억 원/년(7만 톤)
	자본금	5억 원 이상		

주 : 1. 상장물량은 제5장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1안은 상장희망물량, 2안은 조건부 포함 물량임
2. 상장금액은 상장물량에 '04년에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수입수산물의 평균단가를 곱한 것임

- 따라서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을 중규모 시장으로 보았을 때, 최소 8~16개소의 시장도매인이 필요하며,
- 도매시장 운영조례에서는 적정 수를 40개로 설정하되, 개장 초기에는 8~16개로 운영하고, 추후 시장의 물량증가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 수수료율의 설정

- 농안법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의 1항에서 정한 시장도매인이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는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의 두 가지가 있음
 - 위탁수수료 :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
 - 중개수수료 :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서는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시장도매인은 정해진 최고한도의 1/2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경매제에서 위탁수수료는 도매법인, 중개수수료는 중도매인이 징수, 시장도매인은 양쪽에서 모두 징수
 - 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경매제에서 위탁수수료가 6%, 중개수수료가 4%, 시장도매인은 절반인 각각 3%, 2%를 징수

〈표 6-38〉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의 수수료 비교

구분		경매제		시장도매인제
징수 대상		도매법인	중도매인	출하자, 구매자
종류	위탁수수료	출하자	구매자	●
	중개수수료	●		●
최고 한도	위탁수수료		●	3%
	중개수수료	6%	4%	2%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요 수산부류도매시장의 수수료율을 보면,
 - 수도권 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건어를 제외하면, 3.8~4.3%에서 결정되고 있음
 - 지방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3.0~5.0%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음
- 다음으로 시장도매인제를 채택하고 있는 시장들의 수수료율을 보면,
 -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위탁수수료의 경우 선어 및 패류가 6%, 건어가 5%이며, 중개수수료는 2%로 시장도매인은 각 수수료율의 1/2임
- 또한, 시장도매인제를 채택하고 있는 시장들의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제 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보면,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선어, 패류가 3%, 건어가 2.5%이며, 중개수수료는 1%임
 - 춘천 및 포항은 위탁수수료가 수산부류의 경우 3%, 중개수수료가 2%임

〈표 6-39〉 주요 수산부류도매시장의 수수료율 현황

(단위 : %, 백만 원)

시도	법 인 명	수수료율					
		위탁 수수료	출하장려금			판매 장려금	시 장 사용료
			일반 출하	계통 출하	우수 출하		
서울	강동수산	4.0	-	-	-	0.45~0.6	0.5
	서울건해산물	3.0	-	-	-	0.3	0.5
	수협가락(공)	3.0~3.8	-	-	-	0.45	0.5
	노량진수산	4.3	-	-	-	0.41	-
대구	대구수산	3.0~5.0	-	-	-	0.3	0.5
	대구종합수산	3.0~4.0	0.8	0.8	0.8	0.3~0.6	0.5
대전	대전수산	4.6	-	-	-	0.8	0.5
	한밭건해산물	4.61	-	-	-	-	0.5
경기	수원수산	3.5	-	-	-	-	0.5
	남부수협(공)	4.5	-	-	-	0.2	0.5
	강북수산	4.5	-	-	-	0.4	0.5
	수협구리(공)	4.5	-	-	-	0.4	0.5
	안산수산	5.0	-	-	-	-	0.5

자료 : 농림부, 2004년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2005. 7

〈표 6-40〉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수산물류 수수료율 현황

구분	시장도매인제		경매제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선어, 패류 : 3% 건어 : 2.5%	1%	선어, 패류 : 6% 건어 : 5%	2%
춘천시농수산물도매시장	3%	2%	6%	4%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	3%	2%	6%	4%

- 감천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수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물량을 유치하고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수료는 지양해야 함
 - 원양 및 냉동 수입수산물은 대량 거래되므로 낮은 수수료로도 충분한 수익(박리다매)을 확보할 수 있음
 - 시장도매인은 위탁 및 중개수수료를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제보다 수수료가 낮음
 - 연근해 수산물은 경매제를 기본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시장도매인 수수료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함

〈표 6-41〉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수수료율(안)

구분		시장도매인제		경매제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수입수산물	냉동	1.5%	2.0%	3.0%	4.0%
	선어	2.0%	2.0%	3.0%	4.0%
원양수산물		1.5%	2.0%	3.0%	4.0%
연근해 수산물		-	-	3.4%	4.0%

주 : 1. 연근해 수산물은 공동어시장의 위탁수수료를 기준으로 함
 2. 원양 및 수입수산물은 지방도매시장의 최저 기준을 적용함

- 이상의 조건을 고려하여 감천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적정 수수료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도매법인인 연근해의 경우, 공동어시장을 기준으로 3.4%, 원양 및 수입수산물은 지방도매시장 최저 기준을 적용하여 3.0%를 적용함
 - 시장도매인의 경우, 원양 및 냉동 수입수산물은 위탁이 1.5%, 중개가 2%이며, 수입 선어는 취급 시에 추가적인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선도저하 등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모두 2%를 적용함

3) 시장시설의 조정

- 현재 건설되고 있는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경매제시장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조정이 필요함
- 필요시설은 경매장의 구획과 시장도매인 점포와 사무실, 창고 등임
 - 경매장의 구획은 시장도매인의 수에 맞게 현 시설에 간단한 구획구분으로 큰 예산 없이도 가능하며
 - 시장도매인 점포와 사무실은 도매시장동 2층의 중도매인 점포를 활용하되, 일정 규모가 필요하므로 2~3개의 점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있음
 - 창고는 도매시장 내의 냉동창고를 각자의 거래규모에 맞게 분할하여 사용하되, 인근에 냉동창고가 많으므로 사용 계약을 맺어 이용하는 방안이 있음

나. 정산제도

1) 정산제도의 개요

- 농안법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에는 출하대금을 별도의 전담 정산창구를 통하여 즉시 결제하도록 하고 있음
 - 위탁판매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고, 출하자는 이를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임
- 그러나 동법 제41조의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도매시장법인의 직접대금결제)에서는 단서 조항으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정산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정산창구는 자본금을 출자하는 정산회사방식, 대금결제 전용계좌 관리방식과 개인지불방식으로 구분됨

- 정산회사방식은 시장도매인 등 거래당사자 이외에 제3의 기관으로서 정산업무를 하는 독립된 정산회사를 설립하여 그곳에서 대금결제를 자기 책임으로 하는 방식임

<표 6-42> 정산창구의 유형별 비교표

구분	정산회사	정산조합	금융기관 이용
개념	제3의 기관으로 독립된 정산회사를 설립하여 그곳에서 대금결제를 하는 방식	시장도매인이 설립한 정산조합이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전용계좌 관리를 통해서 출하자 대금 결제, 법인형식도 가능	농협, 수협, 시중은행 등 의 별도 전담팀과 약정하여,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전용계좌의 관리로 출하자 대금 결제
인격	법인(회사)	조합 또는 법인	금융기관(법인)
구성 (출자자)	개설자,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매매참가인 등	시장도매인 또는 별도법인	농·수협 등 금융기관
목적	안전적 대금결제	안전적 대금결제	신속, 저렴한 대금결제
임무	정산	정산관리(시장도매인 결제계좌 관리)	정산관리
대금결제 안전장치	-정산회사 자본금, 보증금 (보험 보완 장치 강구) -시장도매인 보증금, 운전 자금 -시장도매인 자본금	-시장도매인 결제전용계좌 최소 잔고 -시장도매인 보증금, 운전자금 -시장도매인 자본금	-시장도매인 결제전용계좌 최소 잔고 -시장도매인 보증금, 운전자금, 자본금

자료 : 농림부

- 대금결제 전용계좌 관리방식은 다시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산조합방식, 금융기관 이용방식, 개설자 관리방식으로 나뉨
 - 정산조합방식 : 시장도매인이 정산조합을 설립해서, 정산조합이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전용계좌 관리를 통해서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서 정산조합 외에 법인 형식도 가능함
 - 금융기관 이용방식 : 별도의 정산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농협, 수협,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의 별도 전담팀과 약정하여, 금융기관이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전용계좌의 관리를 통해서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임

〈표 6-43〉 정산창구의 유형별 장단점

	장점	단점
정산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성이 높음 -정산절차의 표준화와 전산화 -대금결제의 신속성, 정확성 -제3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대금결제 사무의 공정성 보장과 차별거래 방지 ·안전성이 높음 -자본금 규모가 크고, 검증된 임원진과 능력 있는 직원 보유 -시장의 신용도가 높음 -분쟁 시 조정능력 보유 ·효율성은 중간정도임 -대금결제 신속성, 표준화, 전산화로 업무효율성 높음, 외상판매대금 회수 일시 파악으로 자금의 효율적 운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성 문제 -시장도매인의 사업규모 확대시 지불능력 판정 곤란 -1개 시장도매인의 경영부실이 정산회사 전체의 부실을 가져올 염려가 있음 ·효율성 문제 -정산기구의 설립비용 부담 -초기운영미숙에 따른 대금결제 관리사무의 중복
정산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성 있음 -시장도매인의 결제전용계좌의 잔고가 최소 잔고 이하일 경우 거래가 정지됨으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함 -시장도매인의 경영부실이 다른 시장 도매인, 정산조합에 대하여 파급 영향이 적음 ·효율성 높음 -대금결제관리의 단순·간단한 업무수행에 따라 소수인원으로 운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 문제 -시장도매인 중심의 조합업무 수행으로 자의적 개입 우려 -정산조합의 정산책임성 결여로 정산관리 업무 소홀 우려
금융기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성이 높음 -정산절차의 표준화와 전산화, 대금결제의 신속성과 정확성 ·안전성이 높음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전성이 높음 -시장의 신용도가 높음 ·효율성이 높음 -대금결제가 신속함, 정산비용이 저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정산업무에 다소 소홀할 우려가 있음 ·도매시장 관리자와 원활한 업무 협조가 어려움

자료 : 조명기 외, 강서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5

○ 정산 창구의 유형별 장단점을 보면,

- 정산회사는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지만 별도의 설립 비용이 필요하고, 사업 규모가 확대될 경우 지불 능력의 판정이 곤란함
- 정산조합은 안전성이 높고 효율성도 있지만,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

-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투명성이 높고 정산 비용이 저렴하지만, 업무 협조가 어려운 점이 있음

<표 6-44> 정산창구별 장단점 평가

구분	정산회사	정산조합	금융기관
(1) 투명성	매우 높음	중간/낮음	높음
절차 표준화	매우 높음	중간	높음
결제 공정성	매우 높음	낮음	높음
(2) 안전성	매우 높음	중간/낮음	중간/높음
자본 규모	매우 높음	낮음	높음
분쟁 조정	매우 높음	중간	중간
(3) 효율성	중간	높음	높음
대금 결제 신속성	높음	높음	높음
비용최소화	낮음	높음	높음
정산기구 설립 비용	매우 높음	낮음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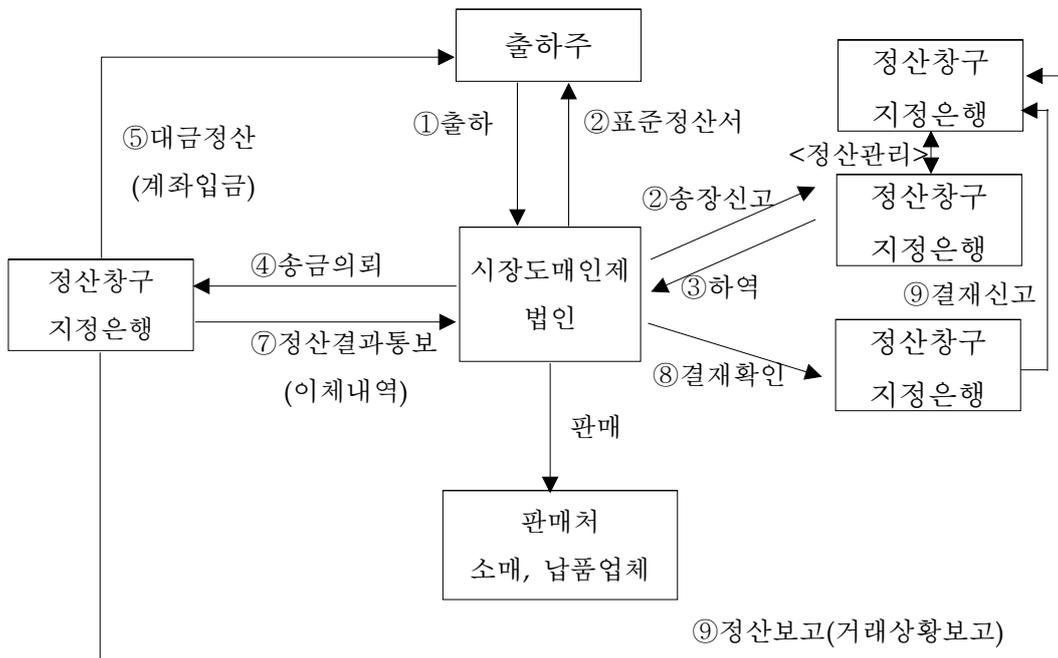
자료 : 조영기 외, 강서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5

- 현재 가락시장은 금융기관 이용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부산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정산조합방식을 취하고 있음
-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정산조합방식과 금융기관 이용방식의 장점을 취한 「공동관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공동관리방식은 금융기관을 정산창구로 지정하여 금융기관이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전용계좌 관리를 통해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 대금결제는 금융기관이 담당함
 - 또한, 상인단체, 하역회사가 정산보조자로 지정 받아 출하자 대금결제 및 물량을 확인하고 개설자가 최종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정산 과정
 - 시장도매인은 출하농산물의 반입 시 출하자가 제출한 송품장 내용을 정산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사본은 거래신고소에 제출하여 신고를 필한 후 거래신고소의 승인이 나면 정산보조자로 지정된 하역회사가 하역함
 - 반입된 농산물을 매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판매 후 판매 대금에서 수수료를 감한 후 정산창구에 대금송금을 의뢰하며 출하자에게

는 표준정산서를 발급함

- 거래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의 신고물량과 하역회사의 하역물량을 사후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시장의 주요 반출입로에 감시카메라(CCTV) 등을 설치하여 활용함으로써 거래물량의 신고누락 방지 및 신고여부를 거래신고서에서 확인함

<그림 6-14>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정산방식(공동관리)의 체계도



○ 정산의 안전장치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 기본 5,000만 원, 추가로 1,0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의 거래보증금을 확보
- 시장도매인 결제 전용계좌 최소잔고로 2,000만 원
- 각 시장도매인 대표자들의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각서와 연대보증인 2인 이상을 확보
- 동 시행규칙 5조(지정조건) :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음

2) 정산제도의 도입방안

- 정산방식 :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공동관리방식을 보완하여 적용
 - 기존의 금융기관 이용 혹은 정산조합 방식은 경매제 체제에서는 적합하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도매인제도에서는 출하자에게 대금정산에 관한 불안감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동관리방식을 택하되 몇 가지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동관리방식의 보완 방안
 - ① 정산 절차의 간소화 : 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송품장 작성과 거래신고소 신고를 일원화
 - 현재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정산체계는 반입시마다 시장도매인이 즉시 송품장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역이 이루어지는 체계임
 - 그러나 형식을 완벽히 갖춘 송품장이 드물어 시장도매인이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고, 출하주가 다수인 경우 등급별, 수량별, 품목종류별로 구분함
 - 또한 정산시스템을 통해 송품장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있음에도 같은 내용을 직접 거래신고소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이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정산시스템의 구축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이 정산시스템에서 송품장의 작성과 거래신고소에 대한 신고 및 승인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 ② 정산보완장치의 강화
 - 현재의 정산보완장치는 거래보증금과 시장도매인의 결제계좌잔금의 관리임
 - 그러나 출하자와 구매자와의 대금결제 시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간에서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개설자가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등을 활용하여 대금결제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유보의 완충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산을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보름 내지 한달의 단기간에 대한 자동대출(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음

<그림 6-15>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정산시스템



홈페이지(www.gs-market.co.kr)를 통해 접속

시장도매인 정산시스템 첫 화면(회원가입)

출하자 등록화면

출하자관리화면(송금계좌관리 포함)

송품장입력

송금 내역 확인

○ 정산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도입

- 현재 강서농산물도매시장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은 정산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는 대금 정산 및 거래 관리, 출하자에 대한 거래정보 신속한 전달을 위함
-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과 거래 및 정산의 투명성,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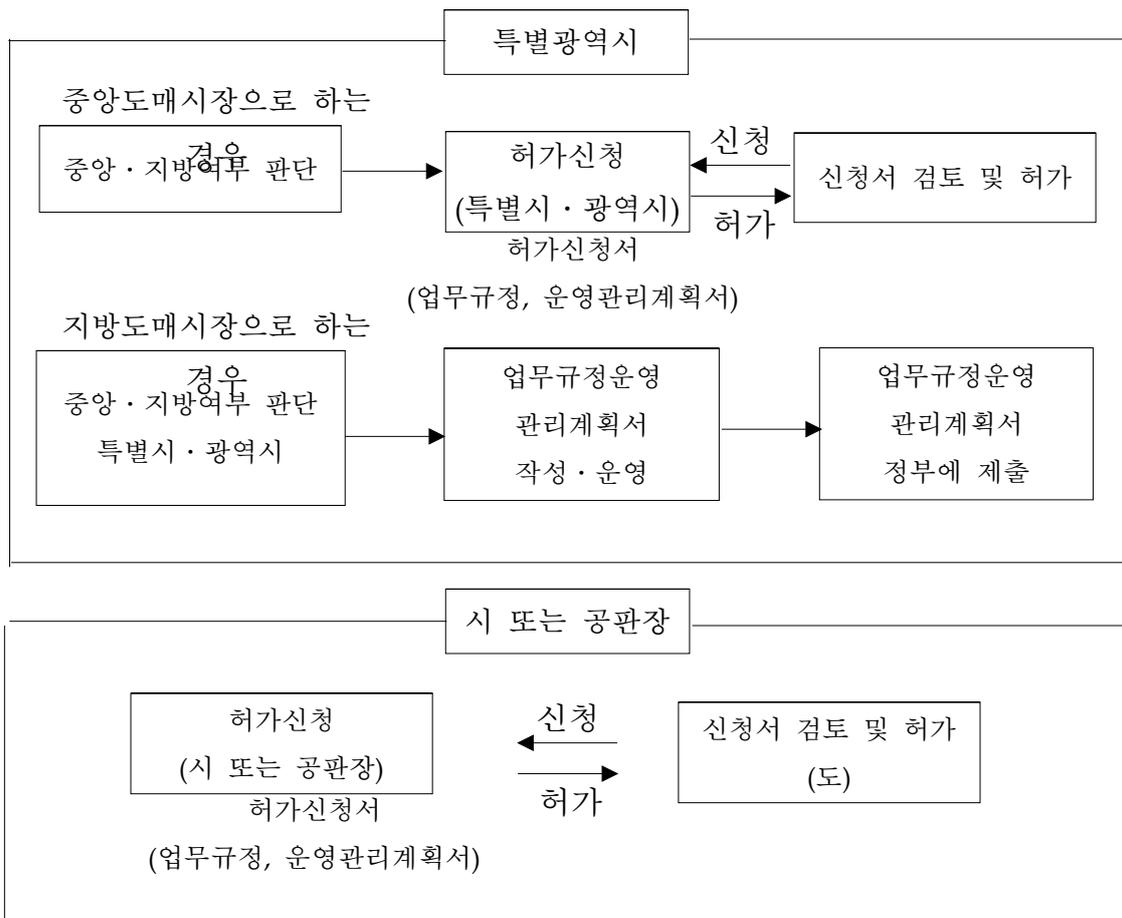
3. 시장의 개설 준비

가. 도매시장의 허가 절차

1) 허가 절차

-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 광역시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시가 개설하되 시의 경우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
- 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 시는 업무규정과 관리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업무규정 변경 시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림 6-16> 도매시장의 허가 절차 흐름도



○ 도매시장 허가기준

- 도매시장 개설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업무규정이 도매시장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적합할 것
-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할 것

2) 시장의 형태 설정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 혹은 지방도매시장인 지의 형태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음
- 중앙도매시장은 허가권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므로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지만,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의 기회가 많으며
- 지방도매시장은 부산시가 개설자이면서 허가권자이므로 비교적 자유로이 시장을 운영·통제할 수 있지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의 협력을 얻기가 쉽지 않아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

<표 6-45>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형태별 비교

구분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개설자	부산시	부산시
허가권자	해양수산부	부산시
감독권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시
운영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서 부산시가 운영하지만, 간섭의 여지 있음	개설자가 비교적 자유로이 시장을 운영·통제
규모	가락 및 노량진 등의 대형 규모	지방시장의 규모로는 대형
시장의 중요성	최초의 수산물 전용 공영도매시장 감천 국제 수산 물류무역기지의 핵심사업, 국민경제 영향이 아주 큼	시장의 중요성과 규모에 비추어 맞지 않음
역할	최초의 수입 및 원양 전문시장으로 두 품목의 전국적, 세계적 도매거래 중심	형태는 지방에 국한, 실체는 전국적, 세계적 시장 지향
지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 기회 많음 One-Stop수산물수출단지, 국제수산물거래소 등 중요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많이 남아 있음	지원 필요 시 정부와의 협력 어려움
운영주체	반드시 도매법인 필요	시장도매인제만으로 개설 가능

○ 중앙도매시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물만을 취급하는 공영도매시장으로는 대한민국 최초이고
- 감천 국제 수산 물류·무역기지의 핵심사업으로서 수입수산물과 원양수산물, 인근해 수산물을 모두 취급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며
-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 국제수산물거래소 등 관련되는 중요 사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므로
- 중앙도매시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 지방도매시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 시장도매인제도만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으로 제안하였으므로 이를 부산시가 채택하는 경우에는 지방도매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국제적인 사업 추진 방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매거래의 중심지로서 중앙도매시장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함

나. 도매시장 개설준비 T/F의 구성 및 운영

1) 도매시장의 개장 준비 절차

○ 개장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도매시장 관리운영계획서 및 업무규정 작성
 - 도매시장 관리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포함하되, 특히 도매시장법인(또는 도매인)이 하역료를 부담토록 조치(보조금교부 조건 참조)
 - 도매시장 개설 허가권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와 조정을 거쳐 승인을 득한 후 확정
- ②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작성 및 모집
 - 도매시장 개설구역 내에 유사시장을 흡수하는 방안 등 정비계획 병행 추진
 - 투명한 공개모집 절차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마련
- ③ 입주대상 도매시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 ④ 도매시장 홍보 추진

○ 도매시장 개장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공사 준공
 - 관리부서에 시설인계 및 시장개설 허가
- ② 도매시장 관리조직 입주
- ③ 도매시장 관련조직 입주 및 업무수행 준비
- ④ 개장운영 초기 지도
 - 공정거래질서 확립, -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2) 개장준비 T/F의 구성 및 운영

- 농림부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건설 사업 지침”에서는 도매시장 개장 준비를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상당수의 시장이 개설 전에 개설준비위원회 등의 형태로 도매시장의 개장준비를 진행하였음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건설 준비사업단 설치 1년 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표 6-46> 각 도매시장의 개설준비위원회 현황

구분	형태	근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사업위원회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건설기획단	서울특별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기획단 설치조례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소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소 설치조례
성남시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위원회	성남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위원회 운영규정
광주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	건설추진위원회	광주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및 물류센터 건설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설치조례(1997.12.05 조례 제3434호)를 제정하였으며, 제정 이유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과 개장준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임

<표 6-47>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건설기획단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2조(단장)	① 기획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하부조직)	기획단에 행정계와 운영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사무분장)	
1. 행정계	가. 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종합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다. 상인유치 및 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도매시장 개장준비 종합계획 마. 지장물 철거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기획단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운영계	가. 도매시장관리·운영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선정에 관한 사항 다.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라. 후적지개발 및 이전대책에 관한 사항

자료 : 서울특별시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기획단 직제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2868호)

- 부산시의 경우는 현재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현장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도매시장 개장준비를 위한 조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준비를 위한 개설준비위원회를 T/F의 형태로 구성하여 2006년부터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개설준비 T/F의 업무와 구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운영조례를 만들어 개설준비위원회의 형태로 운영
 - 구성원은 민관학연이 골고루 참여하게 하고, 시장도매인 등의 지정이 끝나면 이들을 참여시켜 운영
 - 조직은 행정과 기획, 물량유치의 3개 부서로 운영

<표 6-48>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준비 T/F의 업무와 구성

구분		내용	비고
형태		개설준비위원회	
근거		운영조례의 제정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위원회 운영규정
구성원		부산시 공무원 및 전문가, 업계로 다양하게 구성	현재의 자문단을 활용 대형유통업자 등의 참여유도
시기		2006년부터 운영 시장개장 1년 후까지 운영	시범사업의 평가 및 개선
조직	전체	3개 부서로 운영	
	행정	도매시장 개장과 관련된 행정 1. 농수산물도매시장 종합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 개장준비 종합계획 3. 각종 지정 및 신청 절차 수행 4. 시장업무조례의 개정	
	기획	1. 도매시장관리·운영방안 수립 2.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선정 3. 시장도매인 선정 4. 정산시스템의 구축	
	물량 유치	1. 사업설명회 2. 대외 세미나 및 홍보 3. 업체 방문 및 물량유치 활동 4. 시장활성화에 관한 사항	민간 중심으로 운영 2단계부터 시장도매인 등 운영주체 참여
운영	1단계	각종 사업자 선정 전에 상기 활동 추진	
	2단계	사업자 선정 후 운영주체를 포함하여 운영	시장도매인 등이 참여
	3단계	시범 개장 후 평가 및 개선 업무를 전담	

다. 도매시장 업무조례의 개정

- 농안법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의 제3항과 4항에 의하면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을 위해서는
 - “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개설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부산시에는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전문개정 2005. 2. 16 조례 제3984호)”가 있으며, 농업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이 조례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적용되는 것이며, 시장도매인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감천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함
- 현재 도매시장의 업무조례를 작성하기 위한 지침으로는 농림부의 도매시장 업무규정 표준(안)(2000. 6)이 있음
 - 동 규정(안)을 참조하여 각 도매시장 실정에 맞게 업무규정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 다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 도매시장 업무규정은 농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도매시장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유효함
- 개정 절차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으로 제안하였으나,
 -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도 중앙도매시장이므로 농림부와 협의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업무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내용은 서울시와 안산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표 6-49〉 부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조례의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삽입
제3조(거래품목) ①~②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제3조(거래품목) ①~② 생략 ③ 수산부류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양수산물, 2. 냉동 및 선어, 활어 등 수입수산물, 3. 연근해 수산물
제4조(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③ 생략	제4조(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 수산부류의 휴일 및 영업시간 삽입
제2장 도매시장 법인	
제6조(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제6조(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수산부류 및 청과부류 도매시장의 ...(이하 생략)
<신 설>	제4장 시장도매인
	제26조(상한 수) ① 도매시장별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는 별표 1과 같다. - 수산부류 : 40개소 ②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서 정한 상한 수의 범위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지정조건)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경우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운전자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월간 최저거래기준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8조 (지정절차) ①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42조 및 제44조에서 정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표 6-49> 계 속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②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의 상한수 범위안에서 시장도매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29조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①시장도매인이 지정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정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기존 지정 기간동안의 당 해 법인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제30조 (임원의 요건) 시장은 도매시장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도매인의 임원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 외에 타 자치단체에서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같은 부류의 시장도매인과 중복하여 상근임원으로 겸직중인 자의 임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31조 (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수산부류 : 5억 원</p>
	<p>제32조 (최저거래금액)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부류 : 2억5천만 원</p>
	<p>제33조 (보증금 납부) ①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서 정한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표 6-49> 계 속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②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③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 에 충당되어 보증금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시장도매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 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p>
	<p>제34조 (보증금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이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p>
	<p>제35조 (운전자금 확보) ①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거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시장도매인은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 현황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당해 분기 개시 후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p>

<표 6-49> 계 속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③시장도매인은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도매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확보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p>
	<p>제36조 (장부비치) ①시장도매인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 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판매기록부 ②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에는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시장도매인은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장부(서류)에 대하여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7조 (시장도매인의 관리) ①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②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필요시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제38조 (휴·폐업 신고) ①시장도매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39조 (시설사용면적 결정)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시설여건 및 시장도매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p>	

<표 6-49> 계 속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0조 (지정취소) 시장도매인이 제30조·제31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법령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시장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5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5장 매매 및 대금결제방법	제6장 매매 및 대금결제방법
제29조(도매시장법인의 매수도매거래) <신설>	제44조(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매수도매거래) ① 생략 ② 시장도매인이 매수 또는 중개를 하였을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매수대금 지급일·중개대상자 등을 별지 서식에 의한 표준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제59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 시장도매인 삽입
제53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제68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 제1항과 제2항에 수산부류 삽입 - 위탁수수료 : 1000분의 60 - 중개수수료 : 1000분의 40
<신 설>	④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 한도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의 2분의 1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8장 보 칙
제74조(권한의 위임)	제89조(권한의 위임)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감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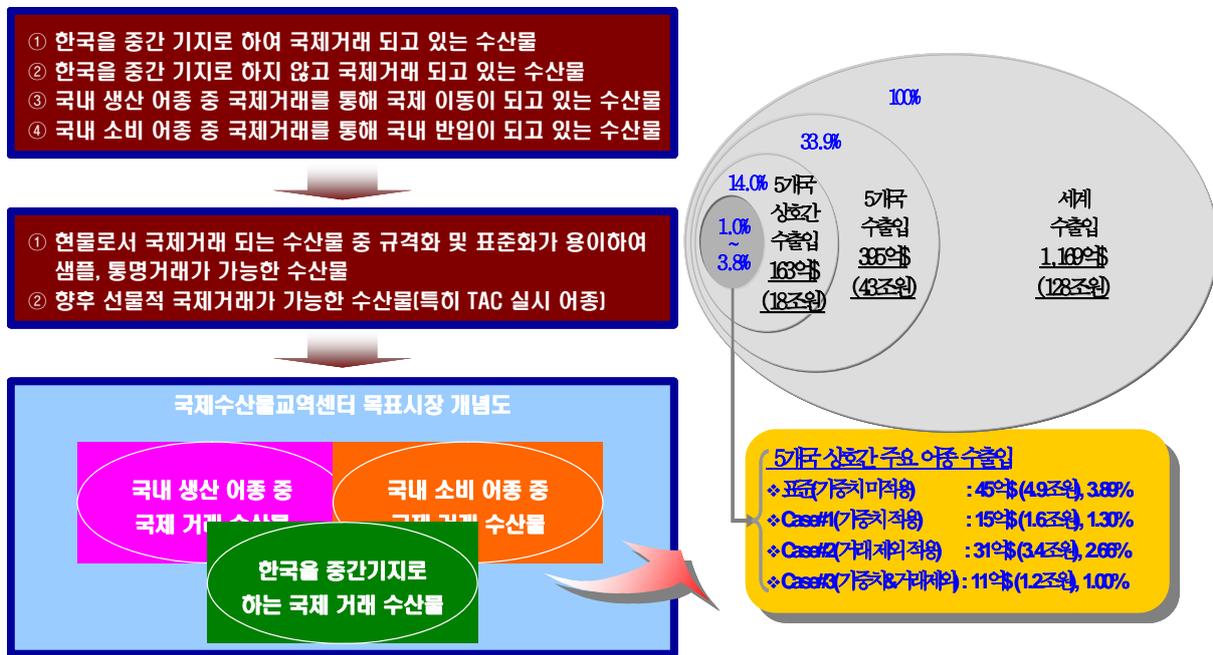
제7장 국제수산물교역센터 활성화 방안

제1절 목표시장 확보 가능성 분석

- 국제 수산물 거래시장의 활성화라는 대 전제하에 국제수산물교역센터의 목표 시장 달성 가능성은 상기와 같이 통계적 분석, 거래 형태별 분석, 핵심성 공요인별 분석 등의 다양한 비교를 통하여 계획 할 수 있을 것임

1. 통계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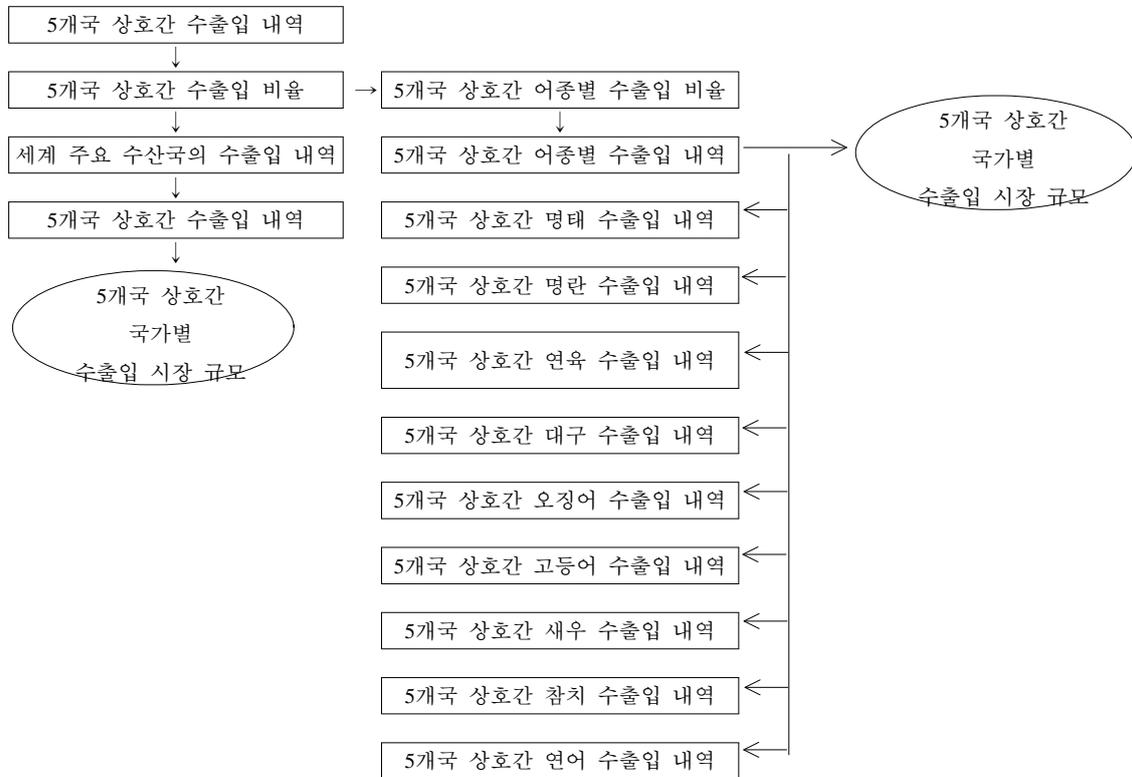
- 전 세계 수산물 교역 (수출입규모, 2000년도 기준: 1,169억불)에서 지리적, 경제적 상호 접근성이 높은 한국 중심의 4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등 5개국의 상호간 총 수출입 시장에서 4가지 패턴의 시장을 설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보수적(case 3) 시장을 국제 수산물 교역센터의 목표시장으로 선정



<그림 7-1> 국제수산물교역센터 목표시장 개념과 규모

- 또한, 5개국 상호간의 수출입 규모에서 현실적인 규모 산정을 위하여 대중성, 중개가능성, 거래금액면에서 9대 어종(명태, 명란, 연육, 대구, 오징어, 고등어, 새우, 참치, 연어)으로 목표시장을 한정함

○ 목표시장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음



- 주 : 1) FAO, Fishery Statistics- commodities production & trade 1996~2000
 2) 해양수산부, 주요 국가별 실적통계 자료, 1996~2000
 3) 일본, 농림수산업성 통계자료, 1996~2000
 4) 미국, National Ocean Atmospheric Administration Fishery Statistics 1996~2000

<그림 7-2> 국제수산물교역센터 목표시장 산정방법

- 국제 수산물 교역센터의 목표시장은 다음과 같이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 산정될 수 있음
 - ① 표준시장 : 최대 시장
 - 5개국 상호간 수산물 총 수출입 규모 중 중요 9개 어종의 전체 수출입 규모
 - ② case 1 목표시장
 - 표준시장 거래금액 중 새우, 참치, 연어는 25%, 기타 6개 어종은 50%.
 - ③ case 2 목표시장
 - 표준시장의 9개 어종 중 새우, 참치, 연어를 제외한 6개 어종 전체 거래금액.
 - ④ case 3 목표시장 : 국제 수산물 교역센터의 목표시장
 - 표준시장의 9개 어종 중 참치, 연어의 2개 어종을 제외한 7개 어종 중 새우의 25%, 나머지 6개 어종(명태, 명란, 연육, 대구, 오징어, 고등어)의 50%

〈표 7-1〉 국제 수산물 교역센터의 유형별 목표 시장 규모

Case		시장 규모
표준시장	어종별 가중치와 거래 형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4,540,754천\$ (4조 9,948억원)
Case1	어종별 가중치(25% ~ 50%)를 적용한 경우	1,522,755천\$ (1조 6,750억원)
Case2	어종별 거래 형태에 따라 일부 어종을 제외한 경우	3,108,348천\$ (3조 4,191억원)
Case3	어종별 가중치(25% ~ 50%)를 적용하고 거래 형태에 따라 일부 어종을 제외한 경우	1,164,654천\$ (1조 2,811억원)

<표 7-2> 표준시장 산정

		표준 (가중치 미고려)		
		금액(천\$)	량(톤)	
5개국 상호 수출입 (A)	수출 ⇨	7,731,000	2,353,822	
	수입 ⇦	8,645,000	2,548,282	
	합계	16,376,000	4,902,104	
5개국 상호 어종별 수출입 (B)	명태	수출 ⇨	15,825	8,766
		수입 ⇦	32,650	42,075
		소계	48,475	50,841
	명란	수출 ⇨	283,177	11,640
		수입 ⇦	79,386	5,059
		소계	362,563	16,699
	연육	수출 ⇨	193,901	77,210
		수입 ⇦	180,521	112,580
		소계	374,422	189,790
	대구	수출 ⇨	355,220	100,799
		수입 ⇦	118,707	109,300
		소계	473,927	210,099
	오징어	수출 ⇨	142,757	153,580
		수입 ⇦	39,690	49,904
		소계	182,447	203,484
	고등어	수출 ⇨	31,107	33,936
		수입 ⇦	77,325	82,731
		소계	108,432	116,667
	새우	수출 ⇨	150,538	44,726
		수입 ⇦	1,407,544	131,868
		소계	1,558,082	176,594
	참치	수출 ⇨	186,053	66,414
		수입 ⇦	660,762	52,513
		소계	846,815	118,927
	연어	수출 ⇨	254,831	53,691
		수입 ⇦	330,760	67,629
		소계	585,591	121,320
합계	수출 ⇨	1,613,409	550,762	
	수입 ⇦	2,927,345	653,659	
	계	4,540,754	1,204,421	
B/A %	수출 ⇨	20.87%	23.40%	
	수입 ⇦	33.86%	25.65%	
	계	27.73%	24.57%	

<표 7-3> CASE 3의 목표시장 산정

		Case#3			
		가 중 치	금 액 (천\$)	량 (톤)	
5개 국 상호 수출입 (A)	수출 ⇨	N/A	7,731,000	2,353,822	
	수입 ⇦	N/A	8,645,000	2,548,282	
	합 계	N/A	16,376,000	4,902,104	
5개 국 상호 어 종 별 수출입 (B)	명 태	수출 ⇨	50%	7,913	4,383
		수입 ⇦	50%	16,325	21,038
		소 계	50%	24,238	25,421
	명 란	수출 ⇨	50%	141,589	5,820
		수입 ⇦	50%	39,693	2,530
		소 계	50%	181,282	8,350
	연 육	수출 ⇨	50%	96,951	38,605
		수입 ⇦	50%	90,261	56,290
		소 계	50%	187,211	94,895
	대 구	수출 ⇨	50%	177,610	50,400
		수입 ⇦	50%	59,354	54,650
		소 계	50%	236,964	105,050
	오 징 어	수출 ⇨	50%	71,379	76,790
		수입 ⇦	50%	19,845	24,952
		소 계	50%	91,224	101,742
	고 등 어	수출 ⇨	50%	15,554	16,968
		수입 ⇦	50%	38,663	41,366
		소 계	50%	54,216	58,334
	새 우	수출 ⇨	25%	37,635	11,182
		수입 ⇦	25%	351,886	32,967
		소 계	25%	389,521	44,149
	참 치	수출 ⇨	제 외	0	0
		수입 ⇦	제 외	0	0
		소 계	제 외	0	0
	연 어	수출 ⇨	제 외	0	0
		수입 ⇦	제 외	0	0
		소 계	제 외	0	0
	합 계	수출 ⇨		548,628	204,147
		수입 ⇦		616,026	233,792
		계		1,164,654	437,939
B/A %	수출 ⇨		7.10%	8.67%	
	수입 ⇦		7.13%	9.17%	
	계		7.11%	8.93%	

○ 규모면에 있어서 목표시장 달성 가능성은 아래와 같음

- 국제수산물교역센터에서 계획한 거래규모는 CASE 3으로 산정할 경우, 금액면에서 약 11억불(약 43만 톤)이며, 이를 개설 초반기(개설 이후 약 5년 정도)에는 50%인 6.6억불 (21만 톤)을 달성 할 것으로 계획
- 이 규모는 5개국 전체 교역금액 대비 3.5% 점유율로 수치적 달성 가능성은 현

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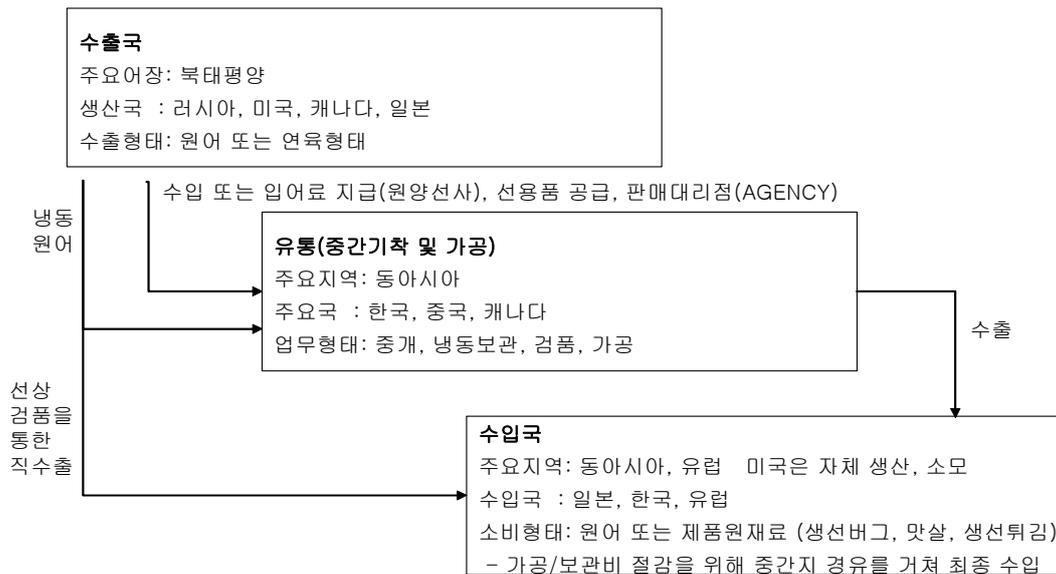
- 국제 수산물 교역센터에서 취급코자 하는 품목은 한국을 경유하지 않는 비환적 화물이나 실제 한국의 내수시장이나 현 국제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한국(또는 업체)의 중개비중이 적은 품목도 전략 거래품목으로 선정되어 있음
- 이는 국제수산물교역센터가 실질적이고 기능적 면에서는 일반적인 “상품거래”의 예비단계로서 거래소의 핵심기능 개발과 이의 제공을 통하여 국제적 거래자들을 유치코자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단순히 거래중개센터, 즉 기존의 재래식 시장 형성의 단계나 기능으로 축소해서는 안 될 것임

2. 거래형태별 분석

- 주요 5개국 수출입 규모가 높은 9대 어종에 대한 거래형태별 취급대상 가능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가. 명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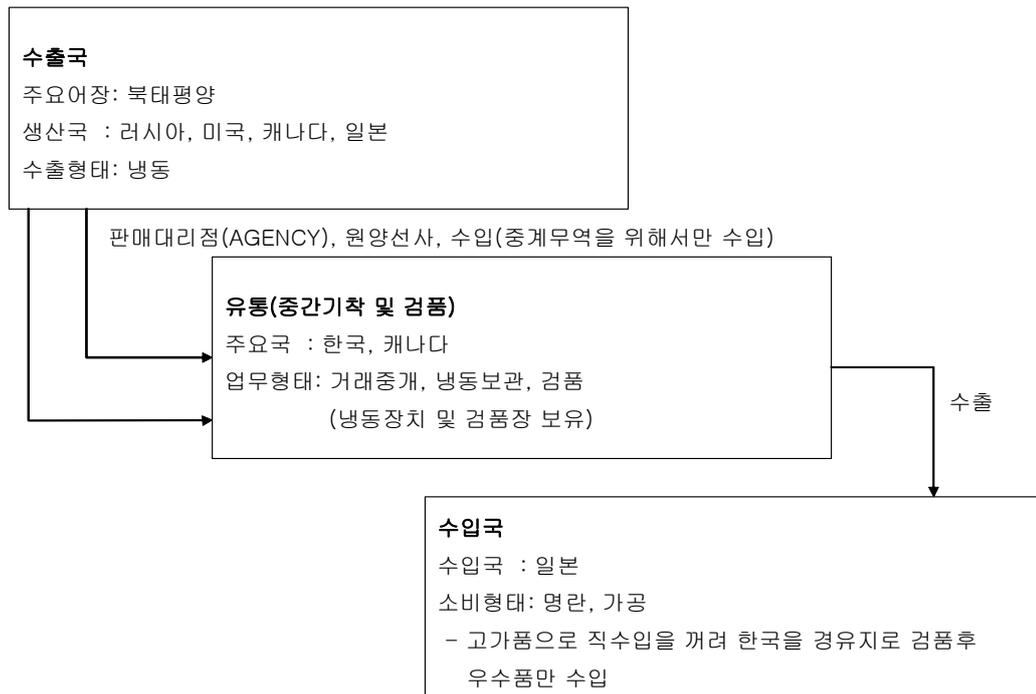
- 명태는 연육으로 가공된 형태의 거래가 많다 보니 생산량 대비 원어단계의 거래규모는 크지 않음
- FAO 기준으로 명태의 전세계 거래규모는 약 93,650천불에 약 13만톤 정도이며,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미국이 전체 시장의 약 60% 이상을 점유함.
- 원어 단계의 주요 수입국은 한국이 약 50%대의 점유를 나타내고 있음
- 국제 수산물 교역센터의 목표시장 중 명태의 취급예상금액 약 25,421천불(개설 1차년도 약 12백만 불)은 실제 국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고, 통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실제 중국에서 가공되는 상당수 명태(H/G, 펠레트 포함)물량도 한국 업체가 중개하여 공급하는 사례 등을 볼 때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품목임



〈그림 7-3〉 명태 및 연육의 국제거래 구조

나. 명란

- 가공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되고 있음.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의 경제력 취약으로 타국의 원양어선 생산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러시아 자국 생산 후 수출로 공급패턴이 바뀌고 있음
- 명란의 주요 소비국은 일본으로서 전체 거래금액의 90% 이상을 소비하고 있음
- 매년 11월~익년1월 까지 미국산(알래스카지역, 시드니 수산시장) 물량이 거래되고, 당해 연도 1월에서 최대 5월까지 러시아산이 부산 감천항에서 거래됨
- 거래규모는 최근 러시아산(감천 경유물량) 2.2억불(2003년 이후 축소, 정체 움직임)을 포함하여 연간 3.8억불대로 추정됨
- 국제 수산물 교역센터의 최종 목표취급금액은 1.8억불(개장 초기는 0.9억불)대로 수치적 면이나, 부산에서 대부분 거래되는 현실적 비중을 감안 할 때, 다양한 유인책 개발 시 취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품목이며, 어느 면에서는 목표 취급금액이 낮게 책정된 부분으로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품목으로 개발 가능성 및 필요성이 높음
- 거래과정에 있어서도 중개자(attendance, broker) 역할을 대부분 한국 업체가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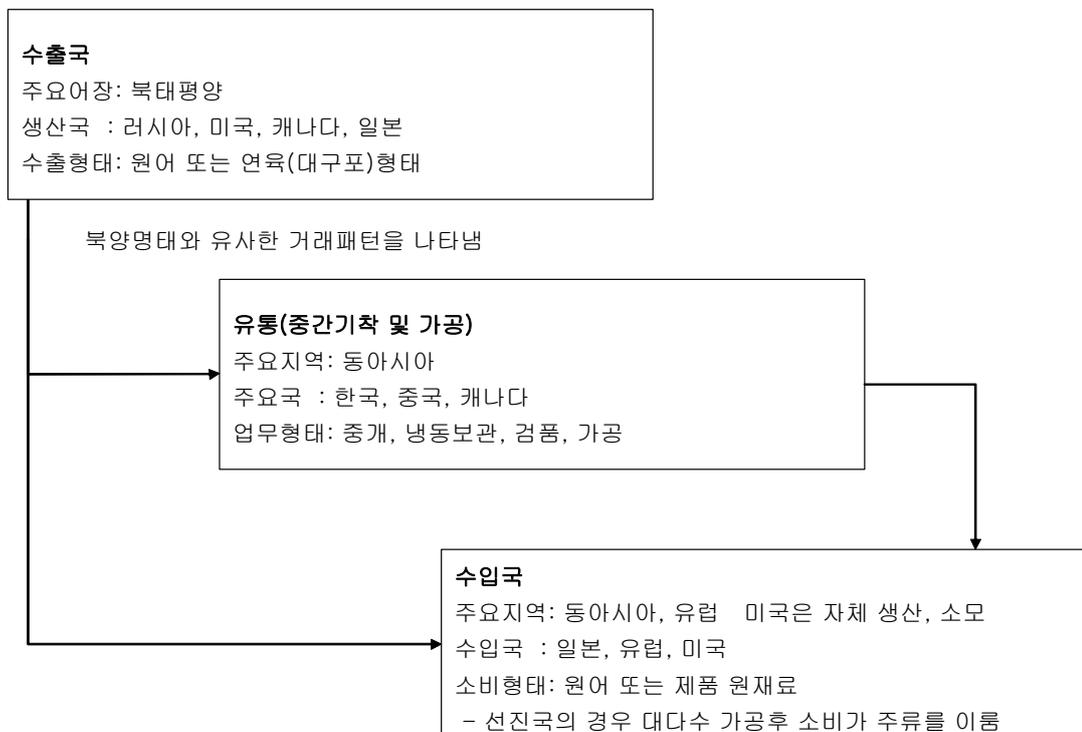
<그림 7-4> 명란의 국제거래 구조

다. 연육

- 연육의 세계 거래규모는 연간 28만 톤 내외이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으로서 전체의 48%인 약 13만 톤을 점유하고 있음. 주요 수입국으로는 일본이 거래량이 약 17만 톤, 거래금액이 약 3.2억 불 대이며, 다음으로는 한국이 20% 비중에 약 0.9억 불대임.
- 유통경로는 명태와 거의 동일하며 한국이 지리적, 유통과정상에 있어서 중간 자적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국제수산물교역센터의 목표시장 금액은 1.8억 불(초년도 0.9억 불대)대로서 동북아 5개국 연육 전체거래금액 대비 달성가능성은 있으나, 연육의 거래형태가 유통(물류), 가공, 소비(공급)단계로 메이저 회사에 의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시장개척 시 교역센터의 시장영업부에 의한 직접 유치영업이 필요할 것임
- 국내 중.소 유통상(수입상)의 취급은 매우 미미함

라.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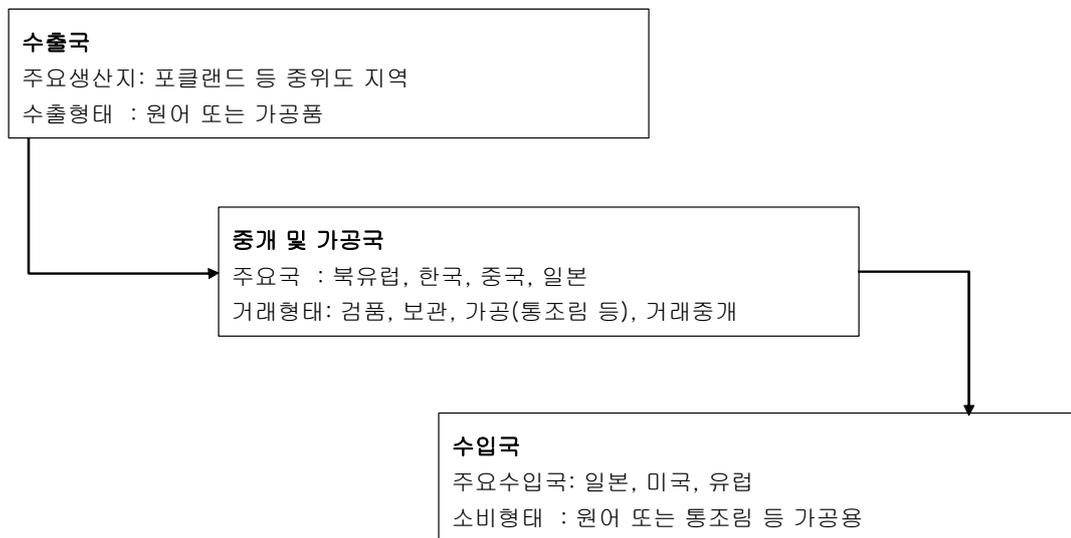
- 한대성 어종으로 세계적으로 북태평양, 북대서양 등지에서 어획되고 명태와 유사한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어족보호를 위해 쿼터할당 후 어획되어 냉동창고에서 보관하여 소비되므로, 중개거래의 여지가 많음
- 대구의 세계 거래량은 약 750천 톤 대이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러시아로 전 세계 수출량의 23%를 점유하며, 전 세계 거래규모는 11억 불 대임
-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로 총 거래규모의 34%인 3.9억 불이며 미국이 14% 대로 1.7억 불, 일본 0.8억 불 대임
- 가공원료 단계로 대다수 물량이 거래되며, 한국의 경유 비중은 매우 미약함
- 국제수산물 교역센터의 목표시장 금액은 2.3억 불(1차년도 1.15억불)로 달성 가능성은 엇보이나 러시아, 중국 등 해외 사업자의 유치가 관건임
- 이 부분에서 사전가격 결정에 따른 헤징(Hedging) 필요성을 가지는 구매그룹의 수요가 시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임



<그림 7-5> 대구의 국제거래 구조

마. 오징어

- 포클랜드 등 남미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국제 간 무역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선이 직접 조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후 재수출하는 거래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중국으로 가공기지 이전 추세 심화
- 오징어의 세계 거래량은 약 1,094천 톤대이며, 거래금액으로는 약 13억불 수준이며 수출금액 면에서 한국이 0.8억 불 , 미국 0.6억 불 수준임
- 주요 수입국으로는 스페인인 약 20%의 점유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 0.9억 불 한국 0.34억 불, 일본 0.24억 불 등으로 나타남
- 중개 및 가공 그리고 소비의 상당부분이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이루어 짐
- 국제 수산물 교역센터의 목표금액은 0.9억 불(초년도 0.45억 불)은 규모면이나 거래 형태면에서 달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7-6> 오징어의 국제거래 구조

바. 고등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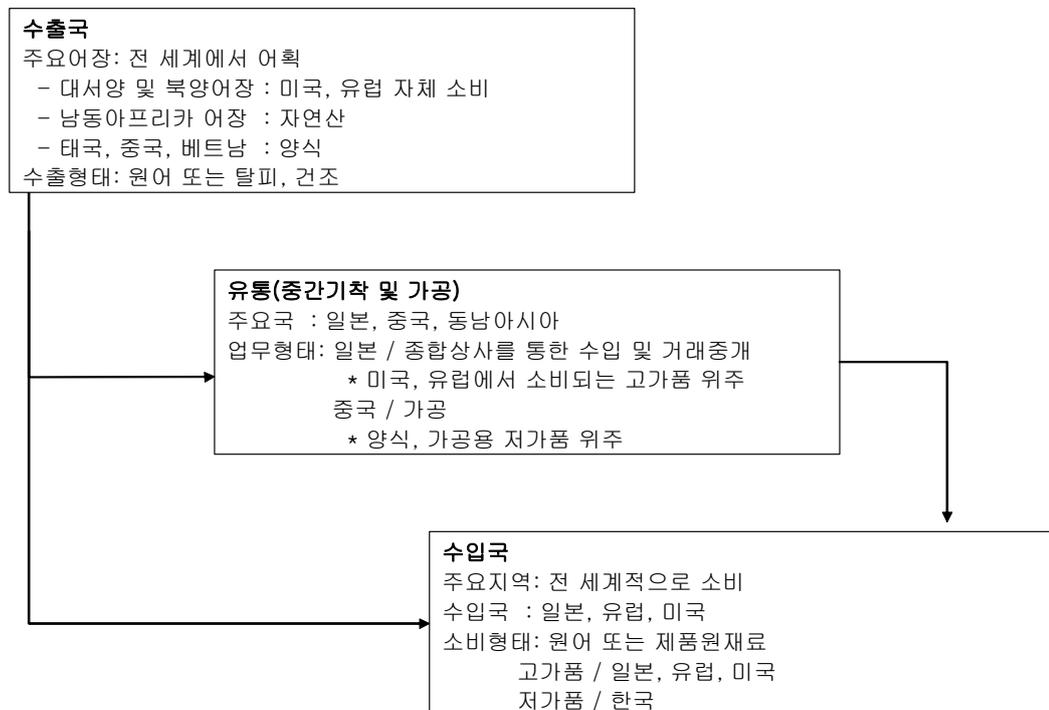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생산, 소비되는 대표적 대중어종 임
- 대다수가 생산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되며, 국제 간 거래는 잉여분 위주로 이루어지나,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가 주요 소비지로서 노르웨이, 영국 등으로부터 부족분을 수입
- 전 세계 거래금액은 약 6.2억 불 대로 이중 노르웨이(41%), 영국 (20%)등이 주요 수출 국가이며, 일본 (25%, 1.6억 불), 한국(3%, 0.2억 불), 중국, 러시아, 미국 등 5개국 전체의 수입규모는 2.4억 불 대임
- 거래형태는 대형메이저에 주도되며, 국제 수산물 교역센터의 목표시장은 0.5억 불 (초년도 0.25억 불)로 달성가능성은 높은 편이며, 거래형태나 실제 거래에 있어 한국 업체의 참여비중이나 시장규모에서 볼 때 목표금액이 오히려 낮게 책정된 품목으로 판단됨.



<그림 7-7> 고등어의 국제거래 구조

사. 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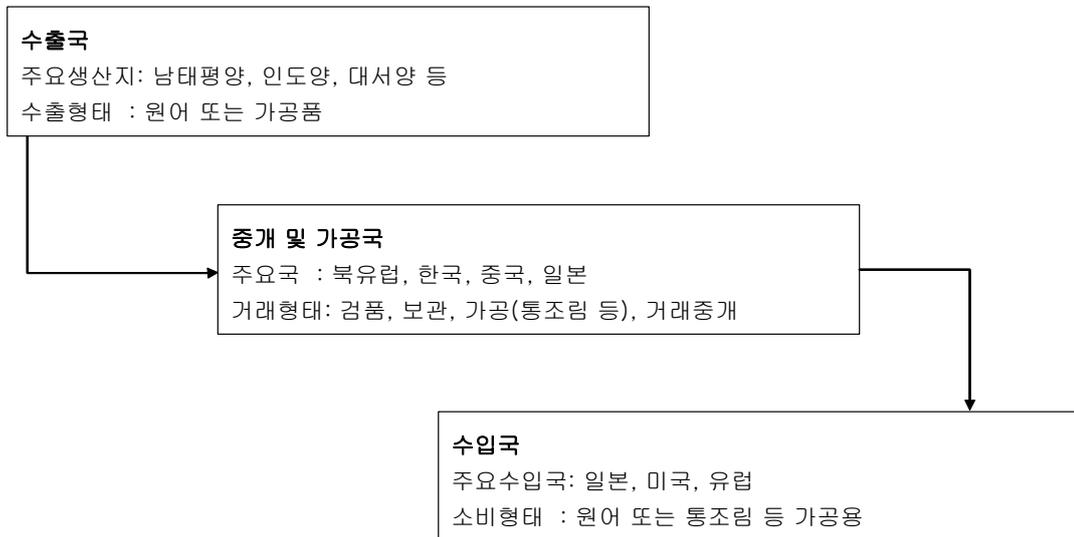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나, 선진국 생산분은 대다수 자국 또는 지역 내에서 소비되며,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등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브라질, 우루과이 등 남미 대서양 연안에서 생산되는 새우와,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양식새우가 국제 간 거래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음
- 새우의 국제 간 거래는 미국 및 일본의 종합상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직 주요 교역국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꾸준히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2000년 : 0.75억 불 ~ 2003년 : 1억 불 초과 / 2004년 : 1.6억불대로 증가)
- 새우의 국제 거래 규모는 83억 불대로 미국 (32%, 31억불), 일본(29%, 27억 불) 이 거대시장이며, 최대 수출국으로는 태국(18%), 인도네시아(11%) 등 동남아 국가임
- 대표적인 선도거래 품목으로서 현재 한국 소비물량은 미약하지만 국제수산물교역센터 입장에서는 전략 거래품목으로서 개발 필요성이 매우 높음



<그림 7-8> 새우의 국제거래 구조

아. 참치 (교역센터 거래제외 품목)

- 대표적 고급어종이나, 어족자원 감소로 전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품질 등급에 따른 가격차가 심하고, 가격변동 리스크가 큼
- 일본으로 수출되는 참치 물량 중 일부가 한국을 거쳐 수출되고 있으나, 아직은 대다수 물량이 생산지에서 일본으로 직수출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가격 결정권 및 주요 시장정보를 장악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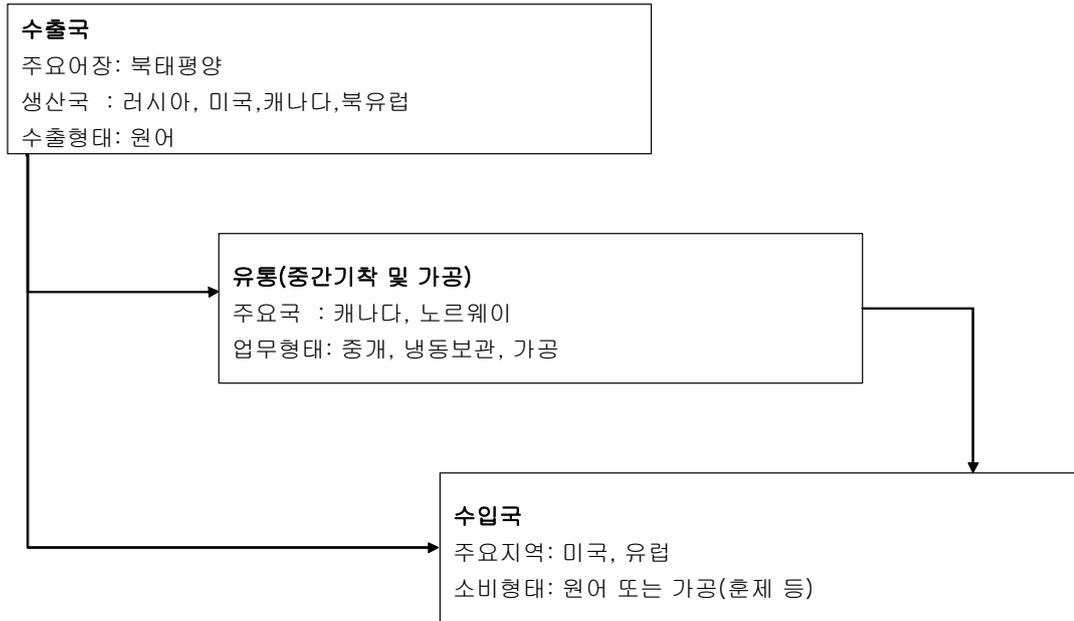
<그림 7-9> 다량어(참치)의 국제거래 구조

<표 7-4> 다량어(참치)의 거래형태 분석

구 분	주요소비지	가공형태	거래형태
최상품	일본	원어(횡감)	대다수 생산지에서 직수출
상 품	일본, 미국, 유럽	원어, 가공	직수출, 중개지를 거쳐 거래
중하품	선진국, 동아시아	원어, 가공	한국, 중국, 캐나다 등에서 통조림 등으로 가공 후 유통

자. 연어(교역센터 거래제외 품목)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대다수 소비되므로 한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주요 생산 및 가공국은 노르웨이와 캐나다 임



<그림 7-10> 연어의 국제거래 구조

3. 요인별 성공가능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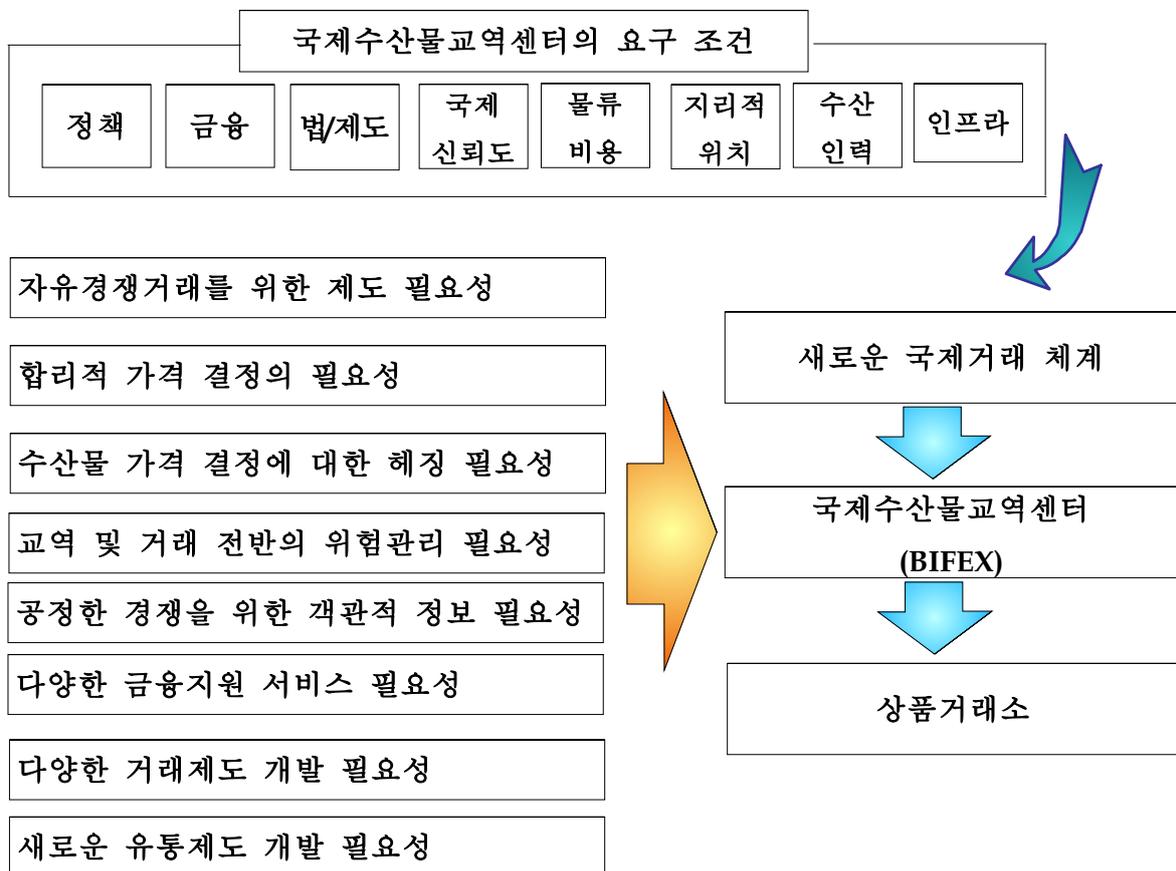
- 대다수 수산물 거래자의 거래, 유통구조 및 관련기능의 변화에 대한 수요와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성공요인의 개발가능성 측면에서 국제수산물교역센터의 성공 가능성을 분석함

가. 수산물 거래 시장 변화에 대한 수요

- 뉴라운드와 진전과 국별 수산물시장이 국제적 의존도가 증가 되고 비경쟁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시장체제로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국제거래체계(new market operating structure & service)의 도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
- 선도거래 등의 방식으로 해소되는 거래 위험의 헤징을 생산, 소비, 보관 등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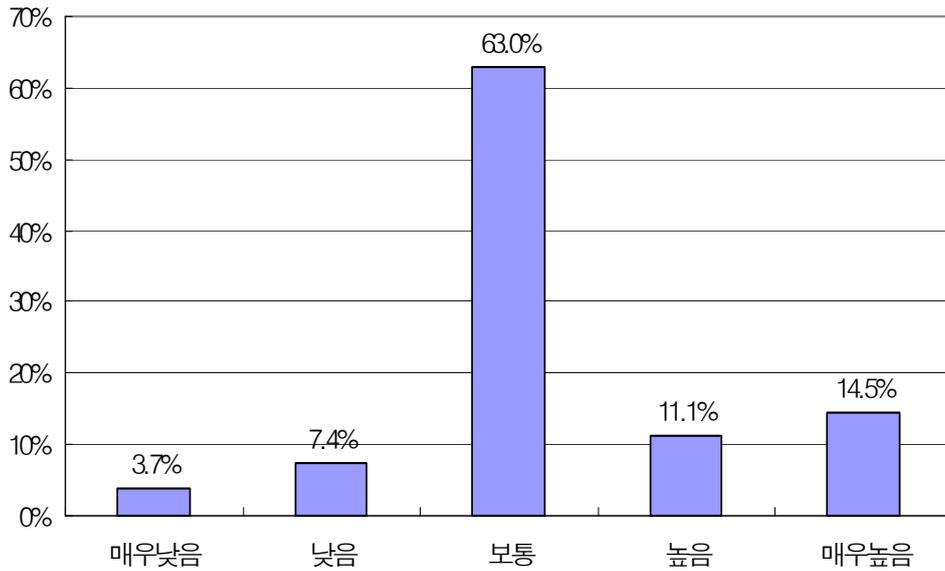
반의 수급조절과 가격에 대한 합리적 헤징기능의 개발 수요가 증대됨

- 객관적 가격결정, 인수도 및 결제 안정성을 중립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공인 시스템의 필요성 증대함.
- 유통 및 가공업체의 대형화 등으로 인한 신 유통질서(거래환경) 도입이 절실함
- 정보의 생성과 전달에 폐쇄적 구조에 대한 저항과 불확신을 제도적으로 걸러 내고 수산물 국제적 표준화 및 규격화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 다양한 금융지원 시스템 및 유동성 확보에 대한 수요가 다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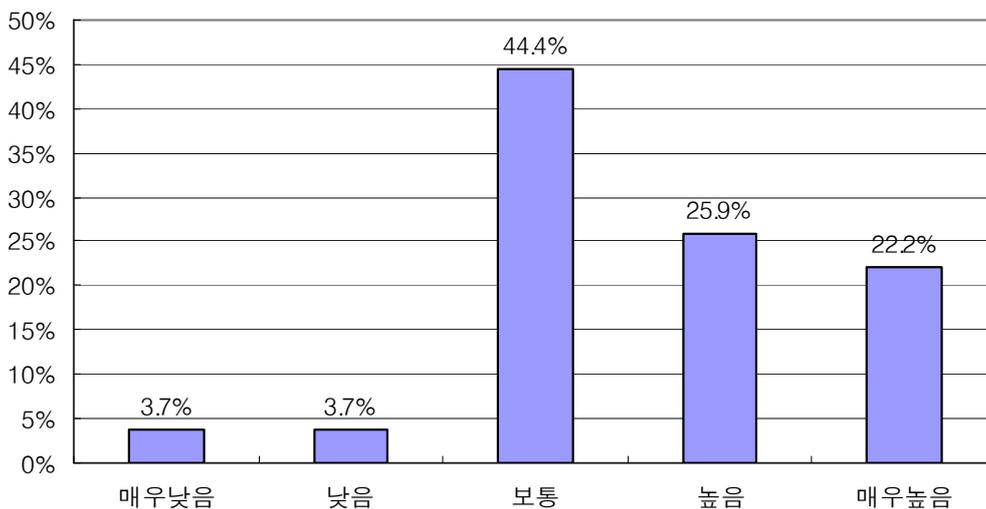
<그림 7-11> 수산물 거래시장 변화 와 Needs

- 2003년. 부산국제수산물교역센터 설치 수요조사결과
 - 시장가격의 신뢰도에 대한 위협으로는 25.6%가 높다고 한 반면에 11.1%가 위협이 낮다고 응답함



<그림 7-12> 시장 가격 신뢰도의 위험성 분석결과

- 현재 거래한 물품의 품질에 대한 위험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8.1%의 응답자가 높다고 하였으며, 위험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7.4%에 불과함



<그림 7-13> 설문 응답자의 거래 물품의 품질에 대한 위험도 분석결과

- 이를 통해 현재 수산물 거래 시장이 폐쇄적이며, 불투명한 거래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교역센터 설립을 통한 매수/매도 정보의 공유는 합

리적인 거래 체계를 유도하여 수산업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성공요인

- 국제수산물 교역센터(선물기능 포함)의 핵심성공요인의 양호성과 중요성 측면에서 2000년 부경대 조사결과를 인용 분석함
 - 국제적 표준화 및 규격화 측면과 동북아지역 물량확보가능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양호한 점수가 나왔으나, 전체적인 공급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최근 TAC 규제나 저장 및 양식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량한 예측이 나왔음
 - 이는 한편으로 수산 정보 및 통계의 미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보의 신뢰도는 제공자에 대한 잇점의 제공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면에서 볼 때 이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가공 정보의 수준이 미흡할 뿐 만 아니라, 제공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측면으로 보임
 - 한편으로 이 부분은 정보 접근 편리성이 낮다는 면과도 연관된 결과로 보임
 - 표준화 및 물량확보 가능성 측면에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실제 외국 기업들이 대형(선도) 거래 등을 주도하면서 노하우의 축적 정도나 시장 형성, 활성화 면에서 국내 기업보다 훨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과의 반증이기도 함
 - 자유로운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대하여는 보통 수준의 응답이 나옴(이 부분은 거래형태나 품목에 따라 다양한 응답이 예상되며, 참여자 확보를 마케팅 수단 개발에 중요한 바탕이 될 것임)

<표 7-5> 핵심 성공요인의 평가

핵심성공요인	해외	국내	전체
표준화된 등급 시스템	3.3	2.9	3.3
공급 예측 정확성	2.3	2.2	2.3
동북아 지역 물량 확보 가능성	3.3	3.0	3.2
자유로운 가격 결정 메커니즘	2.7	3.3	3.0

주 : 설문조사(2003년)로부터 작성. (5점 척도, 1점 : 매우 불량. 5점 : 매우 양호)

- 중요성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모든 요인이 중요하게 나왔으나, 특히 청산시스템, 시장/가격 정보 시스템, Data Base 및 전산거래 시스템, 강력한 금융기반, 가격 결정 시스템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옴
- 외국 기업의 경우는 가격결정시스템과 청산시스템을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일본시장과의 근접성 등 지리적 중요성 및 물류, 유통시설 및 가공기반 등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냄
- 이는 이들이 이미 특정지역이 아닌 국제적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본질적으로 거래소 성공 핵심요인인 인 해징에 대한 강력한 수요 및 본질적 거래완성에 필수적인 가격결정 및 청산시스템에 대한 응답에서 반증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Data Base, 공급예측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높게 나오는데, 이는 국내 기업이 아직 국제화정도나 시장에 주도력 (Initiative, making power)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국제수산물교역센터가 단계별 발전전략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임)
- 강력한 금융기반, 표준화 등의 문제는 공히 중간 이상의 응답을 나타냄

〈표 7-6〉 핵심 성공요인의 중요성

핵심 성공요인	해외	국내	전체
표준화된 등급 시스템	4.3	4.2	4.2
공급 예측 정확성	3.7	4.7	4.1
국제적 참여자의 조기 확보	4.3	4.2	4.2
자유로운 가격 결정 메커니즘	4.7	4.2	4.4
일본 시장과의 근접성	3.7	3.7	3.7
강력한 금융 기반	4.3	4.3	4.3
효율적 물류 / 유통 시설	3.3	4.4	3.7
시장 가격/정보, DB	4.3	4.9	4.6
전산 거래 시스템	4.3	4.6	4.5
수산물 가공기반	3.7	4.4	4.0
정산시스템	4.7	4.6	4.7

4. 목표시장 달성 타당성분석 결과

- 정량적 측면에서의 목표시장 달성가능성은 7대 품목 공히 전체 거래금액 대비 점유율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수치로 판단됨
- 명태는 가공단계 시장의 성장가능성이나, 한국 입장에서의 시장소비력과 현실적 시장장악력 기준으로 볼 때 적정 시장으로 판단됨. 물론 명태의 쿼터 등 물량확보는 단순히 국내의 정책적인 문제(안정적 물량 확보)로 풀 수 있는 문제의 성격보다는 국가간의 이해 관계를 더욱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러시아의 정책 변화와 니즈를 이해하여 서로가 윈윈하는 차원에서 물량을 확보해야 함. 자원 보호주의의 원칙이 지배하는 명태의 쿼터는 우리의 쿼터 확보 외에 러시아에 이익을 충분히 제공하여 자연히 러시아 물량이 감천에 상장되도록 유도하여 함

<표 7-7> 국제수산물교역센터의 목표시장(거래금액 기준)

(단위 : 천 불)

구 분	전 세 계	5개국 계 (표준시장)	5개국 계 (CASE 3)	개장 초기 중개목표①
명 태	93,650	48,475	24,238	12,119
명 란	362,563	362,563	181,282	90,641
연 육	477,638	374,422	187,211	93,605
대 구	1,161,606	473,927	236,964	118,482
오징어	1,380,255	182,447	91,224	45,612
고등어	624,986	108,432	54,216	27,108
새 우	8,791,217	1,558,082	389,521	194,605
참 치	2,916,546	846,815	제 외	-
연 어	3,242,976	585,591	제 외	-
소 계	-	-	1,164,654	584,327
G/R	교역센터 개설 1차년도 (50%)		584,327	-
	“ 2차년도 (70%)		815,257	
	“ 3차년도 (100%)		1,164,654	

주 : ① 개장초기 중개목표는 CASE 3 시장의 약 50%로 추정하고 있음.

- 대표적 선도거래 품목 중 하나로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우월적 위치를 가지고 있으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선 투자금액, 인수비율, 인수시점 및 보관중 시세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징 필요성 매우 큼

- 명란시장은 실제 한국기업의 포지션(중개자)이나 일본 시장과의 접근성 측면, 향후 전략적 개발가능성 및 거래 참여자의 제한 등의 사유 등을 볼 때 초기 시장 목표가 저평가 된 것으로 보임
- 연육, 대구시장은 중국 등 가공 단계의 시장장악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한국 경유 비중의 축소현상을 볼 때 초기 시장목표가 고평가 된 것으로 보임
- 오징어, 고등어 시장은 실제 국내 기업의 구매력, 중개의 포지션을 볼 때 저평가 시장으로 평가됨
- 새우시장은 전 세계 거래비중이나 일본, 미국시장의 근접성을 볼 때 교역 센터에서 가장 전략적인 접근방법 및 마케팅 수단의 개발이 있어야 되나, 현 시점에 있어서는 초기 목표시장이 고평가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상과 같은 평가를 반영하여 저평가, 적정, 고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을 각각 가중치 130%, 100%, 70%로 수정하면 아래와 같음

<표 7-8> 국제수산물교역센터의 수정목표시장 (거래금액 기준)

(단위 : 천불)

구 분	가중치 (%)	수정시장①	5개국 계 (CASE 3)	개정 초기 중개목표②
명 태	적 정 (100)	24,238	24,238	12,119
명 란	저평가 (130)	235,674	181,282	90,641
연 육	고평가 (70)	131,047	187,211	93,605
대 구	고평가 (70)	165,874	236,964	118,482
오징어	저평가 (130)	118,591	91,224	45,612
고등어	저평가 (130)	70,480	54,216	27,108
새 우	고평가 (70)	272,664	389,521	194,605
참 치	제 외	-	제 외	-
연 어	제 외	-	제 외	-
소 계		1,018,568	1,164,654	584,327
G/R	1차년도 (50)	509,284	584,327	-
	2차년도 (70)	712,997	815,257	
	3차년도 (100)	1,018,568	1,164,654	

- 주 : ① 수정시장은 <표 3-20>을 기준으로 각 어종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 재평가한 것임.
 ② 가중치는 2003년 부산시 용역중 시장조사의 결과, 2004년과 2005년 국제물을 취급하는 글로벌 트레이드 회사 (러시아 의 로리츠/년간 35만톤 생산자, 퍼시픽안테스, 삼성물산, 다이찌 상사, sk글로벌 자판 등)와의 조사를 반영한 것임.
 ③ 개정초기 중개목표는 CASE 3 시장의 50%로 추정하고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계획을 통해 국제 수산물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만, 실제 개장 전 목표(시장)계획의 설정은 운영의 안정성 및 거래의 달성 가능성의 단계별 접근을 통하여 설정해야 할 것임
- 현실적이며 단계별 접근이라 함은 결국 상기 품목의 주요 거래 당사자(당사국 또는 업체)와 함께 현재 시장의 변화에 적합한 기능 및 제도의 개발, 그리고 이 과정 및 실행 전 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참여의향 및 확정(Business Contract 등)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임

제2절 목표시장 확보방안

1. 시장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

가. 자유경쟁거래 시장 제공

- 국내의 산지, 소비지 도매시장이나 일반 수출입 수산물(이하, 국제물) 시장구조이든 내부적으로 폐쇄적 거래구조로서 매도, 매수자가 기존의 거래자로 제한된 형태임
- 도매시장의 경우는 시장가격의 안정화, 생산자(위탁판매자)의 보호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거래형태나 거래참여자가 제한받으며, 국제시장의 경우는 기존의 거래로 인해 형성된 거래이행(인수도, 결제)에 대한 신뢰와 이를 대체할 새로운 거래자에 대한 신뢰부족 및 그에 대한 추가 위험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자유경쟁 거래 시장점을 알면서도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이는 기존의 어떤 수산물 시장도 제공하지 않는 부분으로 이를 부산국제수산물교역센터가 제공함으로써 변화를 바라는 다양한 참여 주체들을 확보한다는 것임
- 자유경쟁거래를 위해 교역센터는 필수적으로 거래이행 즉, 인수도(Delivery) 및 결제(Settle)를 책임 보증하는 장치를 가져야 함. 이 부분은 교역센터의 정회원(dealer)과 함께 수행되어야 하며, 이런 장치로 인해 대량거래 외에 소량거래도

가능하며, 기존의 거래 관계자(업체) 외에도 참여를 확대시켜 합리적 가격결정을 이뤄내게 됨

- 이런 기반하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적 경매방식 외에 경매매 방식, 역경매 등과 함께 협의거래, 후정산 거래(수입 시 가격결정이 아니라 거래 후 판매가, 수입가 결정) 등 시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거래방식을 조성하게 됨
- 준회원(broker)의 역할은 자기명의 하에 타인의 매도, 매수를 대행하여 수집 및 분산거래를 활성화 하며 특히 탄력적인 소량, 다품종 거래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게 됨

나.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 교역센터의 금융지원 시스템은 유통업체 및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유동성 지원이지만 교역센터 입장에서는 거래물량확보라는 측면이며,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거래 활성화, 국제 수산물 교역센터 선점이라는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임
 - 수입유통업자가 판매 전 단계에서 수입시점에 L/C개설 지원이나 특히 B/L 단계에서 전체 물건의 상장조건으로 금융지원하거나, 수입 입고 후 판매 전에 적정 금액을 업체(신용도, 거래 기여도등) 및 품목(대체성, 품질, 가격 등)의 조건에 따라 금융지원
 - 수입업체 입장에서 생산물량의 사전 확보를 위하여 생산자에게 선도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경우,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과 미 회수 리스크라는 측면이 동시에 압박 되는데, 이 경우 교역센터는 자체적인 위험관리(보험이나 보증적 장치)시스템과 교역센터의 정회원을 통한 거래이행을 중개하여 개별 대·소 업체가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거래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됨
 - 부산 국제수산물 교역센터 성공요인 분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특히 높은 반응이 나온 부분도 이에 해당되는 청산 및 금융지원시스템 구축임

다.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 위험관리 시스템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행, 즉 핵심적으로는 인수도 및 결제 불이행을 방지하며, 2번째는 금융지원에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financial risks)를 교역센터 및 참여은행 측면에서 방지하는 것임
- 인수도 및 결제 리스크는 단계별로 보면,

- 먼저 교역센터 입장에서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하여 , 해당 업체의 다양한 요소(재무건전성/신용도, 실적, 매출액, 거래패턴, 업계신용도, 대표자 등)에 의해 참여유무 및 참여자격(Level : ● trader A/B/C, ● Broker , ● Dealer)를 결정하여, 거래안전성 확보 와 역할 및 지위권한 (지원, incentive ,rights)을 부여함
- 아울러 매도, 매도 거래과정 설계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도 (검수 ▷ 상장 ▷가계약 ▷ 최종검수 ▷ 본계약 및 매도) 와 매수(입찰 :증거금, 신용 확인 ▷ 가계약 ▷ 결제확인 ▷ 본계약 및 매수) 의 절차를 설계 하면서 가계약 단계이후 특히 매수자의 결제능력 (신용포함) 을 점검하여 거래안정성을 높여야 함
- 신용리스크 관리방안 이에 따라서 시장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의 사전적/과정적/사후적 관리를 통하여 각 참여주체별 위험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구조를 설계함
 - 거래 활성화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각 참여 주체별 적정 자본금 규모
 - 금융대여(담보) 자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 (Safety Call, Margine Call, 반대매매 등)
 -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인수도의 완성, 검수의 객관적 합리적 방안, 합리적 가격 결정 구조, 거래 증거금을, 패널티 부여 방안, 거래 방법 등)
 - 효과적 위험관리 상품 개발 방안(보험상품 개발 등)
 - 기타 부수적 위험관리 방안(배상책임, 재물손해 등) 등
- 위험관리 시스템 설계 핵심 검토요소
 - 수산물이라는 재화의 특수성(규격, 저장, 재화 생산의 무한성 및 유한성, 가격의 변동성 등)에 대한 이해
 - 수산물품의 담보라는 측면에서 대손충당금의 부담
 - 누적기간(PAY BACK)의 부족으로 판단근거 취약
 - 사고(대손) 발생시 사고의 정의, 사고구간, 책임부문의 정의
 - 전체 업무 정의 및 설계
 - 금융상품 운영에 있어서 정책적 지원방향(기금,이자보전, 보험료 지원, 거래세, 법인세, 관세 조정등)

라. 기타 사항

- 선사나 유통회사의 일부물량을 전략적으로 기존 수의계약보다는 우월적 조건으로 거래토록 하여 가격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공인 검수인 자격 제도 도입
 - 거래의 가격형성 메카니즘에 의하여 수산물의 가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러한 가격형성 메카니즘의 전후에 발생하는 수산물의 가격변동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의 노출에 대하여 제도권의 금융서비스는 항상 어려워하고 있음
 - 따라서 제도권의 적정한 금융서비스를 위해서는 수산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인되는 가격 및 품질이 보장이 전제되어야 함.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공인검수인이라 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적자원의 양성 및 자격증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및 국제간 어종에 따른 포장 단위 및 규격의 표준화 협의 시 국제수산물 교역센터의 적극적인 참여
-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매수, 매도권을 정회원과 함께 국제수산물교역센터에 이분화 함으로써 수산물의 수급조절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정부,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교역센터, 학계, 업계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부산항을 국제 수산물 물류중심지로 조기에 구축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유통정책협의회 ” 신설
- 세원노출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기 5~10년간 국제수산물 교역센터에서의 수산물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 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세금 감면 또는 유예혜택 지원
- 국제 수산물 교역센터 회원사가 수입·수출할 경우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출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제수산물교역센터 거래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지원
- 특수 고가어종을 제외한 일반 대중어종은 국제수산물 교역센터의 검수로 수산물 검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통 편리를 제공하는 제도 지원

2. 감천 공영 수산물도매시장 과의 경합, 중복 문제

가. 목표시장 부분

- 감천공영 수산물 도매시장과 국제수산물교역센터는 수산물, 현물을 취급하는 측면에서는 중복 시장임
- 그러나 감천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국내 내수 목적의 연근해물, 원양(반입)물,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시장이라면, 국제수산물교역센터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생산, 가공되어 소비되는 국제유통 수산물을 대상시장으로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감천공영도매시장과는 차별적인 시장임
- 교역센터의 발전방향은 거래소임. 거래소는 회원 중심의 시장으로서 향후 도매시장은 회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서로 윈윈의 구도로 발전할 수 있음.
- 또한 국제수산물교역센터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은 크게 부산 감천항을 경유하는 환적화물 (BWT. TS)과 비환적화물, 즉 교역센터에서 매도, 매수자에 의해 순수 거래만 발생하는 수산물을 취급 한다는 측면에서 감천공영도매시장이 하드웨어적 사업 또는 시장임
- 반면, 교역센터는 부두, 창고, 경매장 등 인프라 보다는 헤징(위험관리), 금융 지원, 자유 경쟁거래. 정보지원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구축 및 지원을 통하여 형성시키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음

나. 거래참여자 및 거래흐름

- 감천공영시장은 농안법에 의해 참여자격이 제한되나, 교역센터의 경우는 자기 위치 및 역할에 맞는 계좌개설 및 증거금 예치 등의 조건만 갖추면 외국인을 포함한 누구라고 참여가 가능하며 이는 교역센터의 자유경쟁거래 및 투기적 거래자들의 참여를 유도시켜 객관적 가격형성, 시장의 유동성 제고의 기초가 됨
- 참고로 공영도매시장은 농안법에 근거를 두고 매매참여자를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매참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교역센터는 농안법이 아닌 일반적 상법에 기반한 주식회사로서 참여자의 제한이 없이 교역센터의 운영 방안에 따라서 참여자를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참여자의 제한이 없는 것임

- 아울러 거래참여자는 회원사의 위치로 교역센터와 수평관계 또는 동거관계로 거래 활성화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구도임
- 감천공영도매시장의 거래흐름은 생산자 ⇒ 도매시장 ⇒ 매수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 ⇒ 소비자로 이동하는 단방향 거래이나, 교역센터는 장내에서 회원사 간에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매도자로, 매도자는 매수자로 언제든지 포지션 이동이 가능한 거래흐름을 가지고 있음 (이를 통하여 실거래자 외 투기적 거래자 참여 가능)

다. 위험관리

- 기존의 도매시장의 경우 거래참여자인 중도매인은 대부분 자본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나 법인으로 유동성 부족, 불결제 및 미수금, 채고부담, 가격하락 등에 대한 시스템 부재
- 교역센터는 중거금 제도, 일일정산 및 청산 관리 , 보험등 위험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거래참여자는 안심하고 거래에 전념할 수 있음

라. 법/제도

- 감천공영 수산물도매시장은 농안법에 근거를 두며, 교역센터는 상법에 근거한 지방공기업법과 회사법에 기초를 두고 있음. 따라서 교역센터는 자유시장경쟁논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 및 제도개발이 용이함
- 결론적으로 감천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 교역센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가 각각의 장점으로 개발되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교역센터의 국제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채고, 변동성, 위험관리 등의 정보가 공유되어 감천을 국제수산물류중심기지로 만드는데 있어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서 상호간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임

3. 국제수산물 교역센터 설립 운영방안

- 부산국제수산물 교역센터 설립논의는 부산시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국선물거래소 유치 결정시부터 부산지역의 강점과 차별성을 특화하기 위해 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인 상품거래소 확보라는 명제에서 시작됨
- 이는 부산을 종합금융도시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전략적 목표에서 수산물에서 출발한 국제적 수산금융의 발전, 나아가 항만금융, 선박금융 등으로 발전하겠다는 계획임
- 단, 현 단계에서 선물거래의 취급은 현행 선물거래법이나 2004년 1월 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법에 의해 수산물 선물을 한국선물거래소 외에서 취급할 수는 없음
 - 이 부분은 국제수산물교역센터가 현물 및 선도거래를 최대한 활성화하면서 시장의 자유로운 요구나 효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조정될 수 있는 상황임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선물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음. 상품거래에 있어서 오직 선물거래(수산물 등)에 대하여만 선물거래법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선물시장에서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품의 현물거래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즉, 선물거래는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정하는 선물시장에서만 거래토록 진입 장벽을 높게 두고 있음. 더욱이 한국에 유가증권시장과 선물거래시장(통합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 꼭 1개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허가 요건 및 비용의 중복투자 등을 고려하여 마치 한국에는 이러한 시장이 1개 이어야하는 관습적 구속으로 고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수산물교역센터에 있어서 지향하는 향후 발전모델로서 수산물거래소는 현행법을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여기서 지향하는 수산물거래소는 상품거래소로서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취급하는 시장인 것임. 현물 기반이 없는 선물의 거래는 불안정거래로서 시장의 취약성과 시장 파탄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임

- 수산물의 선물거래에 대한 필요성은 명약관화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봄. 따라서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사전 요건, 즉 상품의 표준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현물 인수도, 가격의 변동성, 참여자(대량거래자와 스펙클레이터 포함)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를 교역센터 단계에서 충분히 준비 및 운영하여 선물거래의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점에서 선물의 필요성과 시장의 안정성이 검증된다면 상품거래소법의 새로운 제정, 또는 현행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수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또한 현행 선물시장에서도 현물의 충분한 검증이 없는 수산물의 즉시 선물상장은 원하지도 않을 것임. 따라서 현물 운영의 노하우가 없는 수산물의 선물거래에 대하여 뜨거운 감자로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임
- 그렇다면 현행 증권거래법에서 코스닥 시장의 분리처럼, 향후 필요하다면 일반상품의 선물거래는 현행 선물시장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현·선물을 동시에 하는 시장을 새로이 개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봄
- 성공적인 진입 및 설립방안
 - 국제수산물교역센터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로서는 수산물의 유동성 극복기능, 거래위험의 제거, 주요 거래자의 참여방법, 검수 및 표준화의 문제 등이 있음
 - 국제수산물교역센터의 조기 선점운영을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와 민간의 전문기관 및 인력이 배치된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법인설비준비와 함께 업무분석, 핵심기능 및 거래상품 개발 그리고 사전 마케팅(물량확보=회원사 확보+고객확보)등의 업무를 병렬적으로 동시에 진행해야 함
 - 국제수산물교역센터는 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전문성이 결합되는 제3섹터 공동투자방식의 지방공기업법상의 주식회사 형태임. 이때 민간 투자기관이 개별 핵심기능을 보유한 자로 발굴, 유치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투자그룹과 기능별 참여 그룹을 달리하여 생기는 문제점보다는 나올 것임
 -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는 회원사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까지의 시장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해외 메이저 사업자의 참여는 예상되나, 국내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상대적 영세성, 시장변화 주도능력 부족, 비전 및 이해 부족 등으로 참여도 저조함
 - 국제수산물교역센터의 근본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 회원사 발굴, 육성 등 지원 정책이 초기 단계에 매우 중요한 것 과제임

제3절 국제수산물 교역센터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목적 및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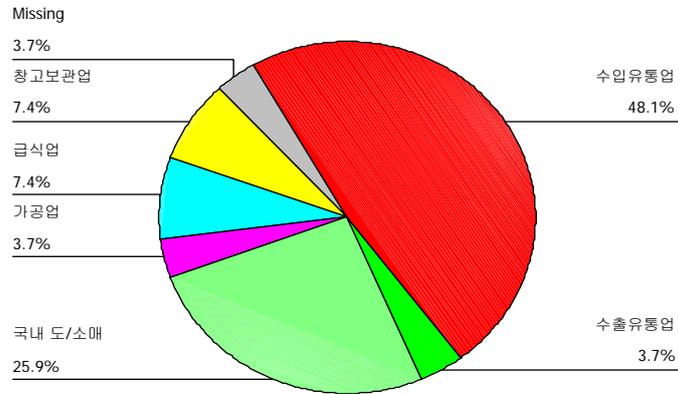
- 본 조사는 국제수산물 교역센터 활성화를 위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국제수산물교역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국제수산물교역센터와 관한 인식, 필요성, 요구되는 역할,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함.
- 조사대상으로는 국내외 무역, 유통, 물류, 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크기는 300개사로 함
- 표본추출방법은 무작위표본추출법으로 분배함.
- 조사방법은 기본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고 방문면접조사도 병행 실시함
- 설문조사 일시는 2005. 07.01 ~ 08.15 사이로 함
- 응답회수회사는 112개사로 37%의 회수율을 나타내었음.
- 분석방법은 SPSS Win 10.0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함.

2. 조사결과

가. 응답회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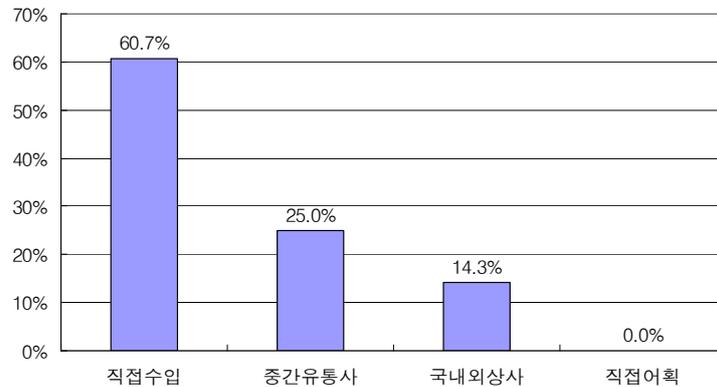
- 응답회사의 업종 분포는 수입유통업이 응답회사의 4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도소매업이 25.9%, 창고보관업과 급식업이 7.4%, 가공업과 수출유통업이 3.7%를 차지하고 있음

주력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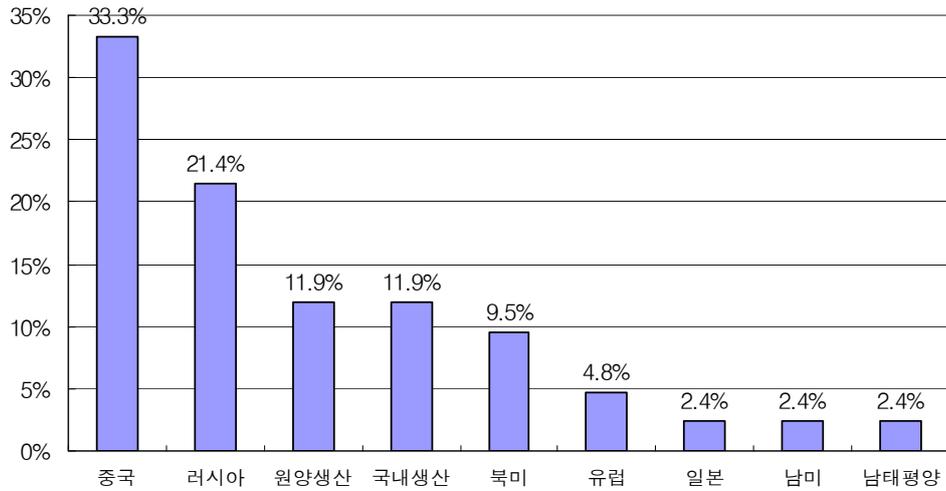
<그림 7-14> 교역센터 설문조사 응답 업체의 주력업종

- 응답회사의 취급 수산물의 공급 경로는 대부분인 60.7%가 직접 수입을 행하고 있고, 25.0%가 중간유통사, 14.3%가 국내외상사를 경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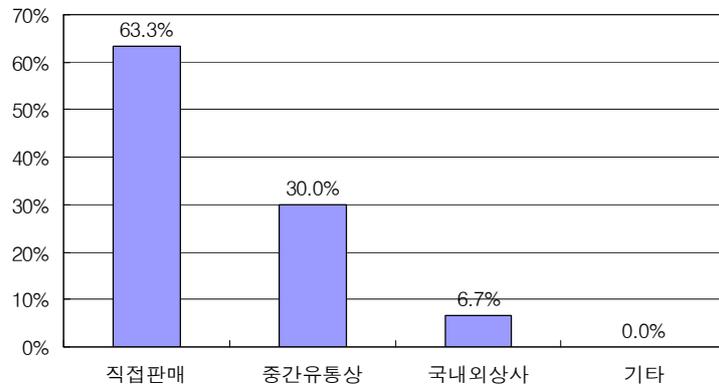
<그림 7-15> 교역센터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수산물 주요 공급경로

- 취급하는 수산물의 대상 국가별로는 중국이 3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러시아 21.4%, 원양생산 11.9%, 국내생산 11.9, 북미 9.5%, 유럽 4.8%, 일본, 남미, 남태평양이 2.4%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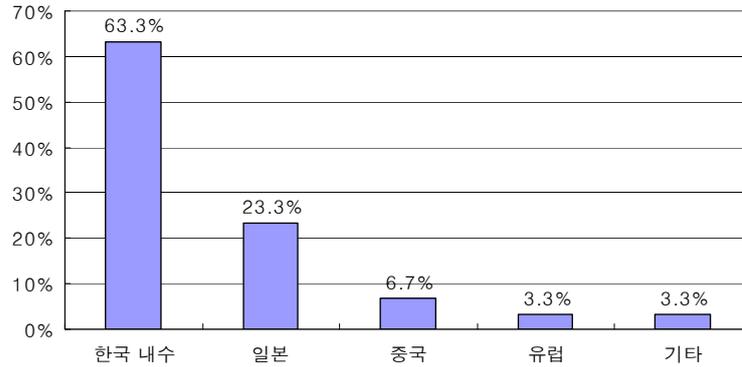
<그림 7-16> 교역센터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수산물 공급국가

- 취급 수산물의 판매 형태는 직접 판매가 63.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중간 유통상 30.0%, 국내외상사 6.7%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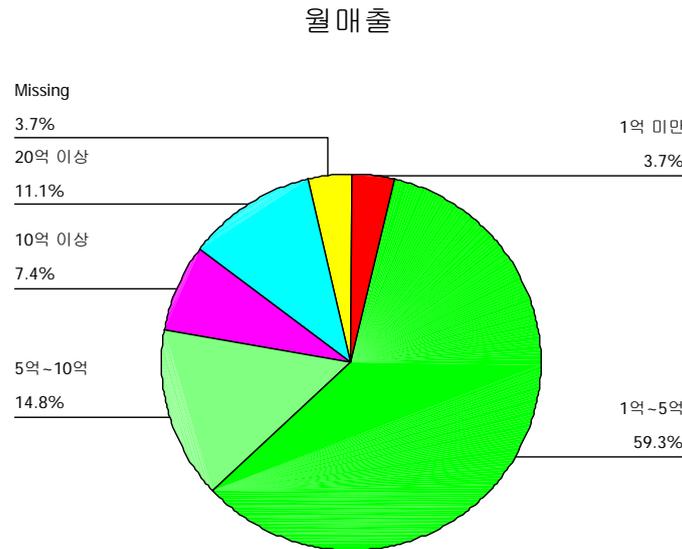
<그림 7-17> 교역센터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수산물 판매형태

- 판매 대상국(내수포함)은 내수가 6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본이 23.3%, 중국이 6.7%, 유럽이 3.3%, 기타가 3.3%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7-18> 교역센터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수산물 판매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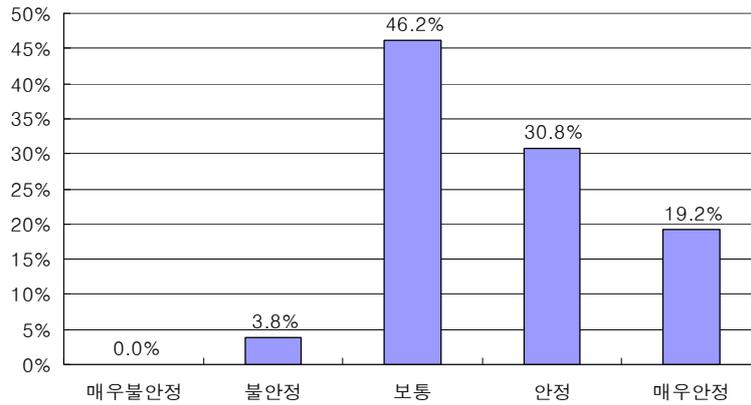
- 응답회사의 매출규모별 분포는 1억-5억 사이의 규모가 59.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5억-10억이 14.8%, 20억 이상이 11.1%, 10억-20억 7.4%, 1억 미만이 3.7%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7-19> 교역센터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월평균 매출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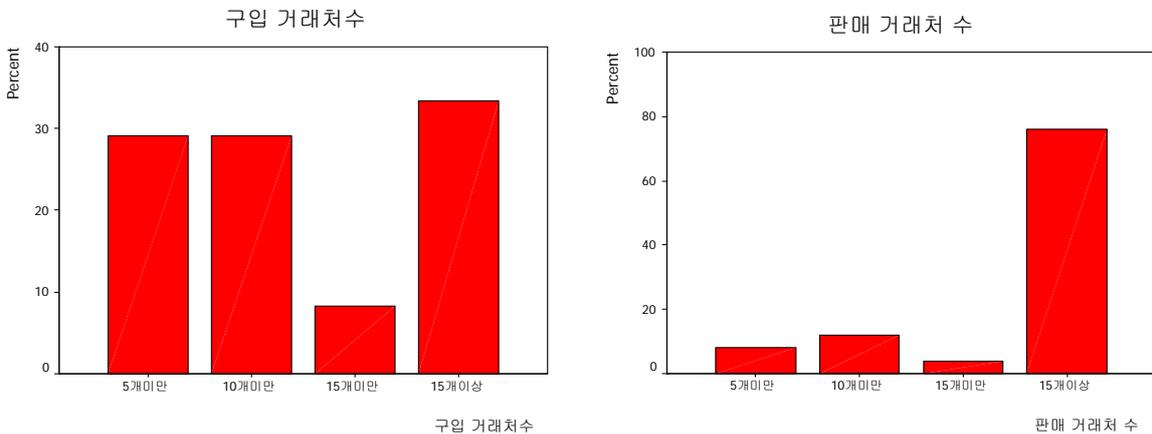
나. 응답회사의 매매 및 금융서비스 현황

- 응답회사의 매도/매수처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응답은 46.2%가 보통이라고 응답을 하였고, 안정적이다가 30.8%, 매우 안정적이다가 19.2%로 나타났음



<그림 7-20> 교역센터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거래처 확보정도

- 물품 구입의 대상 거래처수에 대한 응답은 이중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10개 미만인 곳이 약 60%(이 중 5개미만이 30%)를 차지하고 있고 15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곳이 33%를 차지하고 있다. 10-15개는 10% 미만을 나타내고 있음
- 반면 판매거래처수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이 15개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매처에 비해 많은 판매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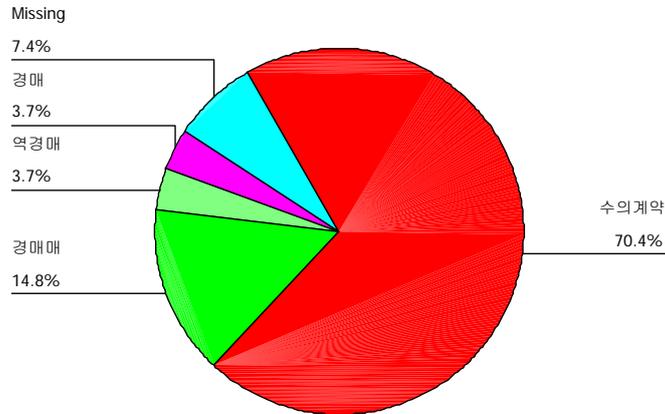


<그림 7-21>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구입거래 횟수

<그림 7-22>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판매거래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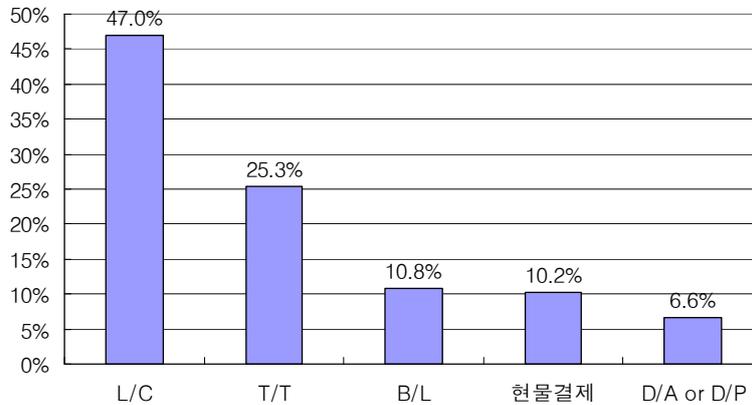
- 거래처와의 거래형식은 수의계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고 다음으로 경매매가 14.8%, 역경매와 경매가 각각 3.7%를 차지하고 있음

거래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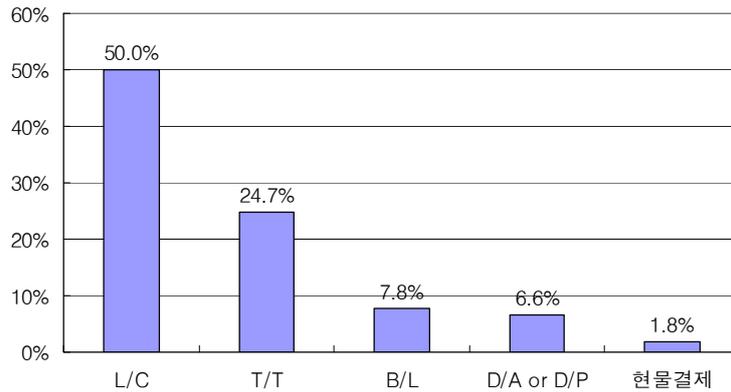
<그림 7-23>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매수 및 매도 거래형태

- 수출입에 대한 대금결제방식은 47.0%가 L/C을 취하고 있고 다음으로 T/T가 25.3%, B/L이 10.8%, 현물결제가 10.2% 마지막으로 D/A가 6.6%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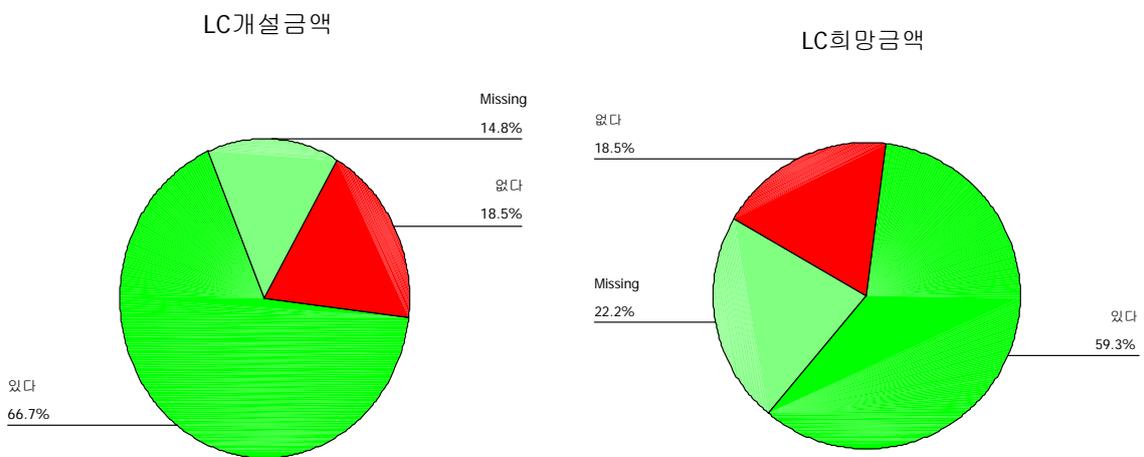
<그림 7-24>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현재 대금결제 방식

- 선호하는 수출입에 대한 대금결제방식은 L/C가 50.0%, T/T가 24.7%, B/L이 7.8%, D/A가 6.6%, 현물결제가 1.8%를 차지하고 있어 L/C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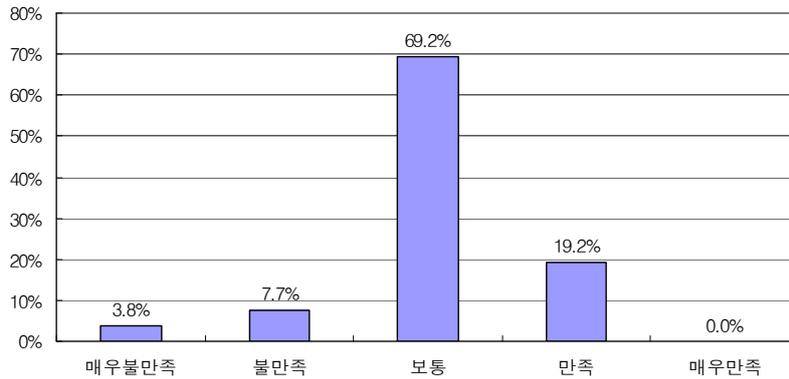
<그림 7-25>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선호하는 대금결제 방식

- 현재 응답회사의 L/C개설 유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7%가 가지고 있고 18.5%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현재 보유 L/C개설금액의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59.3%가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2.2%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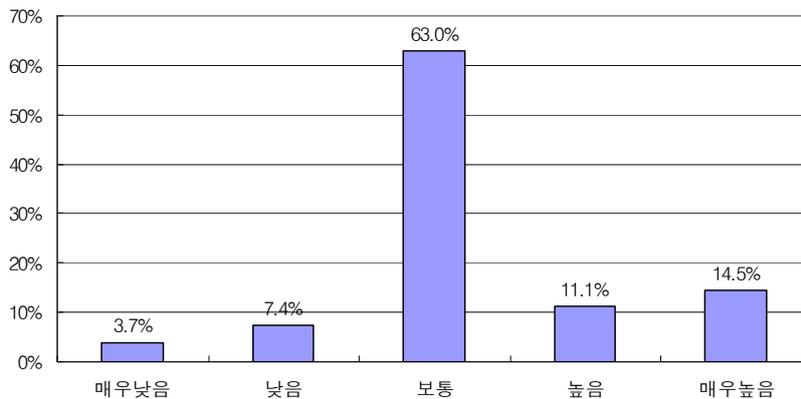
<그림 7-25>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 <그림 7-26>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선호하는 L/C 희망금액의 L/C 개설금액

- 현재 거래하고 있는 수산물의 품질이나 가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2%가 보통이라고 답하고 19.2%가 만족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응답의 7.7%가 불만족, 3.8%가 매우불만족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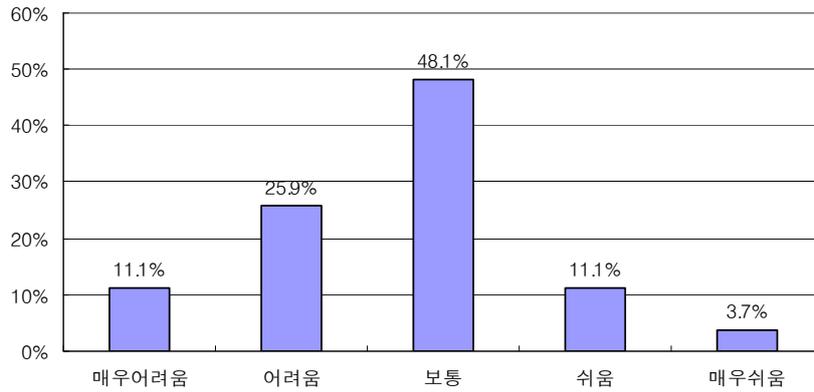
<그림 7-25>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선호하는 대금결제 방식

- 현재 거래되는 시장가격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63.0%가 보통이고 11.1%가 높음, 14.5%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7.4%가 낮음, 3.7%가 매우 낮음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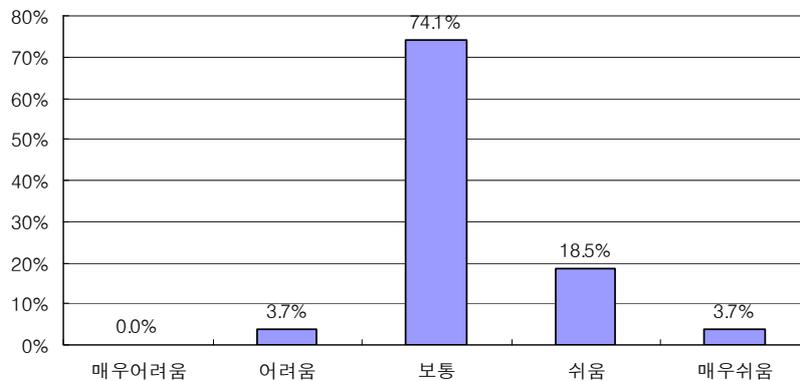
<그림 7-26>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선호하는 시장가격의 신뢰도

- 현재와 같은 거래 상황 하에서 거래대상의 발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1%가 보통이고 11.1%가 쉬움, 3.7%가 매우쉬움이라고 응답한 반면, 25.9%가 어려움, 11.1%가 매우어렵다고 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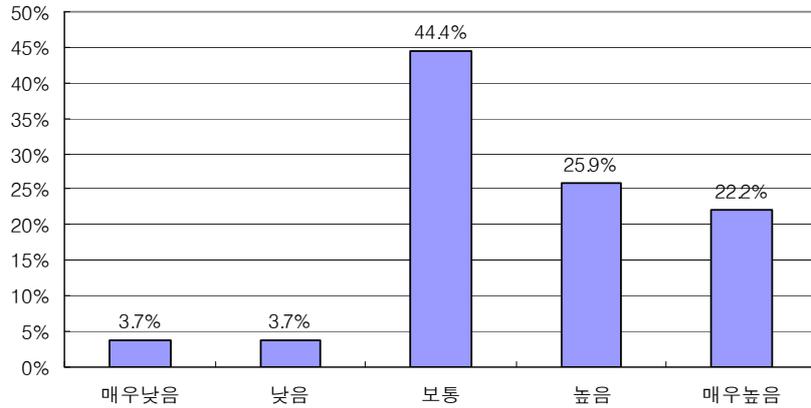
<그림 7-27>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거래상대 발굴의 어려움

- 현재 거래 물량 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응답자의 74.1%가 보통이라고 답하고 18.5%가 쉬움, 3.7%가 매우 쉬움인 반면 3.7%가 어렵다고 답하고 있어 물량 확보면에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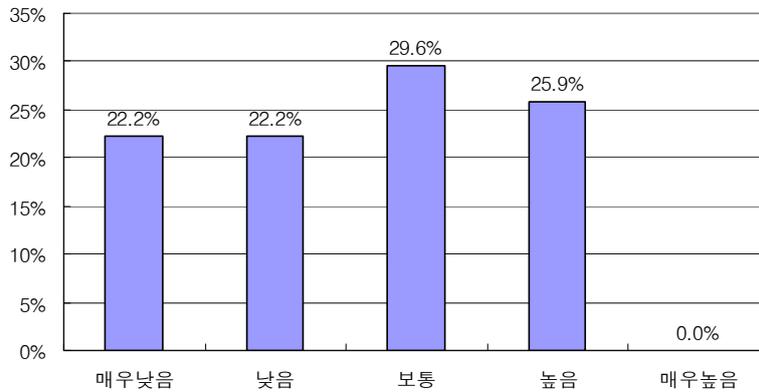
<그림 7-28>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매도 및 매수물량 확보의 어려움

- 거래 물품의 질 보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4%가 보통이고 25.9%가 높은, 22.2%가 매우 높다고 답한 반면, 3.7%가 낮음, 3.7%가 매우 낮음으로 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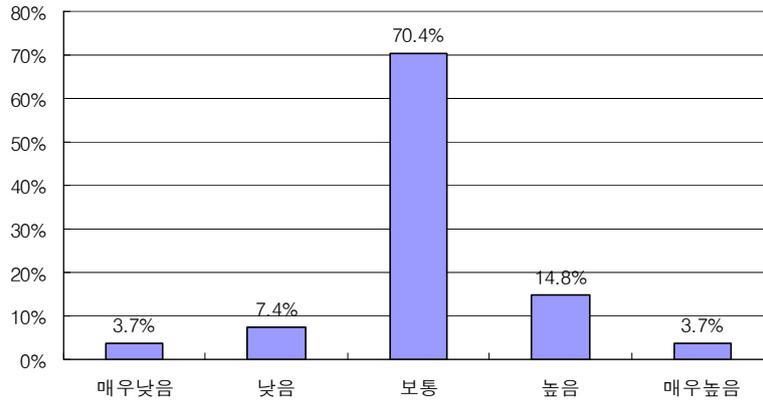
<그림 7-29>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물품의 질에 대한 보장의 위험도

- 거래 물품에 대한 결재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6%가 보통이라고 답하고 25.9%가 높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 각각 22.2%가 낮음과 매우 낮음으로 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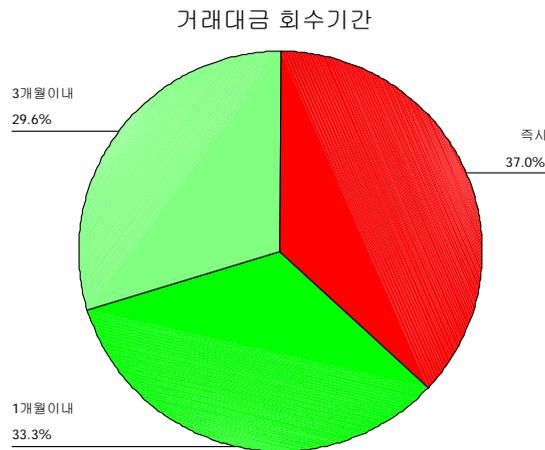
<그림 7-30>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거래물품에 대한 결재의 위험성

- 현재 시장에서의 수산물관련정보획득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4%가 보통이라고 답하고 14.8%가 높음이라고 답한 반면 7.4%가 낮음, 3.7%가 매우 낮음으로 응답하고 있음



<그림 7-31>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수산물 관련정보 획득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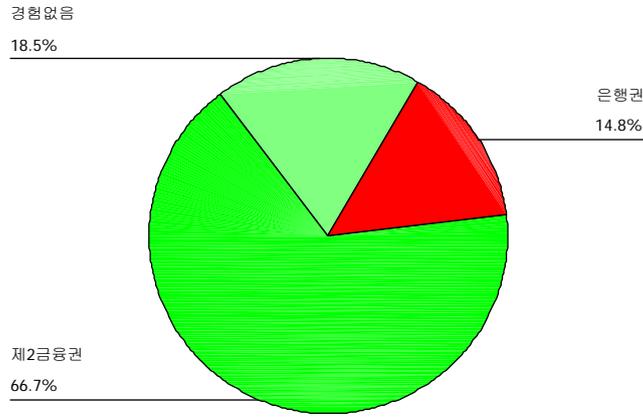
- 거래 후 대금 회수 기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0%가 즉시, 1개월 이내가 33.0%, 3개월 이내가 29.6%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7-32>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거래후 거래대금 회수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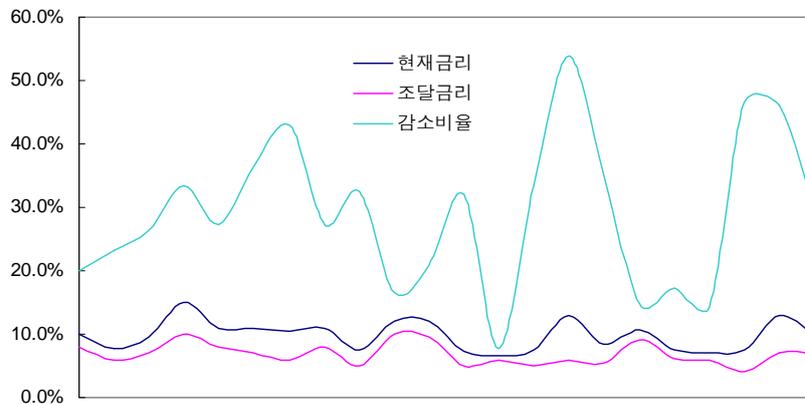
- 대금결제나 운영자금 필요시 수산물담보대출의 활용 경험과 대상 금융기관을 살펴보면, 활용한 경험이 있는 자는 전체응답의 81.5%이고 이중 제2금융권이 66.7%, 은행권이 14.8%를 차지하고 있고 18.5%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출이용 기관



<그림 7-33>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대출기관 이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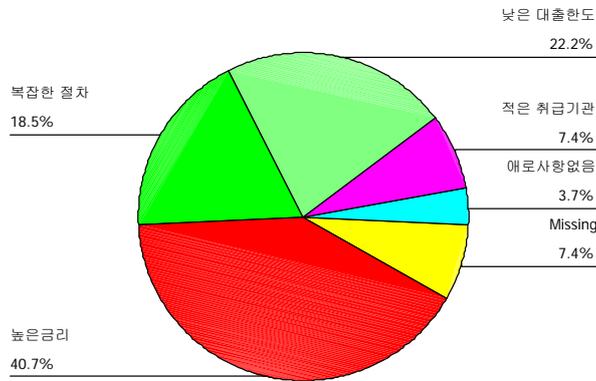
- 자금조달시 현재 평균적으로 9.8%의 이율로 대출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응답자들의 희망 금리는 평균 6.9%로 나타남. 이는 대출 이율을 평균적으로 2.9% 감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34>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자금조달시 현재 및 희망금리 수준

- 현재 수산물 담보대출애로사항은 역시 높은 금리가 전체 응답의 40.7%, 다음으로 복잡한 절차가 18.5%, 취급기관의 부족이 7.4%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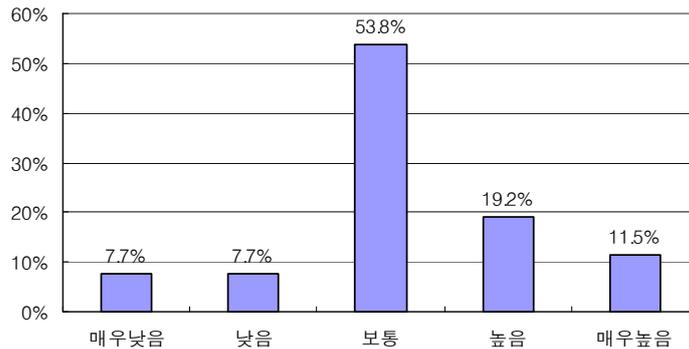
대출시 애로사항



<그림 7-35>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담보대출 이용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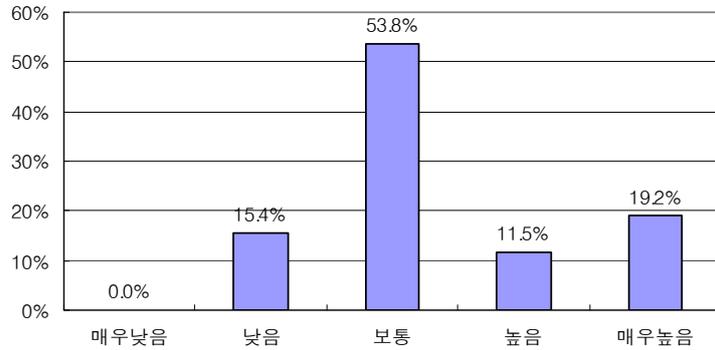
다. 국제수산물교역센터 관련 사항

- 국제수산물 교역센터 회원으로 가입 시 정보공유, 저렴한 임대, 편리한 업무환경 등과 같은 장소적 집결을 통한 거래의 편의성에 대한 중요성 질문에 응답자의 53.8%가 보통이라고 답하고 19.2%가 높음, 11.5%가 매우 높음으로 답하고 있음. 반면 응답자의 각각 7.7%가 낮음, 매우 낮음으로 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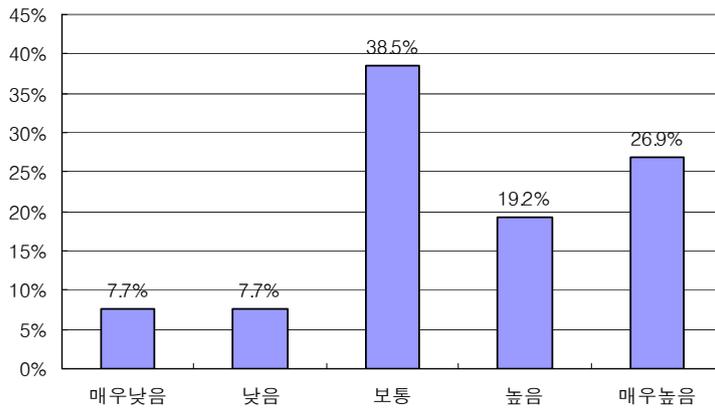
<그림 7-36>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거래편의성에 대한 중요도

- 다수의 매도 매수자가 자유경쟁에 의한 실시간 일일 가격결정시스템(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수산물거래에 있어 다수의 거래자가 자유경쟁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시간 일일가격결정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53.8%가 보통이라고 답하고 11.5%가 높은, 19.2%가 매우 높음이라고 답하고 있다. 반면 15.4%는 필요성이 낮다고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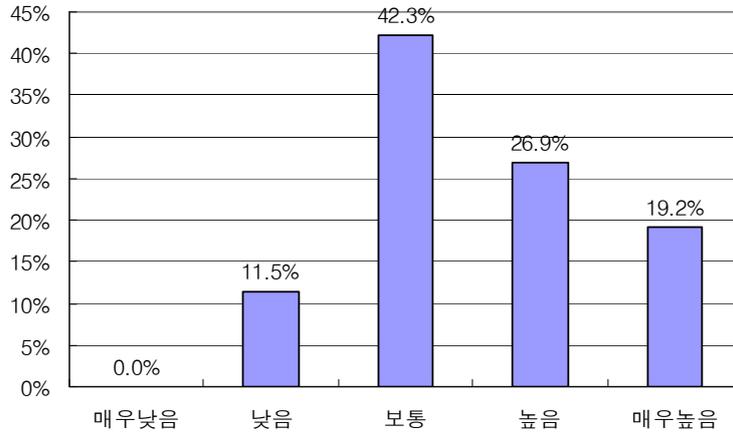
<그림 7-36>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일일가격결정시스템 필요성

- 거래수산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품질인증 및 검수기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5%가 보통, 19.2%가 높음, 26.9%가 매우 높음으로 답하고 있는 반면 7.7%가 각각 낮음과 매우 낮음으로 응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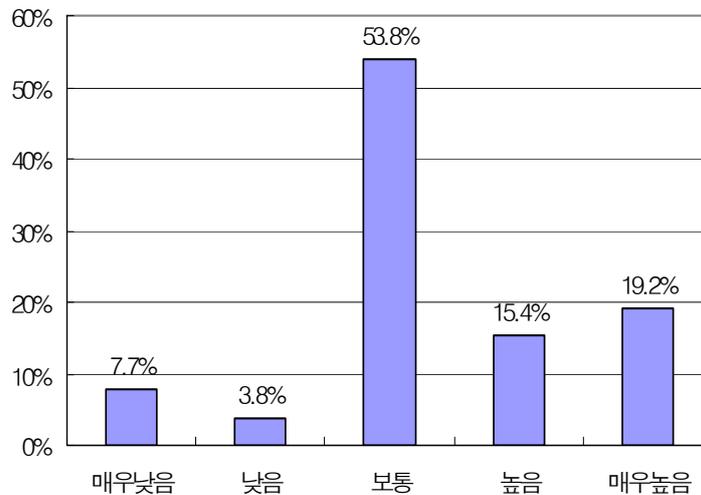
<그림 7-37>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품질인증 및 검수기능에 필요성

- 수산물공급/수요물량에 대한 시장 예측기능의 필요성은 응답자의 42.3%가 보통, 26.9%가 높음, 19.2%가 매우높음으로 답하고 있는 반면 11.5%가 낮음에 응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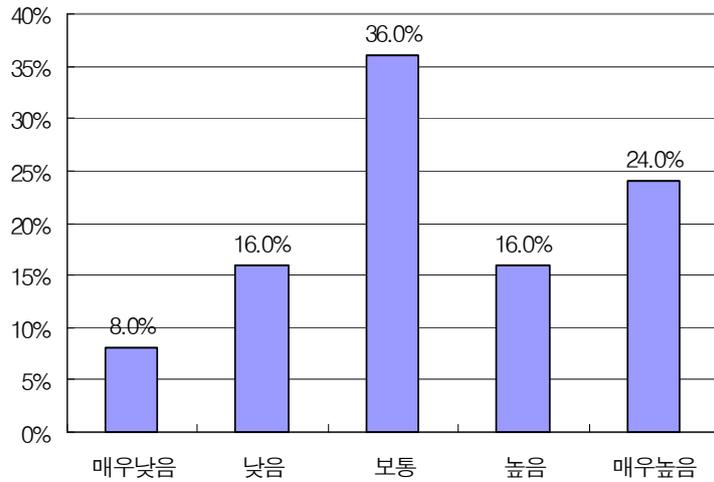
<그림 7-38>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수산물 공급 및 수요량 예측기능

- 자금결제 및 현물 인수도에 있어 책임있는 기관의 중개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3.8%가 보통, 15.4%가 높음, 19.2%가 매우 높음이라고 답하고 있는 반면 3.8%가 낮음, 7.7%가 매우 낮음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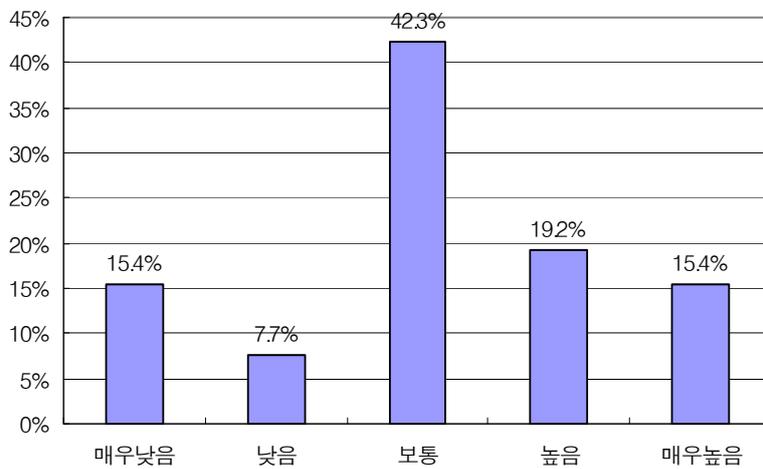
<그림 7-39>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자금결제에 있어 책임있는 기관의 중개 필요성

- 수산물 담보대출 및 L/C 대출 서비스제공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6.0%가 보통, 16.0%가 높음, 24.0%가 매우 높음이라고 답한 반면 16.0%가 낮음, 8.0%가 매우 낮음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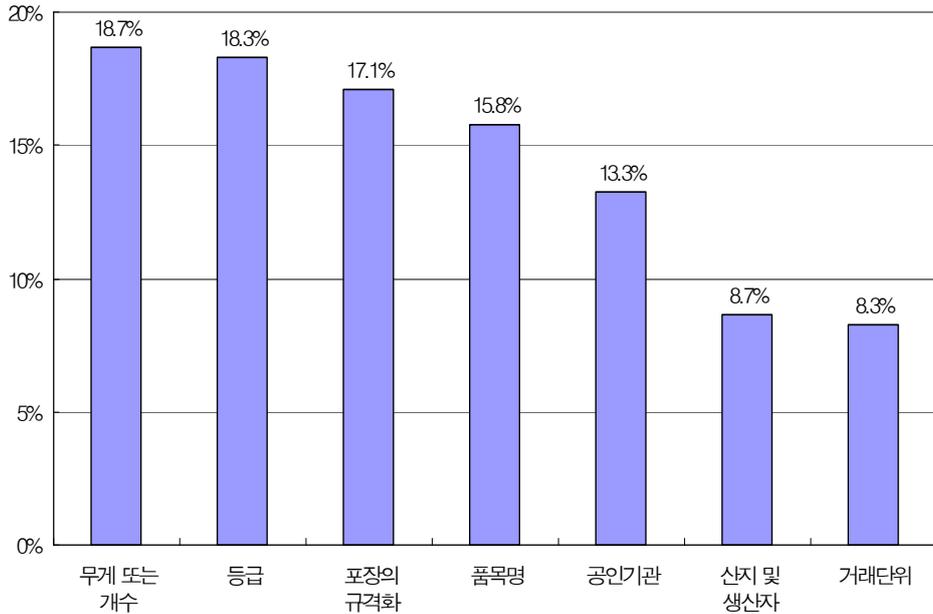
<그림 7-40>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수산물 담보대출 및 L/C 대출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

- 마케팅정보 서비스제공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2.3%가 보통, 19.2%가 높음, 15.4%가 매우 높음이라고 답한 반면 7.7%가 낮음, 15.4%가 매우 낮음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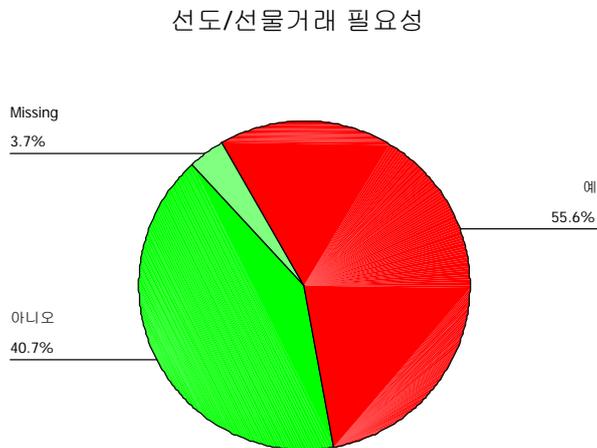
<그림 7-41> 교역센터 설문 응답업체의 마케팅 정보제공의 필요성

- 수산물품에 대한 표준화 필요 항목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18.7%가 무게 또는 갯수, 18.3%가 등급, 포장의 규격화가 17.1%, 품목명이 15.8%, 공인기관 13.3%, 산지 및 생산자 8.7%, 거래단위 8.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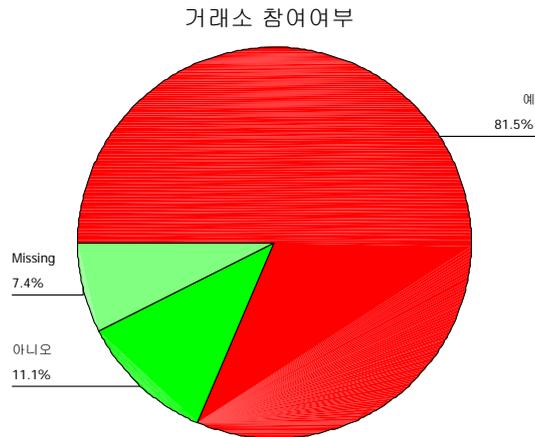
<그림 7-42> 교역센터 설문 응답 업체의 표준화 항목 순서에 대한 응답결과

- 선도/선물거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55.6%가 필요성이 있음에 응답하고 40.7%가 필요성이 없음에 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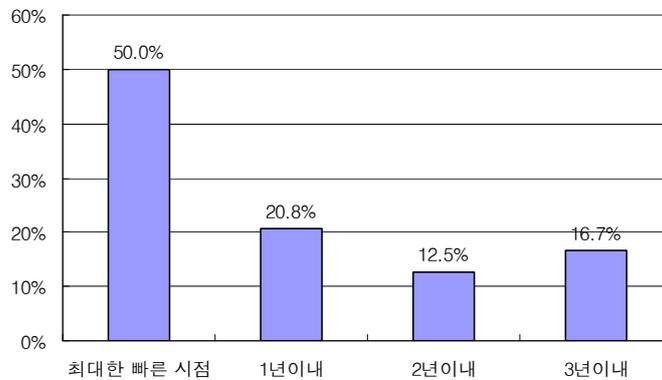
<그림 7-43> 교역센터 설문 응답 업체의 선도/선물거래의 필요성

- 수산물교역센터의 참여 의향에 대해서 응답자의 81.5%가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11.1%가 의향이 없음을 보이고 있음



<그림 7-44> 교역센터 설문 응답 업체의 수산물 교역센터 참여의향

- 수산물교역센터의 서비스 제공 시점에 대해서 응답자의 50.0%가 최대한 빠른 시점이 좋다고 답하고 20.8% 지금부터 1년 이내, 12.5%가 2년 이내, 16.7%가 3년 이내에 답하고 있음



<그림 7-45> 교역센터 설문 응답 업체의 서비스 제공시점에 대한 응답결과

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 설문조사 응답자의 중심은 수산물수출입을 하는 무역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도소매업을 행하는 유통업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음
- 응답자의 대부분은 현재 국제수산물교역을 자사가 상대거래파트너와 개별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판매 역시 자사 판매를 하고 있음
- 따라서 설문 응답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적은 구입거래처와 많은 판매거래처를 가지는 경영구조를 보이고 있음
- 이들의 수출입 대금결제방식은 L/C가 가장 중심으로 이루면서 T/T 베이스로 무역을 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 하지만 L/C범위의 확대 및 불안한 국제거래에서 나타나는 높은 위험도를 지적하고 있음
- 현재 대금결제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제2금융권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으며 9.8%의 높은 금리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금리가 현행 수산물담보대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고, 이들의 희망 금리는 평균 6.9%로 나타나고 있음
- 국제수산물교역센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집결된 거래의 편의성, 경쟁에 의한 가격결정시스템, 품질인증, 검수, 거래정보제공, 책임있는 거래중개 등의 측면에서 교역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수산물의 선도/선물거래의 필요성 제기 및 국제수산물교역센터의 높은 참여의향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

제8장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의 활성화 방안

- 부산지역은 과거의 풍부한 어획량을 바탕으로 한 수산물 가공업이 발달한 지역임
- 그러나 동 지역의 수산물 가공업은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체들이 많고, 저차가공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공형태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집단화를 통한 경쟁력의 제고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 및 추진방향의 전환이 필요함

1. 고부가가치 가공업체 중심으로 단지 조성

- 우리나라 수산물 가공산업은 가격경쟁력면에서 중국에, 품질경쟁력면에서는 일본에 뒤떨어져 있는 상태로서 현재 국제적인 입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
- 뿐만 아니라 경영내적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가공산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상황에 처해 있음
 - 생산감소로 인한 원료수급의 불안정과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
 - 원료구입비 등 경영비 상승
 - 소비자 기호변화에 따른 대응미흡
 - 소비자 기호는 고급화되고 있으나 제품개발을 통한 공급에 한계
 - 위생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미흡
 - 소비자들의 위생이나 식품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생산업체들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자금난 심화에 따른 경영압박 가중
 - 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경영상 애로순서 : 자금난 30%, 원료난 26%, 인력난 24%, 판매난 19%, 기타 1%
- 따라서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가 조성되어 동단지에 입주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고 경쟁력 강화를 기할 수 있음
 - 원료확보 비용절감, 위생시설 공동이용 등

- 그러나 경영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가가치 높은 고급가공품 생산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앞으로 조성할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에 있어서는 고부가가치 가공품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저차가공품을 생산하는 영세가 공업체는 동 단지에 입주할 능력과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입주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임
 -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에 대한 입주의사 조사결과 응답자 105명 중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자는 6명에 불과했고
 - 입주의사가 없는 이유에 있어서도 이미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도 이미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으나 가내수공업 수준으로서 자금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경기가 좋지 않아 이전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음

- 조사대상 가공업체
 - 통조림수협조합원
 - 부산·경남 기타 가공업체

2. 내수용 가공의 경영

- 최근 동북아의 수산물 유통구조가 변화되면서 수출시장은 저차가공의 경우 중국, 고차가공은 일본 중심으로 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내수용 시장을 제외하면, 고차가공품의 수출비중이 낮고 대형시장인 일본에 대한 제품경쟁력이 높지 않음
 - 이는 제품개발의 한계, 업체의 영세성, 수출시장 개척의 어려움, 가공비용의 상대적 열위 때문임
 - 따라서 단기간에 전량수출만으로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를 운영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름
- 뿐만 아니라 전량 수출은 수입수산물이 급증하고 있는 현 실태에 비추어 가능성이 낮으므로 내수용 가공과 수출용 가공이 혼재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을 무리하게 수출시키는 것보다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도매시장을 원료공급처로 활용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함

- 내수용 수산물의 가공을 통해 제품의 개발과 수출시장 일변도에 따른 경영 위험을 줄이고, 기술을 축적하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3. 홍보강화 등

- 전국 통조림 가공수협 조합원 전원과 부산, 경남 수산물 가공업체 중 105개사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시행한 결과 감천항 내에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11명(10%)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94명(90%)은 모르고 있었음
- 따라서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공업체에 대한 동단지의 추진 사실에 관해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아울러 응답자 중에는 위생처리시설을 갖추는데 있어 장기저리조건으로 용자를 해주기를 바라는 자도 많았는데 이러한 자금지원 역시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에 대한 입주율을 높이는데 필요함

4. 연근해 전용시장과 동시 건설

- 내수용 가공을 고려했을 때, 수입수산물 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연근해 수산물의 가공을 겸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연근해 전용시장과 동시에 건설함으로써 원료공급과 가공을 겸비할 수 있음
 - 기존보고서에도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의 일괄 시공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음
 - 기존보고서는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 일괄시공 시 동 사업 예산 중 157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또한 연근해 전용시장을 동시에 건설할 경우, 357억 원이 시장건설에 사용되므로 이를 절감할 수 있음



<그림 8-1>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와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일괄시공
 자료 : 부산광역시,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 기본운영 방안, 2003. 8

- 특히, 연근해 전용시장은 하수처리시설 등이 필요한데, 이를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와 공유함으로써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각 사업의 배치는 연근해 전용시장이 부두와 아파트형 공장건물의 1층을 경매장으로 사용하고,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는 2층 이상부터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5. 물류센터의 설치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물류배송기능인데, 특히 저차가공이나 단순 소분포장 등의 물류기능이 부족함
- 또한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는 원료의 공급은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 연근해 전용시장을 통해 쉽게 공급받을 수 있지만, 포장과 배송 등에 있어서는 취약함
- 최근의 주요 구매자인 대형소매점의 경우에도 물류센터를 통한 서비스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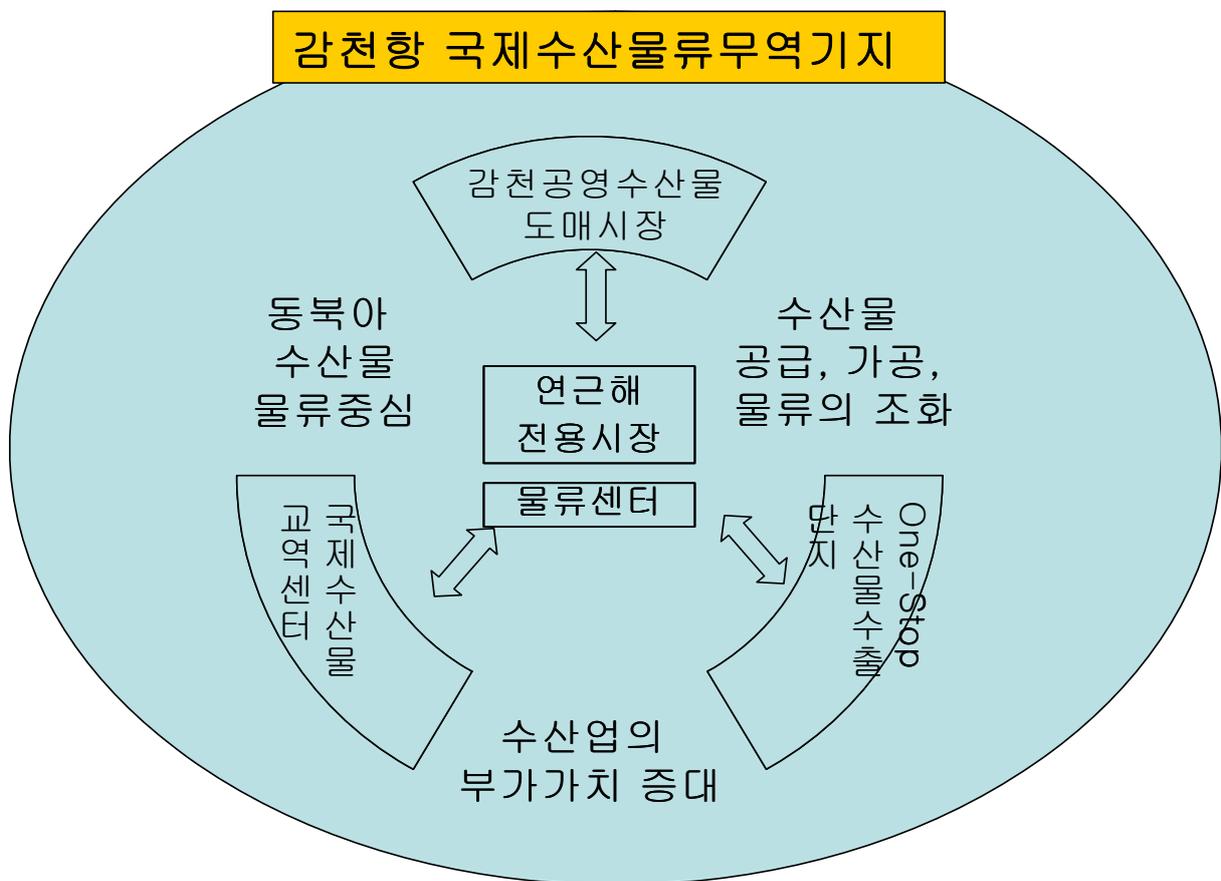
을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특정업체의 물류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일부 대형업체들은 물류기능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는 수산물의 국제적 물류중심을 표방하고 있으나, 대형소매점 등 구매자가 원하는 배송 및 포장 기능은 부족하므로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에 물류센터를 배치함으로써 시장과 가공, 물류배송이 일관된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함

제9장 감천항 국제수산물물류·무역기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제1절 사업의 구상

- 감천항 국제수산물물류·무역기지 사업의 핵심인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 국제수산물교역센터,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는 각자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
 - 도매시장은 국내 수산물 물류기지
 - 국제수산물교역센터는 on-line을 통한 수산물의 교역 중개지
 -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는 국내외 수산물을 원료로 수산가공품을 생산, 수출하기 위한 기지



<그림 9-1> 감천항 국제수산물물류·무역기지 주요사업의 관계

- 따라서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만으로는 부산시 감천항 국제수산물
류·무역기지 사업의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이는 각 사업의 역할이 다르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임
- 또한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사업 목적의 조기 달성을 위해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는 연근해 전용시장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전체적
인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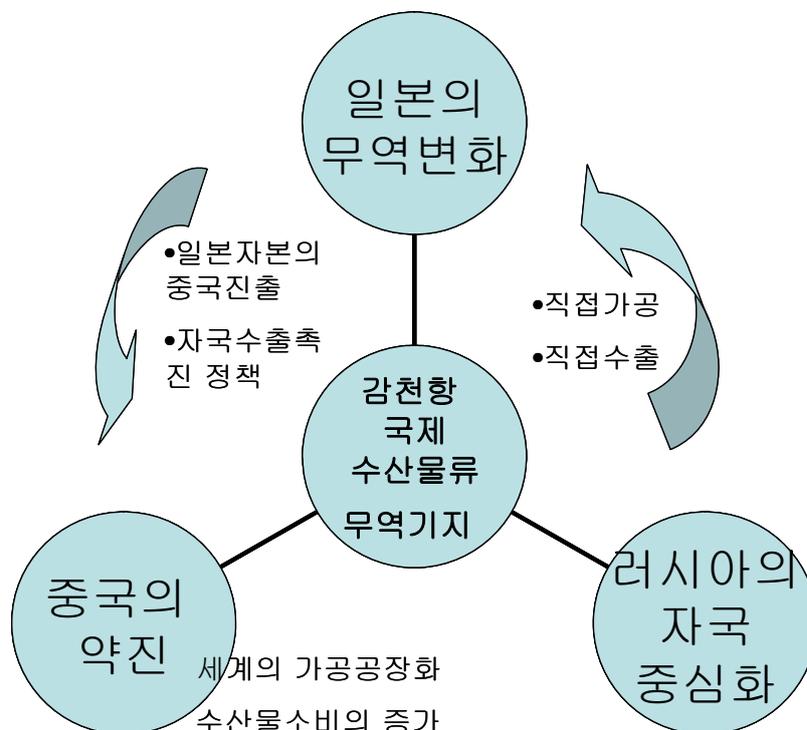


<그림 9-2> 연근해 전용시장과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의 배치도

제2절 사업활성화 제약요인

1. 동북아 수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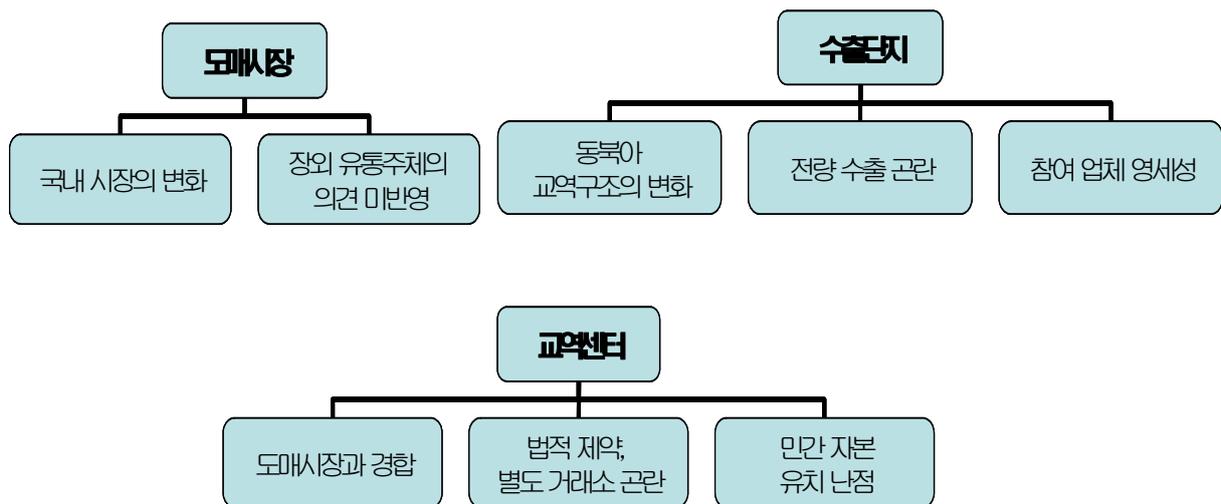
- 동북아의 수산물 무역구조는 각국의 수산물류 및 부가가치 선점을 위해 급변하고 있음
 - 일본은 인접 국가에 대한 수출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수요는 저가의 중국수산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 중국은 일본의 자본·기술 지원으로 수산물 가공중심지로서 입지를 굳혔으나, 수산물 수요의 증가 및 고급화로 금후 수입 증대 예상
 - 러시아는 원료어의 단순 수출에서 자체 가공을 통한 수출확대로 부가가치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그림 9-3> 동북아 수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2. 물량 확보의 불확실성

- 주요 사업별로 최근의 수산물 교역 및 유통환경변화로 인해 물량확보가 불투명함
 - 감천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수입수산물 및 원양수산물 유통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운영방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는 동북아교역구조의 변화로 수산물 가공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대상 업체들이 영세하여 참여가 쉽지 않음
 - 국제수산물교역센터는 현물거래에서 일부 도매시장과 경합되고, 최종 목표인 수산물거래소의 설립에 대한 법적 제약, 민간자본 유치의 난점을 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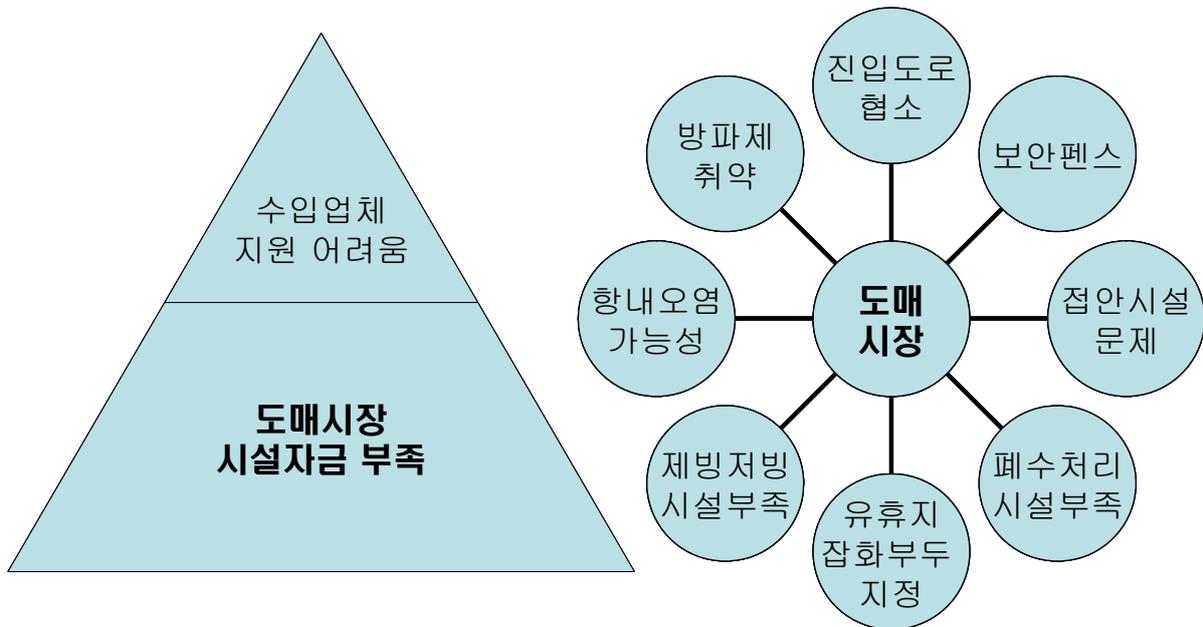


〈그림 9-4〉 물량확보의 불확실성

- 이러한 물량확보의 불확실성은 동 사업들이 기존에 시행된 적이 없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충분한 기획과 홍보, 참여 주체들의 노력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

3. 시설자금 및 기반시설의 부족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도매시장 건설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사업으로 분류됨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되어 이의 해결이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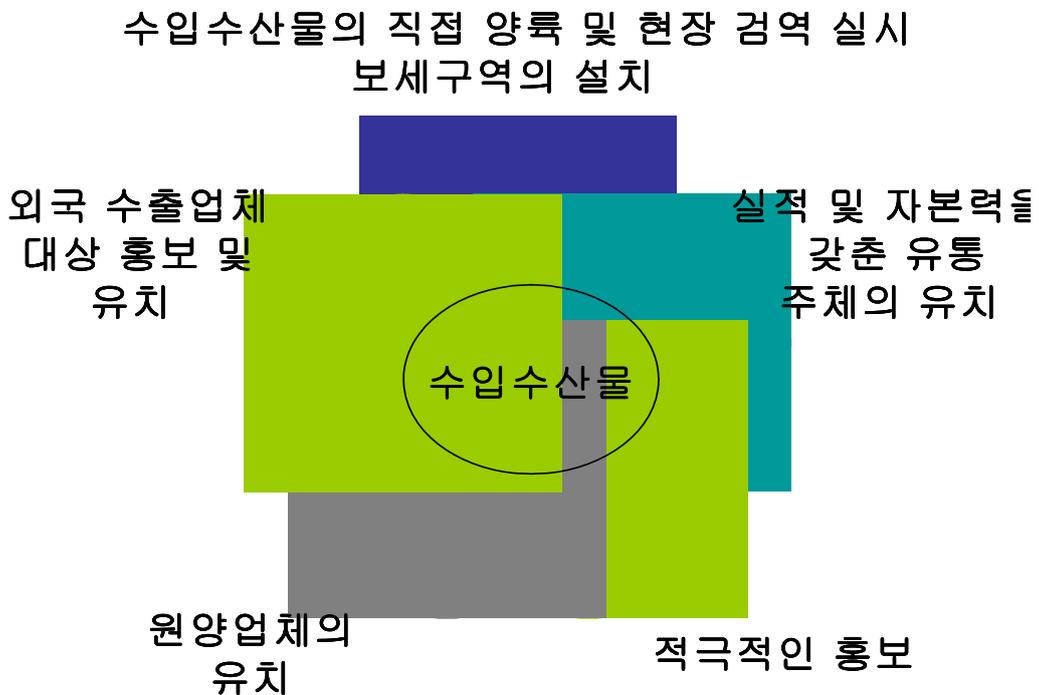
〈그림 9-5〉 자금지원 및 기반시설 부족

제3절 세부사업별 마스터플랜

1.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가. 수입 및 원양수산물 필요물량 확보 방안

- 수입 및 원양수산물을 직접 생산 혹은 유통하는 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대안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이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을 모르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가 곤란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수입업체의 경우, 도매시장을 경쟁상대로 인식하지만 본인의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므로 이들 중 우량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선어업체들은 운반선업체들의 시장참여를 바라고 있어 이들이 도매시장의 전문 운반업체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음



<그림 9-6> 수입 및 원양수산물 확보방안

- 외국 수산물 수출업체들은 결제나 가격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호의적이므로 직접 양륙 혹은 수출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홍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원양업체는 일괄적인 참여를 원하므로 원양어업협회 차원에서 시장도매인 등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표 9-1> 수입수산물 검역 및 통관의 One-Stop서비스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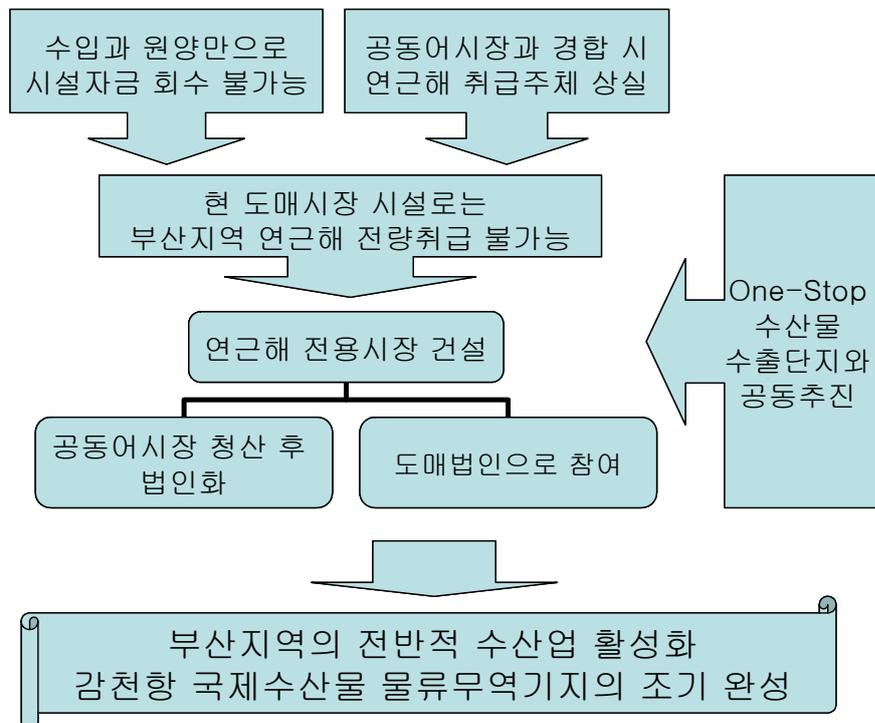
구분	내용
검역	- 국립수산물검사원의 분원 유치 혹은 검사인원 파견
통관	- 도매시장에 세관원이 파견되어 통관절차 처리 - 필요서류처리 절차는 도매시장에서 통관사를 고용하여 염가 제공
휴일 검사 및 통관	- 토요일 등 휴일의 검사 및 통관 서비스 제공
정산	- 정산창구를 통하여 원활한 국제 정산체제 구축
편의	- 운반선 등의 어선원 등에 대한 편의서비스 제공(시장시설 활용) - 선박의 급유, 수리, 선수품 등 편의서비스 제공(각 업체와 연결)

<표 9-2> 감천 공영도매시장의 홍보 방안

구분	내용	주체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사업에 대한 비전과 역할 등 내용으로 국내, 국외용으로 제작하여 관련업체, 시장 등에 배포	부산시
사업 홈페이지 제작	- 부산시 홈페이지, 각급 관공서, 기관 등에 연계 - 향후 시장홈페이지로 변경 활용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장점과 제공서비스에 대한 설명회 주기적 마련	개설준비 T/F
국제심포지엄의 개최	- 홍보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
각국 방문 홍보	- 각국의 주요 시장, 대형수산업체, 물류회사 등 대상	"

나. 연근해수산물 전용시장 건설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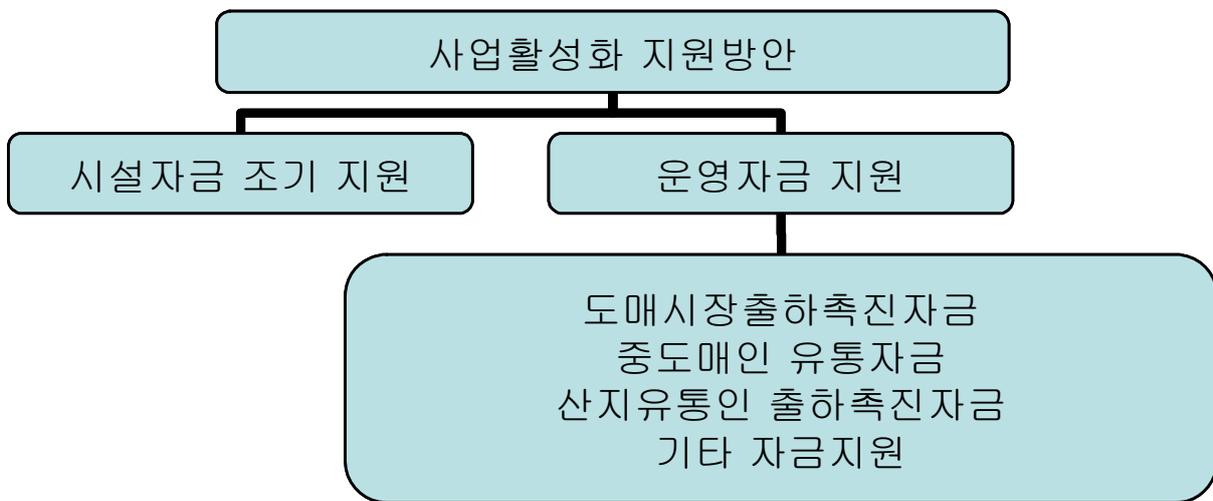
- 수입 및 원양수산물만으로는 도매시장 시설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공사 중인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연근해 어획물의 양륙을 유도
 - 그러나 이 경우 부산공동어시장의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임
- 한편, 이 문제와는 별도로 부산공동어시장은 시설을 전면 보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할 기로에 서 있고,
- 공동어시장이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의 경영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거나 무너진다면, 현 시설로는 전량수용이 불가능함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과 동시에 기획된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도 공사 중인 공영도매시장 인근에 입지를 계획하고 있어
-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잡화부두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해면을 매립하여 연근해 수산물 전용시장과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9-7> 연근해 수산물 유치방안

다. 사업활성화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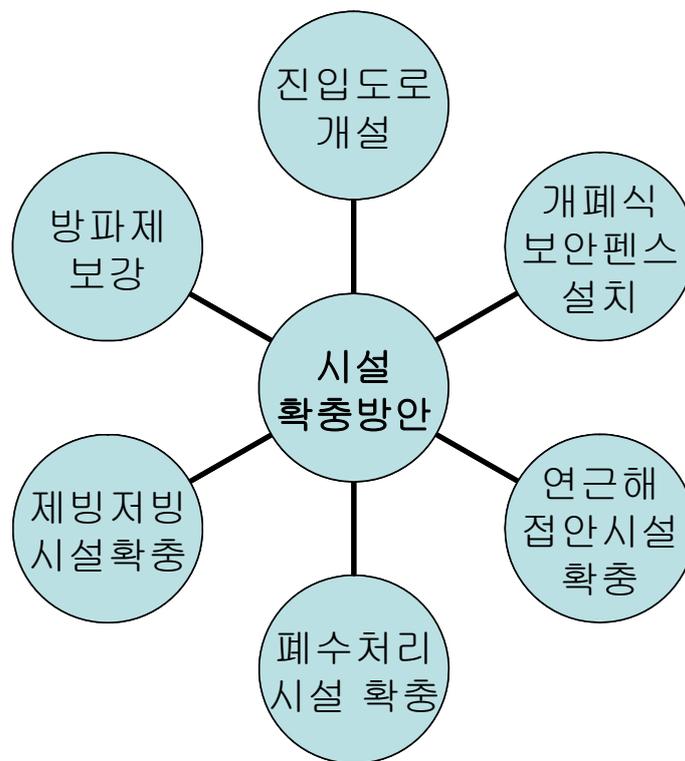
-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매시장의 건설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조속한 건설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 초기 운영의 불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유통자금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그림 9-8> 도매시장 사업활성화 지원방안

라. 시설 확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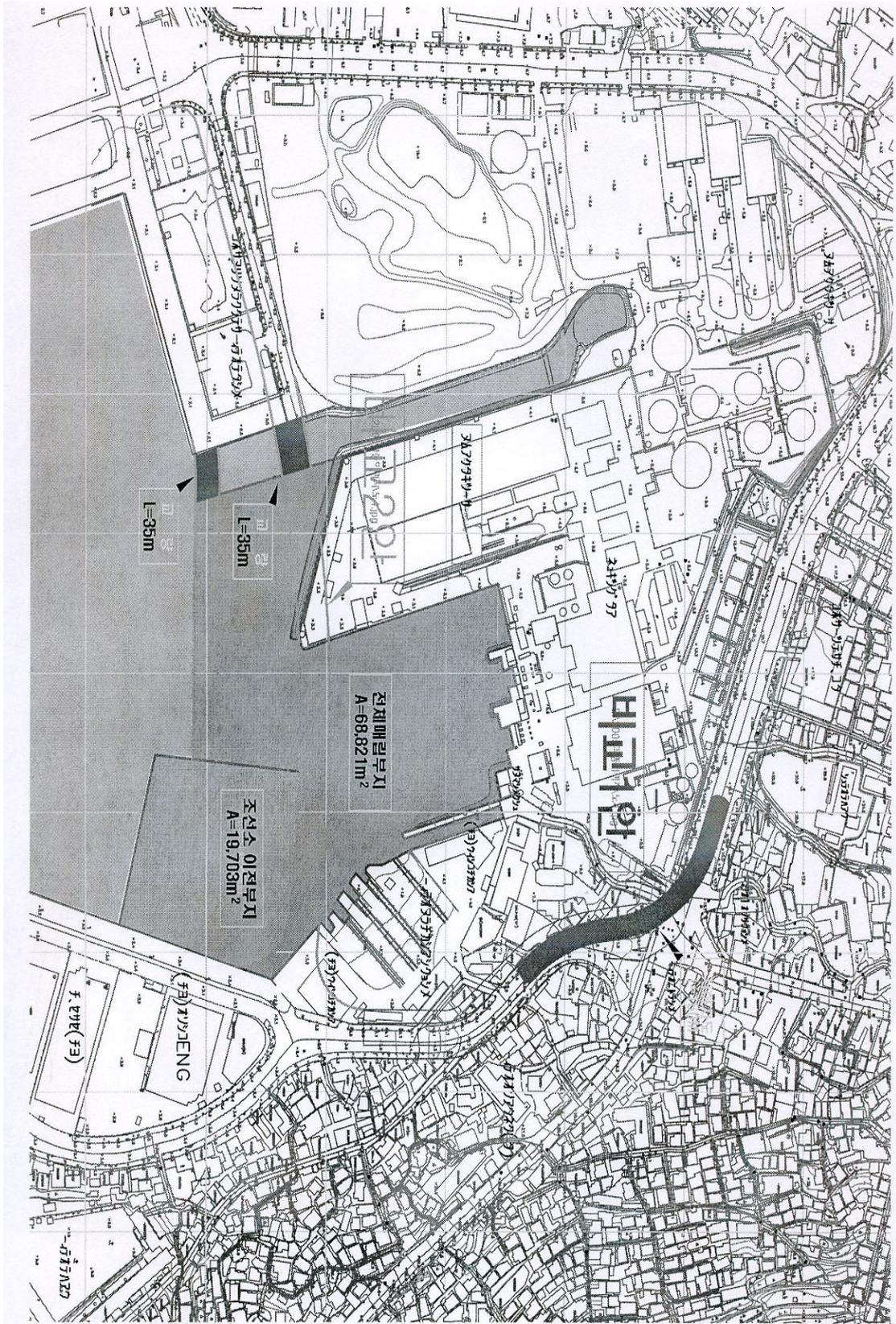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국제적인 수산물물류중심시장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으나, 각종 시설의 제약요인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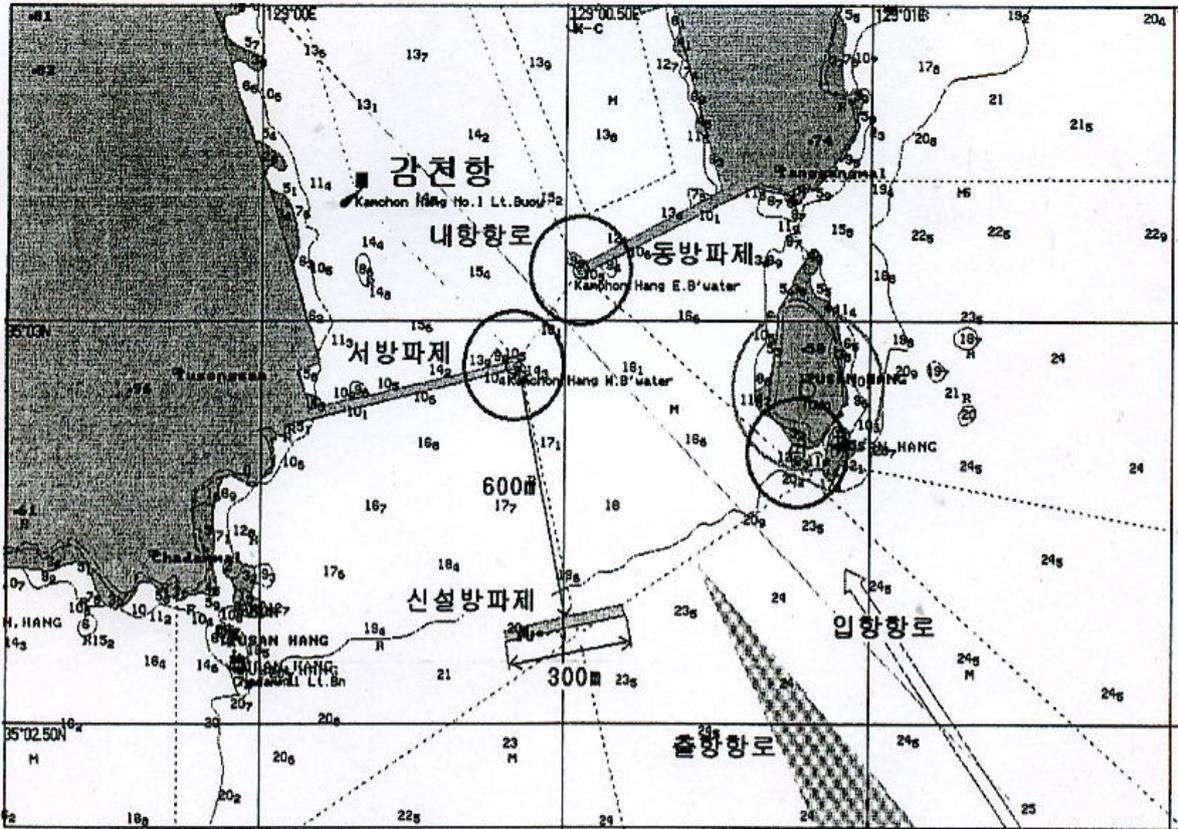
<그림 9-9> 도매시장의 시설확충방안

<표 9-3> 감천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 진입도로 대안별 비교

구 분		비교 1안	비교 2안	비교 3안
개 요		·명지↔감천항 : 지하차도(왕복2차로)설치	·감천항 화력발전소 구간 매립	·감천항↔송도 : 터널 및 기존도로 확장
연 장		570m	420m	1,200m
최소곡선반경		140m	300m	140m
최대종단경사		5.0%	0.2%	터널:2.0%, 접속도로:8.0%
설 계 속 도		60km/hr	60km/hr	60km/hr
지 장 물 건	토 지	6,890 m ²	23,400 m ²	36,100 m ²
	건 물	28동	조선수리소 1개소 이전	65동
주요 공사량	주 요 공 종	지하차도 : 480m	항만매립 : 68,821 m ²	터널 : 590m
	확 장	B=12m, L=640m	B=10m, L=240m	B=10m, L=450m
	신 설		B=25m, L=420m	B=40m, L=310m
추정 사업비	공사비	380억 원	725억 원	380억 원
	보상비	138억 원+90억 원=228억 원	100억 원+30억 원=130억 원	525억 원+65억 원=585억 원
	계	608억 원	855억 원	965억 원
특 징		·평면 및 종단선형 양호 ·고질적 감천사거리 교통 체증 해소 ·지하차도 공사부 복공시 공 필요 ·도로 확장부 선시공 후 지하차도 건설 필요 ·천마터널 접속 고가교량 시공시 기초형식 복잡 ·사업비 저렴	·평면 및 종단선형 양호 ·감천항 전체 내부순환도 로 역할 가능 ·남항대교 접속 양호 ·민원요소 최소화 ·공사비 고가 ·행정기간 과다 소요 ·조선소 이전 비용 과다	·평면 및 종단선형 불량 ·기존 감천항 내부도로 교통 분산 효과 ·송도삼거리 → 명지방향 대형 컨테이너 트럭의 좌회전 차로확보 어려움 ·송도 주변 상업시설 과다 보상 필요 ·사업비 고가



<그림 8-10> 감천항 진입도로 제1안 및 제2안 위치도



<그림 9-11> 방파제 대안3의 평면배치도

<표 9-4> 방파제 대안3의 개략 공사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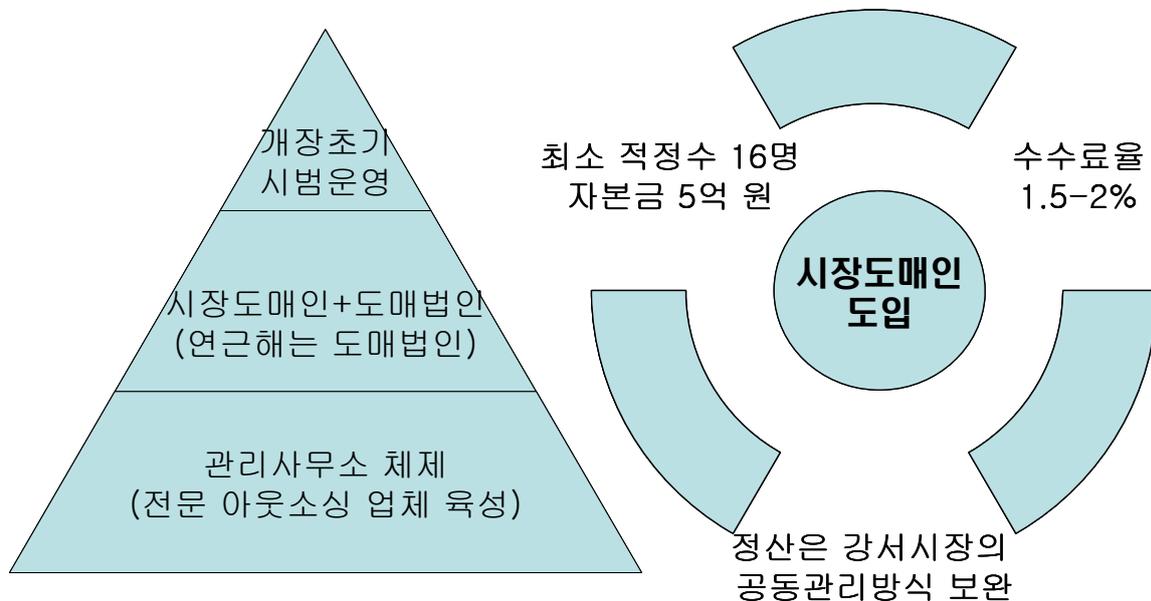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 분	구조형식	사업량	사업비
이안방파제	TTP 피복 사석경사제	192m	568
	케이슨식 혼성제	108m	320
	방파제 두부	2개소	44
	등 표	2개소	11
	관 제 소	1식	24
합 계		300	967

2.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운영방안

가.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관리조직은 관리사무소 체제를 추천하며, 운영조직은 시장도매인제와 도매법인이 공존하는 시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연근해 수산물은 그 특성상 경매를 필요로 하므로 도매법인 체제를 도입함
 - 연근해 전용시장의 개설은 아직 불투명하므로 현재 건설 중인 시장으로 출발한 후, 연근해 전용시장이 건설되면 동 부류에 한해서 도매법인을 도입함



<그림 9-12>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주체

- 수입선어 운반선사들을 유치하여 정식 개장 전까지 무료로 양륙
- 이들을 유치할 경우의 장점으로는
 - 부산 수산물유통업계 및 일본 등 외국 수출업자 등에 홍보효과
 - 선어수입업체들의 도매시장에 참여 분위기 조성
 - 전문 운반업체로 지정하여 선어물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 검역, 통관 등도 사전에 준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음

나. 시장도매인의 도입방안

○ 동시장의 시장도매인은

- 최소 적정 수 16명 이상(운영지침에는 40명 이하로 설정),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 출발하여 수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수수료율은 출하자의 경우 1.5%, 구매자의 경우 2%로 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정산체제는 기존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서농산물시장의 공동관리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천함

〈표 9-5〉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주체(추천 대안)

구분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현 건설 중인 시장)		연근해 수산물 전용시장 (신규 증설 시장)	
운영주체		도매법인	복수 시장도매인	단수 도매법인	
거래방법		경매(입찰)	수의매매	경매	
취급 수산물	수입	신선	○	○	
		냉장	○	○	
	원양	○	○		
	연근해	생산지양륙	×	×	○
		육상반입	○	○	○

〈표 9-6〉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수수료율(안)

구분		시장도매인제		경매제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수입수산물	냉동	1.5%	2.0%	3.0%	4.0%
	선어	2.0%	2.0%	3.0%	4.0%
원양수산물		1.5%	2.0%	3.0%	4.0%
연근해 수산물		-	-	3.4%	4.0%

- 주 : 1. 연근해 수산물은 공동어시장의 위탁수수료를 기준으로 함
 2. 원양 및 수입수산물은 지방도매시장의 최저 기준을 적용함

〈표 9-7〉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최소 적정 수(안)

구 분		1안	2안	비고	
상장물량	톤	117,719	427,435	조사 물량	
단가	원/kg	2,815	2,815	'04년 도매시장 평균 단가	
상장금액	억 원	3,314	12,033		
시장도매인	최소 수	명	2명	8명	1,500억 원/년(13만 톤)
		명	4명	16명	750억 원/년(7만 톤)
	자본금	5억 원 이상			

주 : 1. 상장물량은 제5장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1안은 상장희망물량, 2안은 조건부 포함 물량임
 2. 상장금액은 상장물량에 '04년에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수입수산물의 평균단가를 곱한 것임

-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아직 동일한 성격의 시장이 개설된 바가 없고, 시장도매인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시장이므로 단계적인 개장이 필요함
 - 초기에는 소규모의 파일럿사업으로 개장한 후
 - 수입 및 원양수산물 중심으로 전면 개장하고
 - 연근해 전용시장은 본 보고서의 대안이 수용될 경우 개장하는 것으로 함

〈표 9-8〉 감천 공영도매시장의 개장 단계

구 분	주요 내용
1단계	소규모 형태로 파일럿 사업 시작 - 시장의 개장 초기는 시행착오가 많으므로 준비단계로 1년간 시범 운영
2단계	수입수산물 및 원양수산물 중심 개장 - 수입 및 원양수산물 전량, 연근해 일부 개장 - 연근해수산물의 접안시설이 부족하므로 일부만 양륙
3단계	연근해를 포함한 전면 개장 - 시범 개장 후 3년간 연근해접안시설 증설(연근해 전용시장)하여 전면 개장
4단계	국제적 시장으로 도약 - 국제적인 수산물거래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위치 선정

다. 시장의 개설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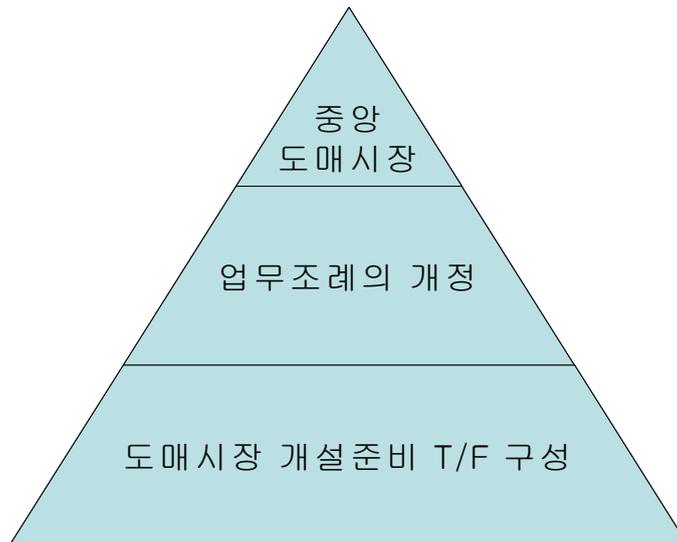
- 동시장의 개설은 시장도매인의 도입을 위해 지방도매시장으로 개설하여야 하지만,
-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국제적인 사업 추진 방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매거래의 중심지로서 중앙도매시장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

<표 9-9>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형태별 비교

구분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개설자	부산시	부산시
허가권자	해양수산부	부산시
감독권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시
운영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서 부산시가 운영하지만, 간섭의 여지 있음	개설자가 비교적 자유로이 시장을 운영·통제
규모	가락 및 노량진 등의 대형 규모	지방시장의 규모로는 대형
시장의 중요성	최초의 수산물 전용 공영도매시장 감천 국제 수산 물류무역기지의 핵심사업, 국민경제 영향이 아주 큼	시장의 중요성과 규모에 비추어 맞지 않음
역할	최초의 수입 및 원양 전문시장으로 두 품목의 전국적, 세계적 도매거래 중심	형태는 지방에 국한, 실체는 전국적, 세계적 시장 지향
지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 기회 많음 One-Stop수산물수출단지, 국제수산물거래소 등 중요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많이 남아 있음	지원 필요 시 정부와의 협력 어려움
운영주체	반드시 도매법인 필요	시장도매인제만으로 개설 가능

- 현 업무조례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맞추어져 있고, 시장도매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이 필요함



<그림 9-13> 도매시장의 개설을 위한 준비사항

- 또한, 시장의 운영 및 물량유치 등 개장준비를 위해서는 개설준비 T/F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동 T/F는 민관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기존 자문단을 활용하며
 - 시장도매인 등의 참여자가 정해지면, 이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위원회는 시장개설을 위한 각종 행정사항 및 운영을 위한 기획, 물량유치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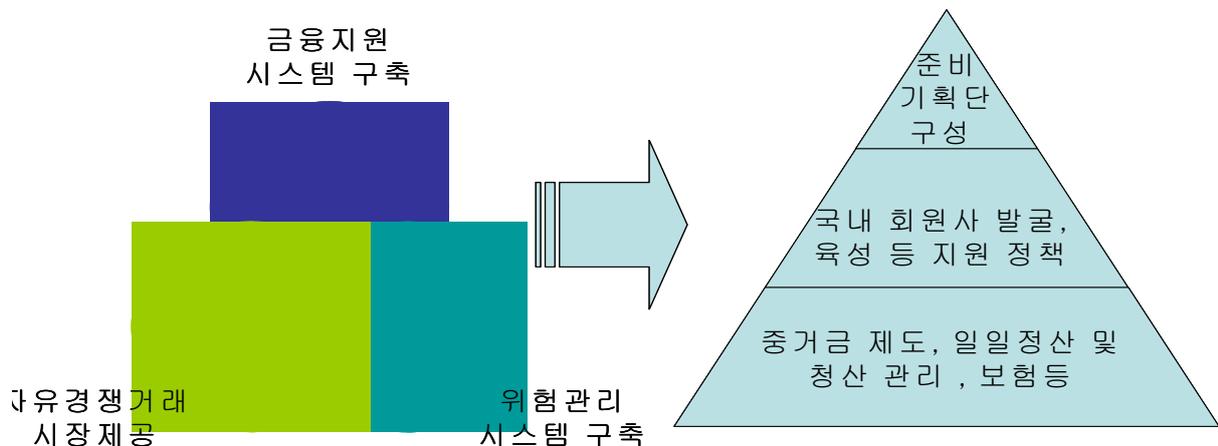
<표 9-10>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준비 T/F의 업무와 구성

구분		내용	비고
형태		개설준비위원회	
근거		운영조례의 제정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위원회 운영규정
구성원		부산시 공무원 및 전문가, 업계로 다양하게 구성	현재의 자문단을 활용 대형유통업자 등의 참여유도
시기		2006년부터 운영 시장개장 1년 후까지 운영	시범사업의 평가 및 개선
조직	전체	3개 부서로 운영	
	행정	도매시장 개장과 관련된 행정 1. 농수산물도매시장 종합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 개장준비 종합계획 3. 각종 지정 및 신청 절차 수행 4. 시장업무조례의 개정	
	기획	1. 도매시장관리·운영방안 수립 2.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선정 3. 시장도매인 선정 4. 정산시스템의 구축	
	물량 유치	1. 사업설명회 2. 대외 세미나 및 홍보 3. 업체 방문 및 물량유치 활동 4. 시장활성화에 관한 사항	민간 중심으로 운영 2단계부터 시장도매인 등 운영주체 참여
운영	1단계	각종 사업자 선정 전에 상기 활동 추진	
	2단계	사업자 선정 후 운영주체를 포함하여 운영	시장도매인 등이 참여
	3단계	시범 개장 후 평가 및 개선 업무를 전담	

3. 국제수산물교역센터 활성화 방안

가. 시장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

- 국제수산물교역센터는 감천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담당하지 않는 국외유통 및 선물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획됨
- 동 센터는 목표시장의 달성을 위해 자유경쟁거래시장을 제공해야 하며, 필수적으로 거래이행 즉, 인수도(Delivery) 및 결제(Settle)를 책임 보증하는 장치가 필요함
- 거래물량확보를 위해 금융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인수도 및 결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관리시스템이 필요함



<그림 9-14> 국제수산물교역센터의 활성화방안

나. 설립 및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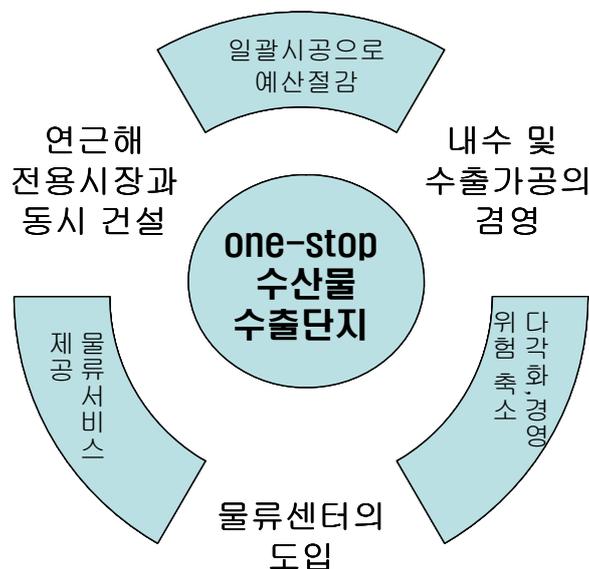
- 국제수산물교역센터의 조기 선점운영을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와 민간의 전문기관 및 인력이 배치된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 법인설립준비와 함께 업무분석, 핵심기능 및 거래상품 개발 그리고 사전 마케팅

(물량확보=회원사 확보+고객확보)등의 업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함

- 교역센터는 증거금 제도, 일일정산 및 청산 관리, 보험 등 위험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거래참여자는 안심하고 거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국내 회원사 발굴, 육성 등 지원 정책도 초기 단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

4.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활성화 방안

- 전량 수출은 가능성이 낮으므로 내수용 가공과 수출용 가공을 병행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 수출경쟁력이 낮은 업체들의 생산물을 무리하게 수출하는 것보다 내수를 기반으로 한 수출가공이 경쟁력이 높고,
 -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도매시장을 원료공급처로 활용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9-15>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의 활성화방안

- 내수용 가공을 고려했을 때, 수입수산물 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연근해 수산물의 가공을 겸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연근해 전용 시장과 동시에 건설함으로써 건설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에 물류센터를 배치함으로써 시장과 가공, 물류배송이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는 수산물의 국제적 물류중심을 표방하고 있으나, 대형소매점 등 구매자가 원하는 배송 및 포장 기능은 부족함